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315-14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
대분류 02·03·04·05·06·09·1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10.31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 11」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년 10 월 31 일

연구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곽대훈 (부교수,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공동연구원 : 강 욱 (부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도중진 (부교수,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박성민 (조교수,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최대현 (부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황태정 (교수,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연구원 : 문희태 (강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조원 : 윤성희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목 차

제1장. 연구개관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2
3. 연구방법	9
제2장. ICCS관련 선행연구	11
1. ICCS 개관	11
2. ICCS 도입관련 UNODC 지침	13
3. 미국의 ICCS 적용 현황	39
4. 해외사례	42
제3장. 연계 및 시산	58
1. ICCS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와의 연계원칙	58
2.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63
3. 대분류 03 성범죄	106
4. 대분류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124
5. 대분류 05 재산만 침해	131
6.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관련 위법 행위	149
7. 대분류 09-10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행위, 자연환경 위해 행위	164
8. 대분류 11 기타범죄 행위	208
제4장. 결론 및 제언	217
1. 대분류별 상세 제언	218
2. 한국형 범죄분류체계(KCCS) 개발을 위한 제언	229
3. 한국형 범죄분류체계(KCCS)(안)	242
참 고 문 헌	249
부 록 1. 한국표준범죄분류(안) 해설	251
부 록 2.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 연계결과표	300
부 록 3. 11영역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범죄(1109)	377
부 록 4. ICCS 범죄 항목별 세분화 변수 연계표	396
부 록 5. 2018 대검찰청 형법범죄 분류체계	409
부 록 6. 2018 대검찰청 특별법 분류체계	412

부 록 7. 경찰청 범죄분류체계 415

표 목 차

〈표 1-1〉 연구범위	3
〈표 2-1〉 범죄통계 실태파악 및 고려사항	15
〈표 2-2〉 예시	17
〈표 2-3〉 진행사항: UN-CTS 양적지표	21
〈표 2-4〉 세분화변수 목록	25
〈표 2-5〉 사건 관련 세분화변수	26
〈표 2-6〉 피해자/가해자 관련 세분화변수	30
〈표 2-7〉 자료 서술 및 포함 관련 세분화변수	32
〈표 2-8〉 ICCS Lo 세분화변수	33
〈표 2-9〉 각 레벨1 항목 중에서 우선 보고 범죄	34
〈표 2-10〉 1929년 Uniform Crime Report 최초 범죄분류체제	43
〈표 2-11〉 Uniform Crime Report 현행 범죄분류체제	44
〈표 2-12〉 NIBRS 범죄분류체제	45
〈표 2-13〉 사기범죄 분류항목	48
〈표 2-14〉 CSEW 및 경찰통계 장·단점	52
〈표 2-15〉 CSEW 통계분류	52
〈표 2-16〉 경찰통계분류	53
〈표 2-17〉 상위 10개의 재산범죄 종류	55
〈표 2-18〉 PKS 범죄통계분류: 예시	56
〈표 3-2-1〉 중대한 폭행(020111): 형법범	63
〈표 3-2-2〉 중대한 폭행(020111): 특별법범	64
〈표 3-2-3〉 경미한 폭행(020112): 형법범	64
〈표 3-2-4〉 경미한 폭행(020112): 특별법범	65
〈표 3-2-5〉 협박(02012): 형법범	65
〈표 3-2-6〉 협박(02012): 특별법범	66
〈표 3-2-7〉 기타 폭행 및 협박(020122): 형법범	67
〈표 3-2-8〉 기타 폭행 및 협박(020122): 특별법범	67
〈표 3-2-9〉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형법범	68
〈표 3-2-10〉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특별법범	68

〈표 3-2-11〉 납치(020221): 형법범	69
〈표 3-2-12〉 불법 감금(020222): 형법범	69
〈표 3-2-13〉 불법 감금(020222): 특별법범	70
〈표 3-2-14〉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 형법범	71
〈표 3-2-15〉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 특별법범	72
〈표 3-2-16〉 강제 산업 노동(020322): 특별법범	73
〈표 3-2-17〉 기타 강제 노동(020329): 특별법범	73
〈표 3-2-18〉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0): 형법범	73
〈표 3-2-19〉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0): 특별법범	74
〈표 3-2-20〉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0): 형법범	75
〈표 3-2-2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0): 특별법범	75
〈표 3-2-22〉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0): 형법범	75
〈표 3-2-23〉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0): 특별법범	75
〈표 3-2-24〉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0): 형법범	76
〈표 3-2-25〉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0): 특별법범	76
〈표 3-2-26〉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0): 형법범	76
〈표 3-2-27〉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0): 특별법범	76
〈표 3-2-28〉 강요(0205): 형법범	77
〈표 3-2-29〉 강요(0205): 특별법범	77
〈표 3-2-30〉 아동과실(020611): 형법범	78
〈표 3-2-31〉 아동과실(020611): 특별법범	79
〈표 3-2-32〉 과실(020612): 형법범	79
〈표 3-2-33〉 과실(020619): 형법범	80
〈표 3-2-34〉 직무상 과실(020620): 형법범	80
〈표 3-2-35〉 차량 운전 부주의(020630): 형법범	81
〈표 3-2-36〉 기타 과실 행위(020690): 형법범	81
〈표 3-2-37〉 건강 위협 행위(020710): 형법범	83
〈표 3-2-38〉 건강 위협 행위(020710): 특별법범	84
〈표 3-2-39〉 음주운전(020721): 특별법범	84
〈표 3-2-40〉 스토킹(020820): 특별법범	85
〈표 3-2-41〉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0): 특별법범	85
〈표 3-2-42〉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 형법범	86

〈표 3-2-43〉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 특별법범	86
〈표 3-2-44〉 개인차별(021010): 특별법범	87
〈표 3-2-45〉 집단차별(021020): 특별법범	87
〈표 3-2-46〉 사생활 침해(021110): 형법범	88
〈표 3-2-47〉 사생활 침해(021110): 특별법범	88
〈표 3-2-48〉 기타 침해(021190): 특별법범	89
〈표 3-2-49〉 대분류 02 시산결과	90
〈표 3-2-50〉 대분류 02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93
〈표 3-3-1〉 강간(030111): 형법범	106
〈표 3-3-2〉 강간(030111): 특별법범	107
〈표 3-3-3〉 강간(030112): 형법범	108
〈표 3-3-4〉 강간(030112): 특별법범	108
〈표 3-3-5〉 강간(030113): 형법범	109
〈표 3-3-6〉 강간(030113): 특별법범	109
〈표 3-3-7〉 성폭행(030121): 형법범	110
〈표 3-3-8〉 성폭행(030121): 특별법범	110
〈표 3-3-9〉 성폭행(030122): 특별법범	111
〈표 3-3-10〉 성폭행(030129): 형법범	111
〈표 3-3-11〉 성폭행(030129): 특별법범	112
〈표 3-3-12〉 성인 성착취(030210): 형법범	112
〈표 3-3-13〉 성인 성착취(030210): 특별법범	113
〈표 3-3-14〉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 특별법범	113
〈표 3-3-15〉 아동 성매매(030222): 특별법범	114
〈표 3-3-16〉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 형법범	114
〈표 3-3-17〉 기타 성착취(030290): 형법범	115
〈표 3-3-18〉 기타 성착취(030290): 특별법범	115
〈표 3-3-19〉 성 범죄(0309): 특별법범	115
〈표 3-3-20〉 대분류 03 시산결과	116
〈표 3-3-21〉 대분류 03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117
〈표 3-4-1〉 강도(0401): 형법범	124
〈표 3-4-2〉 강도(0401): 특별법범	125
〈표 3-4-3〉 대인 강도(04011): 형법범	125

〈표 3-4-4〉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 형법범	126
〈표 3-4-5〉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 특별법범	126
〈표 3-4-6〉 대분류 04 시산결과	128
〈표 3-4-7〉 대분류 04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129
〈표 3-5-1〉 침입절도(0501): 형법범	131
〈표 3-5-2〉 가정집 침입절도(05012): 형법범	132
〈표 3-5-3〉 기타 침입절도(050190): 형법범	132
〈표 3-5-4〉 절도(0502): 형법범	135
〈표 3-5-5〉 절도(0502): 특별법범	135
〈표 3-5-6〉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 형법범	135
〈표 3-5-7〉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050219): 형법범	136
〈표 3-5-8〉 지적재산권위반(0503): 특별법범	137
〈표 3-5-9〉 재물손괴(0504): 형법범	137
〈표 3-5-10〉 재물손괴(0504): 특별법범	138
〈표 3-5-11〉 공공재물 손괴(050410): 형법범	138
〈표 3-5-12〉 공공재물 손괴(050410): 특별법범	139
〈표 3-5-13〉 사적재물 손괴(050420): 형법범	139
〈표 3-5-14〉 기타 재물 손괴(050490): 형법범	140
〈표 3-5-15〉 기타(0509): 형법범	142
〈표 3-5-16〉 기타(0509): 특별법범	142
〈표 3-5-17〉 대분류 05 시산결과	143
〈표 3-5-18〉 대분류 05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144
〈표 3-6-1〉 ICCS 중분류 0601의 유형 및 행위	149
〈표 3-6-2〉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형법범	150
〈표 3-6-3〉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특별법범1	152
〈표 3-6-4〉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특별법범2	152
〈표 3-6-5〉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특별법범3	152
〈표 3-6-6〉 ICCS 중분류 0602의 유형 및 행위	153
〈표 3-6-7〉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2): 특별법범1	154
〈표 3-6-8〉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2): 특별법범2	154
〈표 3-6-9〉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2): 특별법범3	155
〈표 3-6-10〉 ICCS 중분류 0609의 유형 및 행위	155

〈표 3-6-11〉 대분류 06 시산결과	156
〈표 3-6-12〉 대분류 06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158
〈표 3-7-1〉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관련 한국의 코드 지정 현황	164
〈표 3-7-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세분화된 범죄분류코드 목록	165
〈표 3-7-3〉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타 행위(0908): 형법범	165
〈표 3-7-4〉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09021): 특별법범	166
〈표 3-7-5〉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0901): 특별법범	166
〈표 3-7-6〉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090113): 특별법범	166
〈표 3-7-7〉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09031) 및 불법적 방해(09032): 특별법범	167
〈표 3-7-8〉 대기오염·저해유발 행위(10011): 특별법범	167
〈표 3-7-9〉 수질오염·저해유발 행위(10012): 특별법범	168
〈표 3-7-10〉 토양오염·저해유발 행위(10013): 특별법범	168
〈표 3-7-11〉 기타 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10019): 특별법범	168
〈표 3-7-12〉 국내폐기물 이동·투하(10021): 특별법범	168
〈표 3-7-13〉 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식물의 거래나 소유(1003): 특별법범	169
〈표 3-7-14〉 불법벌목(10041): 특별법범	169
〈표 3-7-15〉 불법 사냥, 조업 또는 야생 동식물 채집(10042): 특별법범	170
〈표 3-7-16〉 불법채광(10043): 특별법범	170
〈표 3-7-17〉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행위(10049): 특별법범 ..	170
〈표 3-7-18〉 동물 관련 침해행위(10091): 특별법범	171
〈표 3-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예시	171
〈표 3-7-20〉 범죄분류체계 비교 예시	174
〈표 3-7-21〉 대분류 9영역 죄명별 분류체계 시산표	174
〈표 3-7-22〉 대분류 10영역 죄명별 분류체계 시산표	176
〈표 3-7-23〉 대분류 9영역 코드세분화 필요영역	178
〈표 3-7-24〉 대분류 10영역 중 코드 세분화 필요영역	181
〈표 3-7-25〉 대분류 09영역 시산결과	183
〈표 3-7-26〉 대분류 10영역 시산결과	185
〈표 3-7-27〉 대분류 09영역 연결내용 및 문제점 정리	188
〈표 3-7-28〉 대분류 10영역 연결내용 및 문제점 정리	200

〈표 3-8-1〉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1101): 분류체계	209
〈표 3-8-2〉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1101): 특별법범1	210
〈표 3-8-3〉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1101): 특별법범2	210
〈표 3-8-4〉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행위 (1102): 분류체계	211
〈표 3-8-5〉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1102): 소년법	212
〈표 3-8-6〉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1102): 청소년 보호법	213
〈표 3-8-7〉 대분류 11영역 연결내용 및 문제점 정리	215
〈표 4-1〉 범죄분류코드 세분화의 예시	227
〈표 4-2〉 범죄통계원표 입력 원칙	231
〈표 4-3〉 ICCS 분류표 수정(안)	235
〈표 4-4〉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안)	24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내용	2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10
〈그림 2-1〉 성공적인 ICCS 도입을 위한 다섯 단계	14
〈그림 2-2〉 ICCS와 통계시스템 통합 방법	18
〈그림 2-3〉 각 국가의 법규 위반행위와 ICCS 항목과의 차이점	24
〈그림 4-1〉 키스 메인 및 통계화면	230

요 약 문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국제범죄분류(ICS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가 공개된 후 국제기구의 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중심으로 범죄 유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부처협업 T/F를 구성하고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2016년 기초연구부터 2017년과 2018년에 통계청 주관으로 2개의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통계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가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T/F를 구성하여 기관 공동 번역 작업과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와의 연계 가능성을 일부 검토하였다. 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에서는 ICCS의 분류단위와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ICCS와 한국범죄분류의 연계 가능성을 ICCS 분류단위 적용지침을 바탕으로 현행 죄명코드와의 연계작업을 통해 확인하였고 연계 과정 중 어렵거나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2018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에서는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07(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 08(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과 죄명코드와의 연계작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용역연구의 주요목적은 국제범죄분류(ICCS)의 11개 대분류 항목 중 선행연구에서 연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국내 죄명코드와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에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2018년 과제에서 연계 및 시산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ICCS 대분류 02(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3(성범죄), 04(폭력 또는 협박동반 재산침해), 05(재산만 침해), 06(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관련 위법행위), 09(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행위), 10(자연환경 위해 행위), 11(기타범죄행위)에 대한 죄명 연계표를 확정하고 범죄통계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방안 및 분류체계(안)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 범죄통계 작성 대상 죄명(코드)과 ICCS 세분류와의 연계표 및 검·경 통계분류와의 연계표를 작성하고,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통계를 시산하며 시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 및 제시한다. 시산 및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대상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체계(안)를 도출하며, 도출된 분류체계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항목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유의사항 등의 상세정보를 수록한 해설서(안)를 작성한다. 끝으로,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3. 연계결과

ICCS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와의 연계원칙은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본단위인 죄명코드를 ICCS와의 연계대상으로 하였고, ICCS의 항목분류 코드에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죄명코드는 최하위 단위의 개별코드를 이용하고, ICCS 역시 가장 하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상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하였다. 가능한 모든 죄명코드에 대하여 1대1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또는 누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후술하는 설명서에 작성하였다. 끝으로, 미수, 교사, 방조는 각각 해당 범죄 기수항목 및 정범의 범죄에 연계하며, 미수교사, 미수방조, 예비·음모는 연계하지 않았고 결합법은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범죄행위로 침해당하는 법익이 중한 정도에 따라 연계하였으며 결과적 가중법은 치사형태를 제외하고 고의의 기본범죄와 연계하였다. 대분류별 연계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으며 ICCS에는 있으나 우리나라 죄명코드와 연계 불가 등의 이유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음영표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1> 연계작업 결과 요약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	
			02012	협박	020121	중대한 협박	
					020122	경미한 협박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190	기타 폭행 및 협박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비영리 목적 약취/유인	020211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2	자유 박탈			020221	납치(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020222	불법 감금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재킹)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1	불법 입양	
					020292	강제 혼인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10	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2	강제 노동	020321	강제 가사 노동	
					020322	강제 산업 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0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20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30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5	강요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10	강탈 또는 갈취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590	기타 강요 행위		
		0206	과실/유기/방임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611	아동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30	차량 운전 부주의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020710	건강 위협 행위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21	음주 운전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	기타 위험 행위	020790	기타 위험 행위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11	직장내 괴롭힘		
						020819	기타 괴롭힘		
				02082	스토킹	020820	스토킹		
		0209	명예훼손, 모욕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10	개인의 특성 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0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10	차별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1	개인 차별	021010	개인 차별
						02102	집단 차별	021020	집단 차별
		0211	인적 침해	02109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2119	기타 침해	021190	기타 침해
		0219	기타	02190	기타	021900	기타		
		03	성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3	의제 강간								
030119	기타 강간								
03012	성추행(강제추행)					030121	신체적 성추행		
						030122	비신체적 성추행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추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190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3022	아동 성착취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030222	아동 성매매
030223	아동 그루밍성범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309	기타 성 범죄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30290	기타 성착취
				03090	기타 성 범죄	030900	기타 성 범죄
04	폭력 또는 협박 등 재산 침해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040119	기타 대인 강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1	금융 기관 강도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04014	가축 강도	040140	가축 강도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0409	기타	040900	기타				
05	재산만 침해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050110	사업장 침입절도
				05012	가정집 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190	기타 침입절도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	육상 차량 절도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050229	기타 개인재산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10	공공재물 손괴
				05042	사유재물 손괴	050420	사유재물 손괴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30	회사재물 손괴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490	기타 재물 손괴
0509	기타	050900	기타				
06	관리 대상 물 이나 형 신 물 관 련 위 법	0601	관리대상 약물, 천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06012	비개인소비용불법마약 류밀매,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행위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물질의 불법 행위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190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90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	기타	06090	기타	060900	기타	
			09	공공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1	화기 불법 소지,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901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소지, 사용 관련 행위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1					화기 밀매	090122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밀매	09012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관련 행위		
		090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190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0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0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10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	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 불법 방해				09032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조작					
					090322	컴퓨터 데이터 불법 조작					
09033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30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90510	범죄 조직 가담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90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906	테러	09061	테러조직 가담	090610	테러조직 가담				
			09062	테러 재정지원	090620	테러 재정지원				
			09059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590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	비상해 교통위반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10	1001	환경 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10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0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0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9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90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10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2	국경을 통과하는 폐기물이동·투하	100220	국경을 통과하는 폐기물이동·투하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11	희귀종 국내 거래 또는 소유				
					100312	희귀종해외밀매				
			10032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0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0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100410	불법 벌목		
					1004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20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	불법 채굴	100430	불법 채굴		
	10049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490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1	동물 위해 행동	100910	동물 위해 행동				
			1009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90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1	기타 범죄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11011	고문	110110	고문		
					11012	해적	110120	해적		
					11013	전쟁범죄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9							기타 전쟁범죄		기타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	110140	집단학살			
11015					반인권 범죄	110150	반인권 범죄			
11016					침략 범죄	110160	침략 범죄			
11019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190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11021	비행(미성년자 신분관련 범죄)	110210	비행(미성년자 신분관련 범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위반 행위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90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4.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통계원표를 작성할 때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해당법률을 기재하고, 기수와 미수 등 부수적인 관련 행위를 선택하면 해당 법 조항에서 관련 행위를 추출하여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ICCS와의 완벽한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분류체계를 법률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법률조항 중심의 통계 산출에 있어서도 분류코드를 세분화하면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법률명 개정 및 범죄유형의 신설에 따른 죄명코드의 변경·신설 및 삭제 등 통일화가 필요할 것이며, 법률명 위반으로 부여된 죄명코드의 행위유형에 따른 죄명코드의 세분화 및 결합범·결과적 가중범 등의 연계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죄명코드 상 행위주체·수단 등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목적 내지 동기를 요건으로 유형화한 ICCS에의 연계 유형화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형사법범과 특별법범 및 행정범의 구별 없이 일괄하여 범죄유형별로 범죄코드를 부여하여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범죄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방식은 국내적으로 범죄의 발생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 범죄예방이나 대응 및 대책수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약 70%에 해당하는 행정형법에 따른 행정범은 비범죄화의 대상이자 행정벌(과태료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유형이기에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다루어야 하는 형사범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범죄통계의 집계로는 범죄통계의 부정확성과 오류에 따른 과다계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마치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법범과 특별법범을 구분 없이 일괄하여 국제표준범죄분류에 따른 범죄통계로 집계하는 것도 동일하게 범죄통계의 부정확성과 오류에 따른 과다계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국내의 치안수준과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범죄예방이나 대응 및 대책수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내용 범죄통계의 집계(국내용으로서의 비공식적 집계)와 국제적으로 국내의 치안수준과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의 제고에 직결되는 국제기구에의 보고용 범죄통계(국제용으로서의 공식적 집계)를 각각 이원적으로 집계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한 형사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 특별법범에 대한 범죄통계 및 형사법범인 교통사범을 공식적인 경찰백서나 범죄백서 등에서는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제1장. 연구개관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범죄분류(ICS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는 유엔마약 범죄사무국(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된 범죄분류체계를 의미한다. 2009년 UNODC와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법률중심(legal codes)의 범죄분류에서 행위중심(behavioral descriptions)을 기초로 한 범죄분류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였고 수년간의 논의 및 연구 끝에 2012년 최종보고서(*Principles and Framework for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를 발표하였다 (Bisogno, Dawson-Faber, & Jandl, 2015). 이후 2012년과 2014년 사이 두 번의 ICCS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 끝에 UN에서는 2015년 3월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에서 ICCS를 채택하였다(Bisogno et al., 2015).

ICCS는 범죄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범죄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범죄통계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범죄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제시되었다(강소영 외 7명, 2017).

국내의 경우, 2015년 ICCS Ver.1.0이 공개된 후 국제기구의 ICCS 채택 및 이행권고에 따른 한국 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중심으로 범죄 유관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부처협업 T/F를 구성하고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강소영 외 5명, 2018). 2016년 기초연구부터 2017년과 2018년에 통계청 주관으로 2개의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통계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가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T/F를 구성하여 기관 공동 번역 작업과 한국범죄통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와의 연계 가능성을 일부 검토하였다.

2017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에서는 ICCS의 분류단위와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단위인 죄명코드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ICCS와 한국범죄분류의 연계 가능성을 ICCS 분류단위 적용지침을 바탕으로 현행 죄명코드와의 연계작업을 통해 확인하였고 연계 과정 중 어렵거나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2018년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에서는 ICCS 대분류 01(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07(기망 또는 부패, 사기 연관 행위), 08(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과 죄명코드와의 연계작업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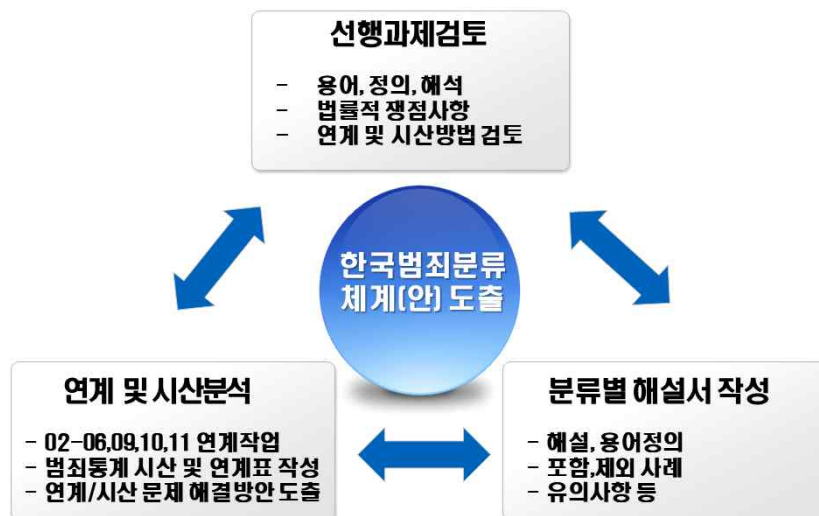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용역연구의 주요목적은 국제범죄분류(ICCS) 11개 대분류 항목 중 선행연구에서 연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국내 죄명코드와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에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외 범죄통계 작성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범죄통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2018년 과제에서 연계 및 시산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ICCS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죄명 연계표 확정하고 범죄통계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방안 및 분류체계(안)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 범죄통계 작성 대상 죄명(코드)과 ICCS 세분류와의 연계표 및 검·경 통계분류와의 연계표 작성하고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통계를 시산한다. 또한, 시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및 제시한다. 시산 및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대상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체계(안) 도출하며 도출된 분류체계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항목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유의사항 등의 상세정보를 수록한 해설서(안) 작성한다. 끝으로, 한국범죄분류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림 1-1〉 연구내용

본 과제의 연구범위는 ICCS 대분류 02(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3(성범죄), 04(폭력 또는 협박동반 재산침해), 05(재산만 침해), 06(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행위), 09(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행위), 10(자연환경 위해 행위), 11(기타범죄)을 포함한 대분류 8개, 중분류 41개, 소분류 113개, 세분류 172개에 대한 국내 죄명과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도출하고자 한다. 예컨대, ICCS 대분류 02는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로 이는 ‘0201 폭행 및 협박’과 ‘0202 자유 억압행위’등으로 분류되며 0201 중분류는 ‘02011 폭행’, ‘02012 협박’,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으로 나뉘며 02011 폭행은 다시 ‘020111 중대한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으로 세분화되며 대분류별

구체적 연구범위는 아래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연구범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0101	고의 살인	01010	고의 살인	010100	고의 살인
		0102	고의 살인 미수	01020	고의 살인 미수	010200	고의 살인 미수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10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실 살인				
		0104	자살 방조.교사	01041	자살 방조	010410	자살 방조
				01049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490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5	안락사	01050	안락사	010500	안락사
		0106	불법 낙태	01060	불법 낙태	010600	불법 낙태
0107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1090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10900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2	상해를 야기 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
				02012	협박	020121	중대한 협박
						020122	경미한 협박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190	기타 폭행 및 협박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2	자유 박탈	020221	납치
						020222	불법 감금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1	불법 입양		
				020292	강제 혼인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020310	노예
						02032	강제 노동
				020322	강제 산업 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0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3	성범죄	0205	강요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20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30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6	과실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10	강탈 또는 갈취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590	기타 강요 행위
						020611	아동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30	차량 운전 부주의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710	건강 위협 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020721	음주 운전
						020721	음주 운전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0	기타 위험 행위
				02079	기타 위험 행위	020811	직장내 괴롭힘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1	괴롭힘	020819	기타 괴롭힘
						02082	스토킹	020820	스토킹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20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10	개인 차별
		0210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20	집단 차별
						02102	집단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09	기타 차별	021110	사생활 침해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90	기타 침해
						02119	기타 침해	021900	기타
		0219	기타	02190	기타	021900	기타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3	의제 강간		
030119	기타 강간								
03012	성폭행			030121	신체적 성폭행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190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03022	아동 성착취	030222	아동 성매매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030222	아동 성매매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30290	기타 성착취
			0309	기타 성 범죄	03090	기타 성 범죄	030900
04	폭력 또는 협박 등 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040119	기타 대인 강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1	금융 기관 강도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04014	가축 강도	040140	가축 강도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0409	기타	04090	기타	040900	기타		
05	재산만 침해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050110	사업장 침입절도
				05012	가정집 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190	기타 침입절도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	육상 차량 절도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050229	기타 개인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10	공공재물 손괴
05042	사유재물 손괴			050420	사유재물 손괴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30	회사재물 손괴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490	기타 재물 손괴		
0509	기타	05090	기타	050900	기타		
06	관리 대상 물 이나 형 식 물 관 련 위 법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06012	비개인소비용불법마약 류밀매,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행위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190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90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	기타	06090	기타	060900	기타				
07	0701	사기	07011	금융 사기	070111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9	기타 금융 사기			
					07019	기타 사기 행위			
	0702	위조		07021	결제수단 위조	070211	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12	비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2	상품 위조		
						070220	상품 위조		
						07023	문서 위조		
	070230	문서 위조							
	07029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29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290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31	뇌물 증수뢰	070311	뇌물 증뢰
								070312	뇌물 수뢰
						07032	횡령	070320	횡령
						07033	직권 남용	070330	직권 남용
						07034	영향력 거래	070340	영향력 거래
						07035	불법적 부의 축적	070350	불법적 부의 축적
07039	기타 부패 행위	070390	기타 부패 행위						
0704	범죄수익금 관련 행위		07041	돈 세탁	070410	돈 세탁			
					07042	불법 문화재 매매			
					070420	불법 문화재 매매			
07049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490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8	공공질서 행동규범	0801	공공질서 행동규범 침해 행위	0801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10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2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20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침해 행위	0802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19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190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21	성매매 범죄	080210	성매매 범죄
			08022	음란물 범죄	080220	음란물 범죄
			08029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290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3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통제와 관련 행위	08031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10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2	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080321	종교적 믿음 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2	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9	제한된 사회적 믿음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 행위
	08039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390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	국고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41	국고 세입 규정 위반행위	080410	국고 세입 규정 위반행위
			08042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20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3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30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4	밀수입	080440	밀수입
			08045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50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9	기타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490	기타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5	이민 관련 행위	08051	이주자 밀입국 범죄	080510	이주자 밀입국 범죄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590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	사법제도 침해 행위	08061	사법 방해	080610	사법 방해
			08062	사법 명령 위반	080620	사법 명령 위반
			08063	범의	080630	범의
			08064	범죄음모	080640	범죄음모
			08069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690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7	민주적 선거와 관련 행위	08071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10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9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790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8	노동법에 반하는 행위	08081	노동법 위반	080810	노동법 위반
			08082	개별적 근로관계법 위반	080820	개별적 근로관계법 위반
	080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0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1	화기 불법 소지,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901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소지, 사용 관련 행위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1	화기 밀매	
					090122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밀매	
					09012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관련 행위	
			090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190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0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0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10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조작	
					090322	컴퓨터 데이터 불법 조작	
			09033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30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90510	범죄 조직 가담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90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6	테러	09061	테러조직 가담	090610	테러조직 가담	
			09062	테러 재정지원	090620	테러 재정지원	
			09059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590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	비상해 교통위반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1	환경 오염·저하 유발 행위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10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0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0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9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90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10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2	해외폐기물이동·투하	100220	해외폐기물이동·투하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11	희귀종 국내 거래 또는 소유	
					100312	희귀종 해외밀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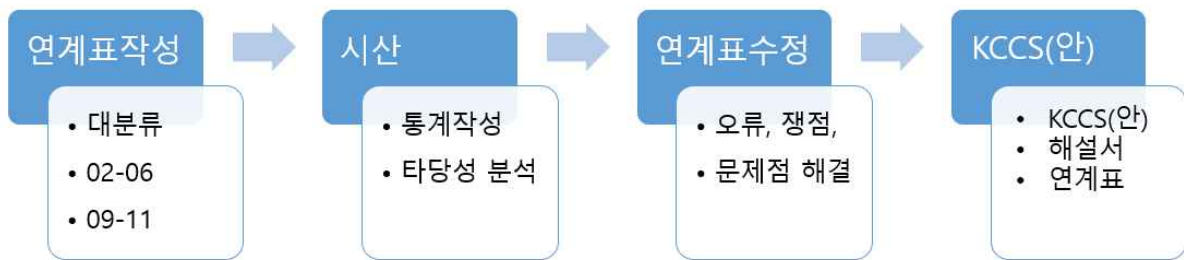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0032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0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0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100410	불법 벌목		
				1004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20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	불법 채굴	100430	불법 채굴		
				10049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490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1	동물 위해 행동	100910	동물 위해 행동		
				1009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90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1	기타 범죄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11011	고문	110110	고문
						11012	해적	110120	해적
11013	전쟁범죄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9	기타 전쟁범죄					110139	기타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					110140	집단학살		
11015	반인권 범죄					110150	반인권 범죄		
11016	침략 범죄			110160	침략 범죄				
11019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190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1	비행	110210	비행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90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3. 연구방법

연구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은 아래 <그림 1-2>와 같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ICCS와 범죄 분류 관련 치안정책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2017, 2018) 연구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특히, 용어의 정의, 해석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며 법률적 쟁점사항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새로 참여하는 형법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 선행과제의 연계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후 한국범죄표준 체계(안)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작업은 ICCS 대분류 항목별 해당하는 우리나라 죄명코드를 각각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할당하여 연계하여 실시한다. 연계방법은 2018년 선행연구를 준용하되 문제발견 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연계표 작성은 죄명코드를 기본키(primary key)를 활용하여 죄명코드와 ICCS와의 연계작업을 우선 진행한다.

선행과제와 마찬가지로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시산하도록 하며 분석결과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분석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시산은 지난 4년(2014-2017) 동안 발생한 해당 범죄건수 및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림 1-2〉 연구추진절차

끝으로 시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표를 수정작업을 통해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을 제시한다. 체계안의 기본형식은 선행과제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일하거나 수정·보완된 형식을 활용하며 이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항목별 해설서(안)의 작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관련 분야 실무자 및 학계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취합하여 KCCS(안) 작성 시 적극 반영하여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2장. ICCS관련 선행연구

1. ICCS 개관

1) ICCS의 성격 및 목적

ICCS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 및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범죄분류체계이다 (UNODC, 2015). ICCS 개발의 주요 목적은 나라마다 상이한 법률체계로 인해 국가에서 생산하는 범죄통계의 기준 및 자료수집 방법 등이 달라 범죄통계 간 국제비교 및 공유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표준화된 방식의 국제범죄 분류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¹⁾ ICCS는 통계업무의 관행 및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과 같은 국제통계분류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반영되었다(통계청, 2016, pp. 6-7)²⁾. ICCS는 전체 범죄를 11개의 대분류(행위영역)로 구분하고 각 대분류에는 두자리 코드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02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각 대분류는 아래 단계로 내려가는 계층구조를 이루면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세분화된다. ICCS는 총 11개의 대분류, 62개 중분류, 165개 소분류, 230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2) ICCS에 적용된 원칙

ICCS의 분류 단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며, 범죄는 그 범죄를 가한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표현된다(UNODC, 2015). 분류의 목적은 범죄사건 유형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모든 범죄를 ICCS 구축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체포, 기소, 판결, 선고 등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사건이나 상황은 물론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적용가능 하다 (통계청, 2016).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분류항목 구축을 위해 설계된 ICCS계층 구조는 행위/사건과 관련된 정책분야(재산권보호, 신체보호 등), 행위/사건의 대상(사람, 사물, 자연환경, 국가 등), 행위/사건의 심각성(사망에 이르는 행위, 해악을 가하는 행위 등), 행위/사건의 범행 방식(폭력, 폭력위협 등)의 4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항목을 구성하였다. ICCS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11개 대분류는 아래의 4개

1) ICCS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국제표준 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와 연계되어 있다. ICD는 전염병, 건강관리 등의 국제 통계 분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과 증상 등의 진단을 분류한 표준진단도구이며, 이환율과 사망률의 외부적 원인들의 분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ICD-10에서 사인을 폭행으로 분류하게 된다.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를 참조한다. ISIC는 생산활동에 대한 국제분류로, 범죄피해자인 기업과 기관을 경제부문별로 파악하기 위한 ICCS의 세분화 변수 표에 반영되어 있다.

2) 상호배타성이라 함은 검토 대상인 현상의 모든 기본 표현이 중복 없이 하나의 분류에만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성은 연구 대상 현상의 가능한 모든 징후(manifestation)가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통계적 타당성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에 속하는 항목 간 구분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능한다.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도 동일한 기준이 반영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ICCS분류 중 한 개의 항목에 적절히 할당되어야 하며 범죄행위, 속성, 사건 등을 파악하여 범죄행위를 중·소·세분류로 분류한다. 예컨대, 모든 성관련 상해 행위는 대분류 03항목으로 분류되고 행위/사건에 근거한 정의, 법적 포함/제외 여부에 대한 지침에 따라 중·소·세분류로 분류한다. 범죄가 기존의 분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기타'분류항목에 분류한다.

3) ICCS 이행

2018년 5월 UNODC는 ICCS 이행 매뉴얼(ICCS Implementation Manual)을 출판하였고 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10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강소영 외, 2018: p.3).

- 1단계(제도적 틀의 정립): 국가별로 실무자 그룹을 형성하고 ICCS 이행을 추진할 중심부서 (National Focal Point) 선정
- 2단계(인식 제고): 범죄통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ICCS 도입의 필요성과 유용 홍보
- 3단계(국제협력과 지원): ICCS 이행에 필요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
- 4단계(기술적 준비작업): ICCS 번역작업 및 내용 분석을 통한 ICCS에서 범죄로 분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각 나라의 법규정과 차이가 나는지 검토
- 5단계(범죄통계 생산과정 평가): 현행 범죄통계의 타당도, 신뢰도 및 품질 평가
- 6단계(국가차원의 이행계획 수립): ICCS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7단계(이행계획의 단계적 추진)
- 8단계(범죄통계 산출): ICCS 각 대분류별 범죄통계 시산
- 9단계(통계 출판): ICCS 적용된 국가 통계출판
- 10단계(보고): UNODC에 이행결과 보고

국가별 ICCS 이행 진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ICCS-TAG Virtual Platform에 참여한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의 참여국들이 ICCS 이행을 위한 중앙부서를 선정하였고 연계표(correspondence tables)를 작성 중인 국가는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초과제를 통해 ICCS 버전 1.0을 한국어로 번역완료 하였으며 2017년에는 각 대분류별로 우리나라 범죄분류 코드와 연계작업을 수행하였다 (강소영 외, 2017; 장다혜 외, 2016; 최대현 외, 2016). 또한 2018년 통계청 용역과제를 통해 ICCS 대분류 01, 07, 08에 대한 연계작업 및 시산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본 연구용역을 통해 나머지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에 연계작업 및 시산작업을 진행중이다 (강소영 외, 2018). 따라서, UNODC의 ICCS 이행 10단계의 이행 로드맵 중 8단계 작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ICCS 도입관련 UNODC 지침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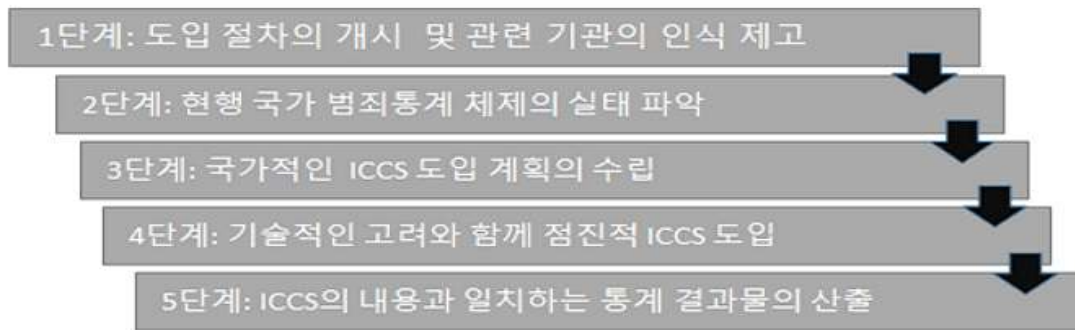
2019년 8월 현재 United Nations Office of Drug and Crime (이하 UNODC)에서는 각 국의 ICCS 도입과 관련하여 그 성공적인 도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통계의 국제적인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ICCS 도입관련 지침서 (ICCS Implementation Manual)를 제작 중에 있으며 본 장에서는 이 지침서의 최종 초안을 미리 검토하고 그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ICCS 도입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동 지침서는 범죄통계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동 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신뢰성이 있는 범죄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기타 도입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고적인 정보는 제외하였다.

상기한 UNODC 지침서는 ICCS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1) 성공적인 ICCS 도입을 위한 절차, (2) ICCS에 포함 또는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범위, (3) 기존 범죄와의 연계표 작성 방법, (4) 세분화변수의 적용, (5) ICCS에 입각한 데이터 생산, (6) 범죄 계수의 방법과 규칙, 그리고 (7) 총 11개의 대분류 항목별 특정 범죄의 구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범죄와의 연계표 및 각 범죄별 세분화변수의 적용 사례를 별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 또한 이러한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별례 중 이와 관련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ICCS의 도입과 관련하여 UNODC 지침서는 도입 과정을 크게 ICCS의 분류 기준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과정과 ICCS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변수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과정 등 두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국가는 (1) 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다 일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신뢰성 있는 범죄통계 자료 구축, (2) 체계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분석 및 정책 자료로의 활용, (3) 범죄와 관련된 복잡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성공적인 ICCS 도입을 위한 절차

UNODC 지침서는 성공적인 ICCS의 도입을 위하여 총 5단계로 이루어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각 국가에서 ICCS를 도입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으로 각 국가의 현재의 도입 능력, 가용 자원, 국가 정책, 추진 기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UNODC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성공적인 ICCS 도입의 5 단계는 도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2-1〉 성공적인 ICCS 도입을 위한 다섯 단계

가. 제1단계: 도입 절차의 개시 및 관련 기관의 인식 제고

(가) ICCS 도입과 관련한 기관의 확인 및 인식 제고

성공적인 ICCS 도입 절차의 가장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범죄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범죄 또는 사법 통계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이 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련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포함한다.

- 경찰 및 특수 목적 경찰 등 법집행 기관
- 검찰 등 기소 및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 형사 법원
- 교도소 등 형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이러한 기관이 ICCS 도입 목적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때 성공적인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특히 범죄통계 수집과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이 들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법 기관들은 보수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이러한 기관들이 ICCS의 개념 및 장점과 이를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장점들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ICCS 도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나) 국가적인 ICCS 실무그룹 설치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각 국가별 보다 중요히 여겨지는 부분과 국가의 가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그룹은 법 또는 실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계획의 초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고 범죄통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적 또는 국제적 기관 및 다른 나라의 기관들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의 중점사항에 입각하여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그룹은 조직화되어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ICCS 도입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 제2단계: 현행 국가 범죄통계 체제의 실태 파악

(가) ICCS의 내용 검토 후 기술적인 작업 준비

먼저 ICCS 도입에 있어 그 범주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ICCS를 각 국가의 범죄통계 체제에 적용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형법 및 사법통계 체제를 ICCS의 범주에 맞도록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처음에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수반한다. ICCS는 범죄와 관련한 모든 양상을 포함하도록 목표하고 있어 몇몇 ICCS 항목은 몇몇 국가의 범죄 통계체제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ICCS 항목이 해당 국가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명하다. 이렇게 ICCS 항목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동 국가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ICCS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권장된다.

- 해당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아니거나 행정위반행위가 아닌 ICCS 항목의 식별
- 해당 국가에서 범죄행위는 아니나 행정위반행위로 처벌되는 ICCS 항목의 식별
- 상기한 두 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ICCS 항목들을 해당 국가의 ICCS 도입에서 제외

(나) 현행 국가 범죄통계 체제의 실태 파악

사건 중심 자료 수집,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자료 수집, 또는 다양한 통계자료 산출 방식의 도입 등은 ICCS 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법 기관의 범죄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 과정, 또는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ICCS 도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의 범죄통계에 대한 심층 깊은 실태파악은 각 국가의 현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ICCS와의 차이점 및 호환성과 각 국가에서 어떤 부분에 주요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표는 포괄적인 실태 파악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표 2-1〉 범죄통계 실태파악 및 고려사항

질 문		답 변	
1. 개별 사건에 대한 자료가 컴퓨터 전자장비에 저장되고 있는지 여부	가. 컴퓨터 전자장비	예	아니오
	나. 문서	예	아니오
	다. 혼합하여 저장	예	아니오
	라. 저장되고 있지 않음	예	아니오
2. 현행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화된 범죄 리스트가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3. 현행 범죄항목이 죄측에 제시된 ICCS 범죄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의도하는 행위	예	아니오
	나. 사람을 위해하거나 이를 의도하는 행위	예	아니오
	다. 성적 성격의 유해 행위	예	아니오
	라. 사람에게 대한 폭력/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예	아니오
	마. 오직 재산만을 침해한 행위	예	아니오

	바. 규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물질과 관련 행위	예	아니오
	사.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행위	예	아니오
	아. 공공질서/권위/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	예	아니오
	자.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예	아니오
	차. 자연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예	아니오
	카. 기타 이곳에 분류되지 않은 범죄행위	예	아니오
4.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정부를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	가. 사건 (예: 상황, 지역 위치, 무기 종류)	예	아니오
	나. 피해자 (예: 성별, 연령, 국적, 가해자 관계)	예	아니오
	다. 가해자 (예: 성별, 연령, 국적, 피해자 관계)	예	아니오
5. 다음 기관이 범죄 또는 사법작용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는지 여부	가. 경찰	예	아니오
	나. 검찰	예	아니오
	다. 법원	예	아니오
	라. 교도소	예	아니오
6. 범죄 또는 사법통계의 메타데이터(속성 정보) 수집 여부		예	아니오
7. 사법기관들이 자료 생산의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상기한 항목이외에 법적 또는 기관의 구조, 기관의 협조 및 조정, 해당기관의 조직적 양상, 국제통계 기준에 적합성, 재정 자원, 인적 자원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태 파악에서 발견된 정보는 각 국가의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요약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3단계: 국가적인 ICCS 도입 실무 계획의 수립

(가) 국가적인 실무 계획 초안

상기한 실태파악에 근거하여 실무그룹은 ICCS 도입에 대한 자세한 국가적인 실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ICCS 점진적인 도입과 관련한 모든 단계, 활동, 결과물을 식별하고 단계별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ICCS 도입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 단위의 작업을 요구한다.

- 현행 범죄구분/자료의 종류/범죄지표/변인과 ICCS 항목 및 정의와의 비교
- 현행 범죄 항목과 ICCS 항목간의 범죄 연계표 생산
- 모든 자료 생산자의 조정
- 조직화되고 종합적인 자료 생산과 전파의 확인

이외에도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작업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데이터 기록 및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분화변수의 통합
- 자료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의 평가와 조정

(나) 역할과 책임, 활동, 추진 일정, 예산 등의 명확화

각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참여와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인 개발과 검토를 시행할 때 ICCS의 도입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도입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가 향후 사용자들이 신뢰하고 개발자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도입 계획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별 과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활동의 목록
- 활동을 세분화된 과업으로 분류
- 과업 간 시간순서를 결정하고 조정이나 협조가 필요한 과업을 식별
- 활동의 시작, 경과, 끝마침의 추산
-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의 명확화
- 각 기관별 활동의 배분

이러한 사항들은 책임기관, 마감기한, 결과물, 활동, 평가 지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체제로 조직화하여 시각화가 가능하며 아래에 예시된 표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표 2-2〉 예시

목표	현행 범죄분류의 ICCS로의 연계 도표화
책임 기관	통계청
결과물	현행 범죄통계 분류 항목과 ICCS 항목간의 연계표 작성
과업	ICCS 항목의 개념과 정의의 분석 현행 범죄통계 분류의 개념과 정의의 분석 현행 범죄통계 분류와 ICCS간의 연계 양자 간 개념과 정의의 차이점 식별 연계표의 작성
평가 지표	11개의 대항목별로 연계표 작성

라. 제4단계: 기술적인 고려와 함께 점진적인 ICCS의 도입

ICCS의 도입은 도입 계획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도입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다양한 프로젝트, 과업, 활동을 범죄통계 시스템과 조직적 도입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융통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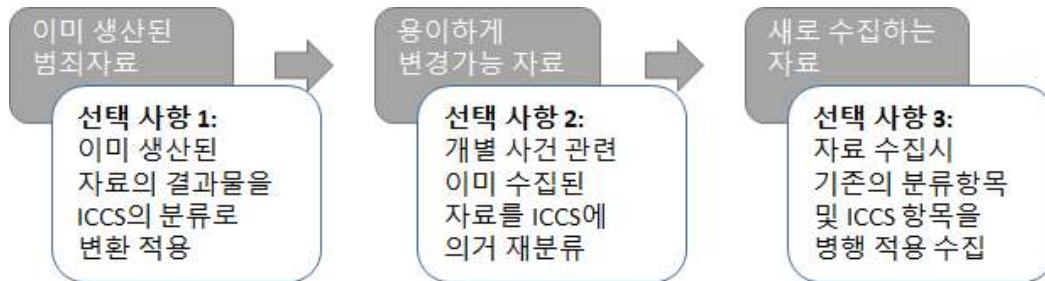
(가) ICCS 범죄항목과 통계 시스템의 통합

실제적으로 ICCS의 도입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도입 초반에 고려하는 것이 순조로운 도입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 이미 수집되어 생산된 범죄통계 자료

-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자료
- 기존 분류항목에 ICCS 항목을 부가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적 방법들이 가능하다.



〈그림 2-2〉 ICCS와 통계시스템 통합 방법

(나) 선택사항 1: 이미 생산된 통계 결과물을 ICCS로 변환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선택사항은 기존의 범죄분류 항목에 따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ICCS의 항목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분류 작업은 연계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분류 항목을 하나하나 ICCS 항목에 할당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 간의 비교와 각 기관 또는 담당자간의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다) 선택사항 2: 개별 사전 관련 수집 자료를 ICCS로 재분류

상기한 첫 번째 과정은 범죄 자료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초대를 제공하여 이 과정에 사용된 연계표는 다시 기존의 분류항목에 의거 수집된 개별 사건에 대한 정보를 ICCS 항목으로 재분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개별 사건 정보의 재분류는 ICCS 항목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ICCS와 모순이 없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도록 한다.

(라) 선택사항 3: 분류항목의 병행 사용을 통한 자료 수집

이 세 번째 선택사항은 수집될 자료의 적합성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ICCS의 분류 항목은 각 사건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은 경찰이 사법절차의 초기에 범죄를 인지하거나 보고할 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범죄분류 항목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이와 병행하여 ICCS 항목을 같이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병행 수집은 기존의 복잡한 범죄 분류체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몇몇 분류항목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사법기관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UNODC는 상기한 사항들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ICCS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택사항들을 순서에 따라 시행할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범죄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세분화변수 정보 수집

“태그”라고도 불리는 세분화변수는 특정한 사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풍부하게

도와주는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현재 범죄의 수, 구조, 또는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각 국가의 범죄 통계 수집 시스템은 상당히 상이하며 각 국가의 지역적 특징이나 정책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특징에 대한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기본 정보를 관련 정책에 적절하게 수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마. 제5단계: ICCS의 내용과 일치하는 통계 결과물의 산출

(가) UN-CTS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소 결과물 산출

ICCS의 도입 이후, 이에 적합한 개정된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ICCS에 적합한 자료의 산출은 고의적 살인에 대한 기본적인 범죄 자료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ICCS 레벨 항목들로 점차 넓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점차 레벨2, 레벨3, 레벨4로 확대한 이후 국가 정책에 관련된 세분화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나) 범죄통계 자료의 품질 검사 및 교정

각 국은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시행방법에 적합한 품질 확보방안을 구축하여 수집된 범죄통계 자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자료의 품질은 기본적인 품질요구사항, 타당성, 신뢰성, 정확성, 적시성, 방법론적 적절성, 일치성, 그리고 접근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될 수 있다. 많은 국제 평가 기관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면들을 그 들의 품질 검사 방안에 통합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UN 통계국은 효과적인 검사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방법론적 건전성의 확보: 생산된 자료가 국제 기준 및 과학적 원칙에 적합한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는지 여부
- 적절성의 확보: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여부
- 정확성 및 신뢰성의 확보: 자료가 정확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였는지 여부
- 적시성의 확보: 수집된 자료가 사용되어지기까지 지체되는지 여부
- 접근성 및 명확성의 확보: 자료 또는 메타자료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관성 및 적합성의 확보: 자료가 내부적으로 일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메타 자료의 관리: 수집 방법, 관련 변인, 개념 등에 대한 메타 자료가 관리 및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다) 자료의 배포

수집된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ICCS의 도입 이후의 예상되는 혜택으로 국가 정책적인 요구에 입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배포 방법은 사용자의 요구, 자료의 품질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수집에 사용되었던 방법론에 대한 자료도 올바른 통계 자료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바. 통계적 산출물에 대한 각 단계별 ICCS 도입 정도 측정

아래 제시된 표는 각 ICCS 도입단계별 주요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통계 산출에 대한 ICCS 도입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 정도 측정은 UN-CTS에서 발췌한 양적 지표에 의하여 특정된다.

〈표 2-3〉 진행사항: UN-CTS 양적지표

결과물	산출물	활동	도구	관련 논평	평가 비율 (각 기관별)	%
1단계: 도입 절차의 개시 및 관련 기관의 인식 제고						
기관 또는 조직적 체계의 정립	국가적인 ICCS 실무그룹 창설 및 운용	실무그룹 초안에 제시된 기관을 설립하고 국가적인 중점 추진 사항을 도입	ICCS 도입 지침서	국가적인 발안(發案)과 지원 필요	국가적인 ICCS 실무그룹 설립되고 기관적 평가가 실무그룹의 업무에 포함	5%
2단계: 현행 국가 범죄통계 체제의 실태 파악						
현재 범죄 통계 자료 수집에 대한 평가 및 ICCS와의 차이점과 목표 정의	국가적인 통계 자료 산출에 대한 평가 보고서	어떤 분류 방법, 절차, 그리고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파악 차이점 및 필요점 파악 권장사항의 개발	ICCS 안내 책자 UNODC 범죄 자료 평가 기준 현 국가 평가 사례	평가가 필요한 모든 기관의 협조 필요	다섯 기관의 자료 산출이 각 2%씩 평가되었음 (총 10%)	15%
3단계: 국가적인 ICCS 도입 계획의 수립						
국가적 도입 계획의 수립	ICCS 도입 관련 국가적 실무 계획 수립	국가적 ICCS 실무그룹이 도입 절차, 책임 부서, 그리고 일정을 포함한 실무 계획 수립	ICCS 안내 책자 ICCS 도입 지침서 국가 실무 계획 사례	실무 계획은 모든 기관에서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여야 함	ICCS 도입에 대한 국가적 실무계획이 수립되어 완결되었으며 실무그룹의 동의 획득: 5%	20%
ICCS 도입에 대한 지원적 분위기 조성	ICCS 도입과 관련한 보조적인 실무 완료	ICCS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보 ICCS 내용의 명확화	ICCS 안내 책자 ICCS 도입 지침서 공식/비공식 ICCS 번역서, 교육 재정/인적 지원	모든 차원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하여야 함	ICCS 도입과 관련한 보조적인 실무 완료: 5%	25%

4단계: 기술적인 고려와 함께 점진적 ICCS 도입						
ICCS 분류를 통계 체제에 통합	모든 기관에 대한 연계표 작성	연계표 작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실무 그룹 회의 개최	ICCS 안내 책자 ICCS 도입 지침서 연계표 동료 심사	연계표는 모든 기관의 동의 필요 하고 상호 심사 및 국제적 기준에 적합	ICCS 레벨1 항목 당 연계표 작성 시 2%	45%
ICCS 기준에 따른 자료 수집	ICCS 항목별 적절한 자료 수집 양식, 도구, 규칙 제정	ICCS 항목별 수집 도구 검증 및 설계 자료 수집 단계의 수집 도구 변경	ICCS 안내 책자 연계표	가용 지원을 참조하여 점진적으로 ICCS 도입	부분적으로 적합한 도구 5% 완전한 도구 10%	60%
ICCS 규정에 따른 세분화변수 적용	자료 수집 도구에 ICCS 세분화변수의 적용	세분화변수 항목 확정 및 이에 따른 도구 재설계	ICCS 안내 책자 ICCS 도입 지침서	가용 지원을 참조하여 점진적으로 ICCS 도입	사건 관련: 5% 피해자 관련: 5% 가해자 관련: 5%	75%
5단계: ICCS의 내용과 일치하는 통계 결과물의 산출						
ICCS 기준에 적합한 자료의 생산	ICCS 분류항목에 따른 자료가 별도의 행정 및 조사 방법에 의거 생산	우선적인 지표들부터 점차적으로 ICCS에 적합한 자료 수집 시행	ICCS 안내 책자 ICCS 도입 지침서 국가 실무 계획	가용 지원을 참조하여 점진적으로 ICCS 도입	ICCS 도입 범주 항목별 2% (총 20%)	95%
ICCS 기준에 적합한 자료의 공표	ICCS 분류항목에 따른 자료가 별도의 행정 및 조사 방법에 의거 공표	ICCS 연계표, 새로 수집된 자료, 온라인에 공개된 ICCS 적합 자료 사용	ICCS 안내 책자 ICCS 도입 지침서	공표된 자료는 모든 해당 범주 종류를 포함하여야 함	종합적인 공표 5%	100%

3) ICCS의 적용 범위 및 해당되는 범죄

이 장에서는 ICCS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범죄의 정의(定義)와 ICCS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위반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한다.

가. ICCS 목적에 따른 범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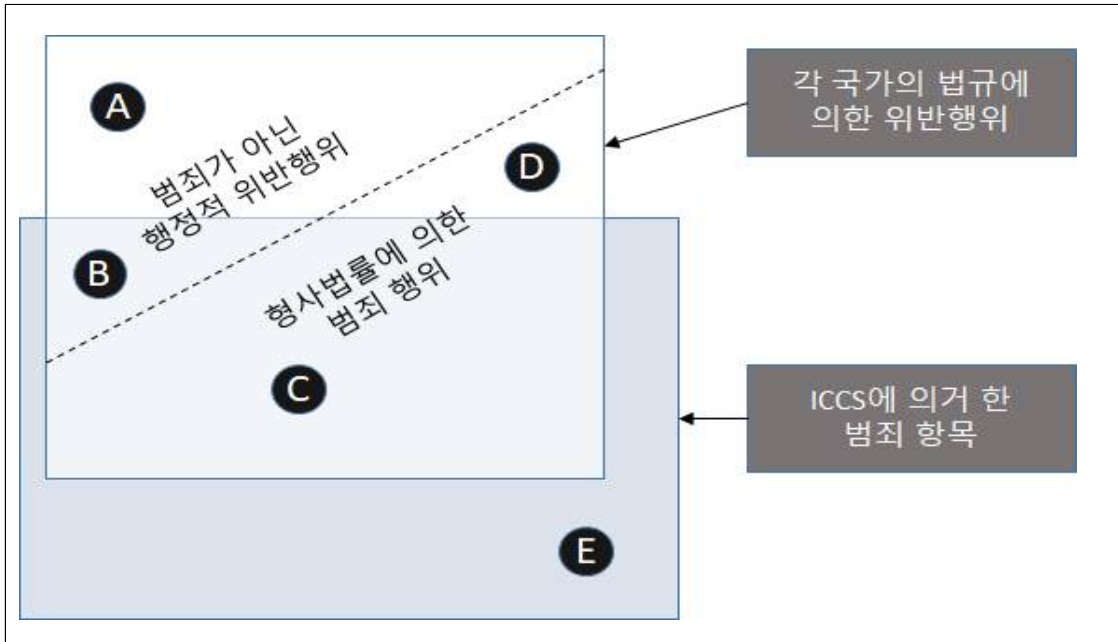
ICCS는 범죄를 정의하는 “부당성” 또는 “피해”의 모호성 그리고 각 국의 법적 체계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국가의 형사 법전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 행동을 행하여 처벌 가능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각 범죄 행위는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가해자 - 사람, 회사, 기관 -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사항 같은 행정법규 위반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모든 범죄를 다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민사문제나 행정 법규적 위반행위와 구별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나 ICCS의 원칙적인 입장은 각 국가에서 형사법규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나. 범죄행위의 일반에 대한 국가적 정의

ICCS를 도입 시 해당되는 전체 범죄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국의 법률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ICCS는 국가들의 형사입법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통계적 목적을 고려하여 범죄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 법전 규정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도입과정에서 각 국가의 모든 범죄 행위는 ICCS에 연계되고 포함이 되어야 하며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 ICCS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민사법적 사항이나 행정적 위반행위는 ICCS 해당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국의 범죄 행위에 있어 차이점 때문에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레벨1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약품에 관한 범죄의 경우 이들의 소지, 구매, 사용, 재배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마약관련 범죄율이 높게 보고되고 특정 마약을 범죄 대상에서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해당 범죄율이 제로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09047)”이다. 이 항목은 상해나 사망을 동반하지 않는 교통법규 또는 교통규제 위반 범죄로 정의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 과속, 안전의무 위반, 자동차미등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교통 범죄는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항목 06번이나 0907 항목과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의 행정법규 위반이 범죄 통계 자료의 비교가능성이나 해석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ICCS 항목에 포함하여 수집되고 공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각 국가의 법규 위반행위와 ICCS 항목과의 차이점

위 〈그림 2-3〉은 ICCS와 각 국가가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법 체제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A 부분의 경우 가벼운 행정위반행위와 같이 해당 국가의 형사 법규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ICCS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ICCS 도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B 부분의 경우 가벼운 행정위반행위와 같이 해당 국가의 형사 법규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ICCS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는 행위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때에만 ICCS 도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C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형사 법규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ICCS 항목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그 규정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ICCS 도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D 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 법규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ICCS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ICCS의 여타 항목으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E 부분의 경우에는 ICCS 항목에는 해당되나 해당 국가에서는 범죄나 행정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ICCS 도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다른 법 시스템 사이의 구분

범죄 행위로 규정되는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적 정의를 검토하고 다른 위반행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죄 구분의 기준과 어떻게 이들이 정의되었는지 (예를 들어, 중범죄, 경범죄, 행정 범죄 등)
- 어떤 대상이 규제 대상인지 (예를 들어 환경 범죄, 마약 범죄, 교통 범죄 등)
- 형사소송에서 다른 죄명이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 기관 부과 범죄 등)

- 형사처벌의 속성 또는 종류에 따라 범죄의 종류가 달라지는지 여부

4) 세분화변수

각 범죄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에 근거한 범죄예방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세분화변수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세분화변수는 개별 범죄사건 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과 같이 사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건의 성질을 가리킨다. ICCS에 분류된 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표준 세분화변수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는 ICCS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세분화변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변수의 앞에 제시된 영어 약자는 동 변수를 자료에 입력하기 위한 코드이다.

〈표 2-4〉 세분화변수 목록

사건 관련	피해자 관련	가해자 관련	자료 서술/포함
At - 미수/기수	SV - 피해자 성별	SP - 가해자 성별	Th - 협박 포함 여부
We - 사용된 무기의 종류	AV - 피해자 연령	AP - 가해자 연령	AA - 조력/교사 포함 여부
SiC - 상황적 환경	STV - 피해자 연령층 (성인/미성년자)	STP - 가해자 연령층 (성인/미성년자)	Ac - 공범/종범 포함 여부
Geo - 지역적 위치	ViP - 가해자와의 관계	ViP - 피해자와의 관계	CP - 공모/계획/준비 포함 여부
DaT - 날짜 시간	Cit - 국적	Cit - 국적	In - 범죄행위를 자극하는 행위 포함 여부 (In)
Lo - 위치의 종류	LS - 피해자의 법적 지위 (법인, 사람)	LS - 가해자의 법적 지위 (법인, 자연인)	
Mot - 동기	Int - 술/마약 음용 여부	Int - 술/마약 음용 여부	
Cy - 사이버범죄 관련	ES - 영업 범죄 피해자의 경제 부문	EASt - 가해자의 경제적 활동 상태	
Rep - 신고자		Rec - 가해자의 재범 여부	

자료에 대한 서술/포함 항목(AA, Ac, CP 등)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범죄 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권고되어지나 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세분화변수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가. ICCS 세분화변수의 정의

다음 표에서는 IC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분화변수의 구체적인 서술과 자료 및 포함항목 등에 대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세분화변수를 범죄 통계의 기록 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분화변수를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사건 관련 세분화변수

〈표 2-5〉 사건 관련 세분화변수

사용된 무기의 종류 (We)	
이 세분화변수는 범죄에서 사용된 무기의 주요한 무기를 통하여 강력범죄를 구분한다.	
화기 (XE04A)	장식용 총기 또는 이의 복사본을 제외한 모든 총기류로 폭발력을 이용하여 총알이나 다른 발사체를 발사하는 휴대용 무기
폭발물 (XE59Q)	
도검류 (XE4BU)	도검, 창, 화살, 작살, 착검, 낫, 도끼, 단검 등
기타 무기로 사용된 물건 (XE98K)	
목조름, 목매달기, 질식 (PE6)	
익사시킴, 물에 잠기게 함 (PE5)	
신체 가격 (PE10)	손 또는 발로 가격
마약 또는 화학 약품	마약, 의약품, 생물학적 물질 사용 공격 (PE8) 부식성 물질 사용 공격 (PE94) 살충제 사용 공격 (PE93) 가스 또는 기화물질을 사용한 공격 (PE95) 특정 화학물질, 독성물질을 사용한 공격 (PE8Z) 특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독성물질을 사용한 공격 (PE95)
기타	화재, 불길, 또는 연기 (XE3NR) 뜨거운 증기 또는 물건 (PE73) 부주의 또는 태만 (PE18) 유기 (PF1A) 여타 학대 신드롬 (PJ2Z) 여타 특정 방법을 통한 공격 (PF2Y)
특정되지 않은 수단으로 공격 (PF2Z)	
해당사항 없음	
모름	
상황적 특성 (SiC)	
이 세분화변수는 범죄에 포함된 범죄 행위의 주요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변수는 사회적 상호 작용 또는 다른	

범죄 행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조직범죄 관련	<p>여기서 “조직 관련”은 범죄 자체가 아닌 범죄의 상황적 환경을 가리키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p> <p>1) 가해자 (용의자): 경찰 또는 전과 기록에 의거 조직 폭력배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려진 경우</p> <p>2) 범행 수법: 조직범죄 단체가 일상적으로 쓰는 양식인 협박에 적합한 폭력이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p> <p>3) 피해자: 피해자가 경찰 또는 전과 기록에 의거 조직 폭력배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려진 경우</p> <p>조직범죄 관련 고의적 살인의 경우 살인의 지역적 위치 또는 시간과 같은 일반적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p> <p>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폭력에 의한 범죄를 특징하는 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을 수 있다. 조직범죄와 관련한 독립변수를 적용할 경우 조직폭력 단체에 대한 정의는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에서 제공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조직폭력배로 규정한 개념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p> <p>조직범죄 단체는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을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의 구조화된 단체”로 규정하며 UNOTC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명 이상의 사람의 협조 2. 각 사람의 할당된 임무 3. 지속성과 안정성 (상당한 기간) 4. 일정 형식의 규율과규제 5. 심각한 범죄 행위 실행의 의심 6. 국제적인 운영 활동 7. 협박에 적합한 도구 및 폭력 사용 8. 상업 또는 영업과 같은 구조 9. 돈세탁에 관여 10. 정치, 언론, 공무원, 법원,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침 11. 권력 또는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결속
조직폭력배 관련	조직폭력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 범죄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다.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배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1) 일정기간 지속성, (2) 거리에 근거한 생활양식, (3) 젊은 소속원들, (4) 불법행위 가담, (5) 조직폭력배 정체성
회사법인 범죄 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참여하는 것이 이 범죄의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범죄자가 회사나 법인을 대신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한 연인/가족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의하여 정의됨. 일상적으로 “친밀한 연인”은 감정적 연대감, 주기적인 만남, 지속되는 육체적 관계 및 성적 행위, 연인으로서의 정체성, 상대방의 삶에 대한 친숙함과 넓은 지식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같이 살거나 살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부모와 자녀 또는 여타 혈연 관계, 기타 가족 구성원 그리고 입양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가리킨다. 가족구성원은 피해자로서 같은 가족으로 살고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테러리즘 관련	테러리스트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이 범죄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다. 테러리스트 단체는 테러리스트 범죄행위를 하는 단체를 말하여 테러리스트 범죄행위는 국제단체나 정부 또는 군중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대적 군사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사람 또는 일반 시민에게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보편적인 법적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사회적 동요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둘 이상의 세력이 적대적인 단체 폭력행위를 행하는 상황으로 군사적 마찰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타 범죄	이 항목은 어떠한 범죄가 여타 다른 범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해진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해당사항 없음	
모름	

지리적 위치 (Geo)

이 세분화변수는 국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지역적 위치를 확인하고 또는 치외법권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확인하게 한다. 이 항목은 범죄가 행하여진 지리적 위치를 기록하는데 사용하며 이는 각 지역을 구분하는 국가의 분류나 법역 외부 지역 등을 포함한 국내 또는 국외 지역이다.

국가의 지역적 구분 (첫번째 두 번째 수준 등)	국가의 행정적, 정치적, 지리적 분할 구역을 포함. 모든 국가의 지역적 분할이 이곳에 포함될 수 있음.
법역 외부 지역	범죄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 해상지역에서 행하여졌으나 법역 외부의 수사 및 기소로 인하여 기록이 될 경우 사용되어진다. "법역 외부 지역"은 한 국가가 국외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국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처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는 또한 범죄피해조사에서 피해자가 국외에서 입은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해당사항 없음	
모름	

사건 신고자 (Rep)

이 세분화변수는 어떤 범죄가 피해자, 목격자, 또는 경찰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보고되는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목격자	
경찰	
기타 법집행기관	
형사사법기관	
모름	

일시 (DaT)

이 세분화변수는 알려진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일자 및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일정 시간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예를 들어 저녁시간대 주거침입절도). ICCS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식은 dd/mm/yyyy이며 24시간 형식을 취한다.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 적절한 시간대 (예를 들어 0 1:00 - 02:00)를 사용하여야 한다.

범죄의 위치 (Lo)

이 세분화변수는 범죄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 학교 등 일반적인 범죄의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한다. 지리적 위치 변수와는 달리 이 변수는 행정적, 정치적, 지리적 위치가 아닌 건물, 기관, 공공 장소 등의 종류를 확인케 해준다.

사적인 거주 장소	사람에 의해 소유되거나, 임대된 부동산
공개된 장소, 거리, 또는 공공 교통	공원, 숲,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거리, 공공 교통의 내부
학교 등 교육 기관	
교도소, 형벌기관, 또는 교	국가 교정시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모든 교정 시설

정기관	
보호 기관 또는 시설	병원, 보호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기타 상업적 또는 공공 비 거주 장소	(1) 상점, 음식점, 은행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지역 (2) 사무실, 창고 와 같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영업 지역 (3)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 공개 비거주 지역 (4) 관공서, 군사시설 등 공공 비공개 비거주 지역
기타	
모름	

범죄의 동기 (Mot)

이 세분화변수는 몇몇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범죄 행위의 동기를 조사하며 특히 피해자의 특성, 성격, 믿음, 가치로 인하여 범죄의 대상이 된 증오범죄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이 동기 변수는 상황 변수(SiC)와는 다르며 상황변수가 범죄나 범죄가 발생한 사회적 관계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동기 변수는 왜 특정 피해자가 대상이 되어 범죄가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법 이익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포함
증오 범죄	이는 피해자가 인종, 종교, 민족, 성적(性的) 성향, 불구, 등 그들의 성격, 특성, 믿음, 가치로 인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된 범죄로 정의된다. 피해자의 특성이나 성격은 나이, 언어, 민족, 인종, 불구 등을 가리키며 믿음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다. 증오 범죄는 인종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 성전환자 대상 범죄 등을 포함한다. 아래 제시된 젠더 기반(Gender-based) 범죄나 공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범죄는 제외한다.

젠더 기반	<p>어떠한 사회가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확립된 성품, 활동, 행동, 역할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p> <p>이스탄불 국제회의에서 “젠더 기반 범죄 (Gender-based Crime)는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행하여지는 폭력이나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의미한다. 특히, 젠더 기반 살인은 친밀한 연인 폭력의 결과 또는 마녀/마술 혐의로 인한 여성 살인, 여성이나 소녀의 명예 살인, 결혼 지참금 관련 살인, 여성의 잔인한 살인, 성적 성향의 결과로 인한 살인, 그리고 기타 상징적인 효과를 가지고 행하여진 여자 또는 소녀의 젠더관련 살인을 지칭한다.</p> <p>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1)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연인 여부 (2) 가해자의 특성: 과거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성적 폭력 전과가 있는지 여부 (3) 피해자의 특성: 정부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매춘부, 마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등 (4) 사건의 특성: 몸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성적 폭력을 행한 후 살인, 결혼 지참금관련 살인,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한 발칙적 살인, 피해자의 행동 또는 사적 또는 성적 생활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살인 등</p>
-------	---

대인관계 갈등	인간/사회관계에 사회적 문화적 마찰을 포함한 갈등이 있을 때 발생한 충돌을 의미. 이 세분화변수는 특히 친구, 동료 등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폭력이나 다른 범죄 행위로 귀결되었을 때를 의미함
정치적 의제	현재 또는 근래의 정치적 뉴스나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념적 또는 정치적 단체에 의하여 제시된 문제점들을 의미함.
기타 동기	
해당사항 없음	
모름	

사이버범죄 관련 (Cy)	
이 세분화변수는 컴퓨터의 사용을 동반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변수는 컴퓨터 데이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이 범죄 행위의 중요한 부분인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이버범죄 관련	컴퓨터 사용을 동반한 범죄
비 사이버범죄 관련	여타 컴퓨터 사용을 동반하지 않은 모든 범죄
해당사항 없음	
모름	

미수/기수 (At)	
이 세분화변수는 범죄가 착수는 되었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범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수	미수 범죄
기수	기수 범죄
해당사항 없음	
모름	

(나) 피해자/가해자 관련 세분화변수

〈표 2-6〉 피해자/가해자 관련 세분화변수

피해자/가해자 성별 (SV/SP)	
이 세분화변수는 생물학적 신체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된 남성 여성을 의미함	
남성	피해자/가해자 성별: 남성
여성	피해자/가해자 성별: 여성
해당사항 없음	기타
모름	

피해자/가해자 연령 (AV/AP)	
이 세분화변수는 신체적 연령을 15년 단위로 구분한 것임	
0-14	
15-29	
30-44	
45-60	
60+	

피해자/가해자 연령층 (STV/STP)	
이 세분화변수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으로 각 국가의 범죄 규정에 따른 법적 상태를 의미한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로 규정된 일정 연령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각 국의 법률의 의거하여 결정
성인	
해당사항 없음	
모름	

법적 상태 (LS)

이 세분화변수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개인, 회사, 또는 법으로 정해진 신분 상태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이 변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1)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자연인, (2) 법률에 의하여 구별되는 법적 독립체로서의 법인

자연인	(1) 사적 개인 (2) 공공 공무원
법인	(1) 회사, 법적 결성체 등 사적 법인 (2) 정부 등 공공 법인 또는 기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ViP)

이 세분화변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의미하며 범죄의 동기나 상황에 대한 중요한 주변적 정보를 제시한다.

현재 친밀한 연인/부부	
과거 친밀한 연인/부부	
혈연 친족	
기타 가족 구성원	
친구	
지인	
동료/업무 관계	
상급자/보호자	의사, 간호사, 경찰 등 포함
여타 피해자가 아는 범죄자	
피해자가 모르는 범죄자	
관계에 대한 정보 없음	

마약/음주 상태 (Int)

이 세분화변수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범죄 발생 당시 마약이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영향아래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음주	
불법 마약	
음주와 마약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모름	

경제사범 피해자의 경제적 부분 (ES)

이 세분화변수는 피해자가 사업체와 같은 법적 독립체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법적 독립체의 경제적 활동의 부분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y (ISIC)의 규정에 의거한 조사이다.

가해자의 경제적 활동 상태 (EASt)	
이 세분화변수는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가해자의 경제 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경제적 분석의 중요한 상황적 정보를 제공한다.	
피고용자	직장명칭 등
자영업 (피고용자 없음)	
고용인 (피고용자 있음)	
무직	
학생/견습생	
주부	
퇴직/불구	
모름	

가해자 재범 상태 (Rec)	
이 세분화변수는 가해자가 재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범은 경찰에 의하여 추적될 수 있는 전과 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범죄로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가해자를 의미한다.	
재범	
초범	
해당사항 없음	
모름	

(다) 자료 서술 및 포함 관련 세분화변수

〈표 2-7〉 자료 서술 및 포함 관련 세분화변수

자료 서술/포함	
협박 포함 여부 (Th)	이 세분화변수는 언급된 범죄행위의 협박을 포함하여 계수한 범죄 항목에 사용되어 진다. 예를 들어 상해죄(02011)의 항목 계수에 상해에 대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조력/교사 포함 여부 (AA)	이 세분화변수는 해당 가해자가 범죄가 행하여질 때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범죄가 행하여지기 전후에 이 사실을 알았고 재정지원, 조언, 행동들을 통하여 범죄시행을 도왔을 경우 사용한다.
공범/중범 포함 여부 (Ac)	이 세분화변수는 해당 가해자가 범죄가 행하여질 때에 현장에 있었으며 재정지원, 조언, 행동들을 통하여 범죄시행을 도왔을 경우 사용한다.
공모/계획/준비 포함 여부 (CP)	이 세분화변수는 해당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공모, 협력, 계획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한다.
범죄행위를 자극하는 행위 포함 여부 (In)	이 세분화변수는 해당 가해자가 타인을 해당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거나 확신케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세분화변수는 오직 특정 범죄와만 관련하여 유용하며 별첨한 세분화변수 연계표에 모든 ICCS 범죄 항목에 대하여 이들과 관련된 세분화변수가 제시되어 있다.

나. 세분화변수의 적용

각 국가의 범죄 또는 사법통계 체제에는 다양한 관련 세분화변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다른 국가들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세분화변수가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범죄만이 정책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되어 진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세분화변수를 어떻게 의미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도록 도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시한다.

별표에 첫 번째로 제시된 “At - 기수/미수”의 경우 해당 범죄의 성격과 계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고의적 살인의 미수를 별도로 구분하는 고의적 살인(0101)만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모든 기수의 범죄는 ICCS 항목의 정의에 따라 연계되어야 하며 미수의 범죄의 경우 해당 ICCS 범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시도가 있었어야 한다. 기수/미수 세분화변수는 범죄가 사법기관에 보고되고 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때 적용하며 예를 들어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경우 “0501-At1”으로 기수의 경우에는 “0501-At02”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항목은 다시 “0501-At03 - 해당사항 없음”과 “0501-At04 - 모름”항목과 더불어 “0501”항목으로 병합될 수 있다. 즉, 주거침입절도(0501)은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지 않아 그 실행의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기수/미수”를 포함한 모든 세분화변수를 연계한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범죄의 총계를 보고할 경우, 달리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At1” “At02” “At03” “At04”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SiC, Geo, Cy, Lo 같은 다른 세분화변수에도 적용된다. ICCS 세분화변수는 범죄 자료의 모든 가능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세분화변수가 도입되거나 근래에 도입될 경우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ICCS 세분화변수의 사용은 분석과 비교의 목적으로 범죄, 피해자, 가해자의 정책과 관련한 특성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각 국가의 세분화변수의 수, 구조 그리고 적용은 매우 상이하며 특정 정책의 필요에 의해 종종 결정된다. 따라서, 동 특정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세분화변수 또는 분류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ICCS 세분화변수는 조절되고 확장될 수 있다.

장소 세분화변수(Lo)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통계 조사와 관련 지침”의 분류 항목을 참고하여 UNODC, UN 통계국, WHO에서는 ICCS Lo 세분화변수의 세부 항목의 타협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지었다.

〈표 2-8〉 ICCS Lo 세분화변수

ICCS Lo 세분화변수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 통계 조사와 관련 지침”의 분류 항목	UNODC, UN 통계국, WHO 타협안
사적인 거주 장소	1 본인 소유 주택, 마당 2 가해자 소유 주택, 마당	1. 사적 거주 지역

	3 다른 사람의 주택, 마당	
공개된 장소, 거리, 또는 공공 교통	4 거리, 골목 5 주차장 6 자동차 9 시골지역, 숲, 공원, 캠핑장 12 공중 교통	2 공개된 장소, 거리, 공중 교통
학교 등 교육 기관	11 학교, 대학, 캠퍼스	3 학교 또는 다른 교육시설
교도소, 형벌기관, 또는 교정기관		4 교도소, 복지시설을 포함한 기관
보호 기관 또는 시설		
기타 상업적 또는 공공 비거주 장소	7 직장 8 술집, 유흥장, 당구장 10 기타 공공 건물	5. 기타 상업 또는 공공 비거주 지역
기타	13 기타 (특정 필요)	6 기타 장소
모름	98 모름/기억안남 99 대답 거절/무응답	9 모름

5) ICCS에 따른 자료의 산출

상기한 ICCS 도입의 최종 목표는 ICCS 기준에 적합하도록 각 국가 범죄통계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점차 확장하여 교정된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UN의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범죄 추세에 대한 조사 (UN-CTS)”는 동 목표의 달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소한, 산출될 지표들은 총 11개의 ICCS 레벨1 항목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 행위의 수
- 공식적으로 법집행기관과 접촉한 사람들
- 기소된 사람들
-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들

이외에 ICCS 다른 레벨에 대하여도 범죄 유형별로 자료를 수집한다. 아래 표는 각 레벨1 항목 중에서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우선적인 범죄들을 나타낸다.

〈표 2-9〉 각 레벨1 항목 중에서 우선 보고 범죄

ICCS 항목	제1순위 항목	제2순위 항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고의적 살인(0101)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위해를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중상해(020111)	
	약취유인(020221)	
	인신매매(0204)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
성적 성격의 유해 행위	성폭력(0301)	
	강간(03011)	
	성추행(03012)	
		성착취(0302)
		미성년자음란물(030221)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강도(0401)	
오직 재산만을 침해한 행위		주거침입절도(0501)
		절도(0502)
		차량절도(05021)
규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기타 정신에 작용하는 물질과 관련 행위	마약관련 범죄(0601)	
	마약 소지(06011)	
	마약 매매(06012)	
사기, 기만, 또는 부패와 관련된	부정부패(0703)	
	뇌물(07031)	
		사기(0701)
		자금세탁(07041)
공공질서, 권위, 또는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	밀입국방조(08051)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무기 폭발물의 매매(09012)	
	조직범죄단체의 참여(09051)	
	테러단체의 참여(09061)	
	테러활동의 재정지원(09062)	
		컴퓨터시스템의 불법적 접근(09031)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자료의 불법적 방해(09032)
		컴퓨터 자료의 불법적 차단 또는 접근(09033)
자연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		환경 공해 또는 오염을 조장하는 행위(1001)
		쓰레기 더미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한 행위(1002)
		보호되거나 거래가 금지된 동식물 종의 거래 또는 소지(1003)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저하로 귀결되는 행위(1004)
기타 이곳에 분류되지 않은 범죄행위		

이러한 지표들이 범죄 자료의 품질, 일관성,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고려되지만 또한 ICCS는 범죄를 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ICCS의 세분화변수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며 세분화변수는 다양한 범죄의 상황, 동기, 도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 범죄의 계수 및 그 법칙

범죄에 대한 자료의 해석과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범죄나 사법체제 과정을 기록 하는데 사용하는 범죄 행위의 계수와 그 법칙이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국제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 차이점은 국제적인 비교를 힘들게 하며 이러한 국가 간 차이점은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되어 왔고 각 국가의 범죄 기록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범죄의 계수와 그 법칙은 범죄의 정의와 분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ICCS의 범위 밖의 문제이나 ICCS는 범죄의 분류이외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한 여타 사건과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ICCS를 도입할 때 범죄의 계수와 그 법칙을 표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ICCS를 충분히 적용한 범죄 기록 도구인 UN-CTS는 수집되는 지표에 사용되는 특정된 범죄에 대하여 구별되는 계수 법칙을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유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각 사법기관 사이에도 일관성 있는 정확한 계수방법을 제공한다.

이번 절에서는 각 형사사법기관 절차사이의 다른 계수 단위와 법칙을 검토하고 UN-CTS가 권하는 계수 단위에 대하여 논한다.

가. 형사사법 체제의 각 기관별 계수 단위 및 법칙

전반적인 형사사법 체제에 걸쳐 범죄의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수집된 자료가 범죄통계에 산입되는 시점:** 형사사법 기관들은 각 단계별로 각기 해당되는 과정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입 통계”는 범죄가 처음 사법기관에 보고되었을 때 수집되는 자료를 말하고 “산출 통계”는 범죄가 수사되고 나서 수집되는 자료를 가리킨다.
- **범죄 통계에 사용되는 계수 단위:** 각 형사사법기관은 해당 기관의 운영적 필요에 따라 각 사건의 계수 단위를 달리할 수 있다.
- **“주요 범죄 법칙”의 적용:** “주요 범죄 법칙”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동시에 여러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 가장 심각한 범죄만을 기록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국가는 모든 범죄를 별도로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기록하게 된다.
- **한 사람 이상에 의하여 범죄를 저질러진 경우의 계수 방법:** 한 명 이상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의 계수방법에 따라 범죄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 **다수의 범죄를 기록하는 방법:**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가해자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계수 단위가 범죄 및 사법기관 통계에 사용될 수 있다.

-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 통계를 위하여 경찰에 의하여만 사용된다. 각 형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건 내에 발생하였더라도 별도로 계수되고 기록된다.
- 범죄사건은 경찰 통계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형법 조항 위반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후 형사사

법 절차에서 범죄사건은 한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소송을 가리킬 수 있다.

- 한건의 수사는 여러 건의 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 사람이 피해자, 가해자, 소송관련자, 수형자, 재소자를 계수하는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나. UN-CTS의 목적을 위한 권장되는 계수 단위 및 법칙

2017년 UN-CTS의 개정을 통해 ICCS와 통합할 수 있는 각 지표에 대한 계수 단위와 법칙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UN-CTS가 권장하는 계수 단위와 법칙은 사건, 피해자, 가해자 등 세분화된 단위에 특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통계 자료의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계수 단위와 법칙이 모든 형사 사법 절차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비교를 손쉽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가) 범죄 행위

국가 단위의 범죄 행위의 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UN-CTS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계수 단위는 개별 범죄행위이다. 즉,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발생한 각 사건이 별도로 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행위 중심으로 범죄 행위를 구분하는 ICCS의 구분 단위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것은 각 범죄 행위가 한 건의 범죄로 고려되어야 하며 범죄통계에서 각 개별 범죄는 각각 계수되어야 한다.

UN-CTS의 메타자료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2/3의 경찰관련 보고는 범죄 행위를 UN-CTS 자료의 계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계수 단위들을 보면 같은 범죄사건 내에 여러 건의 형사 법전 위반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범죄 사건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여러 사건을 포함할 수 있는 수사를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 계수와 관련하여 UN-CTS는 미수 범죄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하여만 ICCS와 동일하게 기수와 미수로 나누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총 수를 요구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미수의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어진다. 전반적으로 2/3의 보고 국가들이 미수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수/기수를 포함하여 ICCS 항목에 모든 가능한 세분화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권면된다.

또한 UN-CTS는 “주요 범죄 법칙”을 범죄의 계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면은 ICCS와도 일관적이고 각 범죄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원칙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하나 이상의 범죄 행위가 한 사건에 발생하면 각기 다른 범죄로 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람을 강도하는 중 살해하였다면 이들을 각기 다른 범죄로 - 강도 1건, 살인 1건 - 계수하여야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메타 자료를 보면 약 56%의 국가들은 주요 범죄 법칙을 적용하고 있고 41%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다른 고려 사항은 같은 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계수하는 방법으로 UN-CTS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범죄를 한 범죄로 합계치 않고 각 행위의 실제 수를 계수토록 권면하고 있다. 즉, 만일 여러 건의 폭행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한 사건으로 합계하지 않고 각 범죄를 개별 계수

하여야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타자료는 56%의 국가가 연속 범죄를 별도로 계수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중복 범죄를 한 사건으로 계수하는 경우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중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세 번째 고려 사항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계수하는 방법이다. UN-CTS는 두 명 이상이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한 범죄 사건으로 계수하도록 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다른 계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한 강도사건을 범하였을 경우 몇몇 국가는 이를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기록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세 건의 사건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타자료는 약 85%의 국가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람

범죄 통계 작성에 있어 범죄 행위와 더불어 사람은 매우 중요한 계수의 단위이다. 계수 법칙은 언제 사람을 계수의 단위로 사용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계수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계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 자료의 경우 계수의 단위로서 사람은 용의자의 수, 경찰에 체포된 범죄자의 수, 또는 피해자의 수를 계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UN-CTS는 1) 특정 범죄와 관련한 형사 사법 절차를 진행한 사람의 합계, 2) 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람의 합계, 3) 특정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의 합계를 구할 때 특정 계수 법칙을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먼저, 특정 범죄와 관련한 형사 사법 절차를 진행한 사람의 합계를 구할 때 UN-CTS는 “주요 범죄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범죄 발생과 각 범죄와 관련 별도로 각 사람을 계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만일 한 사람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경우 각 범죄별로 별도로 계수하는 것이 권면되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범죄 유형과 관련 없이 수차례 기소된 경우 각 기소별로 계수하여야 한다. 이 법칙은 UN-CTS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ICCS의 범죄 항목에 대하여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의 계수에 적용되며 이는 범죄를 계수하는 단위에 권장되는 법칙과 유사하다. 만일 다른 범죄들이 한 사건에 발생하면 모든 범죄가 별도로 계수되어야 한다. 같은 계수방법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계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같은 종류의 사건을 중복 또는 연속하여 저지른 사람도 각기 별도로 계수되어야 하며 한해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별도로 2회 이상 저지른 사람도 각각 별도로 계수되어야 한다.

예시 A: 만일 한 사람이 고의적 살인과 강간으로 체포된 경우, 이는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한 사람과 강간을 저지른 한 사람으로 별도로 계수되어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차량을 절도하고 가게에 침입 절도를 범하고 공공 물건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ICCS 항목 5에 세 명으로 계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 있어서 사람의 합계를 보고할 경우 UN-CTS는 “주요 범죄 법칙”을 적용하여 중복 계수를 방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즉, 같은 종류의 범죄를 중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저지른 사람의 경우 한 사람으로 계수하고 한 해에 여러 범죄를 중복적으로 저

지른 경우도 한 사람으로 계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 법칙은 UN-CTS에서 요구하는 체포, 기소, 재판에 회부된 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수감된 자를 계수할 때 적용된다.

예시 B: 만일 한 사람이 중상해로 같은 해에 수 차례 기소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기소된 인원을 계수할 때 한 사람으로 계수하여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주거침입절도와 강도로 같은 해에 기소가 되었다면 이 또한 기소된 사람을 계수할 때 한 사람으로 계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UN-CTS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람의 계수는 고의적 살인, 중상해, 성폭력, 성착취 범죄 피해자의 계수이다. 특히 살인 범죄 피해자의 수는 모든 국가의 비교를 의미 있도록 한다. 이들의 계수와 관련하여 UN-CTS는 “주요 범죄 법칙”을 적용하여 각 피해자는 피해의 수와 관계없이 단 한번만 계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UN-CTS는 만일 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수차례 당했을 경우 이를 한 사람으로 계수할 것을 권면한다. 만일 한 사람이 한 사건에서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이를 같은 범죄의 한 피해자로 계수할 것이 권면된다.

예시 C: 만일 한 사람이 한 해에 세 번 성착취를 당했을 경우 한명의 피해자로 계수한다. 만일 한 사람이 성폭력과 고의적 살인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한 사람의 살인 피해자로 계수되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UN-CTS는 특정 자료 부분에 대한 계수 단위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몇몇 국가는 이러한 지침과 상이한 계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UNODC는 계수 법칙과 기준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작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각 국가가 자세한 메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3. 미국의 ICCS 적용 현황

1) 미국의 범죄통계 분류 현황

1871년 전국경찰연합(National Police Association)의 결의에 의거 수집되기 시작한 미국의 범죄통계제도는 1920년대에 이르러 범죄의 급증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이나 교정기관의 효과적인 사법행정 관리를 위하여 1929년 Uniform Crime Report (UCR) 위원회를 설립하고 별첨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Part I과 Part II로 구분된 범죄분류체제를 도입하였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29).

이러한 UCR 분류체계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경찰기관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국제경찰부서장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에서 경찰 업무의 실무적 신뢰성(Practical Reliability)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즉,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간략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제를 통하여 최소한의 통계자료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일선 경찰부서에서 업무량의 큰 부담이 없이 일관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UCR 범죄 분류는 각 지역 및 주(state)별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이 당시 미국 통계청에서는 총 19개의 상위 분류아래 다양한 범죄의 통계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IACP는 각 주별 범죄 구성요건의 차이점을 이유로 Part I과 Part II로 구분되는 범죄 분류 체제를 도입하였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29). Part I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범죄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대부분 경찰에 보고가 되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역별 차이가 적어 범죄의 비교가 수월한 범죄들이며, Part II 범죄의 경우 이와는 달리 뚜렷한 기준이 없어 비교가 어려운 범죄들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Part I 범죄의 경우 범죄가 경찰에 신고 또는 인지된 경우와 범죄자가 체포된 경우를 모두 통계 내용에 포함하나 Part II의 경우 범죄자가 체포된 경우에만 통계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류체제는 1930년 FBI가 범죄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부터 적용되었으며 이후 1963년 UCR 시스템이 FBI의 공식 업무가 되고 이에 따라 미국 범죄통계 분류의 근간이 되었다. 이 후 동 분류체제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새로운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가 도입되는 등 개정을 거쳐 별첨 2에 제시된 현행 UCR 분류체제로 확립되었다. 현행 UCR 분류체제는 문서를 통하여 보고되는 Summary-based System (SRS) 체제와 컴퓨터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가 그 분류나 항목에 있어 상이하며 현재 총 17개 주가 NIBRS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13개 주는 SRS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으면 나머지 주 중에서 20개 주는 두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반면 루이지애나 1개주는 아무런 통계시스템을 갖 추고 있지 않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3a; 2013b).

2) ICCS 도입 관련 쟁점 및 현황

2019년 5월 현재, 미국 FBI는 ICCS의 도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으나 몇몇 범죄 분류 학자들이 현행 미국의 형사법 체제 및 UCR 분류체제와 유럽식 형사법체제에 가까운 ICCS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국 분류체제에 적합하게 수정된 분류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범죄 분류의 구조적 차이점 해결

ICCS의 미국 범죄체제로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학계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제안은 ICCS Level4에 해당하는 범죄체제를 재정비하고 Level2 및 Level3 분류를 미국 현행체제에 부합하도록 약간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ICCS의 분류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

라 미국 범죄체제에 적합하고 그 통계 결과물이 보다 미국 형사사법 실태에 특정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한 후에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예를 들어, ICCS의 경우 무기사용을 통한 상해 또는 협박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총기사용과 다른 무기사용을 구분하지 않아 현행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 있어 유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범죄명이 달라지는바 이러한 점은 ICCS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점절도의 경우에도 그 범죄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모두 5.2.3로 분류하면 그 통계 결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통계를 수집하여 의미 있는 범죄통계 작성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폭력 범죄와 관련한 쟁점

미국에서 폭력 (Assault)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앞서 논한 총기를 동반한 폭력을 별도로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현재 UCR은 폭력 범죄를 「피해자에게 즉시적인 육체적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통한 불법적인 육체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수행위를 포함하기도 한다. 문제점은 건방지거나 오만하거나 또는 분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소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실제로 총기를 동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범죄와 통계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ICCS의 경우 중한 폭력 (Serious Assault)과 경한 폭력 (Minor Assault)을 육체적 폭력의 경중 (심각한 상해를 야기했는지 여부)에 의거 분류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Aggravated assault의 구성요건적 정의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구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UCR의 경우 총기를 소지한 경우 상해여부와 상관없이 Aggravated Assault (Part I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나 ICCS의 구분은 Minor Assault로 봐야할 경우가 있음). 특히, 총기를 소지한 폭력행위는 고의적 살인미수죄와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ICCS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2018).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구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다. 사기 범죄와 관련한 쟁점

현재 ICCS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기죄”와 “기타 사기범죄”의 두 가지로만 광범위하게 구분하고 있고 “기타 사기범죄”의 경우 그 구성요건적 정의가 사례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현대 사회에 있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사기범죄에 대하여 별첨 3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eals et al., 2015).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신분 도용” 또는 “신분 사칭”의 경우 사기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과 ICCS의 구분에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모임에 대한 사기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점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라. 기타 쟁점

상기한 문제점 들 이외에 미국의 경우 “생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결과를 예상치 못한 살인 (reckless indifference to life)”을 고의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0101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ICCS의 경우 강간과 성추행을 성폭력 범주로 포함하였는 바 이를 별개의 Level 1 항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아동 성착취 범죄를 성착취를 매개하는 범죄와 이를 이용하는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뇌물죄를 피동적 뇌물죄와 능동적 뇌물죄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 등이 ICCS 범죄구분을 미국 범죄통계로 받아들일 때 고려되어야 하는 점으로 검토되고 있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2018).

3) 결 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종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미국의 경우 ICCS 도입과 관련하여 ICCS의 분류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형사법 체계 및 범죄 현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현행 UCR 범죄분류 체제를 ICCS로 변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범죄통계의 기본적인 목적, 즉 국가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형사사법정책을 구현한다는 점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살인, 사기, 성폭력, 폭력 등 중요한 범죄의 구분이 ICCS의 구성요건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보다 상세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의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사례

1) 미국

가. 개관

1871년 전국경찰연합(National Police Association)의 결의에 의거 수집되기 시작한 미국의 범죄통계제도는 1920년대에 이르러 범죄의 급증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이나 교정기관의 효과적인 사법행정 관리를 위하여 1929년 Uniform Crime Report (UCR) 위원회를 설립하고 별첨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Part I과 Part II로 구분된 범죄분류체제를 도입하였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29).

이러한 UCR 분류체계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경찰기관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국제경찰부서장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에서 경찰 업무의 실무적 신뢰성(Practical Reliability)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즉,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간략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제를 통하여 최소한의 통계자료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일선 경찰부서에서 업무량의 큰 부담이 없이 일관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UCR 범죄 분류는 각 지역 및 주(state)별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이 당시 미국 통계청에서는 총 19개의 상위 분류아래 다양한 범죄의 통계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IACP는 각 주별 범죄 구성요건의 차이점을 이유로 Part I과 Part II로 구분되는 범죄 분류 체제를 도입하였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29). Part I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범죄임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대부분 경찰에 보고가 되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역별 차이가 적어 범죄의 비교가 수월한 범죄들이며, Part II 범죄의 경우 이와는 달리 뚜렷한 기준이 없어 비교가 어려운 범죄들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Part I 범죄의 경우 범죄가 경찰에 신고 또는 인지된 경우와 범죄자가 체포된 경우를 모두 통계 내용에 포함하나 Part II의 경우 범죄자가 체포된 경우에만 통계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표 2-10〉 1929년 Uniform Crime Report 최초 범죄분류체제

<p>Part I Cla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Felonious homicide<ul style="list-style-type: none">-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Manslaughter by negligenceRapeRobberyAggravated assaultBurglary—breaking or enteringLarceny—theft<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and over in value- Under \$50 in valueAuto theft <p>Part II Cla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Other assaultsForgery and counterfeitingEmbezzlement and fraud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Sex offenses (except rape)Offenses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Drug lawsDriving while intoxicatedLiquor lawsDrunkennessDisorderly conduct and vagrancyGamblingTraffic and motor vehicle lawsAll other offensesSuspicion
--

이러한 분류체제는 1930년 FBI가 범죄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부터 적용되었으며 이후 1963년 UCR 시스템이 FBI의 공식 업무가 되고 이에 따라 미국 범죄통계 분류의 근간이 되었다. 이 후 동 분류체제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새로운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가 도입되는 등 개정을 거쳐 <표 2-10>에 제시된 현행 UCR 분류체제로 확립되었다. 현행 UCR 분류체제는 문서를 통하여 보고되는 Summary-based System (SRS) 체제와 컴퓨터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가 그 분류나 항목에 있어 상이하며 현재 총 17개 주가 NIBRS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13개 주는 SRS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으면 나머지 주 중에서 20개 주는 두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반면 루이지애나 1개주는 아무런 통계시스템을 갖 추고 있지 않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3a; 2013b; <표 2-12 참조>).

<표 2-11> Uniform Crime Report 현행 범죄분류체제

<p>A. Part I Class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riminal homicid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a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1b Manslaughter by negligence 2. Rape <ol style="list-style-type: none"> 2a Rape 2b Attempts to commit rape 2c Historical rape 3. Robbe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3a Firearm 3b Knife or cutting instrument 3c Other dangerous weapon 3d Strong-arm—hands, fists, feet, etc. 4. Aggravated assault Aggravated assault <ol style="list-style-type: none"> 4a Firearm 4b Knife or cutting instrument 4c Other dangerous weapon 4d Strong-arm—hands, fists, feet, etc.—aggravated injury 5. Burgla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5a Forcible entry 5b Unlawful entry—no force 5c Attempted forcible entry 6.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Larceny-theft (except motor vehicle theft) <ol style="list-style-type: none"> 6Xa Pocket-picking 6Xb Purse-snatching 6Xc Shoplifting 6Xd Thefts from motor vehicles 6Xe Theft of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6Xf Theft of bicycles 6Xg Theft from buildings 6Xh Theft from coin-operated device or machine 6Xi All other 7. Motor vehicle theft Motor vehicle theft <ol style="list-style-type: none"> 7a Autos 7b Trucks and buses 7c Other vehicles 8. Arson <p>Structural (Codes 8a-g cover different types of structures)</p>

Mobile (Codes 8h-i differentiate between motor vehicles and other mobile property)
 Other (Code 8j)
 A Human trafficking—commercial sex acts
 B Human trafficking—involuntary servitude

B. Part II Classes

9. Other assaults—simple, not aggravated (also coded 4e “as a quality control matter and for the purpose of looking at total assault violence”)
10. Forgery and counterfeiting
11. Fraud
12. Embezzlement
13. Stolen property: buying, receiving, possessing
14. Vandalism
15. Weapons; carrying, possessing etc.
16. 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 16a Prostitution
 - 16b Assisting or promoting prostitution (also coded 30)
 - 16c Purchasing prostitution (also coded 31)
17. Sex offenses (except rape and prostitution and commercialized vice)
18. Drug abuse violations
19. Gambling
20. Offenses against the family and children
21. Driving under the influence
22. Liquor laws
23. Drunkenness
24. Disorderly conduct
25. Vagrancy
26. All other offenses
27. Suspicion
28. Curfew and loitering laws (persons under 18)
29. Runaways (persons under 18)

〈표 2-12〉 NIBRS 범죄분류체제

(1) NIBRS Group A Offenses

NIBRS	SRS	Description
09	1	Homicide offenses
09A	1a	Murder and nonnegligent manslaughter
09B	1b	Negligent manslaughter
100	—	Kidnapping/abduction
11	2,17	Sex offenses
11A	2a	Rape (except statutory rape)
—	2b	Attempts to commit rape
—	2c	Historical rape
11B	17	Sodomy
11C	17	Sexual assault with an object
11D	17	Fondling
—	17	Sex offenses (except rape and prostitution & commercialized vice)
36A	—	Incesta
36B	—	Statutory rape
120	3a-d	Robbery
13	4	Assault offenses
13A	4a-d	Aggravated assault
13B	4e/9	Simple assault
13C	—	Intimidation
200	8a-j	Arson

210	—	Extortion/blackmail
220	5a-c	Burglary/breaking and entering
23	6	Larceny/theft offenses
23A	6Xa	Pocket-picking
23B	6Xb	Purse-snatching
23C	6Xc	Shoplifting
23D	6Xg	Theft from building
23E	6Xh	Theft from coin-operated device or machine
23F	6Xd	Theft from motor vehicles
23G	6Xe	Theft of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23H	6Xf	Theft of bicycles
23H	6Xi	All other larceny
240	7a-c	Motor vehicle theft
250	10	Counterfeiting and forgery
26	11	Fraud offenses
26A	11	False pretenses/swindle/confidence game
26B	11	Credit card/automated teller machine fraud
26C	11	Impersonation
26D	11	Welfare fraud
26E	11	Wire fraud
26F	—	Identity theftb
26G	—	Hacking/computer invasionb
270	12	Embezzlement
280	13	Stolen property offenses
290	14	Destruction/damage/vandalism of property
(except arson)		
35	18	Drug offenses
35A	18	Drug/narcotic violations
35B	—	Drug equipment violations
370	—	Pornography/obscene material
39	19	Gambling offenses
39A	19	Betting/wagering
39B	19	Operating/promoting/assisting gambling
39C	19	Gambling equipment violations
39D	19	Sports tampering
40	16	Prostitution offenses
40A	16a	Prostitution
40B	16b	Assisting or promoting prostitution
40C	16c	Purchasing prostitution
510	—	Bribery
520	15	Weapon law violations
64	A-B	Human trafficking offenses
64A	A	Human trafficking, commercial sex acts
64B	B	Human trafficking, involuntary servitude
720	—	Animal crueltyc

(2) NIBRS Group B Offenses

90A	—	Bad checks (except counterfeit or forged checks)
90B	25	Vagrancy
90B	28	Curfew and loitering laws (persons under 18)
90C	24	Disorderly conduct
90D	21	Driving under the influence
90E	23	Drunkness (excep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90F	20	Family offenses, nonviolent
90G	22	Liquor law violations (excep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90H	—	Peeping Tom
90J	—	Trespass of real property
90Z	26	All other offenses
(3) Reportable Offenses, But Deemed “Not a Crime”		
90C	—	Justifiable homicide
90I	29	Runaways (persons under 18)
—	27	Suspicion

나. ICCS 도입 관련 쟁점 및 현황

2019년 5월 현재, 미국 FBI는 ICCS의 도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으나 몇몇 범죄 분류 학자들이 현행 미국의 형사법 체제 및 UCR 분류체제와 유럽식 형사법체제에 가까운 ICCS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국 분류체제에 적합하게 수정된 분류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범죄 분류의 구조적 차이점 해결

ICCS의 미국 범죄체제로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학계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제안은 ICCS Level4에 해당하는 범죄체제를 재정비하고 Level2 및 Level3 분류를 미국 현행체제에 부합하도록 약간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ICCS의 분류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범죄체제에 적합하고 그 통계 결과물이 보다 미국 형사사법 실태에 특정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한 후에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예를 들어, ICCS의 경우 무기사용을 통한 상해 또는 협박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총기사용과 다른 무기사용을 구분하지 않아 현행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 있어 유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범죄명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점은 ICCS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점절도의 경우에도 그 범죄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모두 5.2.3로 분류하면 그 통계 결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통계를 수집하여 의미 있는 범죄통계 작성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폭력 범죄와 관련한 쟁점

미국에서 폭력 (Assault) 범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앞서 논한 총기를 동반한 폭력을 별도로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현재 UCR은 폭력 범죄를 「피해자에게 즉시적인 육체적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통한 불법적인 육체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수행위를 포함하기도 한다. 문제점은 건방지거나 오만하거나 또는 분노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소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실제로 총기를 동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범죄와 통계상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ICCS의 경우 중한 폭력 (Serious Assault)과 경한 폭력 (Minor Assault)을 육체적 폭력의 경중 (심각한 상해를 야기했는지 여부)에 의거 분류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Aggravated assault의 구성요건적 정의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구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UCR의 경우 총기를 소지한 경우 상해여부와 상관없이 Aggravated Assault (Part I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나 ICCS의 구분은 Minor Assault로 봐야할 경우가 있음). 특히, 총기를 소지한 폭력행위는 고의적 살인미수죄와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ICCS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2018).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구분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다) 사기 범죄와 관련한 쟁점

현재 ICCS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기죄”와 “기타 사기범죄”의 두 가지로만 광범위하게 구분하고 있고 “기타 사기범죄”의 경우 그 구성요건적 정의가 사례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현대 사회에 있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사기범죄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eals et al., 2015).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신분 도용” 또는 “신분 사칭”의 경우 사기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과 ICCS의 구분에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모임에 대한 사기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점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표 2-13> 사기범죄 분류항목

<p>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p> <p>1.1 Consumer investment fraud</p> <p>1.1.1 Securities fraud</p> <p>1.1.1.1 Equity investment fraud — 7 subcategories by type of equity (e.g.,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oil and gas exploration)</p> <p>1.1.1.2 Debt investment fraud — 4 subcategories by type of Investment (e.g., promissory note)</p> <p>1.1.1.3 Other securities fraud</p> <p>1.1.2 Commodities trading fraud</p> <p>1.1.2.1 Forex (foreign exchange) fraud</p> <p>1.1.2.2 Commodity pool fraud</p> <p>1.1.2.3 Precious metals fraud</p> <p>1.1.2.4 Other commodities fraud</p> <p>1.1.3 Other investment opportunities fraud</p> <p>1.1.3.1 Hollywood film scam</p> <p>1.1.3.2 Property/real estate scam</p> <p>1.1.3.3 Rare object scam</p> <p>1.2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fraud</p> <p>1.2.1 Worthless or nonexistent products (intentionally entered agreement)</p> <p>1.2.1.1 Worthless products — 9 subcategories by product type (e.g., weight loss products, fake gemstones)</p> <p>1.2.1.2 Paid never received — Subcategories for online marketplace fraud and other</p>

- 1.2.1.3 Other worthless/nonexistent products
- 1.2.2 Worthless, unnecessary, or nonexistent services (intentionally entered agreement)
 - 1.2.2.1 Phony insurance
 - 1.2.2.2 Immigration services/Notario fraud
 - 1.2.2.3 Invention fraud
 - 1.2.2.4 Fraud loss recovery
 - 1.2.2.5 Debt relief scam — *5 subcategories (e.g., student debt relief, mortgage relief)*
 - 1.2.2.6 Credit repair scam
 - 1.2.2.7 Fake credit lines and loans — *Subcategories for fake loans, fake credit lines/credit cards, and other*
 - 1.2.2.8 Fortune-telling fraud
 - 1.2.2.9 Phishing websites/emails/calls — *Subcategories for tech support scam, spoofing websites, and other*
 - 1.2.2.10 Timeshare resale fraud
 - 1.2.2.11 Adoption scam
 - 1.2.2.12 Internet gambling fraud
 - 1.2.2.13 Fake buyers scam
 - 1.2.2.14 Unnecessary or overpriced repairs, or repairs never performed — *Subcategories for auto repair, home repair, and other*
 - 1.2.2.15 Travel booking scam
 - 1.2.2.16 Website hosting/design scam
 - 1.2.2.17 Domain name scam
 - 1.2.2.18 Other
- 1.2.3 Unauthorized billing for products or services
 - 1.2.3.1 Buyer's clubs
 - 1.2.3.2 Unauthorized billing, Internet services — *Subcategories for online Yellow Pages & other*
 - 1.2.3.3 Unauthorized billing, phone services — *Subcategories for cramming, slamming, & other*
 - 1.2.3.4 Unauthorized billing, magazines
 - 1.2.3.5 Unauthorized billing, credit monitoring services
 - 1.2.3.6 Other unauthorized billing fraud
- 1.2.4 Other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fraud

1.3 Employment fraud

- 1.3.1 Business opportunities fraud
 - 1.3.1.1 Multilevel marketing scheme
 - 1.3.1.2 Vending machines/ATM leasing scam
 - 1.3.1.3 House flipping courses
 - 1.3.1.4 Business coaching scam
 - 1.3.1.5 Other
- 1.3.2 Work-at-home scam
 - 1.3.2.1 Home assembly
 - 1.3.2.2 Envelope stuffing
 - 1.3.2.3 Mystery Shopper
 - 1.3.2.4 Reshipping
 - 1.3.2.5 Other
- 1.3.3 Government job placement scam
- 1.3.4 Other employment scam
 - 1.3.4.1 Nanny scam
 - 1.3.4.2 Modeling fraud

1.4 Prize and grant fraud

- 1.4.1 Prize promotion/sweepstakes scam
 - 1.4.1.1 Free product
 - 1.4.1.2 Free vacation
 - 1.4.1.3 Cash prize
 - 1.4.1.4 Sweepstakes scam
 - 1.4.1.5 Other
- 1.4.2 Bogus lottery scam

- 1.4.2.1 Foreign lottery scam
- 1.4.2.2 Other
- 1.4.3 Nigerian letter fraud
- 1.4.4 Government grant scam
- 1.4.5 Inheritance scam
- 1.4.6 IRS tax refund opportunity
- 1.4.7 Other prize and grant fraud

1.5 Phantom debt collection fraud

- 1.5.1 Government debt collection scam
 - 1.5.1.1 Court impersonation scam
 - 1.5.1.2 IRS back taxes scheme
 - 1.5.1.3 Other
- 1.5.2 Lender debt collection scam
 - 1.5.2.1 Obituary scam
 - 1.5.2.2 Loan debt scam
 - 1.5.2.3 Other
- 1.5 Phantom debt collection fraud (continued)
- 1.5.3 Business debt collection scam
 - 1.5.3.1 Fake health and medical debt
 - 1.5.3.2 Other
- 1.5.4 Other phantom debt fraud

1.6. Charity fraud

- 1.6.1 Bogus charitable organization
 - 1.6.1.1 Bogus natural disaster-related charity
 - 1.6.1.2 Bogus disease-related charity
 - 1.6.1.3 Bogus law enforcement charity
 - 1.6.1.4 Bogus veteran charity
 - 1.6.1.5 Bogus church/religious group charity
 - 1.6.1.6 Bogus animal shelter
 - 1.6.1.7 Bogus alumni charitable giving
 - 1.6.1.8 Bogus children's charity
 - 1.6.1.9 Bogus political group
 - 1.6.1.10 Bogus youth organization
 - 1.6.1.11 Other
- 1.6.2 Crowdfunding for bogus cause
 - 1.6.2.1 Fake personal medical expenses
 - 1.6.2.2 False identity as natural disaster or national tragedy survivor
 - 1.6.2.3 Other
- 1.6.3 Other charity fraud

1.7 Relationship and trust fraud (*wherein expected outcome is fostering a relationship*)

- 1.7.1 Romance or sweetheart scam
- 1.7.2 Friends or relatives imposter scam
 - 1.7.2.1 Grandparent scam
 - 1.7.2.2 Other
- 1.7.3 Other relationship and trust fraud

2. 조직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기

- 2.1 Fraud against government agencies, programs, regulations, and society
 - 2.1.1 Government programs (*includes welfare fraud; disability fraud; Medicare/Medicaid fraud*)
 - 2.1.2 Government regulations (*includes immigration fraud; voting fraud; tax fraud; stamp fraud*)
 - 2.1.3 Other (*includes insider trading; environmental fraud*)
- 2.2 Fraud against nongovernmental businesses or organizations
 - 2.2.1 Occupational fraud (committed by internal perpetrator)
 - (*includes corruption; asset misappropriation; financial statement fraud*)
 - 2.2.2 Fraud committed by external perpetrator (*includes insurance fraud; bank fraud; fraudulent suppliers*)

(라) 기타 쟁점

상기한 문제점 들 이외에 미국의 경우 “생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결과를 예상치 못한 살인 (reckless indifference to life)”을 고의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0101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ICCS의 경우 강간과 성추행을 성폭력 범주로 포함하였는 바 이를 별개의 Level 1 항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아동 성착취 범죄를 성착취를 매개하는 범죄와 이를 이용하는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뇌물죄를 피동적 뇌물죄와 능동적 뇌물죄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 등이 ICCS 범죄구분을 미국 범죄통계로 받아들일 때 고려되어야 하는 점으로 검토되고 있다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t al., 2016; 2018).

다. 소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종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미국의 경우 ICCS 도입과 관련하여 ICCS의 분류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형사법 체계 및 범죄 현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현행 UCR 범죄분류 체제를 ICCS로 변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범죄통계의 기본적인 목적, 즉 국가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형사사법 정책을 구현한다는 점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살인, 사기, 성폭력, 폭력 등 중요한 범죄의 구분이 ICCS의 구성요건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보다 상세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의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2) 영국

영국 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는 England and Wales 지역에 한정하여 두 가지 종류의 범죄통계를 통해 범죄의 수준과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³⁾이고 두 번째는 경찰 통계자료이다. CSEW 통계는 지난 198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인터뷰당사자가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 묻는다. England와 Wales 지역의 가정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뷰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 통계를 산정하고, 인구에 비례하여 전체 피해자 수와 전체 범죄건수를 추산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10세 이상 1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범죄통계와 16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산정한다. 반면에, 경찰통계 (police recorded crime)⁵⁾는 시민들의 사건 신고 혹은 경찰관들이 인지한 사건과 다른 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을 바탕으로 범죄발생 통계를 산정한다.

영국의 범죄 통계에서 모든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피해자 기반 범죄(victim based

3) 이하 CSEW로 통칭. England and Wales 이외의 Scotland와 Northern Ireland 지역은 각각 Scottish Crime and Victimization Survey와 Northern Ireland Crime Survey를 작성하고 있다.

4) 2016년 3월까지 1년간 35,248명의 16세 이상 성인과 2,804명의 10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을 인터뷰 실시하였다.

5) 2014년 1월 영국 통계감독청에서 통계청 범죄통계를 평가한 것을 발표했는데, 경찰범죄기록에 의거한 범죄통계(경찰통계)가 국가 통계로 지정되기 위한 필요항목을 준수하지 못하여, 국가통계 인증 지위를 박탈(to remove the National Statistics designation from police recorded crime statistics)하기로 결정하였다(Statistics Authority, 2014).

crimes)’이고, 둘째는 ‘반사회적인 기타범죄(other crimes against society)’이다. CSEW 설문은 설문 응답자의 범죄피해 경험을 묻기 때문에 ‘피해자 기반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경찰통계는 ‘피해자 기반 범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도 포함한다. 경찰이 통계로 잡는 ‘피해자 기반 범죄’는 폭력범죄, 성범죄, 강도, 절도, 형사적 손괴, 방화를 포함하고 있고, ‘반사회적인 범죄’는 마약범죄, 공공질서범죄, 기타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며 영국 통계청은 각각의 자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함께 수집할 때 더욱 포괄적으로 범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ONS, 2017).

〈표 2-14〉 CSEW 및 경찰통계 장·단점

	CSEW 통계	경찰 통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샘플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장기 추세를 측정하기에 좋음 - 일관된 방법론을 사용 -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 범죄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신고 접수 방식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측정이 신뢰성 높음 - 통계수치를 독립적으로 1원화된 창구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넓은 인구층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가능 - CSEW 통계보다 더 많은 범죄 유형(가령, 집단거주지, 관광객, 사업체, 공공기관에 대한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가능 - 살인, 차량 절도와 같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용이 - 통계를 추산(sampling variation에 민감)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 접수된 전체 발생수를 제공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거주단지(가령, 독립된 빌딩형 아파트건물, 요양원 등) 및 사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제외 - 피해자가 없는 범죄(마약 등)는 제외 - 성범죄와 같이 신뢰도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범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신고접수 방식, 경찰활동, 시민들의 범죄 신고 행동패턴 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범죄유형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 독립적인 43개 경찰기관이 다소 다른 방식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일관된 통계확보 어려움 - 실제로 신고하지 않는 암수범죄가 있어 범죄발생건수가 실제보다 남음

(출처: ONS, 2017)

유형에 따른 통계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5〉 CSEW 통계분류

CSEW 통계분류: 피해자 기반 범죄(victim based crime)
폭력행위(violence) -상해를 동반한 폭력(with injury)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폭력(without injury)
강도(robbery)
절도(theft offences) -개인에 대한 절도(theft from the person)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절도(other household theft)

-차량 관련 절도(vehicle-related theft) -자전거 절도(bicycle theft)
사기 및 컴퓨터범죄(fraud and computer misuse)⁶⁾ -사기(은행과 신용계좌 사기(bank and credit account fraud)/비투자 사기(non-investment fraud)/수수료 사기(advance fee fraud)/다른 사기(other fraud)) -컴퓨터범죄(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침해(unauthorise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가정집에 대한 침입절도(domestic burglary) -거주공간에 대한 침입절도(in a dwelling) -별채, 창고 등 독립공간에 대한 침입절도(in a non-connected building to a dwelling)
형사적 손괴행위(criminal damage) -차량 손괴행위(criminal damage to a vehicle) -방화와 다른 형사적 손괴행위(arson and other criminal damage)

(출처: CSEW 통계 분류 - 피해자 기반 통계)

〈표 2-16〉 경찰통계분류

경찰통계: 피해자 기반 범죄(victim based crime)
폭력행위(violence against the person offences) -살인(homicide) -상해를 동반한 폭력(with injury)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폭력(without injury)
성범죄(sexual offences) -강간(rape) -다른 성폭력(other sexual offences)
강도(robbery offences) -상점 등 사업체에 대한 강도(robbery of business property) -개인에 대한 강도(robbery of personal property)
절도(theft offences) -침입절도(상점 등 사업체에 대한 침입절도(non-domestic burglary)/가정집에 대한 침입절도(domestic burglary)) -차량에 대한 범죄(자동차 절도(theft of a motor vehicle)/차량내부절도(theft from a vehicle)/차량으로 방해행위(interfering with a motor vehicle) -개인에 대한 절도(theft from the person) -자전거 절도(bicycle theft) -상점 절도(shoplifting)
기타 절도 범죄(all other theft offences)
형사적 손괴 및 방화(criminal damage and arson)
반사회적 범죄(other crimes against society)
마약범죄(drug offences) -마약밀수(trafficking of drugs) -마약소지(possession of drugs)

6) 사기 및 컴퓨터범죄는 2015년 10월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사기는 기존의 오프라인사기, 전화사기 및 온라인상 발생하는 사기범죄(cyber fraud)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총기소지범죄(possesion of weapons offences)
공공질서위반행위(public order offences)
기타 반사회적 범죄(miscellaneous crimes against society)
사기(fraud offences)
증오범죄(hate crime)⁷⁾

(출처: 경찰통계 분류, 내무부)

영국의 강도, 절도, 폭력 등 기존의 ‘전통적(물리적)’범죄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1995년 정점을 찍고(약 1,900만 건)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범죄를 담당하는 내무부에서는 자신들의 범죄예방 및 억제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하여 왔고 2015년 10월 처음으로 사기(fraud) 및 컴퓨터범죄(computer misuse-unauthorise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computer virus) 통계를 기존의 CSEW 통계와 별도 자료로 발표하였다.

영국은 2006년에 Fraud Act(이하, 재산범죄 법률)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영국에서 최초로 재산범죄를 조문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법에서는 재산범죄를 크게 세 가지 행태를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1)허위표시에 의한 재산범죄(fraud by false representation), 2)정보제공의무 위반에 의한 재산범죄(fraud by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3)지위남용에 의한 재산범죄(fraud by abuse of position)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범죄자가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지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허위표시에 의한 재산범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며,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의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의무’에는,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자신의 병력(病歷)을 진실하게 알려야 하는 것처럼 법률상 의무(legal duty)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지위남용에 의한 사기’에서 ‘지위’는 고용·피고용, 위임·수임, 위탁·수탁 등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뢰의 지위(position of trust)를 의미한다.

영국의 재산범죄는 대분류(번호), 소분류(알파벳) 체계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선비용지불 재산범죄(Advance Fee Payments, 1A-1J, 9종류), 금융투자 재산범죄(Financial Investments, 2A-2E, 5종류), 소비자와 소매 재산범죄(Consumer & Retail Fraud, 3A-3G, 7종류) 등 20개의 대분류 체계에 따른 총 48종의 소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2-17>은 48종의 재산범죄중 상위 10개의 재산범죄를 보여주고 있다.

7) 증오범죄(hate crime)는 자체적으로 분명하게 분류되는 범죄형태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인식형 범죄유형이다. 그러므로 범죄분류에서 증오범죄가 독립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지만, 증오범죄라고 표시가 되면 별도 통계로 산정하여 발표한다. 증오범죄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신체적 장애(disability), 2.인종 및 종족(race and ethnicity), 3.종교 및 신념(religion or belief), 4.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5.트랜스젠더 정체성(transgender identity)

〈표 2-17〉 상위 10개의 재산범죄 종류

사기정보 분석국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NFIB) 분류		보고건수
분류번호	분류죄명	
NFIB-5A	수표, 신용카드, 온라인 뱅킹 계좌 (cheque, plastic card and online bank accounts)	57,973
NFIB-90	기타 사기 (uncategorized elsewhere)	49,145
NFIB-3A	온라인 쇼핑과 경매 (online shopping and auctions)	42,385
NFIB-5B	신청 사기 (application fraud)	31,713
NFIB-3E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기 (computer software service fraud)	30,705
NFIB-3B	소비자 전화 사기 (consumer phone fraud)	25,390
NFIB-1H	기타 선비용 사기 (other advance fee fraud)	24,939
NFIB-3D	기타 소비자 비투자 사기 (other consumer non-investment fraud)	16,137
NFIB-7	통신 산업 사기 (계약의 오용) (telecom industry fraud (misuse of contracts))	15,862
NFIB-3G	소매 사기 (retail fraud)	9,475
총계		303,724

(출처: Betts, 2017: p. 5)

3) 독일

독일범죄통계의 역사는 약 130여 년 전인 1870년대 말 188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범죄통계는 현재와 같은 범죄발생통계가 아니라 법원의 유죄선고 통계였다. 독일에서 현대적인 수준의 본격적인 범죄발생통계는 대략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업무는 미국의 FBI에 해당하는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연방경찰이 범죄발생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대검찰청이 범죄발생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범죄발생통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관련 통계들, 즉 우리나라의 검찰연감이나 사법연감통계에 해당될 수 있는 각종 형사사법통계 뿐만 아니라 교정통계, 보호관찰통계 등은 모두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서 관리하고 있다.

독일범죄발생통계는 2009년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거치면서 사건별로 정리된다. 2008년도까지는 각 주의 통계집계 방식에 있어 완벽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 이후 표준 양식(standard table)을 만들어서 보다 일관되고 통일된 전국 범죄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독일의 범죄통계 작성에서는 크게 3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범죄통계를 총괄하고 분석하는 BKA 범죄통계 핵심 담당자들이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범죄학자라는 점이다. 범죄통계를 총괄하고 분석하여 독일연방범죄통계연감을 출간하는 BKA 범죄통계국에는 범죄학자이자 통계 전문가가 9명에 이르고 있다. 둘째, ‘주 범죄수사청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범죄분류체계 등에 대해 매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씩 열리는데, 각 주 경찰청의 범죄통계 담당자와 BKA 내 범죄통계 총괄 담당 전

문가들이 모여서 독일연방 전체 범죄통계 작성방식을 매년 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끝으로, 독일범죄통계의 분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다. 일단 분류의 기본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률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가 아니라 '범죄 행위 중심적' 분류체계이다.

BJA에서는 매년 각급 州경찰로부터 범죄발생통계를 취합하여 「경찰범죄통계-Polizeiliche Kriminalistik:PKS」를 작성, 발표하고 있으며 범죄분류는 전체 6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살인행위가 있다면 전체 살인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xxxxx에 해당하는데, 이를 다시 분류하여 중분류를 할 경우 01xxxx, 02xxxx, 03xxxx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음. 이를 또 다시 하위의 세부범죄유형으로 나눌 경우 0101xx, 0102xx, ... 0199xx 등의 번호를 매겨가며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2-18〉 PKS 범죄통계분류: 예시

분류번호	죄 명
000000	생명에 대한 범죄
010000	Mord § 211 StGB
010079	Sonstiger Mord
011000	Mord im Zusammenhang mit Raubdelikten
012000	Mord im Zusammenhang mit Sexualdelikten
020000	Totschlag und Tötung auf Verlangen §§ 212, 213, 216 StGB
020010	Totschlag § 212 StGB
020020	Minder schwerer Totschlag § 213 StGB
020030	Tötung auf Verlangen § 216 StGB
030000	Fahrlässige Tötung § 222 StGB - nicht i.V.m. Verkehrsunfall -
100000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110000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unter Gewaltanwendung oder Ausnutzen eines Abhängigkeitsverhältnisses §§ 174, 174a, 174b, 174c, 177, 178 StGB
111000	Vergewaltigung und sexuelle Nötigung §§ 177 Abs. 2, 3 und 4, 178 StGB
111200	Vergewaltigung überfallartig (durch Gruppen) gemäß § 177 Abs. 2 Nr. 2 StGB
111300	Vergewaltigung durch Gruppen gemäß § 177 Abs. 2 Nr. 2 StGB
111400	Sonstige Straftaten gemäß § 177 Abs. 2 Nr. 1, Abs. 3 und 4 StGB
111500	Vergewaltigung/sexuelle Nötigung mit Todesfolge § 178 StGB
112000	Sonstige sexuelle Nötigung § 177 Abs. 1 und 5 StGB
113000	Sexueller Missbrauch von Schutzbefohlenen pp., unter Ausnutzung einer Amtsstellung oder eines Vertrauensverhältnisses §§ 174, 174a-c StGB
200000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
210000	Raub, räuberische Erpressung und räuberischer Angriff auf Kraftfahrer §§ 249-252, 255, 316a StGB
220000	Korperverletzung §§ 223-227, 229, 231 StGB O N 221000 :: Korperverletzung mit Todesfolge §§ 227, 231 StGB

300000	절도
--------	----

예전에는 4자리였으나, 최근의 범죄통계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6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법률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기거나 기존의 범죄유형을 더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만들어낼 때에 확실히 유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총 430여개의 범죄에 대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제3장. 연계 및 시산

1. ICCS와 우리나라 범죄분류와의 연계원칙

국제표준범죄분류 체계(ICCS) 중 대분류 2(상해를 의도했거나 야기한 행위), 3(성범죄), 4(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5(재산만 침해)영역에 관한 범죄분류 연계에 있어서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죄명코드)와의 연계를 위한 일반적인 연계원칙은 다음과 같다.⁸⁾ 따라서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본단위인 죄명코드를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과 검찰청이 범죄분류를 위한 공식 범죄통계의 기본단위인 죄명코드(2019년 대검찰청 제공 죄명코드)를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 대상으로 한다. 결국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원표상의 기초통계 항목, 기타 보충 항목 등은 연계표 작성에 반영하지 않고, 연계성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2)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항목분류 코드에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어떠한 범죄이든 국제표준범죄분류 중 한 개의 항목에 적절한 할당연계를 목적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코드에 한국 죄명코드를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경찰청과 검찰청의 죄명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명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는 불가능하다.

3) 우리나라 죄명코드는 최하위 단위의 개별 코드를 이용하고, 국제표준범죄분류 역시 원칙적으로 가장 하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상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한다.

범죄행위를 적절한 항목으로 쉽게 분류하기 위하여 각 대분류 항목에 속하는 폭 넓은 행위, 속성 또는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다만 국제표준범죄분류가 사용하는 구분단위는 개별 국가의 입법이나 법률적 개념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완전한 호환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통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세부 분류기준 간 연계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제표준범죄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코드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분류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부득불 차상위단위의 코드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연계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강소영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통계청, 2017, 18쪽 이하 참조. 연계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앞의 2017년도 보고서상의 국제표준범죄분류와 한국 죄명코드의 연계원칙을 참조하였다.

- (1)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협박(02012)을 중대한 협박(020112)과 경미한 협박(020122)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협박을 행위반가치나 결과반가치를 고려하여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박에 해당하는 죄명코드를 모두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협박(02012)으로 연계하였다.
- (2)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을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020211),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020212), 법정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020213),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9)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행위 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는 모두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으로 연계하였다.
- (3)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강요(0205)를 강탈 또는 갈취(02051)와 기타 강요 행위(02059)로 세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요를 세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요(0205)로 연계하였다.
- (4)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을 음주운전(020721),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020722),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9)로 세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음주와 약물, 향정신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020721)으로 연계하였다.
- (5)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명예훼손, 모욕(0209)을 개인의 특성 관련(02091), 종교 및 가치관 관련(02092),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별도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두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으로 연계하였다.
- (6)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04)를 강도(0401)와 기타(0409)로 구분하고 다시 강도(0401)를 대인 강도(04011),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 시설 기관 강도(04013), 가축 강도(04014), 기타 강도 행위(04019)로 중분류하고, 이를 다시 대인강도(04011)를 공공장소 대인강도(040111), 사적 장소 대인강도(040112), 기타 대인강도(040119)로 세분하고,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를 자동차나 차량 강도(040121), 기타 운송중 강도(040129)로 세분하고, 시설 기관 강도(04013)를 금융기관 강도(040131), 비금융기관 강도(040132)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객체나 장소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인강도(04011)와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만 연계하고 그 밖의 행위는 강도(0401)로 연계하였다.
- (7)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가정집 침입절도(05012)를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와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로 세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가정집 침입절도(05012)로 연계하였다.

4) 가능한 모든 죄명코드에 대하여 1대 1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또는 누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후술하는 설명서에 작성한다.

모든 죄명코드에 국제표준범죄분류를 연계함에 있어 하나의 죄명코드에 대하여는 하나의 국제표준범죄분류 코드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범죄분류상의 죄명코드와 관련된 국제표준범죄분류 코드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이 연계 가능한 분류단위가 존재하는데 1개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계불가’ 또는 ‘구성요건 없음’ 등으로 후술하는 설명서에 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자유박탈(02022)의 세분류 중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020223)와 기타 자유박탈(020229)의 경우 운수장비 납치는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유박탈행위이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행위의 방법 중 도구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계불가하며, 기타 자유박탈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다.
- (2)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 중 불법 입양(020291)과 강제혼인(020292)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 (3)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노예 및 착취(0203) 중 노예(02031), 강제 가사 노동(020321),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020323)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 불가하다.
- (4)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기타 위협 행위(02079)에는 우리나라 균형법상 함선복물치상, 함선파괴치상, 항공기추락복물치상 등이 해당하나 균형법은 연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연계불가하다.
- (5)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0208)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사적 처리보다 민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범죄분류 세분류 중 스토킹(02082)과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행위(02089)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아동복지법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나 국제표준범죄분류 세분류 중 괴롭힘(02081)은 연계불가하다.
- (6)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차별(0210) 중 기타 차별(02109)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 (7)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기타(0219)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 (8)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강간(03011)을 유형력 강간(030111), 비유형력 강간(030112), 의제 강간(030113), 기타 강간(030119)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기타 강간(030119)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9)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성폭력(0301)은 강간(03011), 성폭행(03012), 기타 성폭력(03019)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기타 성폭력(03019)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10)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재산만 침해(05) 중 세분류인 사업장 침입절도(05011),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 기타 침입절도(05019), 육상 차량 절도(050211), 육상차량 부속품 절도(050213), 개인 재산 절도(05022)[세분류인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050221),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050222), 기타 개인 재산 절도(050229) 포함], 기업재산 절도(05023)[세분류인 상점 절도(050231), 기타 기업재산 절도(050239)], 공공재산 절도(05024), 가축 절도(05025), 서비스 절도(05026), 기타 절도 행위(05029)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11)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회사 재물 손괴(05043)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5) 미수, 교사, 방조는 각각 해당 범죄 기수항목 및 정범의 범죄에 연계하며, 미수교사, 미수방조는 연계하지 않는다.

미수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이외의 범죄유형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범죄분류상 미수로 분류된 것은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해당 범죄 기수항목으로 연계한다. 또한 교사와 방조의 경우도 미수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행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위한 세분화 변수에 별도의 설명 태그로서 '범죄 실행 협박', '범죄의 방조,' '범죄의 공범', '범죄의 교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사죄와 방조죄에 관한 죄명코드는 정범이 연계되는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분류단위에 연계한다.

6) 예비·음모는 연계하지 않는다.

예비·음모는 형법상 예외적인 처벌방식이고 미수에 비하여 가벌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실행 행위성을 가진 독립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표준범죄분류에 연계하지 않는다.

7) 결합범은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범죄행위로 침해당하는 법익이 중한 정도에 따라 연계한다.

두 개 이상의 범죄구성요건들이 결합하는 결합범은 독자적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분류와 연계 시

기준이 없는 경우 통상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중한범죄와 연계한다. 살인과 관련된 결합범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란 최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연계한다. 다만, 강도와 강간의 결합범은 법정형이 동일하나 강간으로 연계한다. 예를 들면 강도강간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강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적 법익보다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신체적 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강간죄로 연계한다.

8) 결과적 가중범은 치사형태를 제외하고 고의의 기본범죄와 연계한다.

형법전 및 특별형법에 규정된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 등은 모두 고의에 의한 살인(0101)에 해당하며,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0103)에는 치사형태의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른 범죄들이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 결과적 가중범 예를 들면 강도치상, 폭행치상의 경우 각각 고의의 기본범죄인 강도죄와 폭행죄에 연계한다.⁹⁾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연계원칙 아래 국제표준범죄분류 코드와 우리나라 죄명코드를 연계시킨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영역별 범죄분류연계표를 대분류 영역별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2,3,4,5영역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유형화에 따른 연계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2.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02영역은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폭행 및 협박(0201), 자유억압행위(0202), 노예 및 착취(0203), 인신매매(0204), 강요(0205), 과실(0206), 위험행위(0207),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0208), 명예훼손·모욕(0209), 차별(0210), 인적 침해(0211), 기타(0219) 행위를 중분류로 구분하고 다시 그 아래 소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여 행위유형들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폭행 및 협박(0201)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02영역의 중분류인 '폭행 및 협박(0201)'은 대분류 02영역의 행위유형에 따라 상해나 치상을 야기하거나 그 위협을 위한 무력사용으로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와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죄명코드 중에서는 상해(0125010000), 폭행(0125070000), 협박(0130010000)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대한 폭행으로 사망을 야기하게 된 경우로 대분류 01영역에 해당하거나 성범죄의 성격을 갖는 행위로 대분류 03영역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은 폭행 및 협박(0201)과의 연계에서 제외한다.

가. 폭행(02011) 중 중대한 폭행(020111)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대분류 02영역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로 분류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중분류한 후, '폭행'으로 소분류하고 다시 '중대한 폭행'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세분류인 중대한 폭행(020111)에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는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의도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상 형법의 상해의 죄와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상해의 죄로서 우리나라 죄명코드 중에서는 상해(0125010000), 중상해(0125030100), 최근에 신설된 특수상해(0125260100) 등이 포함된다. 국제표준범죄분류 세분류인 중대한 폭행(020111)으로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 중대한 폭행(02011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5010000	상해	0125180000	상습중상해
0125010100		0125180100	
0125020000	존속상해	0125190000	상습존속상해
0125020100		0125190100	
0125030000	중상해	0125260100	특수상해
0125030100		0125260200	
0125040000	중존속상해	0125260300	특수중상해
0125040100		0125260400	
0125160000	상습상해	0125270100	상습특수상해
0125160100		0125270200	

0125170000	상습존속상해	0125270300	상습특수중상해
0125170100		0125270400	상습특수중존속상해

〈표 3-2-2〉 중대한 폭행(02011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4200	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3700	단체등의상습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5200	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3800	단체등의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6200	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39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7200	야간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0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8200	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0900	상습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9800	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100	상습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400	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500	단체등의상습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900	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600	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1400	상습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1206035200	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3300	단체등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011000	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53400	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0300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35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0400	상습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3600	폭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26000	상습특수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나. 폭행(02011) 중 경미한 폭행(020112)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세분류인 경미한 폭행(020112)은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형법상 폭행(0125070100)과 외국원수폭행(0104010100), 외교사절폭행(0104020100) 등과 특별법상 독직폭행(0206025200), 상습폭행(0206034300)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소분류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에 해당하는 폭행치상, 상해미수, 폭행권리행사방해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경미한 폭행(020112)에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3〉 경미한 폭행(02011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4010000	외국원수폭행	0125090200	특수존속폭행
0104010100		0125200000	상습폭행
0104020000	외국사절폭행	0125200100	상습존속폭행
0104020100		0125210000	
0107040100	독직폭행	0125210100	상습특수폭행
0125070000	폭행	0125220000	
0125070100		존속폭행	0125220100
0125080000	특수폭행	0125230100	상습특수존속폭행
0125080100			
0125090000			
0125090100			

〈표 3-2-4〉 경미한 폭행(020112):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5200	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6049400	단체등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2700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60495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3200	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60496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011100	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6051300	단체등의상습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4300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1400	단체등의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5300	야간·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1500	단체등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6300	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1600	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7300	야간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9800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8300	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0400	상습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9600	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500	단체등의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200	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1206035300	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700	상습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3100	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1200	상습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0500	상습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49300	단체등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0600	상습특수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다. 협박(02012) 중 중대한 협박(020121) 및 경미한 협박(020122)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소분류인 협박(02012)을 세분류에서 중대한 협박(020121)과 경미한 협박(020122)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협박을 행위반가치나 결과반가치를 고려하여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박에 해당하는 죄명코드를 모두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소분류인 협박(02012)으로 연계하였다. 따라서 소분류인 협박(02012)으로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5〉 협박(02012):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4010200	외국원수협박	0130040000	상습협박
0104020200	외국사절협박	0130040100	
0130010000	협박	0130050000	상습존속협박
0130010100		0130050100	
0130020000	존속협박	0130060000	상습특수협박
0130020100		0130060100	
0130030000	특수협박	0130070100	상습특수존속협박
0130030100		0137020200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0130030200	특수존속협박		

〈표 3-2-6〉 협박(02012):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4600	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2600	단체등의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5600	야간·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27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6600	집단·흥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28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7600	야간집단·흥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9900	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8600	상습집단·흥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0700	상습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9700	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600	단체등의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300	집단·흥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300	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800	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1206035600	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1300	상습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2800	운전자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49700	단체등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011400	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49800	단체등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3400	상습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02060499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3500	상습특수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02060500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25200	협박업무수행등방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0206052500	단체등의상습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23030700	위반	공중등협박목적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 법률

[쟁점] : 법률 개정과 죄명코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테러자금금지법)은 2014년 5월 28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개정을 통하여 개정법에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으나 앞의 1에서 언급한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원칙에 따라 신설된 예비·음모는 연계하지 아니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죄명코드의 분류에 따르면 죄명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죄명코드와 현행 법률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죄명코드 등을 **견고딕**으로 표기하였다.

라.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 중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0)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폭행 및 협박의 소분류로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의 세분류로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0)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을 제외한 해악을 가하는 행위로 상해미수(0125010110), 폭행치상(0125100100)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7〉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5100000	폭행치상	0125140000	특수폭행치상
0125100100		0125140100	
0125120000	존속폭행치상	0125240100	특수존속폭행치상
0125120100			

〈표 3-2-8〉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2800	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0700	상습폭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28800	독직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등에 관한 법률	0209910800	상습특수폭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42900	운전자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등에 관한 법률			

[쟁점 1] : 형법상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의 연계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과 존속폭행치상을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에 있어 동일한 상해죄, 폭행치상과 존속폭행치상을 각각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상해는 중대한 폭행(020111)으로, 폭행치상과 존속폭행치상은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으로 연계한다는 것이 일응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행위중심의 범죄분류체계로 상해와 폭행의 고의는 행위반가치 측면에서 엄격히 구분되는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과반가치를 고려한 법정형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각각 분류하였다.

[쟁점 2] :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른 행위유형은 매우 많아 국제표준범죄분류에 여러 분류에 연계가 가능하다. 즉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흥기의 은닉휴대, 제4호의 폭행 등 예비, 제23호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제25호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등은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로, 제3조제1항제41호의 지속적 괴로힘은 스토킹(02082)로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는 각각의 행위유형에 따라 죄명코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0206020100), 경범죄 처벌법 위반교사(0206020101), 경범죄 처벌법 위반방조(0206020102)로만 부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와 스토킹(02082)에 각각 중복하여 분류가능하나 1대 1일 연계원칙상 스토킹(02082)에 적시하였다. 추후 범죄코드를 부여함에 있어 각각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가 요구된다.

2) 자유 억압행위(0202)와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중분류인 자유 억압행위(0202)는 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착취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그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노예행위 및 착취(0203),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0204),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자유 억압행위는 다시 소분류인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자유박탈(02022),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로 분류된다.

가.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과의 연계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는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로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다시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020211),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020212), 법정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020213),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9)로 세분류하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행위주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행위를 모두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에 연계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행위객체라 하더라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예비 및 음모 등은 연계하지 않는다.

죄명코드 중에서 미성년자약취(0131010100), 미성년자유인(0131010200), 미성년자약취모집(0131190100) 등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9〉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010000	미성년자약취	0131010200	미성년자유인
0131010100			

〈표 3-2-10〉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1600	미성년자약취 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3600	상습미성년자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26200	미성년자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3700	상습미성년자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26300	미성년자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쟁점] 행위주체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소분류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그 행위 주체에 따라 다시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020211),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020212), 법정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020213),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9)로 세분류된다. 반면 형법은 주체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없고 행위자의 행위내용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형성되고 행위자적 특성은 책임의 정도나 양형사유에서 고려되므로 죄명코드가 행위주체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행위를 모두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으로 연계한다.

나. 자유박탈(02022)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자유박탈(02022)은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

위로 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인질강요, 체포 감금 등이 포함된다. 자유박탈(02022)은 다시 납치(020221), 불법감금(020222), 운수장비 납치(하이재킹)(020223), 기타 자유 박탈(020229)로 세분류하고 있다. 자유박탈에는 미성년자 유괴, 노예행위 및 착취 등 인신매매,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자유박탈의 세분류 중 운수장비 납치(하이재킹)는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유박탈행위로 항공기, 자동차, 선박, 기타 동력에 의한 운송수단이 예시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행위의 방법 중 도구를 세분화하지 않으므로 죄명코드와 연계 불가하며, 기타 자유 박탈도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 불가하다.

(가) 납치(020221)와의 연계

납치(020221)는 무력이나 유혹, 사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강도에 해당하는 인질강요, 미성년자 유괴, 인신매매, 불법입양, 인질 납치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납치에 연계할 수 있는 우리 죄명코드는 인질강요(0137010300) 등이 해당하며 자세한 범죄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1〉 납치(02022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7010300	인질강요		

(나) 불법 감금(020222)과의 연계

불법 감금(020222)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지 않는 강제적 구금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체포 및 감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석방의 대가로 불법이익을 요구하는 불법구금과 체포치상, 체포치사, 감금치상, 감금치사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불법 감금에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직권남용체포(0107030100), 직권남용감금(0107030200), 체포(0129010100), 감금(0129010200) 등이며 자세한 범죄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2〉 불법 감금(02022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7030000	직권남용체포	0129050500	특수중체포
0107030100		0129050600	특수중감금
0107030200	직권남용감금	0129050700	특수중존속체포
0129010000	체포	0129050800	특수중존속감금
0129010100		0129060000	상습체포
0129010200	감금	0129060100	상습감금
0129020000	존속체포	0129070000	
0129020100		존속감금	0129070100
0129020200	중체포	0129080000	상습존속체포
0129030000		중감금	0129080100
0129030100	중존속체포	0129090000	상습존속감금
0129030200		중존속감금	0129090100
0129040000	중존속체포	0129100000	상습중체포

0129040100		0129100100	
0129040200	중존속감금	0129110000	상습중감금
0129050000	특수체포	0129110100	
0129050100			0129120000
0129050200	특수감금	0129120100	
0129050300	특수존속체포	0129130000	상습중존속감금
0129050400	특수존속감금	0129130100	

〈표 3-2-13〉 불법 감금(02022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4400	상습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600	단체등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4500	상습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3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5400	야간·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7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5500	야간·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4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6400	집단·흥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8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6500	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0500	상습특수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7400	야간집단·흥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0600	상습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7500	야간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200	상습특수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8400	상습집단·흥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300	상습특수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8500	상습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100	단체등의상습특수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9900	공동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200	단체등의상습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000	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700	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500	집단·흥기등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800	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0600	집단·흥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1206035400	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1000	상습집단·흥기등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1206035500	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1100	상습집단·흥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21400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41500	상습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25900	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41600	상습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26000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51700	단체등의상습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011200	보복체포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52100	단체등의상습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011300	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51800	단체등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1800	상습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2200	단체등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1900	상습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19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2000	상습중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23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2100	상습중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20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2200	상습특수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24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2300	상습특수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4100	단체등의상습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2400	상습특수중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4500	단체등의상습존속감금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0209912500	상습특수중감금	관한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4200	단체등의공동존속체포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쟁점] 행위 수단에 따른 운송 장비 납치(하이잭킹)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세분류인 운송장비 납치(하이잭킹)(020223)는 행위의 방법 가운데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 즉 도구를 세분화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 격리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에 있어 도구의 이용을 세분화하지 않는 현행법의 체계상 연계가 불가하다.

다.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와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는 다시 불법 입양(020291), 강제혼인(020292),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9)로 세분류된다. 불법입양과 강제혼인은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 불가하다.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9)에는 미성년자 외의 자를 행위 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 중 영리 등 착취목적이 없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로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착취 목적 없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미성년자 아닌 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유인 행위가 착취의 목적에서 행해진 경우(0203)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9)에 연계되는 죄명코드는 국외이송약취(0131080100), 국외이송유인(0131080200), 피해매자국외이송(0131090300) 등으로 자세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4〉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080000	국외이송약취	0131150800	상습피결혼유인자수수
0131080100		0131160000	상습피약취자등은닉
0131080200	국외이송유인	0131160100	상습피약취자은닉
0131090000	피약취자등국외이송	0131160200	상습피유인자은닉
0131090100	피약취자국외이송	0131160300	상습피매매자은닉
0131090200	피유인자국외이송	0131160400	상습피국외이송자은닉
01310903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60500	상습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00000	상습국외이송약취	0131160600	상습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00100		0131160700	상습피결혼약취자은닉
0131100200	상습국외이송유인	0131160800	상습피결혼유인자은닉
0131100400	상습피약취자국외이송	01311700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수수
0131100500	상습피유인자국외이송	0131170300	영리피약취자수수
0131100600	상습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70600	영리피유인자수수
01311012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70900	영리피매매자수수
0131120000	피약취자등수수	0131171200	영리피국외이송자수수
0131120100	피약취자수수	0131171700	영리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20200	피약취자은닉	0131171800	영리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20300	피유인자수수	0131172300	영리피결혼약취자수수
0131120400	피유인자은닉	0131172400	영리피결혼유인자수수
0131120500	피매매자수수	0131180600	영리피유인자은닉
0131120600	피매매자은닉	0131180900	영리피매매자은닉

0131120700	피국외이송자수수	0131181700	영리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20800	피국외이송자은닉	01311800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은닉
0131130000	피약취미성년자등수수	0131180300	영리피약취자은닉
0131130100	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81200	영리피국외이송자은닉
0131130200	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81800	영리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30300	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82300	영리피결혼약취자은닉
0131130400	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82400	영리피결혼유인자은닉
0131140000	피결혼약취자등수수	0131220100	국외이송약취모집
0131140100	피결혼약취자수수	0131220200	국외이송유인모집
0131140200	피결혼약취자은닉	0131220300	피약취자국외이송모집
0131140300	피결혼유인자수수	0131220400	피유인자국외이송모집
0131140400	피결혼유인자은닉	0131220500	국외이송약취운송
0131150000	상습피약취자등수수	0131220600	국외이송유인운송
0131150100	상습피약취자수수	0131220700	피약취자국외이송운송
0131150200	상습피유인자수수	0131220800	피유인자국외이송운송
0131150300	상습피매매자수수	0131220900	국외이송약취전달
0131150400	상습피국외이송자수수	0131221000	국외이송유인전달
0131150500	상습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221100	피약취자국외이송전달
0131150600	상습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221200	피유인자국외이송전달
0131150700	상습피결혼약취자수수		

〈표 3-2-15〉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6700	국외이송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5600	상습피약취자국외이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27100	국외이송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5700	상습피유인자국외이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5400	상습국외이송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6800	상습피매매자국외이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5500	상습국외이송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3) 노예 및 착취(0203)와의 연계

중분류인 노예 및 착취(0203)는 재산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으려는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노예(02031), 강제노동(02032),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로 소분류 된다. 다만 인신매매,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노예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할 수 없으며, 강제 노동과 기타 노예 및 착취로 연계 가능하다.

가. 강제 노동(02032)과의 연계

강제 노동(02032)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불법적 노동으로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강제 가사 노동(020321), 강제 산업 노동(020322),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020323), 기타 강제 노동(020329)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 가사 노동과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 산업 노동과 기타 강제 노동으로 죄명코드를 연계한다.

(가) 강제 산업 노동(020322)과의 연계

강제 산업 노동(020322)은 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제노동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상 곡예
 강요행위(0231041800), 상습곡예강요행위(02310438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6〉 강제 산업 노동(02032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1800	곡예강요행위	아동복지법	0231043800	상습곡예강요행위	아동복지법

(나) 기타 강제 노동(020329)과의 연계

기타 강제 노동(020329)은 강제 산업 노동 외의 불법적 노동으로 아동복지법상 구걸강요
 (0231041400), 상습구걸강요(02310434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7〉 기타 강제 노동(020329):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1400	구걸강요	아동복지법	0231044200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0231043400	상습구걸강요	아동복지법	0231044800	상습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나.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 중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0)와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소분류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를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0)로 세분류하고
 있다.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범죄 중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목적 등 약취 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에 대한 상습적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목적 약취 유인행위와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목적 약취 유인은 0302에 해당하므로 연계에서 제외되며, 피결혼약취유인수수, 피결
 혼약취자은닉, 피결혼유인자수수, 피결혼유인자은닉과 예비 및 음모 등도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영리약취(0131020300), 영리유인(0131030300), 노동력착취약취(0131040200), 장기
 적출약취(01310405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18〉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020300	영리약취	0131201600	영리유인운송
0131030300	영리유인	0131201900	결혼약취전달
0131040200	노동력착취약취	0131202000	영리약취전달
0131040500	장기적출약취	0131202300	결혼유인전달
0131040600	노동력착취유인	0131202400	영리유인전달
0131040900	장기적출유인	0131210100	노동력착취약취모집
0131050300	상습영리약취	0131210400	장기적출약취모집
0131060300	상습영리유인	0131210500	노동력착취유인모집
0131110000	결혼약취	0131210800	장기적출유인모집
0131110100		0131210900	노동력착취약취운송
0131110200	결혼유인	0131211200	장기적출약취운송
0131200300	결혼약취모집	0131211300	노동력착취유인운송
0131200400	영리약취모집	0131211600	장기적출유인운송

0131200700	결혼유인모집	0131211700	노동력착취약취전달
0131200800	영리유인모집	0131212000	장기적출약취전달
0131201100	결혼약취운송	0131212100	노동력착취유인전달
0131201200	영리약취운송	0131212400	장기적출유인전달
0131201500	결혼유인운송		

〈표 3-2-19〉 기타 노예 및 착취(020390):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5400	영리약취·유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5000	상습노동력착취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26400	영리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5300	상습장기적출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26800	영리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09914000	상습결혼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4100	상습영리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4400	상습결혼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4500	상습영리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1900	제3자인도행위	아동복지법
0209914600	상습노동력착취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3900	상습제3자인도행위	아동복지법
0209914900	상습장기적출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4) 인신매매(0204)와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중분류 인신매매(0204)는 착취를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 행사의 위협, 기타 형태의 강요, 약취 유인, 사기, 기망, 권한의 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 또는 해당인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당인을 모집, 운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분류 인신매매는 다시 인신매매의 목적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로 소분류된다.

그러나 노예행위, 강제노동, 노동법위반 행위(0805), 강제 결혼, 성범죄적 성격의 침해행위(03), 이민자 밀수 및 기타 이민관련 범죄(0805), 목적 없는 인신매매와 예비 음모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가.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 중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0)와의 연계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는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0)로 세분류되는데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인신매매와 그러한 목적으로 인신매매 모집, 전달운송 행위와 연계가능하다. 다만 인신매매에 이르지 않은 성인 성적 착취(03021)와 예비 음모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추행인신매매(0131090400), 간음인신매매(0131090500), 성매매인신매매(0131100800) 등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20〉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090400	추행인신매매	0131100800	성매매인신매매
0131240100	추행인신매매모집	0131250200	성매매인신매매모집
0131240500	추행인신매매운송	0131250600	성매매인신매매운송
0131240900	추행인신매매전달	0131251000	성매매인신매매전달
0131090500	간음인신매매	0131100900	성적착취인신매매
0131240200	간음인신매매모집	0131250300	성적착취인신매매모집
0131240600	간음인신매매운송	0131250700	성적착취인신매매운송
0131241000	간음인신매매전달	0131251100	성적착취인신매매전달

〈표 3-2-2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02041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15900	상습추행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6400	상습성매매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6000	상습간음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6500	상습성적착취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나.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 중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0)와의 연계

소분류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는 다시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0)로 세분류되는데 현행법상 노동력착취인신매매와 그 모집, 운송, 전달 행위 등이 해당되나 예비 음모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노동력착취인신매매(01311007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모집(0131250100)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22〉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1007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	01312505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운송
01312501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모집	01312509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전달

〈표 3-2-23〉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02042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16300	상습노동력착취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 중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0)와의 연계

소분류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은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0)로 세분류되는데 장기적출인신매매와 그 모집, 운송, 전달 행위 등과 연계할 수 있으며 건강 위협 행위, 건강 및 안전 침해 행위와 예비 음모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장기적출인신매매(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모집(01312504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24〉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	0131250800	장기적출인신매매운송
0131250400	장기적출인신매매모집	0131251200	장기적출인신매매전달

〈표 3-2-25〉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02043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16600	상습장기적출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라.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 중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는 다시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0)로 세분류되며, 기타 목적은 성적 착취, 강제 노동, 장기 적출이 아닌 강제 혼인 목적이거나 범죄 실행 목적 등을 의미한다. 즉 결혼, 영리, 국외이송 인신매매, 상습국외이송매매와 그 모집, 운송, 전달 행위와 연계가능하다.

죄명코드 중 결혼인신매매(0131090600), 영리인신매매(0131090700), 국외이송인신매매(01311011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26〉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090600	결혼인신매매	0131241100	결혼인신매매전달
0131090700	영리인신매매	0131241200	영리인신매매전달
01311011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260100	국외이송인신매매모집
0131240300	결혼인신매매모집	0131260300	국외이송인신매매운송
0131240400	영리인신매매모집	0131260500	국외이송인신매매전달
0131240700	결혼인신매매운송	0131100300	상습국외이송매매
0131240800	영리인신매매운송		

〈표 3-2-27〉 기타 목적 인신매매(02049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16100	상습결혼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6700	상습국외이송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6200	상습영리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쟁점] 목적 없는 인신매매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행위, 강제 노동,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형법은 제289조에 목적 없는 인신매매를 규정하고(제1항),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이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제2항).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목적 내지 동기를 요건으로 하여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 없는 인신매매의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강요(0205)와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강요(0205)는 유형력의 행사,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의 폭로에 대한 예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예고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다만 성적 행위에 대한 강요(03), 재산죄에 해당하는 것(0401), 공포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려는 목적의 행위(0207),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08071) 및 인질강요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중분류의 강요는 다시 강탈 또는 갈취(02051)와 기타 강요 행위(02059)로 소분류하고 강탈 또는 갈취는 강탈 또는 갈취(020510), 기타 강요 행위는 기타 강요 행위(020590)로 각각 세분류하나 현행법은 강요를 강탈 또는 갈취와 기타 강요 행위로 구분하지 하지 않으므로 중분류인 강요(0205)에 연계한다.

강요에 연계될 수 있는 대표적 범죄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로 죄명코드가 강요(0137010200)이며 자세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28〉 강요(0205):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7010200	강요	0137070100	특수강요

〈표 3-2-29〉 강요(0205):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4900	상습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3200	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5900	야간·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60800	상습특수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6900	집단·흥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62400	단체등의상습특수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7900	야간집단·흥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011500	면담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8900	상습집단·흥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206035900	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2900	단체등의상습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3900	상습강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3000	단체등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5000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3100	단체등의집단·흥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6300	상습특수강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쟁점] 갈취 또는 공갈과 기타 강요 행위의 번역상 오류 및 세분류 곤란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갈취 또는 공갈(02051)과 기타 강요 행위(02059)로 세분류하고 있는데, 갈취 또는 공갈은 재산죄적 성격을 갖는 번역으로 우리 형법과의 연계에 있어 바람직한 번역이 아니다. 갈취 또는 공갈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하여 위협을 통하여 특정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라 해석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강요를 폭행이나 협박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박은 언어 외에 거동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강요에 대한 세분류는 번역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실제 분류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6) 과실(0206)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중분류 과실(0206)은 사람의 과실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 또는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비록 과실(Negligence)이라 표제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는 무모함(Recklessness)과 부주의(Carelessness)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실 외에 고의에 의한 무모한 행위,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유기, 흑사, 학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과실에 의한 살인, 신체 상해를 야기하거나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는 위험행위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중분류 과실(0206)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02061), 직무상 과실(02062), 차량 운전 부주의(02063), 기타 과실 행위(02069)로 소분류된다.

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02061)과의 연계

소분류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02061)은 법적 보호의무 또는 보호책임을 지는 사람이 과실로 그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순수 과실에 의한 행위는 없고, 유기, 학대, 흑사 행위 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로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생명에 대한 침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을 아동 과실(020611), 다른 피부양자 과실(020612),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020619)로 세분류하고 있다.

(가) 아동과실(020611)과의 연계

아동과실(020611)은 형법과 아동복지법상 영아에 대한 유기, 아동흑사, 아동복지법의 아동유기 등이 연계 가능하다. 다만 생명에 대한 침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영아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영아유기(0128050100), 아동흑사(0128080100), 영아유기치사(01281701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30〉 아동과실(02061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8050000	영아유기	0128170100	영아유기치사
0128050100			
0128080000	아동흑사		
0128080100			

〈표 3-2-31〉 아동과실(020611):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11100	상습영아유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1200	아동방임	아동복지법
0209911200	상습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3000	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
0209911300	상습아동혹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3100	상습아동유기	아동복지법
0209911600	상습영아유기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3200	상습아동방임	아동복지법
0209911700	상습학대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4000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0231041100	아동유기	아동복지법	0231044700	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쟁점] 아동의 포섭범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아동개념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의 개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로,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소년의 개념보다 아동복지법의 아동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연령하한 요건도 없다.

(나) 다른 피부양자 과실(020612)과의 연계

다른 피부양자 과실(020612)은 과실행위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보호대상자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호받는 사람과 보호의무자는 법적 근거가 기초되어야 한다. 즉 현행법상 보호의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야하는 작위의무가 근거되어야 한다.

죄명코드 중 존속유기(0128020100), 중존속유기(0128040100), 존속학대(01280701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32〉 과실(020612):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8020000	존속유기	0128110000	존속유기치상
0128020100		0128110100	
0128040000	중존속유기	0128150100	중존속유기치상
0128040100		0128210100	존속학대치상
0128070000	존속학대		
0128070100			

(다)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020619)과의 연계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020619)은 영아, 아동, 존속을 제외한 보호대상자로 가족 관련 과실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아동이나 요부조자에 국한된 유기,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

죄명코드 중 유기(0128010100), 중유기(0128030100), 학대(01280601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33〉 과실(020619):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8000000	유기의죄	0128090000	유기치상	
0128010000	유기	0128090100		
0128010100		중유기	0128130100	중유기치상
0128030000	0128190100		0128190100	학대치상
0128030100				
0128060000	학대			
0128060100				

나. 직무상 과실(02062) 중 직무상 과실(020620)과의 연계

소분류 직무상 과실(02062)은 직무상 과실(020620)로 세분류되며,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준수하였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모든 의료과실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다 결과 내지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0113320100), 업무상과실가스방출(01133203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0113320300) 등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형법범] 표 가운데 견고덕으로 표기된 범죄분류코드는 대분류 09영역의 중분류인 무기, 폭탄 및 파괴물질관련 행위(0901)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범죄분류는 대분류 09의 영역 가운데 해당분류로 분류한다.

〈표 3-2-34〉 직무상 과실(02062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332010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5250000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0113320200	업무상과실가스방출	0115250100	
01133203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	0115260000	업무상과실기차등교통방해
0113320400	업무상과실증기방출	0115260100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0113320500	업무상과실방사선방출	0115260200	업무상과실전차교통방해
01133206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5260300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0113320700	업무상과실가스유출	0115260400	업무상과실선박교통방해
0113320800	업무상과실전기유출	0115260500	업무상과실항공기교통방해
0113320900	업무상과실증기유출	0115270000	업무상과실기차등전복
0113321000	업무상과실방사선유출	0115270100	업무상과실기차전복
01133211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5270200	업무상과실전차전복
0113321200	업무상과실가스살포	0115270400	업무상과실선박전복
0113321300	업무상과실전기살포	0115270500	업무상과실항공기전복
0113321400	업무상과실증기살포	0115280000	업무상과실기차등매몰
0113321500	업무상과실방사선살포	0115280100	업무상과실기차매몰
01133216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살포	0115280200	업무상과실전차매몰
0113321700	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	011528040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0113321800	업무상과실전기공급방해	0115280500	업무상과실항공기매몰
0113321900	업무상과실증기공급방해	0115290000	업무상과실기차등추락
0113322000	업무상과실가스사용방해	0115290100	업무상과실기차추락
0113322100	업무상과실전기사용방해	0115290200	업무상과실전차추락
0113322200	업무상과실증기사용방해	0115290400	업무상과실선박추락
0113322300	업무상과실공공용가스공급방해	01152905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0113322400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0115300000	업무상과실기차등파괴
0113322500	업무상과실공공용증기공급방해	0115300100	업무상과실기차파괴
0113322600	업무상과실공공용가스사용방해	0115300200	업무상과실전차파괴
0113322700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사용방해	0115300400	업무상과실선박파괴
0113322800	업무상과실공공용증기사용방해	0115300500	업무상과실항공기파괴

다. 차량 운전 부주의(02063) 중 차량 운전 부주의(020630)와의 연계

소분류 차량 운전 부주의(02063)는 차량 운전 부주의(020630)로 세분류되며, 조종사, 선장, 기타 직무상 운송수단의 운행인의 형사상의 과실을 제외한 부주의로 직무수행이 아닌 상황에서 운송수단의 운전과 관련된 과실행위를 말한다.

죄명코드 중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01152803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35〉 차량 운전 부주의(02063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011529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011528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011530030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라. 기타 과실 행위(02069) 중 기타 과실 행위(0206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과실 행위(02069)는 기타 과실 행위(020690)로 세분류되며, 앞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 직무상 과실, 차량 운전 부주의의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과실범으로 형법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등이 연계될 수 있다. 다만, 과실치사, 중과실치사와 재산침해 행위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중과실장물취득과 예비음모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과실치상(0126010100), 업무상과실치상(0126030100), 중과실치상(0126030200) 등으로 연계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형법범] 표 가운데 견고덕으로 표기된 범죄분류코드는 대분류 09영역의 중분류인 무기, 폭탄 및 파괴물질관련 행위(0901)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범죄분류는 대분류 09의 영역 가운데 해당분류로 분류한다.

〈표 3-2-36〉 기타 과실 행위(0206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6010000	과실치상	0115190000	과실일반등교통방해
0126010100		0115190100	과실일반교통방해
0126030000	업무상과실치상	0115200000	과실기차등교통방해
0126030100		0115200100	과실기차교통방해
0126030200	중과실치상	0115200200	과실전차교통방해
0113180000		0115200300	과실자동차교통방해
0113180100	과실폭발물파열	0115200400	과실선박교통방해
0113310100	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5200500	과실항공기교통방해
0113310200	과실가스방출	0115210000	과실기차등전복

0113310300	과실전기방출	0115210100	과실기차전복
0113310400	과실증기방출	0115210200	과실전차전복
0113310500	과실방사선방출	0115210300	과실자동차전복
0113310600	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5210400	과실선박전복
0113310700	과실가스유출	0115210500	과실항공기전복
0113310800	과실전기유출	0115220000	과실기차등매물
0113310900	과실증기유출	0115220100	과실기차매물
0113311000	과실방사선유출	0115220200	과실전차매물
0113311100	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5220300	과실자동차매물
0113311200	과실가스살포	0115220400	과실선박매물
0113311300	과실전기살포	0115220500	과실항공기매물
0113311400	과실증기살포	0115230000	과실기차등추락
0113311500	과실방사선살포	0115230100	과실기차추락
0113311600	과실방사성물질살포	0115230200	과실전차추락
0113311700	과실가스공급방해	0115230300	과실자동차추락
0113311800	과실전기공급방해	0115230400	과실선박추락
0113311900	과실증기공급방해	0115230500	과실항공기추락
0113312000	과실가스사용방해	0115240000	과실기차등파괴
0113312100	과실전기사용방해	0115240100	과실기차파괴
0113312200	과실증기사용방해	0115240200	과실전차파괴
0113312300	과실공공용가스공급방해	0115240300	과실자동차파괴
0113312400	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0115240400	과실선박파괴
0113312500	과실공공용증기공급방해	0115240500	과실항공기파괴
0113312600	과실공공용가스사용방해	0115310000	중과실일반등교통방해
0113312700	과실공공용전기사용방해	0115310100	중과실일반교통방해
0113312800	과실공공용증기사용방해	0115320000	중과실기차등교통방해
0113330100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5320100	중과실기차교통방해
0113330200	중과실가스방출	0115320200	중과실전차교통방해
0113330300	중과실전기방출	0115320300	중과실자동차교통방해
0113330400	중과실증기방출	0115320400	중과실선박교통방해
0113330500	중과실가스유출	0115320500	중과실항공기교통방해
0113330600	중과실전기유출	0115330000	중과실기차등전복
0113330700	중과실증기유출	0115330100	중과실기차전복
0113330800	중과실방사선방출	0115330200	중과실전차전복
0113330900	중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5330300	중과실자동차전복
0113331000	중과실가스살포	0115330400	중과실선박전복
0113331100	중과실전기살포	0115330500	중과실항공기전복
0113331200	중과실증기살포	0115340000	중과실기차등매물
0113331300	중과실방사선유출	0115340100	중과실기차매물
0113331400	중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5340200	중과실전차매물
0113331500	중과실가스공급방해	0115340300	중과실자동차매물
0113331600	중과실전기공급방해	0115340400	중과실선박매물
0113331700	중과실증기공급방해	0115340500	중과실항공기매물
0113331800	중과실방사선살포	0115350000	중과실기차등추락
0113331900	중과실방사성물질살포	0115350100	중과실기차추락
0113332000	중과실가스사용방해	0115350200	중과실전차추락
0113332100	중과실전기사용방해	0115350300	중과실자동차추락
0113332200	중과실증기사용방해	0115350400	중과실선박추락
0113332300	중과실공공용가스공급방해	0115350500	중과실항공기추락
0113332400	중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0115360000	중과실기차등파괴
0113332500	중과실공공용증기공급방해	0115360100	중과실기차파괴
0113332600	중과실공공용가스사용방해	0115360200	중과실전차파괴
0113332700	중과실공공용전기사용방해	0115360300	중과실자동차파괴
0113332800	중과실공공용증기사용방해	0115360400	중과실선박파괴
0114030000		0115360500	중과실항공기파괴
0114030100	과실일수		

[쟁점 1] 과실행위 개념의 확장

우리 형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과실의 개념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포섭하는 것은 현행법의 체계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negligence를 번역함에 있어 무모함이나 부주의를 포섭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쟁점 2] 직무상 과실과 차량운전 부주의의 구별

우리 형사실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바로 자동차 운행 중 일어나는 것으로 업무로서 자동차 운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자동차 운전에서 있어서는 직무상 과실과 차량 운전 부주의로 구별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이를 별개의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현재의 형사사법 실무와 불일치된다.

7) 위험행위(0207)와의 연계

중분류 위험행위(0207)는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로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불량식품이나 의약품 제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행위나 과실행위(0206)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위험행위를 다시 건강 위협 행위(02071),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 기타 위험 행위(02079)로 소분류하고,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은 음주운전(020721),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020722),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9)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소분류인 기타 위험 행위는 건강 위협 행위나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에서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위험행위나 균형법상 함선복물치상, 함선파괴치상, 항공기추락복물치상 등 균형법상의 행위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계하지 않는다.

가. 건강 위협 행위(02071) 중 건강 위협 행위(020710)와의 연계

소분류 건강 위협 행위(02071)는 건강 위협 행위(020710)로 세분류되며, 형법상 음용수 관련 죄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 침해행위, 약품과 처방전 물품 위조, 음용수사용방해 예비음모, 음용수혼독치사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음용수유해물혼입(0116020000), 음용수독물혼입(0116020100) 등으로 연계가능한 죄명 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37〉 건강 위협 행위(020710): 형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6000000	음용수에관한죄	01160402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200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50000	음용수혼독치상
0116020100	음용수독물혼입	0116050100	음용수독물혼입치상
01160202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50200	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

01160400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503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상
01160401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	01160504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

〈표 3-2-38〉 건강 위협 행위(020710):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0100	위반	식품위생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229021800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나.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 중 음주운전(020721)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소분류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을 다시 음주 운전(020721),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020722),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020729)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의 운전을 모두 음주운전으로 포섭하여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운전 금지를 규정하면서 제148조의2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으며 죄명코드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음주운전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 음주 운전,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을 모두 음주운전(020721)과 연계한다.

죄명코드 중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0208052400), 철도안전법위반(02330303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특별법 1 및 3] 표 가운데 견고적으로 표기된 범죄분류코드는 대분류 09영역의 중분류인 비상해 교통위반(0907)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범죄분류는 대분류 09의 영역 가운데 해당분류로 분류한다.

〈표 3-2-39〉 음주운전(020721):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2400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42080500	위반	항공안전법
0209014900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0242080100	위반	항공보안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33070500	위반	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 법률 ¹⁰⁾

[쟁점] 약물 개념의 모호성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향정신성 물질영향에서 운전을 알콜(음주), 불법 약물, 기타 향정신성 물질로 세분류하고 있으나 불법약물과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약을 과다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여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을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정신성 물질

10)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13년 항공보안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죄명코드는 부여되어 있다.

영향에서 운전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0208)과의 연계

중분류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0208)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는 행위로 직장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사이버상의 스토킹, 그 외의 심리적 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형법적 처리보다 민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 연계만이 가능하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을 다시 괴롭힘(02081), 스토킹(02082),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로 소분류하고 괴롭힘은 직장내 괴롭힘(020811)과 기타 괴롭힘(020819)로 세분류한다. 괴롭힘은 명확성의 원칙상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가 불가능하며, 스토킹과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만 연계한다.

가. 스토킹(02082) 중 스토킹(020820)과의 연계

소분류 스토킹(02082)은 스토킹(020820)으로 세분류되며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지켜보면서 원치 않는 소통을 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연계될 수 있다.

〈표 3-2-40〉 스토킹(02082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0100	위반	경범죄처벌법			

나.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 중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는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0)로 세분류되며,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이 연계될 수 있다.

죄명코드 중 아동복지법 아동학대(02310410000), 장애인복지법 위반(0231010800) 등으로 연계가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41〉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02089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1000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0231010800	위반	장애인복지법

[쟁점] 괴롭힘(02081)과의 연계

현행법상 괴롭힘과 가장 유사한 행위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02301011500)의 차별행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021021100)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행위는 괴롭힘보다 국제표준범죄분류 중

개인차별(0101)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벌칙과 교육 이수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만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9) 명예훼손, 모욕(0209) 중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과의 연계

중분류인 명예훼손, 모욕(0209)은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교신에 의하여 명예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의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와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경고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에 해당하며, 사람이 아닌 국회, 국회의원, 법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연계에서 제외한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명예훼손, 모욕을 다시 개인의 특성 관련(02091), 종교 및 가치관 관련(02092),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으로 소분류와 세분류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체적 내용보다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특성 관련이나 종교 및 가치관 관련은 연계 불가하고 모두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연계한다.

죄명코드 중 명예훼손(0133010100), 사자명예훼손(0133020000), 모욕(01330401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42〉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4010400	외국원수명예훼손	0133030000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0104020400	외국사절명예훼손	0133030100	
0133000000	명예에관한죄	0133030200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0133010000	명예훼손	0104010300	외국원수모욕
0133010100		0104020300	외국사절모욕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33040000	모욕
0133020100		0133040100	

〈표 3-2-43〉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02099):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22800	위반(상습명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17030200	위반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0209922900	위반(상습출판물예의한 명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2235050200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23000	위반(상습라디오예의한 명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1207020600	위반	공직선거법
0209923100	위반(상습모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13800	위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0217010500	위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10) 차별(0210)과의 연계

중분류 차별(0210)은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언어, 종교, 견해, 혈통 등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을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우대하는 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차별행위가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규제와 관련되는 경우 0803으로 연계에서 제외된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차별을 다시 개인차별(02101), 집단차별(02102), 기타 차별(02109)로 소분류하고 있으나 차별행위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다루는 형사법체계가 아닌 행정법적 규제나 민사법적 권리구제 내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법상 기타 차별은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하지 않고 개인차별과 집단차별만을 연계한다.

가. 개인차별(02101) 중 개인차별(021010)과의 연계

소분류 개인차별(02101)은 개인차별(021010)로 세분류되며 개인에 대한 차별 및 불법처우로 고용, 근로기준 등에서 차별행위와 연계된다.

죄명코드 중에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0232070200), 남녀고용평등법 위반(02320304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44〉 개인차별(02101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70200	위반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0232030100	위반	근로기준법	0229040800	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0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¹¹⁾	0231011500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집단차별(02102) 중 집단차별(021020)과의 연계

소분류 집단차별(02102)은 집단차별(021020)로 세분류되며 연계가능한 죄명코드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있어 차별행위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유일하다.

〈표 3-2-45〉 집단차별(02102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쟁점] 개인에 대한 차별과 집단에 대한 차별의 구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개인에 대한 차별과 집단에 대한 차별을 구별하고 있으나 실제 집단에 대한 차별은 그 대상인 집단 안에는 각 개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유형을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11)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나 현재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연계하였다.

11) 인적 침해(0211)와의 연계

중분류 인적 침해(0211)는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에 관한 행위로 0201에서 2010까지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로 신체적 학대 또는 정신적 잔학행위를 통한 부당대우 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가 아닌 컴퓨터 데이터나 시스템 침해, 타인의 의사소통을 부적절하게 추적이나 감시, 성적 사생활이나 성적 특성의 기타 행위 침해, 재산 침해행위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인적 침해를 사생활 침해(02111)와 기타 침해(02119)로 소분류하고 있다.

가. 사생활 침해(02111) 중 사생활 침해(021110)와의 연계

소분류 사생활 침해(02111)는 사생활 침해(021110)로 세분류되며, 우편의 비밀침해, 감청, 컴퓨터 파일에 대한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대한 접근행위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유출행위와 연계될 수 있다. 다만 공무상비밀문서개피, 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 등 국가적 법익침해 범죄와 주거침입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비밀침해(0135010000), 신서개피(0135010100), 퇴거불응(01360201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2-46〉 사생활 침해(02111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5000000	비밀침해의죄	0136020300	건조물퇴거불응
0135010000	비밀침해	0136020400	선박퇴거불응
0135020000	업무상비밀누설	0136020500	방실퇴거불응
0135020100		0136030600	특수퇴거불응
0135010100	신서개피	0136040000	불법수색
0135010200	문서개피	0136040100	신체수색
0135010300	도화개피	0136040200	주거수색
0135010400	편지내용탐지	0136040300	저택수색
0135010500	문서내용탐지	0136040400	건조물수색
0135010600	도화내용탐지	0136040500	선박수색
01350107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0136040600	방실투수
0136020000	퇴거불응	0136040700	자동차수색
0136020100		0136040800	항공기수색
0136020200	저택퇴거불응		

〈표 3-2-47〉 사생활 침해(02111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4800	위반(상습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60200	위반(상습특수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5800	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618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6800	위반(집단·흥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206035800	위반(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7800	위반(야간집단·흥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4020300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02060388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28400	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0206050500	위반(단체등의상습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235050300	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50600	위반(단체등의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35030700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02060507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28500	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02060508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쟁점] 사생활 침해(02111)와 주거침입

주거침입의 경우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사생활 침해(02111)와 연계가 가능하나,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재산 침해(05)에서 절도목적 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분류(0501)하고, 기타(0509)에서 재산의 불법점거, 주택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 등의 행위를 분류하고 있다. 물론 주거침입이 절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생활이나 거주권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표준범죄분류과 연계하는 경우 주거침입은 침입절도(0501) 또는 기타(0509)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타 침해(02119) 중 기타 침해(0211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침해(02119)는 기타 침해(021190)로 세분류되며, 사생활 침해(20111)외의 사람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행위로 죄명코드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0229023900), 혈액관리법 위반(0229040400)과 연계할 수 있다.

〈표 3-2-48〉 기타 침해(021190):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900	위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229040400	위반	혈액관리법

[쟁점] 기타 침해(02119)와 사체등손괴

사체, 유골에 대한 손괴 등을 기타 침해(02119)와 연계할 수도 있으나¹²⁾, 기타 침해(02119)는 사람에게 대한 침해를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타 재물손괴(05049)와 연계한다.

12) 기타(0219)와의 연계

중분류 기타의 소분류 기타(02190) 및 세분류 기타(021900)에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범죄유형은 없다.

12) 강소영 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통계청, 2017, 89면.

13) 시산결과

〈표 3-2-49〉 대분류 02 시산결과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2	상해·야간 상해를 거의 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중대한 폭행	66,253	63,002	55,700	49,289	63,126	60,657	54,220	47,960		
					경미한 폭행	146,000	160,759	170,524	164,114	134,463	150,893	161,803	156,010		
				02012	중대한 협박	0	0	0	0	0	0	0	0		
			경미한 협박		9,392	14,313	16,452	16,009	8,539	13,259	15,504	15,065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5,786	7,269	9,277	8,308	5,554	6,824	9,010	7,961			
			0202	자유압박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0	0	0	0	0	0	0	0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43	52	49	60	40	50	49	58
							법적 근거에 의한 약취/유인	0	1	0	0	0	1	0	0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72	52	62	84	57	50	51	73
	02022	자유박탈			납치	0	5	2	0	0	5	2	0		
					불법감금	1,300	1,448	1,597	1,737	1,115	1,308	1,456	1,594		
					운수장비 납치(하이재킹)										
					기타 자유박탈										
	02029	기타 자유압박			불법입양										
					강제혼인										
					기타 자유압박 행위	5	3	1	3	3	3	1	3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020310	노예							
					02032	강제노동	강제가사노동								
							강제산업노동	0	0	0	0	0	0		0
							강제국가는군대노동								
			기타 강제노동	0			3	3	0	0	3	3	0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39	28	25	18	33	25	25	15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목적인신매매	020410	0	2	2	2	0	2	2	2	2
			02042 강제노동인신매매	020420	0	0	3	0	0	0	3	0	0
			02043 장기출적인신매매	020430	0	0	0	0	0	0	0	0	0
			02049 기타목적인신매매	020490	0	2	0	0	0	2	0	0	0
	0205	강요	02051 강탈단속	020510	279	312	415	520	237	265	347	442	442
			02059 기타강행위	020590	103	115	147	156	91	107	142	135	135
	0206	과실	02061 보호대상자해과실	020611	146	790	1,585	1,865	101	770	1,488	1,715	1,715
				020612	16	14	19	11	13	13	18	11	11
				020619	38	32	34	46	35	29	34	36	36
			02062 직무상과실	020620	131	154	145	134	130	154	144	134	134
			02063 차관부주의	020630	12	13	5	6	12	13	5	6	6
			02069 기타과실행위	020690	3,830	4,299	4,443	4,800	3,537	3,915	4,058	4,406	4,406
	0207	위행위	02071 건강위행위	020710	11,001	10,345	11,691	9,413	10,980	10,251	11,614	9,355	9,355
			02072 행정실질영향사전	020721	219,340	210,952	201,877	178,588	218,620	210,196	201,505	177,966	177,966
				020722	22	9	19	31	22	8	20	31	31
				020729	219	349	1,256	2,763	213	341	1,240	2,750	2,750
			02079 기타위행위	020790									
	0208	공조 및 집행	02081 괴롭힘	020811									
				020819									
			02082 스토킹	020820	0	0	0	0	0	0	0	0	0
			02089 기타공조 및 집행행위	020890	9	11	86	83	8	11	83	71	71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1 개인의 특성관련	020910 개인의 특성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0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32,421	35,876	36,280	32,682	26,854	28,325	28,917	26,340		
	0210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10 개인 차별	44,447	43,053	44,535	44,365	39,799	39,494	40,997	41,872		
			02102 집단 차별	021020 집단 차별	359	179	92	75	348	168	92	68		
			02109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2,945	2,667	2,913	3,041	2,628	2,433	2,685	2,740		
			02119 기타 침해	021190 기타 침해	3	17	3	2	2	17	2	2		
	0219	기타	02190 기타	021900 기타										

ICCS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를 시산결과를 2017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02011 폭행은 020111 중대한 폭행과 020112 경미한 폭행으로 구분되는데 중대한 폭행은 49,289건, 경미한 폭행은 164,114건으로 시산되었고 폭행건수의 총합산은 213,403건으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2017년 강력범죄의 폭행 발생건수(163,858건)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형법범과 더불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범을 포함한 수치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02012 경미한 협박의 경우 발생건수 16,009건으로 범죄분석의 총 협박 건수(16,007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020222 불법감금의 경우 2017년 불법감금 건수는 총 1,737건으로 시산되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지 않는 강제적 구금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체포 및 감금 등을 포함한 반면 불법구금, 체포치상, 체포치사, 감금치상, 강금치사 등은 제외된 수치이다. 020721 음주운전의 경우 총 발생건수 178,588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건수 178,693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를 제외한 수치로 판단된다. 끝으로, 02111 사생활침해는 2017년 총 3,041건 발생하였고 이는 비밀침해, 퇴거불응, 편지내용탐지,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퇴거불응 등을 포함하여 시산되었다.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가 불가능한 분류코드는 020223 운수장비 납치, 020229 기타 자유박탈, 020291 불법인양, 020299 기타 자유억압행위, 020310 노예, 020321 강제가사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811 직장내괴롭힘, 02091 개인의 특성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등은 시산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14) 연계내용 및 문제점

ICCS적용에 대한 기본내용은 「국제범죄분류」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다음에서는 한국죄명코드와 ICCS 분류항목과의 연계·시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대분류 02 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50〉 대분류 02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	포함: 상해나 치상을 야기하거나 그 위협을 위한 무력사용으로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와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겠다는 협박 포함
		-	제외: 중한 폭행으로 사망을 야기하게 된 경우(0101), 성범죄 성격을 갖는 행위로 대분류 0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02011	폭행	+	포함: 형법 및 특별법상 상해, 폭행행위 포함
		-	제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제외 - ICCS의 분류상 0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020111	중대한 폭행	+	포함: 중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의도적 행위로 형법상의 상해죄, 중상해죄 등 포함
		-	제외: 상해치사, 피약취자상해, 피유인자상해, 강간상해, 인질상해, 강도상해, 폭행치상, 미수 등 제외
020112	경미한 폭행	+	포함: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형법상 폭행, 독직폭행 등
		-	제외: 중상해, 중상해죄 등 포함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포함									
		- 제외: 폭행치상, 상해미수, 폭행권리행사방해 제외									
02012	협박	+ 포함: 위협이 실행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적 행위로 형법상 협박 행위,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4010200</td> <td>외국원수협박</td> </tr> <tr> <td>0130010100</td> <td>협박</td> </tr> <tr> <td>0137020200</td> <td>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td> </tr> </tbody> </table> - 중대한 협박이나 경미한 협박으로 구분하지 않고 협박으로 분류	죄명코드	죄명	0104010200	외국원수협박	0130010100	협박	0137020200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죄명코드	죄명								
0104010200	외국원수협박										
0130010100	협박										
0137020200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 제외: 무력사용을 통한 강요,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협박, 투표권자를 협박하는 행위,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성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해 행위, 착취목적의 무력협박 행위 제외									
020112	중대한 협박		- 현행법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의 정도에 따라 중한 협박과 경한 협박으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122	경미한 협박		- 현행법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의 정도에 따라 중한 협박과 경한 협박으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 포함: 형법상 폭행, 협박을 제외하고 해악을 가하는 행위로 상해죄의 미수범, 폭행치상죄 등이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5010110</td> <td>상해미수</td> </tr> <tr> <td>0125100100</td> <td>폭행치상</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5010110	상해미수	0125100100	폭행치상		
		죄명코드	죄명								
0125010110	상해미수										
0125100100	폭행치상										
		- 제외: 피약취자상해미수, 인질상해미수, 강도상해미수 등 제외									
0202	자유 억압 행위	+ 포함: 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신체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행위									
		- 제외: 착취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그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노예행위 및 착취(0203), 다른 분류인 인신매매(0204),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등 제외								
02021	미성년자 약취 / 유인	+	포함: 형법상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 포함								
		-	제외: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미성년자 약취모집, 미성년자 약취운송, 예비 및 음모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10100</td> <td>미성년자약취</td> </tr> <tr> <td>0131010200</td> <td>미성년자유인</td> </tr> <tr> <td>0131190100</td> <td>미성년자약취모집</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10100	미성년자약취	0131010200	미성년자유인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죄명코드	죄명										
0131010100	미성년자약취										
0131010200	미성년자유인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행위를 모두 02021로 연계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 / 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13	법정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2	자유 박탈	+	포함: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 즉 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인질강요, 체포, 감금 등의 행위 포함								
		-	제외: 미성년자 유괴, 노예 행위 및 착취 등 인신매매, 표현이 자유 침해 행위 등 제외								
020221	납치	+	포함: 무력이나 유혹, 사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인질강요 포함								
		-	제외: 강도에 해당하는 인질강요, 미성년자 유괴, 인신매매, 불법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7010300</td> <td>인질강요</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7010300	인질강요				
죄명코드	죄명										
0137010300	인질강요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입양, 인질납치 등 제외												
020222	불법 감금	+	포함: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지 않는 강제적 구금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체포 및 감금 등 포함												
		-	제외: 해방을 대가로 불법 이익을 요구하는 불법구금, 체포치상, 체포치사, 감금치상, 감금치사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7030100</td> <td>직권남용체포</td> </tr> <tr> <td>0107030200</td> <td>직권남용감금</td> </tr> <tr> <td>0129010100</td> <td>체포</td> </tr> <tr> <td>0129010201</td> <td>감금</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7030100	직권남용체포	0107030200	직권남용감금	0129010100	체포	0129010201	감금		
죄명코드	죄명														
0107030100	직권남용체포														
0107030200	직권남용감금														
0129010100	체포														
0129010201	감금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유박탈행위이나 현행법은 행위의 방법 중 도구를 세분화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29	기타 자유 박탈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음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	포함:												
		-	제외:												
		- 기타 자유억압 행위는 불법입양 및 강제혼인이 없으므로 기타 자유억압 행위로만 구분													
020291	불법 입양		- 현행법상 불법입양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292	강제혼인		- 현행법상 강제혼인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	포함: 미성년자 외의 자를 행위 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 중 영리 등 착취 목적이 없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로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등 포함												
		-	제외: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착취 목적 없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미성년자 아닌 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유인 행위가 착취의 목적에서 행해진 경우(0203) 제외 국외이송부녀매매, 상습국외이송매매, 국외이송인신매매, 피국외이송자상해, 피국외이송자치상, 피국외이송자살인, 피국외이송자치사, 추행피국외이송자수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80100</td> <td>국외이송약취</td> </tr> <tr> <td>0131080200</td> <td>국외이송유인</td> </tr> <tr> <td>0131090300</td> <td>피매매자국외이송</td> </tr> <tr> <td>0131120100</td> <td>피약취자수수</td> </tr> <tr> <td>0131120200</td> <td>피약취자은닉</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80100	국외이송약취	0131080200	국외이송유인	01310903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20100	피약취자수수	0131120200	피약취자은닉
죄명코드	죄명														
0131080100	국외이송약취														
0131080200	국외이송유인														
01310903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20100	피약취자수수														
0131120200	피약취자은닉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수, 추행피국외이송자은닉, 간음피국외이송자수수, 간음피국외이송자은닉, 국외이송인신매매모집, 예비, 음모 등 제외															
0203	노예 및 착취	+	포함: 재산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으려는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포함	- 현행법상 노예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강제 노동 및 기타 노예 및 착취로 연계 구분														
		-	제외: 인신매매,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 제외															
02031	노예			- 현행법상 노예행위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32	강제 노동	+	포함: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불법적 노동으로 곡예 강요, 구걸 강요 등을 포함	- 현행법상 강제 가사 노동 및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은 없으므로 강제 산업 노동과 기타 강제 노동으로 구분 연계														
		-	제외:															
020321	강제 가사 노동			- 현행법상 강제 가사 노동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322	강제 산업 노동	+	포함: 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제 노동으로 곡예강요행위, 상습곡예강요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1800</td> <td>곡예강요행위</td> </tr> <tr> <td>0231043800</td> <td>상습곡예강요행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231041800	곡예강요행위	0231043800	상습곡예강요행위								
		죄명코드	죄명															
0231041800	곡예강요행위																	
0231043800	상습곡예강요행위																	
-	제외: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 현행법상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329	기타 강제 노동	+	포함: 구걸강요, 상습구걸강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1400</td> <td>구걸강요</td> </tr> <tr> <td>0231043400</td> <td>상습구걸강요</td> </tr> <tr> <td>0231044200</td> <td>구걸강요이용행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231041400	구걸강요	0231043400	상습구걸강요	0231044200	구걸강요이용행위						
		죄명코드	죄명															
0231041400	구걸강요																	
0231043400	상습구걸강요																	
0231044200	구걸강요이용행위																	
-	제외: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	포함: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범죄 중 형법상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목적 등 약취 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에 대한 상습적 결혼, 영리, 노동력 착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20300</td> <td>영리약취</td> </tr> <tr> <td>0131030300</td> <td>영리유인</td> </tr> <tr> <td>0131040200</td> <td>노동력착취약취</td> </tr> <tr> <td>0131040500</td> <td>장기적출약취</td> </tr> <tr> <td>0131040600</td> <td>노동력착취유인</td> </tr> <tr> <td>0131110100</td> <td>결혼약취</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20300	영리약취	0131030300	영리유인	0131040200	노동력착취약취	0131040500	장기적출약취	0131040600	노동력착취유인	0131110100	결혼약취
		죄명코드	죄명															
0131020300	영리약취																	
0131030300	영리유인																	
0131040200	노동력착취약취																	
0131040500	장기적출약취																	
0131040600	노동력착취유인																	
0131110100	결혼약취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	<p>취, 장기 적출 목적 약취 유인 행위 포함</p> <p>제외: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은 0302에 해당하므로 제외, 피결혼약취유인자수수, 피결혼약취자은닉, 피결혼유인자수수, 피결혼유인자은닉, 예비 및 음모 등 제외</p>											
0204	인신매매	+	<p>포함: 착취를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 행사의 위협, 기타 형태의 강요, 약취유인, 사기, 기망, 권한의 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 또는 해당인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당인을 모집, 운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p>											
		-	<p>제외: 노예행위, 강제노동, 노동법위반 행위(0805), 강제 결혼, 성범죄적 성격의 침해 행위(03), 이민자 밀수 및 기타 이민관련 범죄(0805) 목적 없는 인신매매, 예비, 음모 등 제외</p>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	<p>포함: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착취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모집, 전달 운송, 행위 등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90400</td> <td>추행인신매매</td> </tr> <tr> <td>0131090500</td> <td>간음인신매매</td> </tr> <tr> <td>0131100800</td> <td>성매매인신매매</td> </tr> <tr> <td>0131100900</td> <td>성적착취인신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90400	추행인신매매	0131090500	간음인신매매	0131100800	성매매인신매매	0131100900	성적착취인신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090400	추행인신매매													
0131090500	간음인신매매													
0131100800	성매매인신매매													
0131100900	성적착취인신매매													
-	<p>제외: 인신매매에 이르지 않은 성인 성적 착취(03021), 예비, 음모 제외</p>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	<p>포함: 노동력착취인신매매와 모집, 운송, 전달</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행위 포함	01311007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										
		-	제외: 예비, 음모 제외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	포함: 장기적출인신매매와 모집, 운송, 전달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thead><tr><th>죄명코드</th><th>죄명</th></tr></thead><tbody><tr><td>0131101000</td><td>장기적출인신매매</td></tr></tbody></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													
-	제외: 건강 위협 행위, 건강 및 안전 침해행위, 예비, 음모 등 제외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	포함: 결혼, 영리, 국외이송 인신매매, 상습국외이송매매와 모집, 운송, 전달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thead><tr><th>죄명코드</th><th>죄명</th></tr></thead><tbody><tr><td>0131090600</td><td>결혼인신매매</td></tr><tr><td>0131090700</td><td>영리인신매매</td></tr><tr><td>0131101100</td><td>국외이송인신매매</td></tr><tr><td>0131100300</td><td>상습국외이송매매</td></tr></tbody></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90600	결혼인신매매	0131090700	영리인신매매	01311011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100300	상습국외이송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090600	결혼인신매매													
0131090700	영리인신매매													
01311011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100300	상습국외이송매매													
-	제외:													
0205	강요	+	포함: 유형력의 행사,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 폭로에 대한 예고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예고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thead><tr><th>죄명코드</th><th>죄명</th></tr></thead><tbody><tr><td>0137010200</td><td>강요</td></tr></tbody></table> - 강요를 강탈 또는 갈취, 기타 강요 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강요에 포섭하여 연계	죄명코드	죄명	0137010200	강요						
		죄명코드	죄명											
0137010200	강요													
-	제외: 성적 행위에 대한 강요(03), 재산죄에 해당하는 것(0401), 공포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려는 목적의 행위(0207),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08071), 인질강요 등 제외													
02051	강탈 또는 갈취			- 우리 형법상 강요를 더 세분할 수 없어 강탈 또는 갈취, 기타 강요 행위로 연계 불가										
02059	기타 강요 행위			- 우리 형법상 강요를 더 세분할 수 없어 강탈 또는 갈취, 기타 강요 행위로 연계 불가										
0206	과실	+	포함: 사람의 과실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 또는 신	- 과실 외에 고의에 의한 무모한 행위, 부주의한 행위로 유기, 흡사, 학대 등을 포함함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체적 해악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										
		-	제외: 과실에 의한 살인, 신체 상해를 야기하 거나 신체 상해에 이 르게 하는 위험행위 제외										
02061	보호대상자에 대 한 과실	+	포함: 법적 보호의무 또는 보호책임을 지는 사 람이 과실로 그 보호 받아야 할 사람에 대 해서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 을 유발하는 행위										
		-	제외: 생명에 대한 침해 또 는 생명에 대한 위험 이 발생하는 경우 제 외										
			- 과실에 의한 행위는 없고 유기, 학대, 폭사 행위를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로 구분함										
020611	아동 과실	+	포함: 형법상 영아유기, 아 동혹사, 아동복지법 의 아동유기죄,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의 아 동유기와 아동학대 등 포함										
		-	제외: 영아유기치사, 아동 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8050100</td> <td>영아유기</td> </tr> <tr> <td>0128080100</td> <td>아동혹사</td> </tr> <tr> <td>0128170100</td> <td>영아유기치상</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8050100	영아유기	0128080100	아동혹사	0128170100	영아유기치상		
죄명코드	죄명												
0128050100	영아유기												
0128080100	아동혹사												
0128170100	영아유기치상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 실	+	포함: 보호의무자가 보호대 상자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와 상 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포함										
		-	제외: 존속유기치사, 중존 속유기치사 존속학대 치사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8020100</td> <td>존속유기</td> </tr> <tr> <td>0128040100</td> <td>중존속유기</td> </tr> <tr> <td>0128070100</td> <td>존속학대</td> </tr> <tr> <td>0128110100</td> <td>존속유기치상</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8020100	존속유기	0128040100	중존속유기	0128070100	존속학대	0128110100	존속유기치상
죄명코드	죄명												
0128020100	존속유기												
0128040100	중존속유기												
0128070100	존속학대												
0128110100	존속유기치상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	포함: 보호대상자는 영아, 아동, 존속을 제외한 요부조자에 국한하여 유기, 학대 행위 포 함										
		-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8010100</td> <td>유기</td> </tr> <tr> <td>0128030100</td> <td>중유기</td> </tr> <tr> <td>0128060100</td> <td>학대</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8010100	유기	0128030100	중유기	0128060100	학대		
죄명코드	죄명												
0128010100	유기												
0128030100	중유기												
0128060100	학대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영아, 아동, 존속에 대한 죄와 유기치사, 학대치사 제외														
02062	직무상 과실	+	포함: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모든 의료과실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다 결과 내지 위험이 발생한 경우 포함														
		-	제외: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 등은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3320100</td> <td>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td> </tr> <tr> <td>0113320300</td> <td>업무상과실가스방출</td> </tr> <tr> <td>0113320300</td> <td>업무상과실전기방출</td> </tr> <tr> <td>0113320700</td> <td>업무상과실가스유출</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332010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3320300	업무상과실가스방출	01133203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	0113320700	업무상과실가스유출				
죄명코드	죄명																
011332010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3320300	업무상과실가스방출																
01133203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																
0113320700	업무상과실가스유출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	포함: 직무수행이 아닌 상황에서의 운송수단의 운전과 관련된 과실행위로 자동차 관련 전복, 매몰, 추락, 파괴 행위 포함														
		-	제외: 조종사, 선장 등 운송수단 운행인의 과실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527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td> </tr> <tr> <td>011528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td> </tr> <tr> <td>011529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td> </tr> <tr> <td>011530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011528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011529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011530030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죄명코드	죄명																
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011528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011529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011530030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02069	기타 과실 행위	+	포함: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과실범으로 형법상 과실치상과 기타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등의 행위 포함														
		-	제외: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재산침해 행위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중과실장물취득, 과실폭발물파열예비, 음모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6010100</td> <td>과실치상</td> </tr> <tr> <td>0126030100</td> <td>업무상과실치상</td> </tr> <tr> <td>0126030200</td> <td>중과실치상</td> </tr> <tr> <td>0113180000</td> <td>과실폭발물파열</td> </tr> <tr> <td>0113310200</td> <td>과실가스방출</td> </tr> <tr> <td>0113310700</td> <td>과실가스유출</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6010100	과실치상	0126030100	업무상과실치상	0126030200	중과실치상	0113180000	과실폭발물파열	0113310200	과실가스방출	0113310700	과실가스유출
죄명코드	죄명																
0126010100	과실치상																
0126030100	업무상과실치상																
0126030200	중과실치상																
0113180000	과실폭발물파열																
0113310200	과실가스방출																
0113310700	과실가스유출																
0207	위험행위	+	포함: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로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 위험행위는 건강 위험 행위와 항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으로 구분하고, 기타 위험 행위는 분류하지 않음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불량식품이나 의약품 제조하는 행위 등 포함															
		-	제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행위, 과실행위(0206) 제외															
02071	건강 위협 행위	+	포함: 형법상 음용수 관련 죄 및 특별법상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포함															
		-	제외: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 침해행위, 약품과 처방전 물품 위조, 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독물혼입예비·음모, 음용수혼독치사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116020000</td> <td>음용수유해물혼입</td> <td></td> </tr> <tr> <td>0116020100</td> <td>음용수독물혼입</td> <td></td> </tr> <tr> <td>0229020100</td> <td>위반</td> <td>식품위생법</td> </tr> <tr> <td>0229024400</td> <td>위반</td> <td>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160200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20100	음용수독물혼입		0229020100	위반	식품위생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160200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20100	음용수독물혼입																	
0229020100	위반	식품위생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	포함: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음주운전 행위 포함															
		-	제외: 향정신성 물질 섭취 후 운송수단 운행 중 치사, 상해를 야기하지 않는 교통위반, 차량절도와 폭주, 기타 자동차의 불법적 사용 제외															
		-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및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을 모두 음주 운전으로 포섭하여 분류																
020721	음주 운전	+	포함: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행위 포함															
		-	제외: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8052400</td> <td>위반(음주운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9014900</td> <td>위반(위험운전치사상)</td> <t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td> </tr> <tr> <td>0233030300</td> <td>위반</td> <td>철도안전법</td> </tr> <tr> <td>0242080500</td> <td>위반</td> <td>항공안전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9014900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42080500	위반	항공안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9014900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42080500	위반	항공안전법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 현행법은 음주와 약물, 향정신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두 음주운전에 포함하고 연계 불가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 현행법은 음주와 약물, 향정신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두 음주운전에 포함하고 연계 불가
02079	기타 위험 행위	+	포함: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위험행위로 균형법상 함선복물치상, 함선 파괴치상, 항공기추락복물치상, 항공기추락손괴치상만 해당하여 본 분류에서 제외
		-	제외: 단순상해, 폭행치상 제외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는 행위로 직장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사이버상의 스토킹, 그 외의 심리적 폭력 등이 포함되나 명확성의 원칙상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음 - 각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처벌 - 현행법상 형법적 처리보다 민사적 또는 행정적 처리하므로 스토킹과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로만 구분
02081	괴롭힘		- 현행법상 범죄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82	스토킹	+	포함: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지켜보면서 원치 않는 소통을 하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 포함
		-	제외: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	포함: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 포함
		-	제외:
0209	명예훼손, 모욕	+	포함: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교신에 의하여 명예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
		-	제외: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경고하는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등의 행위는 강요에 해당하여 제외, 사람이 아닌 국회, 국회 회의장, 법정 모욕 등은 제외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별도 구성요건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별도 구성요건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	포함: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행위												
		-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4010400</td> <td>외국원수명예훼손</td> </tr> <tr> <td>0133010100</td> <td>명예훼손</td> </tr> <tr> <td>0133020000</td> <td>사자명예훼손</td> </tr> <tr> <td>0104010300</td> <td>외국원수모욕</td> </tr> <tr> <td>0133040100</td> <td>모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4010400	외국원수명예훼손	0133010100	명예훼손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04010300	외국원수모욕	0133040100	모욕
죄명코드	죄명														
0104010400	외국원수명예훼손														
0133010100	명예훼손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04010300	외국원수모욕														
0133040100	모욕														
0210	차별	+	포함: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언어, 종교, 견해, 혈통 등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을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처하거나 우대하는 행위 포함												
		-	제외: 차별행위가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규제와 관련되는 경우 0803으로 제외												
		- 차별을 개인차별과 집단차별로 구분하고, 기타차별은 분류하지 않음													
02101	개인 차별	+	포함: 개인에 대한 차별 및 불법 처우로 고용, 근로기준 등에서 차별행위 포함												
		-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2070200</td> <td>위반</td> <td>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td> </tr> <tr> <td>0232030100</td> <td>위반</td> <td>근로기준법</td> </tr> <tr> <td>0232030400</td> <td>위반</td> <td>남녀고용평등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70200	위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0232030100	위반	근로기준법	0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70200	위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0232030100	위반	근로기준법													
0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02102	집단 차별	+	포함: 국제결혼중개업에 있어 차별행위 포함												
		-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0400</td> <td>위반</td> <td>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02109	기타 차별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11	인적 침해	+	포함: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에 관한 행위로 0201에서 2010까지에 기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p>술되지 않은 행위로 신체적 학대 또는 정신적 잔학행위를 통한 부당대우 포함</p> <p>제외: 사생활 침해가 아닌 컴퓨터 데이터나 시스템 침해, 타인의 의사소통을 부적절하게 추적이나 감시, 성적 사생활이나 성적 특성의 기타 행위 침해, 재산 침해 등 제외</p>												
02111	사생활 침해	+	<p>포함: 우편의 비밀침해, 감청, 컴퓨터 파일에 대한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대한 접근행위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유출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5010000</td> <td>비밀침해</td> </tr> <tr> <td>0135010100</td> <td>신서개피</td> </tr> <tr> <td>0135010400</td> <td>편지내용탐지</td> </tr> <tr> <td>0136020100</td> <td>퇴거불응</td> </tr> <tr> <td>0136040000</td> <td>불법수색</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5010000	비밀침해	0135010100	신서개피	0135010400	편지내용탐지	0136020100	퇴거불응	0136040000	불법수색
		죄명코드	죄명												
0135010000	비밀침해														
0135010100	신서개피														
0135010400	편지내용탐지														
0136020100	퇴거불응														
0136040000	불법수색														
-	<p>제외: 공무상비밀문서개피, 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 등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와 주거침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상습신체수색 제외</p>														
02119	기타 침해	+	<p>포함: 02111 외의 사람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로 사체훼손 등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3900</td> <td>위반</td> <td>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td> </tr> <tr> <td>0229040400</td> <td>위반</td> <td>혈액관리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900	위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229040400	위반	혈액관리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900	위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229040400	위반	혈액관리법													
-	<p>제외:</p>														
0219	기타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3. 대분류 03 성범죄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성범죄(03)는 성폭력(0301)과 성착취(0302), 기타 성 범죄(0309)로 중분류된다.

1) 성폭력(0301)과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중분류 성폭력(0301)은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연계된다.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 다른 법익 침해가 결합되는 강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은 다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연계에서 제외된다.

성폭력은 다시 강간(03011), 성폭행(03012), 기타 성폭력(03019)으로 소분류되나, 기타 성폭력은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가 불가하다.

가. 강간(03011)과의 연계

소분류 강간(03011)은 유효한 동의가 없거나 위협, 폭행·협박 등 무력 사용, 강압, 기망, 약물이나 술의 사용 또는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 남용이나 이익의 수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로 성교에 이르는 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삽입행위가 아닌 강제추행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소분류 강간은 유형력 강간(030111), 비유형력 강간(030112), 의제 강간(030113), 기타 강간(030119)으로 세분류되나, 기타 강간은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하지 않는다.

(가) 유형력 강간(030111)과의 연계

유형력 강간(030111)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효한 동의 없는 성교로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신체의 일부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와 강도강간에 연계할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사, 강간살인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강간(0132010100), 유사강간(0132010200), 강간치상(0132040000), 강간상해(0132040200), 강도강간(0138150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 강간(03011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2010000	강간	0132040400	유사강간치상
0132010100		0132180100	상습강간
0132010200	유사강간	0132182200	상습유사강간
0132040000	강간치상	0138150000	강도강간
0132040100		0138150100	

0132040200	강간상해	0138210000	해상강도강간
0132040300	유사강간상해	0138210100	

〈표 3-3-2〉 강간(030111):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4900	위반(강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590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5100	위반(절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1900	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5600	위반(특수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2000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7200	위반(강도강간재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2500	위반(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9700	위반(특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2600	위반(절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0500	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¹³⁾	0209013100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0600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013200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0700	위반(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060324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309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58400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1100	위반(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591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3000	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32600	위반(강도강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0206033100	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48300	위반(단체등의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3200	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16070500	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421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16070600	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42400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18031700	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6100	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100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6200	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200	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6300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18031700	위반(청소년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¹⁴⁾
0206056400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7700	위반(상습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68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7800	위반(상습유사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73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300	위반(상습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7400	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400	위반(상습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7500	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500	위반(상습유사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8300	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600	위반(상습유사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 비유형력 강간(030112)과의 연계

비유형력 강간(030112)은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는 유효한 동의 없는 성교로 기망, 자유제한, 약물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었다가 2010년 4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제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죄명코드는 별도로 부여되어 있다.

또는 알코올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 이용, 이익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와 연계된다. 다만, 준강간치사, 준강간살인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준강간(0132030100), 준유사강간(0132030300), 미성년자간음(0132120100), 피보호자간음(0132140100), 위계간음(01321602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3〉 강간(03011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2030000	준강간	0132140000	피보호자등간음
0132030100		0132140100	피보호자간음
0132030300	준유사강간	0132140200	피감독자간음
0132040500	준유사강간상해	0132150000	피감호자간음
0132040600	준유사강간치상	0132150100	
0132080000	준강간치상	0132160000	혼인빙자간음
0132080100	준강간치상	0132160100	
0132080200	준강간상해	0132160200	위계간음
0132180300	상습준강간	0132180500	상습미성년자간음
0132182300	상습준유사강간	0132180600	상습심신미약자간음
0132120000	미성년자등간음	0132180900	상습피보호자간음
0132120100	미성년자간음	0132181000	상습피감독자간음
0132120200	심신미약자간음	0132181100	상습피감호자간음

〈표 3-3-4〉 강간(03011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7400	위반(절도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41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7700	위반(강도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58700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8000	위반(특수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58900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1000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594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41900	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16070900	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422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18032400	위반(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6600	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16071000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70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500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7200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700	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8600	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000	위반(상습준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93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100	위반(상습준유사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2200	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900	위반(상습준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2300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000	위반(상습준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2800	위반(절도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100	위반(상습준유사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2900	위반(절도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200	위반(상습준유사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400	위반(특수강도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0800	위반(상습미성년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500	위반(특수강도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0900	위반(상습심신미약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700	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0209921400	위반(상습피보호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한특례법)	관한특례법
02090140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0209921500	위반(상습피감독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013800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0209921600	위반(상습피감호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다) 의제 강간(030113)과의 연계

의제 강간(030113)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 또는 법률상 사유로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과 행한 성적 삽입행위와 연계된다. 다만 성적 삽입행위가 아닌 강제추행, 결과 적 가중범인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미성년자의제강간(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 간상해(01321707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5〉 강간(030113):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132170000	미성년자의제강간	1321812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
132170100		1321814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321815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132182400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217110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표 3-3-6〉 강간(030113):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2400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220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217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221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218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쟁점] 피해자의 연령과 의제강간 연계 문제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의제강간의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 없이 각 입법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형법은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목적이 범죄의 국가 간 비교라면 분류에 따른 국제적 통일성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

나. 성폭행(03012)과의 연계

소분류 성폭행(03012)은 성폭력 중에서 성적삽입(강간)에 이르지 않은 성적 범죄행위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가진 연락과 의사소통, 성희롱, 관음증 등 다양한 성범죄를 포함하며 성폭행 행위로 신체 적 또는 비신체적 성폭행 행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강간이나 성착취 행위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소분류 성폭행은 다시 신체적 성폭행(030121), 비신체적 성폭행(03012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 행(030129)로 세분류된다.

(가) 신체적 성폭행(030121)과의 연계

신체적 성폭행(030121)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로써 강간에 이르지 않은 행위로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연계될 수 있다. 다만, 추행약취, 추행유인, 추행인신매매, 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살인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강제추행(0132020100), 준강제추행(0132030200), 미성년자등추행(0132130100), 심신미약자추행(01321302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7〉 성폭행(03012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2020000	강제추행	0132100200	준강제추행상해
0132020100		0132130000	미성년자등추행
0132030200	준강제추행	0132130100	
0132060000	강제추행치상	0132130200	심신미약자추행
0132060100		0132180200	상습강제추행
0132060200	강제추행상해	0132180400	상습준강제추행
0132100000	준강제추행치상	0132180700	상습미성년자추행
0132100100		0132180800	상습심신미약자추행

〈표 3-3-8〉 성폭행(03012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7300	위반(절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592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7500	위반(절도준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595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7600	위반(강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2100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7800	위반(강도준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2400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7900	위반(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2700	위반(절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8100	위반(특수준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9013000	위반(절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2100	위반(강제추행)	특정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300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0800	위반(특수강제추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013600	위반(특수강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1300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013900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1400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0142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417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17900	위반(상습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418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18200	위반(상습준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42000	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18700	위반(상습강제추행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423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18800	위반(상습강제추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42600	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19300	위반(상습준강제추행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6500	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400	위반(상습준강제추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6700	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1000	위반(상습미성년자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69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1100	위반(상습심신미약자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7100	위반(친족관계의제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16071100	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7800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300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7900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600	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8500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800	위반(장애인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6058800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 비신체적 성폭행(030122)과의 연계

비신체적 성폭행(030122)은 신체적 접촉에 의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당사자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언어적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의 협박, 성적 성격의 스토킹 등의 행위와 연계 가능하다.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030129)에 해당하는 공연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통신매체이용음란(0206031500),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등(02310409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9〉 성폭행(030122):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1500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310429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0206058000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31044100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0231040900	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02310444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다)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030129)과의 연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030129)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그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만족을 얻는 행위로 공연음란죄, 카메라 등 촬영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01에 연결되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과 음란물에 관한 죄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공연음란(01221101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0132170200), 카메라등이용촬영(02060329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0〉 성폭행(030129):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2110000	공연음란	01321709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0122110100		01321813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1321818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01321705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1321819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표 3-3-11〉 성폭행(030129):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219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329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9224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60581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25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031600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성착취(0302)와의 연계

중분류 성착취(0302)는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권력, 신뢰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성매매나 성행위를 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성착취를 다시 성인 성착취(03021), 아동 성착취(03022), 기타 성착취(03029)로 소분류한다.

가. 성인 성착취(03021) 중 성인 성착취(030210)와의 연계

소분류 성인 성착취(03021)는 성인 성착취(030210)로 세분류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죄명코드 중 추행유인(0131020100), 간음약취(0131020200), 성매매약취(01310403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2〉 성인 성착취(030210):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2020000	음행매개	0131201300	추행유인운송
0122020100		0131202100	추행유인전달
0131020100	추행약취	0131200600	간음유인모집
0131020200	간음약취	0131201400	간음유인운송
0131030100	추행유인	0131202200	간음유인전달
0131030200	간음유인	0131210200	성매매약취모집
0131040300	성매매약취	0131211000	성매매약취운송
0131040400	성적착취약취	0131211800	성매매약취전달
0131040700	성매매유인	0131210300	성적착취약취모집
0131040800	성적착취유인	0131211100	성적착취약취운송
0131040000	부녀매매	0131211900	성적착취약취전달
0131040100		0131210600	성매매유인모집
0131050100	상습추행약취	0131211400	성매매유인운송
0131050200	상습간음약취	0131212200	성매매유인전달
0131060100	상습추행유인	0131210700	성적착취유인모집
0131060200	상습간음유인	0131211500	성적착취유인운송
0131070000	상습영리등목적부녀매매	0131212300	성적착취유인전달
0131070100	상습부녀매매	0131170100	추행피약취자수

0131200100	추행약취모집	0131170400	추행피유인자수수
0131200900	추행약취운송	0131170200	간음피약취자수수
0131201700	추행약취전달	0131170500	간음피유인자수수
0131200200	간음약취모집	0131180100	추행피약취자은닉
0131201000	간음약취운송	0131180400	추행피유인자은닉
0131201800	간음약취전달	0131180200	간음피약취자은닉
0131200500	추행유인모집	0131180500	간음피유인자은닉

〈표 3-3-13〉 성인 성착취(03021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6600	위반(추행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1011300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0206026500	위반(간음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1011600	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0206027000	위반(추행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1011700	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0206026900	위반(간음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1011800	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0206028900	위반(부녀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31011900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나. 아동성착취(03022)와의 연계

소분류 아동성착취(03022)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등과 연계 가능하다. 즉 아동 음란물의 생산과 소지, 아동 성매매의 모집·유인·확보·알선·장소제공 등이 포함되며 아동에 대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위도 연계할 수 있다.

소분류 아동성착취(03022)는 다시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 아동 성매매(030222),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 기타 아동 성착취(030229)로 세분류된다.

(가)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와의 연계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 공유, 제작, 다운로드 등의 행위와 연계 가능하다.

죄명코드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0216070200), 음란물소지(02160703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4〉 아동 포르노그래피(03022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6070200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1500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6070300	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500	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나) 아동 성매매(030222)와의 연계

아동 성매매(030222)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로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아동 성매매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의 임대행위와 연계된다.

죄명코드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수(0218031200), 강요행위등(0218031300), 청소년매매(02180316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5〉 아동 성매매(030222):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1600	위반(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31011400	위반(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218031400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31012200	위반(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218031600	위반(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09914700	위반(상습성매매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10900	위반(청소년)	윤락행위등방지법	0209915100	위반(상습성매매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1218031200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31040800	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	아동복지법
1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310428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매개)	아동복지법
1218031400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다)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과의 연계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은 아동과 접촉 후 성적 목적의 만남에 이르게 하는 물리적 행위와 연 계된다. 다만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미성년자약취모집(0131190100), 미성년자유인모집(0131190200), 미성년자유인운송 (031190400) 등 연계 가능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6〉 성적 목적 아동 유인(030223):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131190400	미성년자유인운송
0131190200	미성년자유인모집	0131190500	미성년자약취전달
0131190300	미성년자약취운송	0131190600	미성년자유인전달

(라) 기타 아동 성착취(030229)와의 연계

기타 아동 성착취(030229)는 아동과의 부적절한 행위, 아동에 대한 유혹,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 위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보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동한 장소 에서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는 형태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인 아동 대상 성관광 등의 행위 와 연계될 수 있다. 현행법상 기타 아동 성착취에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없다.

다. 기타 성착취(03029) 중 기타 성착취(0302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성착취(03029)는 기타 성착취(030290)로 세분류되며, 성착취 중 성인이나 미성년자 성착취에 포섭될 수 없는 음행강요,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등의 행위와 연계된다.

죄명코드 중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01311713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01311714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7〉 기타 성착취(0302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171300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81300	추행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714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814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71500	간음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81500	간음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71600	간음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81600	간음피유인미성년자은닉

〈표 3-3-18〉 기타 성착취(030290):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913800	위반(상습추행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4800	위반(상습성적착취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3900	위반(상습간음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5200	위반(상습성적착취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09914200	위반(상습추행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0700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아동복지법
0209914300	위반(상습간음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02310427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	아동복지법

3) 기타 성 범죄(0309)와의 연계

중분류 기타 성범죄(0309)는 기타 성 범죄(03090)로 소분류 되고 다시 기타 성 범죄(030900)로 세분류된다. 기타 성범죄는 성폭력이나 성착취로 분류될 수 없는 유형의 성범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윤락행위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연계된다. 다만, 성폭력, 성착취, 강간과 노출증에 이르지 않은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성 기준에 반하는 성매매, 음란물 범죄,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괴롭힘, 스토킹,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노예 및 착취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023101040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0208059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3-19〉 성 범죄(0309):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10400	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¹⁵⁾	0229023700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0208051900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0229020300	위반	공중목욕장업법
0220021100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0229020500	위반	숙박업법
0232040100	위반	직업안정법			

15) 윤락행위등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현재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쟁점 1] 성인과 아동의 구별 곤란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성범죄를 분류함에 있어 성인과 아동을 구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행위객체에 대한 구별은 일부 특별법을 제외하고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사법 실무에서 객체를 엄두에 둔 검토가 요구된다.

[쟁점 2] 구성요건의 모호성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대상 성관광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익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인 관광행위만으로도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의가 요구되며, 아동 포르노그래피도 아동으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 단순한 소지와 다운로드가 범죄로 유형화되고 있는데 실무적 논의가 요구된다.

4) 시산결과

〈표 3-3-20〉 대분류 03 시산결과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3	성범죄	0301	강간	03011 1	유형력 강간	5,069	4,744	4,572	4,401	5,070	4,693	4,518	4,332		
				03011 2	비유형력 강간	1,442	1,513	1,629	1,835	1,425	1,498	1,607	1,796		
				03011 3	의제 강간	42	55	44	47	38	55	44	47		
				03011 9	기타 강간										
		0301	성폭력	03012 1	신체적 성폭행	14,844	15,340	16,271	18,233	13,786	14,607	15,573	17,482		
				03012 2	비신체적 성폭행	1,255	1,180	1,185	1,401	1,189	1,108	1,110	1,272		
				03012 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	9,070	10,406	8,212	10,059	8,366	9,738	7,383	9,279		
		0301 9	기타 성폭력	03019 0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 1	성인 성착취	03021 0	성인 성착취	7,802	7,700	15,533	10,444	7,647	7,572	15,328	10,291
				0302 2	아동 성착취	03022 1	아동 포르노그래피	735	648	838	491	699	610	785	427
	03022 2					아동 성매매	363	339	426	750	351	324	416	707	
	03022 3					성목적 아동유인	0	0	0	0	0	0	0	0	
	0302 9			기타 성착취	03029 0	기타 성착취	8,506	8,049	8,896	9,227	8,443	7,957	8,844	9,130	

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범죄표준분류와 연계한다.

ICCS 대분류 03 영역 성범죄 시산결과를 2017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3011 강간은 030111 유형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3 의제강간으로 구분되는데 유형력 강간 4,401건, 비유형력 강간 1,835건, 의제강간 47건으로 시산되었고 2017년 03011 강간의 총 발생건수는 6,28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2017년 강력범죄(흉악)의 강간 발생건수(5,287건) 보다 약 1,000건 정도 많은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는 강간(5,287건), 유사강간(144건), 강간치상(493건), 강간상해(223건) 등 형법범과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범을 포함한 수치로 해석된다. 신체적 성폭행(030121)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로서 강간에 이르지 않은 행위로 2017년 총 발생건수는 18,233건으로 시산되었고 이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의 형법범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어 연계가 불가한 분류코드로는 030119 기타 강간, 030190 기타 성폭력이 있고 연계불가로 인해 시산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5) 연계내용 및 문제점

ICCS적용에 대한 기본내용은 「국제범죄분류」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다음에서는 한국죄명코드와 ICCS 분류항목과의 연계·시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대분류 03 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21〉 대분류 03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0301	성폭력	+	포함: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외: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 다른 법익 침해가 결합된 강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죄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03011	강간	+	포함: 유효한 동의가 없거나 위협, 무력, 사기, 강압, 기망, 약물이거나 술의 사용 또는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 남용이나 이익의 수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로 성교에 이르는 행위	- 강간은 유형력 강간, 비유형력 강간, 의제 강간으로 구분하되 기타 강간은 구분하지 않음												
		-	제외: 성적 삽입행위가 아닌 강제추행 제외													
030111	유형력 강간	+	포함: 무력에 의한 유효한 동의 없는 성교로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등 성적 삽입 행위와 강도강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010100</td> <td>강간</td> </tr> <tr> <td>0132010200</td> <td>유사강간</td> </tr> <tr> <td>0132040000</td> <td>강간치상</td> </tr> <tr> <td>0132040200</td> <td>강간상해</td> </tr> <tr> <td>0138150100</td> <td>강도강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010100	강간	0132010200	유사강간	0132040000	강간치상	0132040200	강간상해	0138150100	강도강간
		죄명코드	죄명													
0132010100	강간															
0132010200	유사강간															
0132040000	강간치상															
0132040200	강간상해															
0138150100	강도강간															
-	제외: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사, 강간살인 등 제외															
030112	비유형력 강간	+	포함: 무력에 의하지 않는 유효한 동의 없는 성교, 즉 기망, 자유제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 이용, 이익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030100</td> <td>준강간</td> </tr> <tr> <td>0132030300</td> <td>준유사강간</td> </tr> <tr> <td>0132120100</td> <td>미성년자간음</td> </tr> <tr> <td>0132140100</td> <td>피보호자간음</td> </tr> <tr> <td>0132160200</td> <td>위계간음</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030100	준강간	0132030300	준유사강간	0132120100	미성년자간음	0132140100	피보호자간음	0132160200	위계간음
		죄명코드	죄명													
0132030100	준강간															
0132030300	준유사강간															
0132120100	미성년자간음															
0132140100	피보호자간음															
0132160200	위계간음															
-	제외: 준강간치사, 준강간살인 및 폭행, 협박에 의한 성적 삽입 행위 제외															
030113	의제 강간	+	포함: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 또는 법률상의 사유로 동의 능력 없는 사람과 행한 성적 삽입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170100</td> <td>미성년자의제강간</td> </tr> <tr> <td>0132170300</td> <td>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td> </tr> <tr> <td>0132170700</td> <td>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	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죄명코드	죄명													
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															
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	제외: 성적 삽입행위가 아닌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미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성년자의제강간살인 제외
030119	기타 강간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3012	성폭행	+	포함: 성폭력 중에서 강간에 이르지 않은 성적 범죄행위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가진 연락과 의사소통, 성희롱, 관음증 등 다양한 성범죄를 포함하며 성폭행 행위로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 성폭행 행위 등을 포함
		-	제외: 강간이나 성착취 행위 제외
030121	신체적 성폭행	+	포함: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로서 강간에 이르지 않은 행위로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포함
		-	제외: 추행약취, 추행유인, 추행인신매매, 강제추행치사, 강제추행살인, 준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살인 등 제외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	포함: 신체적 접촉에 의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당사자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언어적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의 협박, 성적 성격의 스토킹 행위 포함
		-	제외: 공연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제외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	+	포함: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그가 인식하지 못한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p>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만족을 얻는 행위로 공연음란죄, 카메라 등 촬영죄 등 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122110100</td> <td>공연음란</td> <td></td> </tr> <tr> <td>0132170200</td> <td>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td> <td></td> </tr> <tr> <td>0206032900</td> <td>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td> <td>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22110100	공연음란		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2060329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22110100	공연음란																
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2060329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p>제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 음란문서반포, 음란물건판매 등 음란물에 관한 죄 제외</p>															
03019	기타 성폭력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302	성착취	<p>포함: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권력, 신뢰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성매매나 성행위를 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2020100</td> <td>음행매개</td> </tr> <tr> <td>0131040100</td> <td>부녀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2020100	음행매개	0131040100	부녀매매								
죄명코드	죄명																
0122020100	음행매개																
0131040100	부녀매매																
		<p>제외: 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제외</p>															
03021	성인 성착취	<p>포함: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20100</td> <td>추행약취</td> </tr> <tr> <td>0131020200</td> <td>간음약취</td> </tr> <tr> <td>0131030100</td> <td>추행유인</td> </tr> <tr> <td>0131030200</td> <td>간음유인</td> </tr> <tr> <td>0131040300</td> <td>성매매약취</td> </tr> <tr> <td>0131040400</td> <td>성적착취약취</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20100	추행약취	0131020200	간음약취	0131030100	추행유인	0131030200	간음유인	0131040300	성매매약취	0131040400	성적착취약취
죄명코드	죄명																
0131020100	추행약취																
0131020200	간음약취																
0131030100	추행유인																
0131030200	간음유인																
0131040300	성매매약취																
0131040400	성적착취약취																
		<p>제외: 추행인신매매, 간음</p>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인신매매, 성매매인신매매, 수행약취, 간음약취, 수행유인, 간음유인, 성매매약취 예비음모 등 제외													
03022	아동 성착취	+	<p>포함:</p> <p>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행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포함. 즉 아동 음란물의 생산과 소지, 아동 성매매의 모집·유인·확보·알선·장소제공 등이 포함되며 아동에 대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위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131190100</td> <td>미성년자약취모집</td> <td></td> </tr> <tr> <td>0218031500</td> <td>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31200</td> <td>위반(성매수)</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218031500	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218031500	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p>제외:</p> <p>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등은 성폭행으로 분류하고 성착취에서는 제외</p>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	<p>포함:</p> <p>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 공유, 제작, 다운로드 등을 모두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216070200</td> <td>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td> <td>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6070300</td> <td>음란물소지</td> <td></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216070200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6070300	음란물소지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216070200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6070300	음란물소지															
-	<p>제외:</p> <p>아동 성매매 또는 성적 목적 아동 유인행위 등을 제외</p>															
030222	아동 성매매	+	<p>포함:</p> <p>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로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성매매 목적으로</p>	<p>1. 죄명코드 연계</p>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18031200</td> <td>위반(성매수)</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31300</td> <td>위반(강요행위등)</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31600</td> <td>위반(청소년매매)</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1218031200</td> <td>위반(성매수등)</td> <td>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31011400</td> <td>위반(청소년)</td> <td>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600	위반(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1200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31011400	위반(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600	위반(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1200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31011400	위반(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외: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	포함: 아동과 접촉한 후 성적 목적의 만남에 이르게 하는 물리적 행위																		
		-	제외: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등 제외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	포함: 아동과의 부적절한 행위, 아동에 대한 유혹,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보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동한 장소에서 아동과 성적행위를 하는 형태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인 아동대상 성관광 포함하나 현행 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 불가																		
		-	제외:																		
03029	기타 성착취	+	포함: 성착취 중 성인이나 미성년자 성착취에 포함될 수 없는 음행강요,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등의 행위 포함																		
		-	제외:																		
0309	기타 성 범죄	+	포함: 성폭력이나 성착취로 분류될 수 없는 유형의 성범죄로 윤락행위등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																		
		-	제외: 성폭력, 성착취, 강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3 성범죄			
		간과 노출증에 이르지 않은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성매매, 음란물 범죄,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괴롭힘 및 스토킹,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노예 및 착취 등 제외	

4. 대분류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대분류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는 중분류 강도(0401)와 기타(0409)로 분류된다. 중분류 강도(0401)는 대인 강도(04011),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 시설/기관 강도(04013), 가족 강도(04014), 기타 강도 행위(04019)로 소분류 되며, 소분류 대인 강도(04011)는 공공 장소 대인 강도(040111), 사적 장소 대인 강도(040112), 기타 대인 강도(040119)로, 소분류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는 자동차나 차량 강도(040121), 기타 운송중 강도(040129)로, 소분류 시설/기관 강도(04013)은 금융기관 강도(040131), 비금융기관 강도(040132)로 각각 세분류된다.

중분류 기타(0409)는 현행법상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가 없으므로 강도(0401)만이 연계 가능한데, 현행법은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침해인 강도행위와 관련하여 객체에 따른 분류나 장소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소분류인 대인 강도(040119)와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로만 연계 가능하고 그 외의 모든 유형의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는 중분류인 강도(0401)에 연계할 수밖에 없다.

1) 강도(0401)와의 연계

중분류 강도(0401)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취할 의도로 사람에게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로 인질강도, 약취강도, 공갈, 준강도, 준특수강도 행위가 연계 가능하다. 다만,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 01과 연계 가능한 행위나 강도강간, 강도준강간 등 03과 연계 가능한 행위 그리고 예비 및 음모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강도(0401)에는 소분류인 대인 강도(04011)와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에 연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행위를 연계한다.

죄명코드 중 강도(0138070000), 특수강도(0138080000), 준강도(0138090000), 공갈(01390400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4-1〉 강도(040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70000	강도	0138230000	상습특수강도
0138070100		0138230100	
0138080000	특수강도	1138100000	인질강도
0138080100		1138100100	
0138090000	준강도	1138240100	상습인질강도
0138090100		0139040000	
0138090200	준특수강도	0139040100	공갈
0138110000	강도상해	0139080000	상습공갈
0138110100		0139080100	
0138120000	강도치상	0139100100	특수공갈
0138120100		0139110100	
0138220000	상습강도		
0138220100			

〈표 3-4-2〉 강도(0401):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1800	위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35000	위반(상습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22000	위반(강도상해재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36000	위반(야간·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1206022000	위반(강도상해등재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0206037000	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2000	위반(특수강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2060380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2700	위반(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2060390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7600	위반(단체등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900	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7700	위반(단체등의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5000	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7800	위반(단체등의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51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7900	위반(단체등의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52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000	위반(단체등의인질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400	위반(상습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100	위반(단체등의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9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200	위반(단체등의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1206036000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700	위반(단체등의상습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6023200	위반(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2060488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24000	위반(상습공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0206048900	위반(단체등의상습인질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0209926100	위반(상습특수공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 대인 강도(04011)와의 연계

소분류 대인 강도(04011)는 강도(0401) 중 피해자와 직접 접촉에 의한 인적 재산 강도로 약취강도, 인질강도 등과 연계된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소분류 대인 강도를 다시 공공 장소 대인 강도(040111), 사적 장소 대인 강도(040112), 기타 대인 강도(040119)로 세분류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강도죄와 야간침입, 흉기휴대, 2인 이상의 행위가 요구되는 특수강도죄와 책임이 가중되는 상습 강도죄로 구분하고 국제표준범죄분류와 같이 객체나 장소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모두 대인 강도(04011)에 연계한다.

죄명코드 중 약취강도(0138100000), 인질강도(113810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4-3〉 대인 강도(04011):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100000	약취강도	1138100000	인질강도
0138100100		1138100100	
0138240000	상습약취강도	1138240100	상습인질강도
0138240100			

나.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와의 연계

소분류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는 자동차나 차량 강도(040121), 기타 운송중 강도(040129)로 세분류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행위객체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표준범죄분류와 같이 세분류하여 연계할 수 없고, 해상강도만이 유일하게 연계가능하다.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는 다종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해상이란 영해나 공해를 의미하고 선박은 그 종류와 크기를 불문하지만 최소한 해상을 항해할 수 있는 정도를 요한다. 해상강도는 강도의 죄 중 행위객체가 선박 또는 선박 내의 재물로 한정되므로 타인이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을 강도하는 경우 소분류에 연계될 수 있다. 다만,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 등 01이나 03에 연계 가능한 경우는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해상강도(0138160000), 해상강도상해(01381700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4-4〉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160000	해상강도	0138180000	해상강도치사
0138160100		0138180100	
0138170000	해상강도상해	0138250000	상습해상강도
0138170100		0138250100	

〈표 3-4-5〉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48400	위반(단체등의해상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8600	위반(단체등의해상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8500	위반(단체등의해상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9000	위반(단체등의상습해상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기타(0409)와의 연계

중분류 기타의 소분류 기타(04090) 및 세분류 기타(040900)에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범죄유형은 없다.

[쟁점 1] 강도치상죄의 연계

강도치상죄는 기본범죄인 강도죄가 가지는 중한 결과발생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강도죄와 과실치상죄가 일반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된다. 비록 치상의 결과는 치사의 결과와 달리 일반적인 강도죄 보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나 강도의 죄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질로서 치상에 대한 죄질의 성격을 통해 목적의 분류에서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도치상죄 등 강도의 죄와 관련된 고의의 기본범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야기되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경우 고의의 기본범죄인 강도죄, 해상강도죄 등과 연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분류항목에 연계한다.

[쟁점 2] 준강도, 준특수강도의 연계 문제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도는 목적범으로 절도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결합범으로 그 성격에 대하여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 절도죄의 가중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나 절도죄의 가중유형이 아닌 독립된 구성요건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강도(0401)는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서, 먼저 재물을 취득하고 사후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준강도와 준특수강도를 연계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준강도는 강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도 있고, 선후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재물의 취득과 폭행·협박간의 근접성이 요구되고 폭행·협박의 정도에서도 강도죄와 차이가 없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점에서 그 불법성에 있어 강도죄와 차이가 없다. 또한 법정형 역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35조) 강도에 연계한다.

[쟁점 3] 공갈의 연계 문제

형법 제350조제1항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상 강도죄와 공갈죄는 모두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폭행·협박의 정도와 강취와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강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나, 공갈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협의의 폭행·협박이라는 점과 강도죄는 탈취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것이나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교부행위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는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갈을 강도(0401)이 아닌 기타(0409)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재산침해행위에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강도의 개념을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획득하는 행위(taking of obtaining)’ 행위로 정의하는데 이때 유형력(force)의 정도에 제한이 없고, 취하거나 획득하는 행위(taking of obtaining)에는 탈취뿐만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획득행위도 포함된다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갈을 강도(0401)에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0409는 ‘불특정 장소로부터 강탈행위, 약탈’로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폭행의 정도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 개념이 아니라 전쟁 기타 분쟁 상황에서 강탈 또는 약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갈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4] 약취강도와 인질강도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상 강도(0401)의 소분류 중 대인 강도(04011)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형법 제336조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인질강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약취 또는 유인의 대상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약취강도죄와 인질강도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 위반은 모두 대인 강도(04011)로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장소에 따른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세분류인 공공 장소 대인 강도(040111), 사적 장소 대인 강도(040112), 기타 대인 강도(040119)에는 연계할 수 없다.

3) 시산결과

〈표 3-4-6〉 대분류 04 시산결과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040111 공공장소 대인 강도	240	211	155	146	216	212	155	146
					040112 사적장소 대인 강도	0	0	0	0	0	0	0	0
					040119 기타 대인 강도	0	0	0	0	0	0	0	0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0	0	0	0	0	0	0	0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0	0	0	0	0	0	0	0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1 금융기관 강도	0	0	0	0	0	0	0	0
					040132 비금융기관 강도	0	0	0	0	0	0	0	0
				04014 가축 강도	040140 가축 강도	0	0	1	0	0	0	1	0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0	0	0	0	0	0	0	0
				0409 기타	04090 기타	8,444	6,540	5,717	5,770	6,683	5,696	4,971	4,538

ICCS 대분류 04 영역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침해 시산결과를 2017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4011 대인강도와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의 경우, 시산결과는 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현행법은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침해인 강도행위와 관련하여 객체에 따른 분류나 장소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아 시산이 불가한 경우이며 04011 대인강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에 의한 인적재산 강도로 약취강도(죄명코드 0138100000), 인질강도도 포함되나 최근 4년 동안 약취강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강도살인, 강도치사 등 대분류 01과 연계 가능한 행위나 강도강간, 강도준강간 등 대분류 03과 연계 가능한 행위 등은 대분류 04 시산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위 표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강도(죄명코드 0138070000, 0318070100)의 경우에는 현행형법에서 객체에 따른 분류나 장소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중분류인 0410 강도로 시산하였고 그 결과는 공공장소 대인강도(040111) 컬럼에 제시되었다.

4) 연계내용 및 문제점

ICCS적용에 대한 기본내용은 「국제범죄분류」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다음에서는 한국죄명코드와 ICCS 분류항목과의 연계·시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대분류 04 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7〉 대분류 04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	<p>포함:</p> <p>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취할 의도로 사람에게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인질강도, 약취강도, 공갈, 준강도, 준특수강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p>- 형법은 객체에 따른 분류나 장소에 따른 구분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대인강도(04011)와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로만 분류하고 모두 강도(0401)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70000</td> <td>강도</td> </tr> <tr> <td>0138080000</td> <td>특수강도</td> </tr> <tr> <td>0138090000</td> <td>준강도</td> </tr> <tr> <td>0139040000</td> <td>공갈</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70000	강도	0138080000	특수강도	0138090000	준강도	0139040000	공갈
		죄명코드	죄명											
0138070000	강도													
0138080000	특수강도													
0138090000	준강도													
0139040000	공갈													
-	<p>제외:</p> <p>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준강간, 강도강제추행, 강도준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의 예비, 음모 등 제외</p>													
04011	대인 강도	+	<p>포함:</p> <p>피해자와 직접 접촉에 의한 인적 재산 강도로 약취강도, 인질강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100000</td> <td>약취강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100000	약취강도						
		죄명코드	죄명											
0138100000	약취강도													
-	<p>제외:</p>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19	기타 대인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2	운송중인 귀중품 이나 물품 강도	+	<p>포함:</p> <p>이동 중의 재물 강도로 해상강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160000</td> <td>해상강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160000	해상강도						
		죄명코드	죄명											
0138160000	해상강도													
-	<p>제외:</p> <p>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 제외</p>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3	시설/기관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31	금융 기관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4	가축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9	기타 강도 행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9	기타		- 현행법상 연계 불가

5. 대분류 05 재산만 침해

대분류 재산만 침해(05)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 중분류 침입절도(0501), 절도(0502), 지적재산권 위반(0503), 재물손괴(0504), 기타(0509)로 분류된다.

재산만 침해(05)에는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04)와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행위(07)는 제외된다.

1) 침입절도(0501)와의 연계

중분류 침입절도(0501)는 절도를 범할 의도로 또는 실제 절도의 범행 중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건물이나 주거 또는 장소의 일부를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와 연계된다. 다만 단순 주거침입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침입절도는 다시 사업장 침입절도(05011), 가정집 침입절도(05012),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 기타 침입절도(05019)로 소분류된다. 소분류 가정집 침입절도는 다시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로 세분류된다.

침입절도 중 주거, 저택의 경우에는 가정집 침입절도로, 선박은 기타 침입절도로 연계하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침입절도(05011)로 연계한다.

소분류 사업장 침입절도(05011)과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은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하지 않는다.

죄명코드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0138020300), 야간방실침입절도(0138020500) 등으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1〉 침입절도(050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203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01380503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0138020500	야간방실침입절도	0138050500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가. 가정집 침입절도(05012)와의 연계

소분류 가정집 침입절도(05012)는 주거 또는 저택을 침입하는 행위로 건조물, 방실, 선박 침입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주거와 저택은 중분류 유형인 사업장, 가정집(사적 주거지), 공공장소, 기타 중 가정집에 해당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정집 침입절도는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로 세분류되나 현행법상 영구 또는 비영구 가정집의 구분은 불가하므로 소분류인 가정집 침입절도에 연계한다.

죄명코드 중 야간주거침입절도(0138020000), 야간저택침입절도(01380202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2〉 가정집 침입절도(0501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200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5000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100		0138050100	
0138020200	야간저택침입절도	0138050200	상습야간저택침입절도

나. 기타 침입절도(05019) 중 기타 침입절도(0501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침입절도(05019)는 기타 침입절도(050190)로 세분류되는데, 선박을 침입하는 행위가 연계 가능하다. 다만, 주거, 저택, 건조물, 방실 침입의 경우는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야간선박침입절도(013802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01380504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3〉 기타 침입절도(0501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20400	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5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쟁점 1] 국제표준범죄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와의 연계 곤란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소분류 이하의 분류기준은 침입장소, 행위 객체, 행위 객체의 성질에 의한 분류인 반면, 우리 형법은 기본 구성요건과 불법 또는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으로 구별되고 이에 따라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소분류 이하 최소 구별단위를 연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은 절도의 죄를 기본구성요건인 절도죄, 불법 또는 책임이 가중된 형태의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구분하고 독자적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반해,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침입절도(0501)를 사업장 침입절도(05011), 가정집 침입절도(05012),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 기타 침입절도(05019)로 소분류하고, 가정집 침입절도는 다시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로 세분류한다. 또한 절도(0502)의 경우에도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05021), 개인재산 절도(05022), 기업재산 절도(05023), 공공재산 절도(05024), 가축절도(05025), 서비스 절도(05026), 기타 절도 행위(05029)로 소분류하고, 이중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를 다시 육상 차량 절도(050211),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 육상 차량 부품 절도(050213), 기타 자동차 또는 부품 절도(050219)로 세분류하고, 개인재산 절도를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050221),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050222), 기타 개인재산 절도(050229)로 세분류하며, 기업재산 절도도 상점절도(050231), 기타 기업재산 절도(050239)로 세분류한다. 즉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행위의 객체나 대상에 따라 소분류 및 세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최소분류 단위에서 우리 죄명코드와 연계가 곤란하다.

[쟁점 2]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연계

우리 형법에서 절도와 주거침입의 결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어 범죄화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죄명코드를 부여한 범죄가 바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이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주거침입절

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별도의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침입절도와 그 구성요건이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입절도에 연계한다.

침입절도(0501)에 연계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저택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는 소분류인 가정집 침입절도(05012)에 연계하되 그 하위분류인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과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에는 연계할 수 없다. 우리 죄명코드는 주거나 저택이 영구 가정집인지, 비영구 가정집인지 구별하지 않으나 주거나 저택이 가정집임에는 분명하므로 소분류인 가정집 침입절도에 연계한다.

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건조물이나 방실은 침입절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가정집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 침입절도(05011)이나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에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공공장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중분류인 침입절도(0501)에 연계할 수밖에 없다.

[쟁점 3] 절도 목적 침입의 침입절도(0501) 또는 절도(0502) 연계

형법은 절도와 주거침입을 구별하고 죄명코드도 각각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침입절도(0501)를 중분류하면서 절도(0502)와 구별하고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침입절도(0501)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와 ‘절도를 범할 의도 또는 실제 절도의 범행 중’이라는 행위이다. 결국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우리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와 객관적 구성요건이 유사하나, 추가적으로 ‘절도를 범할 의도’ 또는 침입 이후 ‘절도의 실행’이라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이 요구되므로 우리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는 구별되고 절도와 주거침입이 혼합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절도죄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우리 형법과는 달리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범죄 중 일정한 장소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통한 재산권 침해 내지 재산권 침해 시도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 목적 침입의 경우 우리 형법체계에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결합범으로 처벌되고 이 경우 죄명코드는 중한 범죄인 절도죄의 죄명코드가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표준범죄분류상으로 침입절도(0501)가 아닌 절도(0502)로 연계 될 수 밖에 없고, 우리 절도죄의 죄명코드로는 절도죄의 단순일죄인지, 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실체적 결합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 4] 번역 용어의 적정성

소분류 가정집 침입절도(05012)는 다시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와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로 세분류된다. 즉 국제표준범죄분류의 Burglary of private residential premises는 가정집

침입절도 또는 개인거주지 침입절도로, 세분류인 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또는 (상시) 거주지에 대한 침입절도로, Burglary of non-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또는 임시거주지 침입절도로 번역된다.¹⁶⁾

Burglary of private residential premises는 최소한 사람이 소유, 임대, 리스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피해자들이 1년 중 대부분을 거주생활을 영위하는 사유거주지로 고정적인 거주인인 주택, 아파트 등 기타 거주지를, Burglary of non-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피해자들이 1년 중 임시 거주하는 사유 거주지로 여름별장, 호텔, 기타 임시적으로 임대한 장소를 의미한다.

반면 우리 형법은 절도의 장소에 따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라 하며 장소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하는 경우 주거, 저택, 건조물, 방실이 과연 영구 가정집인지, 비영구 가정집인지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거로 하는 방법은 자가 소유하는 방법, 전세, 월세 등 임대하는 방법, 일시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텔, 여관 등을 임대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하며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하기 어려운데, 번역을 함에 영구 가정집, 상시 거주지 또는 비영구 가정집, 임시 거주지로 분류하여 연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 현실에 맞게 용어를 번역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절도(0502)와의 연계

중분류 절도(0502)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와 연계 된다. 다만 장물의 소지, 취득, 알선, 처분 등 장물을 이용한 범죄, 강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절도, 절도강간, 절도강제추행 등 재산 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결합범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중분류 절도(0502)는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05021), 개인 재산 절도(05022), 기업재산 절도(05023), 공공재산 절도(05024), 가축 절도(05025), 서비스 절도(05026), 기타 절도 행위(05029)로 소분류되고, 이중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05021)은 육상 차량 절도(050211),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050213),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050219)로 세분류되며, 개인 재산 절도(05022)는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050221),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050222), 기타 개인 재산 절도(050229)로 세분류되고, 기업재산 절도(05023)도 상점 절도(050231), 기타 기업재산 절도(050239)로 세분류된다.

현행법은 절취의 대상인 재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소분류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05021)로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를 제외하고 모두 절도(0502)로 연계한다.

16) 강소영 외, 앞의 보고서, 123면 ; 황지태·김지영·박희정,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41면.

죄명코드 중 절도(0138010100), 특수절도(0138030100), 상습절도(013804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4〉 절도(050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10000	절도	0138040000	상습절도
0138010100		0138040100	
0138030000	특수절도	0138060000	상습특수절도
0138030100		0138060100	

〈표 3-5-5〉 절도(050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1900	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가.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05021)와의 연계

소분류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05021)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선박, 항공기의 불법 사용행위와 연계된다. 다만 자동차를 사용한 불법행위나 자동차 내 사유재산 절도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는 다시 육상 차량 절도(050211),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050219)로 세분류된다. 형법 제331조의2는 자동차등의 불법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상 차량 절도와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는 연계할 수 없고 육상 차량 불법 사용과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와 연계 가능하다.

(가)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과의 연계

세분류 육상 차량 불법 사용은 자동차, 원동기 장기 차전가의 불법 사용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육상 차량을 위법하게 취득하는 행위, 자동차 부품 절도, 자동차 내 사유재산의 절취 등은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자동차불법사용(0138030200),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01380305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6〉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30200	자동차불법사용	0138030600	상습자동차불법사용
0138030500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0138030900	상습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나)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050219)와의 연계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050219)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육상 차량을 제외한 선박, 항공기의 불법사용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의 오일이나 연료를 빼돌리는 행위나 동력 기구 내 사유재산 절취, 선박이나 항공기의 납치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죄명코드 중 선박불법사용(0138030300), 항공기불법사용(01380304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7〉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050219):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8030300	선박불법사용	0138030700	상습선박불법사용
0138030400	항공기불법사용	0138030800	상습항공기불법사용

[쟁점] 특수절도의 연계

형법은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도중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함으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위험이 가중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 『흥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여 절도 목적 침입과 관계없는 범죄유형으로 흥기의 휴대 또는 다수의 동시가담을 통하여 절도죄의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가중적 범죄에 대해 특수절도라는 하나의 죄명과 하나의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특수절도의 죄명코드로는 그 유형이 특수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흥기휴대절도인지, 합동절도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표준범죄분류와 특수절도를 연계할 경우 침입절도(0501)과 연계인지, 절도(0502)와의 연계인지 특수절도를 본질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특수절도는 합동절도 내지 흥기휴대 절도와 같이 절도에 대한 가중적 성질의 범죄가 그 발생빈도 등에서 특수절도를 본질적으로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의 죄명코드는 침입절도(0501)가 아닌 절도(0502)와 연계한다.

추후 특수절도의 죄명코드를 형법 제331조제1항과 제2항으로 구별하여 부여함으로써 제1항은 침입절도(0501)로, 제2항은 절도(0502)로 각각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적재산권위반(0503)과의 연계

중분류 지적재산권 위반(0503)은 소분류 지적재산권 위반(05030) 세분류 지적재산권 위반(050300)으로 분류되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불법 복제, 사용, 전재, 기타 침해행위와 연계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위반행위와 영업비밀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저작권법 위반(0220040400), 특허법위반(022702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8〉 지적재산권위반(0503):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0040400	위반	저작권법	0227030200	위반	상표법
0227020100	위반	특허법	0227020300	위반	발명진흥법
0227020200	위반	실용신안법	1227030100	위반	디자인보호법
0227030100	위반	의장법			

4) 재물손괴(0504)와의 연계

중분류 재물손괴(0504)는 재물에 대한 고의적 파괴, 훼손, 외관 훼손 행위와 연계 될 수 있다. 다만, 동물의 사상, 자연 훼손, 공무상봉인손상, 공무상표시손상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재물손괴(0504)는 공공재물 손괴(05041), 사유재물 손괴(05042), 회사재물 손괴(05043), 기타 재물 손괴(05049)로 소분류 된다. 회사재물 손괴는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가 없으므로 공공재물 손괴(05041), 사유재물 손괴(05042) 기타 재물 손괴(05049)로 연계하되, 공공재물 손괴, 사유재물 손괴, 기타 재물 손괴로 연계할 수 없는 재물손괴행위는 우선 중분류인 재물손괴에 연계한다.

재물손괴에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공무상보관물손상(0108090100), 현주건조물방화(0113010100), 폭발물파열(0113170000) 등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형법] 표 가운데 견고덕으로 표기된 범죄분류코드는 대분류 09영역의 중분류인 무기, 폭탄 및 파괴물질관련 행위(0901)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범죄분류는 대분류 09의 영역 가운데 해당분류로 분류한다.

〈표 3-5-9〉 재물손괴(0504):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8090100	공무상보관물손상	0114010200	현주건조물일수
0108090200	공무상간수물손상	0114010300	현존건조물일수
0108090300	공무상보관물은닉	0114010400	현주기차일수
0108090400	공무상간수물은닉	0114010500	현존기차일수
0108160100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	0114010600	현주전차일수
0108160200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	0114010700	현존전차일수
0108160300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	0114010800	현주자동차일수
0108160400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	0114010900	현존자동차일수
0108290100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치상	0114011000	현주선박일수
0108290200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치상	0114011100	현존선박일수
0108290300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치상	0114011200	현주항공기일수
0108290400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치상	0114011300	현존항공기일수
0113010000	현주건조물등방화	0114011400	현주광갱일수
0113010100	현주건조물방화	0114011500	현존광갱일수
0113010200	현주기차방화	0114014500	공익건조물일수
0113010300	현주전차방화	0114014700	공익기차일수
0113010400	현주자동차방화	0114014900	공익전차일수
0113010500	현주선박방화	0114015100	공익자동차일수
0113010600	현주항공기방화	0114015300	공익선박일수
0113010700	현주광갱방화	0114015500	공익항공기일수
0113020100	현존건조물방화	0114015700	공익광갱일수
0113020200	현존기차방화	0114015800	일반건조물일수
0113020300	현존전차방화	0114015900	일반기차일수
0113020400	현존자동차방화	0114016000	일반전차일수
0113020500	현존선박방화	0114016100	일반자동차일수
0113020600	현존항공기방화	0114016200	일반선박일수
0113020700	현존광갱방화	0114016300	일반항공기일수

0113080000	공익건조물등방화	0114016400	일반광갱일수
0113080100	공익건조물방화	0142010000	재물손괴
0113080200	공익기차방화	0142010100	
0113080300	공익전차방화	0142010200	재물은닉
0113080400	공익자동차방화	0142010300	문서손괴
0113080500	공익선박방화	0142010400	문서은닉
0113080600	공익항공기방화	0142010500	전자기록등손괴
0113080700	공익광갱방화	0142010600	전자기록등은닉
0113090000	일반건조물등방화	0142020000	공익건조물파괴
0113090100	일반건조물방화	0142020100	
0113090200	일반기차방화	0142030000	중손괴
0113090300	일반전차방화	0142030100	
0113090400	일반자동차방화	0142060100	특수재물손괴
0113090500	일반선박방화	0142060300	특수재물은닉
0113090600	일반항공기방화	0142060200	특수문서손괴
0113090700	일반광갱방화	0142060400	특수문서은닉
0113110000	일반물건방화	0142060600	특수전자기록등손괴
0113110100		0142060700	특수전자기록등은닉
0113130000	연소	0142060500	특수공익건조물파괴
0113130100	방화연소		
0113170000	폭발물파열		
0113170100			

〈표 3-5-10〉 재물손괴(0504):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50900	위반(단체등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2060391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1000	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7200	위반(단체등의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11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4100	위반(상습재물손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12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4400	위반(상습재물은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60300	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4200	위반(상습문서손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619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4500	위반(상습문서은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06035100	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4300	위반(상습전자기록등손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06036100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9924600	위반(상습전자기록등은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06037100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가. 공공재물 손괴(05041) 중 공공재물 손괴(050410)와의 연계

소분류 공공재물 손괴(05041)는 공공재물 손괴(050410)로 세분류되며, 공용서류, 공용전자기록 등의 행위와 연계된다. 다만,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은 연계에서 제외된다.

죄명코드 중 공용서류손상(0108070100), 공용건조물파괴(0108080100), 공용건조물방화(011307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11〉 공공재물 손괴(050410):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8070100	공용서류손상	0108150400	특수공용항공기파괴
0108070200	공용물건손상	01082408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

0108070300	공용서류은닉	01082409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
0108070400	공용물건은닉	0113070000	공용건조물등방화
0108070700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113070100	공용건조물방화
0108070800	공용전자기록등은닉	0113070200	공용기차방화
0108080000	공용건조물등파괴	0113070300	공용전차방화
0108080100	공용건조물파괴	0113070400	공용자동차방화
0108080200	공용선박파괴	0113070500	공용선박방화
0108080300	공용기차파괴	0113070600	공용항공기방화
0108080400	공용항공기파괴	0113070700	공용광경방화
0108140100	특수공용서류손상	0114014400	공용건조물일수
0108140200	특수공용물건손상	0114014600	공용기차일수
0108140300	특수공용서류은닉	0114014800	공용전차일수
0108140400	특수공용물건은닉	0114015000	공용자동차일수
0108150000	특수공용건조물등파괴	0114015200	공용선박일수
0108150100	특수공용건조물파괴	0114015400	공용항공기일수
0108150200	특수공용선박파괴	0114015600	공용광경일수
0108150300	특수공용기차파괴		

〈표 3-5-12〉 공공재물 손괴(050410):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43400	위반(단체등의공용서류 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4100	위반(단체등의공용전자 기록등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3500	위반(단체등의공용서류 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4300	위반(단체등의공용건조 물파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3700	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 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4400	위반(단체등의공용선박 파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3800	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 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4500	위반(단체등의공용기차 파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3900	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 무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4600	위반(단체등의공용항공 기파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44000	위반(단체등의공용전자 기록등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나. 사유재물 손괴(05042) 중 사유재물 손괴(050420)와의 연계

소분류 사유재물 손괴(05042)는 사유재물 손괴(050420)로 세분류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 자기소유일반물건 등에 대한 방화 등의 행위에 연계할 수 있다.

죄명코드 중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0113100100), 자기소유기차방화(01131002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011312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13〉 사유재물 손괴(050420): 형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3100000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	0114016500	자기소유건조물일수
0113100100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	0114016600	자기소유기차일수
0113100200	자기소유기차방화	0114016700	자기소유전차일수
0113100300	자기소유전차방화	0114016800	자기소유자동차일수
0113100400	자기소유자동차방화	0114016900	자기소유선박일수
0113100500	자기소유선박방화	0114017000	자기소유항공기일수
0113100600	자기소유항공기방화	0114017100	자기소유광경일수
0113100700	자기소유광경방화		
0113120000			
01131201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다. 기타 재물 손괴(05049) 중 기타 재물 손괴(050490)와의 연계

소분류 기타 재물 손괴(05049)는 기타 재물 손괴(050490)로 세분류되며, 형법상 신앙에 관한 죄 중 사체등오욕, 사체손괴, 분묘발굴사체손괴, 유골오욕 행위 등에 연계할 수 있다.

죄명코드 중 사체등오욕(0112020100), 사체등손괴(0112010100), 분묘발굴사체등손괴(011208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형법범] 표 가운데 견고덕으로 표기된 범죄분류코드는 대분류 09영역의 중분류인 보검 및 안전위반 행위(0902)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범죄분류는 대분류 09의 영역 가운데 해당분류로 분류한다.

〈표 3-5-14〉 기타 재물 손괴(050490):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2020000	사체등오욕	0112020200	유골오욕
0112020100		0112040200	유골손괴
0112040000	사체등손괴	0112050200	유골유기
0112040100		0112060200	유골은닉
0112050000	사체등유기	0112070200	유골영득
0112050100		0112080200	분묘발굴유골손괴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90200	분묘발굴유골유기
0112060100	사체은닉	0112100200	분묘발굴유골은닉
0112070000	사체등영득	0112110200	분묘발굴유골영득
0112070100		0112040400	관내장치물손괴
0112080000	분묘발굴사체등손괴	0112050400	관내장치물유기
0112080100		0112060400	관내장치물은닉
0112090000	분묘발굴사체등유기	0112070400	관내장치물영득
0112090100		011208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손괴
0112100000	분묘발굴사체등은닉	011209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유기
0112100100		011210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은닉
0112110000	분묘발굴사체등영득	011211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영득
0112110100			

[쟁점 1] 국가적·사회적 법익침해 관련 재물손괴 범죄와의 연계

형법상 재물손괴는 기본범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제368조 중손괴죄, 제369조 특수손괴죄 이외에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재물손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8장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41조의 공용서류 등의 무효 및 공용물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와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의 각종 방화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각종 일수죄 등 재물손괴 범죄는 매우 다양하다.¹⁷⁾ 따라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이라도 재물손괴(0504)나 그 하위분류에 연계한다.

[쟁점 2] 행위 객체와 행위 태양의 문제

형법은 행위 객체로서의 재물을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건조물,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광

17)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중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재산 침해로 보기 어렵다.

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범죄화하고, 죄명코드 역시 각각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제표분범죄분류에서는 재물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형법의 재물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행위 객체의 죄명코드를 연계한다.

또한 형법은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손괴 이외에 은닉, 방화, 일수, 파괴 등을 재물손괴와 동일한 법조문이나 유사한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은닉, 방화, 일수, 파괴 등은 손괴와 동일하게 재물의 효용가치를 손상하는 행위이고 형법상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표준범죄분류의 damage에는 의도적 파괴(willful destruction), 일반적 효용 훼손(damage), 외관 훼손(defacement)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손괴, 은닉, 방화, 일수, 파괴 등 다양한 행위 태양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재물손괴에 연계한다.

[쟁점 3] 공공재물, 공용재물 등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공공 재물손괴는 정부가 소유한 재물로서 부동산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 재물손괴(05041)에 연계할 수 있는 죄명코드는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등 손상, 특수공용서류·선박·기차·항공기·파괴이다. 위 범죄들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여기서 공용은 정부가 소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상 보관물·간수물, 공익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은 공무상 보관·간수의 목적이 되는 사적 소유의 재물이나 공익에 제공된 사인 소유의 건조물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반드시 정부가 소유한 재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공 재물손괴에 연계하지 못하고 중분류인 재물손괴(0504)에 연계한다.

또한 공용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에 대한 범죄로 방화의 죄, 일수의 죄에서 형법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용은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정부 소유이건 개인 소유이건 불문하고 공용에 공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방화나 일수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중분류인 재물손괴(0504)에 연계한다.

5) 기타(0509)와의 연계

중분류 기타의 소분류 기타(05090) 및 세분류 기타(050900)에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범죄유형은 재산침해 행위 중 재산의 불법유용, 불법점거, 주택 또는 토지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 강제진입 및 점거행위로 장물, 주거침입, 경계침범 등의 행위와 연계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 시스템 손상, 자연훼손,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등은 연계에서 제외한다. 즉 기타(0509)는 대분류 05 중 나머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04, 07 등의 대분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침해행위로서 재산에 대한 침해만을 야기하는 기타 행위 유형을 포섭하는 분류라 할 수 있다.

죄명코드 중 주거침입(0136010100), 장물취득(0141010100) 등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5-15〉 기타(0509):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6010000	주거침입	0141030200	상습장물양여
0136010100		0141030300	상습장물운반
0136010200	저택침입	0141030400	상습장물보관
0136010300	건조물침입	0141030500	상습장물알선
0136010400	선박침입	01410400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0136010500	방실침입	0141040100	
0136010600	항공기침입	0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여
0136030000	특수주거침입	0141040300	업무상과실장물운반
0136030100		0141040400	업무상과실장물보관
0136030200	특수저택침입	0141040500	업무상과실장물알선
0136030300	특수건조물침입	0141040600	중과실장물취득
0136030400	특수선박침입	0141040700	중과실장물양여
0136030500	특수방실침입	0141040800	중과실장물운반
0136030700	특수항공기침입	0141040900	중과실장물보관
0141010000	장물취득	0141041000	중과실장물알선
0141010100		0142070000	경계침범
0141010200	장물양여	0142070100	
0141010300	장물운반	1141010200	장물양도
0141010400	장물보관	1141030200	상습장물양도
0141020000	장물알선	1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도
0141020100		1141040700	중과실장물양도
0141030000	상습장물취득		
0141030100			

〈표 3-5-16〉 기타(0509):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5300	위반(장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50200	위반(단체등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4700	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03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5700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04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6700	위반(집단·흥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5300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7700	위반(야간집단·흥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60100	위반(상습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387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617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206050100	위반(단체등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206035700	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쟁점] 주거침입의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절도목적 주거침입, 즉 침입절도(0501)만 분류하고 그 외의 주거침입에 대한 분류는 없다. 반면 재산침해 행위 중 기타(0509)는 재산의 불법유용, 불법점거, 주택 또는 토지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 강제진입 및 점거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성범죄나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이 아닌 단순 주거침입은 행위 유형상 기타(0509)로 연계한다.

6) 시산결과

〈표 3-5-17〉 대분류 05 시산결과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5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3,286	4,587	4,367	4,341	2,633	4,086	3,931	3,954		
			05012	연구·정기 침입절도	0	0	0	0	0	0	0	0		
				비연구·정기 침입절도	3,032	3,185	2,987	2,434	1,916	2,307	2,286	2,020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4	9	4	38	4	10	4	37		
	0502	절도	05021	유상차량 절도	260,100	238,261	195,693	176,994	115,018	121,096	112,366	107,802		
				유상차량사양품 절도	345	374	510	543	248	289	412	443		
				유상차량소품 절도										
				기타 자동차 또는 소품 절도	17	8	12	5	12	10	11	7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 개인재산 절도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기타 개인재산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32,830	44,459	25,961	18,022	17,596	19,536	14,349	11,015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62,188	62,867	61,627	58,675	31,280	32,958	34,735	34,231		

				손괴										
			05042	사유재물손괴	050420	사유재물손괴	28	38	33	32	28	36	34	30
			05043	회사재물손괴	050430	회사재물손괴								
			05049	기타재물손괴	050490	기타재물손괴	41	52	37	39	32	40	35	31
	0509	기타	05090	기타	050900	기타	12,070	14,264	13,089	13,114	10,008	11,622	10,222	10,109

ICCS 대분류 05 영역 재산만 침해행위 시산결과를 2017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침입절도 중 주거, 자택의 경우는 05012 가정집 침입절도로, 선박 등 기타 침입절도는 05019 기타침입절도로 분류하여 시산하였다. 가정집 침입절도는 050121 영구가정집 침입절도와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로 구분되었으나 현행법상 주거지의 영구 또는 비영구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분류인 05012 가정집 침입절도로 시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컬럼에 표기되었다. 2017년 기준 사업장 침입절도(05011) 4,341건, 가정집 침입절도(05012) 2,434건, 기타 침입절도(05019) 38건이 발생하였고 총 침입절도 발생 건수는 6,813건으로 시산되었다.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기준 2017년 침입절도 발생건수 6,813건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분류 절도(0502)는 피해자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와 연계되거나 현행법은 절취의 대상인 재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를 제외하고 모두 절도(0502)로 연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전체 0502 절도 발생건수는 176,994건으로 시산되었고 이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7년 절도 발생건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연계가 불가한 분류코드로는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213 육상차량 부속품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절도 등은 연계불가로 인해 시산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6) 연계내용 및 문제점

ICCS적용에 대한 기본내용은 「국제범죄분류」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다음에서는 한국죄명코드와 ICCS 분류항목과의 연계·시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대분류 05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18〉 대분류 05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5 재산만침해				
0501	침입절도	+	포함: 절도를 범할 의도로 또는 실제 절도의 범행 중 유형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건	- 침입절도 중 주거, 자택의 경우는 가정집 침입절도로, 선박은 기타 침입절도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침입절도로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5 재산만침해											
			물이나 주거 또는 장소의일부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								
		-	제외: 단순 주거침입 등 제외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2	가정집 침입절도	+	포함: 주거 또는 주택을 침입하는 행위								
		-	제외: 건조물, 방실, 선박 침입의 경우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20000</td> <td>야간주거침입절도</td> </tr> <tr> <td>0138020200</td> <td>야간주택침입절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200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200	야간주택침입절도		
죄명코드	죄명										
01380200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200	야간주택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9	기타 침입절도	+	포함: 선박을 침입하는 경우 포함								
		-	제외: 주거, 주택, 건조물, 방실 침입의 경우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20400</td> <td>야간선박침입절도</td> </tr> <tr> <td>0138050400</td> <td>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20400	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5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죄명코드	죄명										
0138020400	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5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0502	절도	+	포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	제외: 장물의 소지, 취득, 알선, 처분 등 장물을 이용한 범죄, 강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절도, 지적재산권 절도, 신원절도, 절도강간, 절도강제								
			1. 죄명코드 연계 - 침입절도를 제외하고 육상 차량 절도와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로 구분하되 그 외의 절도행위는 모두 절도에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10100</td> <td>절도</td> </tr> <tr> <td>0138030100</td> <td>특수절도</td> </tr> <tr> <td>0138040100</td> <td>상습절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10100	절도	0138030100	특수절도	0138040100	상습절도
죄명코드	죄명										
0138010100	절도										
0138030100	특수절도										
0138040100	상습절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5 재산만침해			
			추행, 절도유사강간 등 재산 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결핵범 제외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	포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선박, 항공기 불법 사용 행위
		-	제외: 자동차를 사용한 불법행위, 자동차 내 사유재산 절도 등 제외
050211	육상 차량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	포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포함
		-	제외: 소유의 의사로 육상 차량을 위법하게 취득한 행위, 자동차 부품 절도, 자동차 내 사유재산의 절취 등 제외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	포함: 선박, 항공기 불법사용 포함
		-	제외: 동력기구의 오일이나 연료를 빼돌리는 행위나 동력기구내 사유재산 절취, 자동차나 항공기 납치 등 제외
05022	개인 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29	기타 개인 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3	기업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5 재산만침해																											
050231	상점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4	공공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5	가축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6	서비스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9	기타 절도 행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3	지적재산권 위반	+	<p>포함:</p> <p>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불법 복제, 사용, 전재 또는 기타 침해행위</p> <table border="1"> <caption>1. 죄명코드 연계</caption>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0040400</td> <td>위반</td> <td>저작권법</td> </tr> <tr> <td>0227020100</td> <td>위반</td> <td>특허법</td> </tr> <tr> <td>0227020200</td> <td>위반</td> <td>실용신안법</td> </tr> <tr> <td>0227030200</td> <td>위반</td> <td>상표법</td> </tr> <tr> <td>0227030100</td> <td>위반</td> <td>의장법</td> </tr> <tr> <td>0227020300</td> <td>위반</td> <td>발명진흥법</td> </tr> <tr> <td>1227030100</td> <td>위반</td> <td>디자인보호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0040400	위반	저작권법	0227020100	위반	특허법	0227020200	위반	실용신안법	0227030200	위반	상표법	0227030100	위반	의장법	0227020300	위반	발명진흥법	1227030100	위반	디자인보호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0040400	위반	저작권법																									
0227020100	위반	특허법																									
0227020200	위반	실용신안법																									
0227030200	위반	상표법																									
0227030100	위반	의장법																									
0227020300	위반	발명진흥법																									
1227030100	위반	디자인보호법																									
-	<p>제외:</p> <p>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위반행위, 영업비밀 등 제외</p>																										
0504	재물 손괴	+	<p>포함:</p> <p>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외관 훼손 행위</p> <table border="1"> <caption>1. 죄명코드 연계</caption>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8090100</td> <td>공무상보관물손상</td> </tr> <tr> <td>0113010100</td> <td>현주건조물방화</td> </tr> <tr> <td>0113170000</td> <td>폭발물파열</td> </tr> <tr> <td>0114010200</td> <td>현주건조물일수</td> </tr> <tr> <td>0142010000</td> <td>재물손괴</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8090100	공무상보관물손상	0113010100	현주건조물방화	0113170000	폭발물파열	0114010200	현주건조물일수	0142010000	재물손괴												
		죄명코드	죄명																								
0108090100	공무상보관물손상																										
0113010100	현주건조물방화																										
0113170000	폭발물파열																										
0114010200	현주건조물일수																										
0142010000	재물손괴																										
-	<p>제외:</p> <p>동물 사상, 자연 훼손, 공무상봉인손상, 공무상표시손상, 치상, 치사, 예비 및 음모 등 제외</p>																										
05041	공공재물 손괴	+	<p>포함:</p> <p>공용서류, 공용전자 기록 등의 손상, 공용건조물파괴 등을 포함</p> <table border="1"> <caption>1. 죄명코드 연계</caption>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8070100</td> <td>공용서류손상</td> </tr> <tr> <td>0108080100</td> <td>공용건조물파괴</td> </tr> <tr> <td>0113070100</td> <td>공용건조물방화</td> </tr> <tr> <td>0114014400</td> <td>공용건조물일수</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8070100	공용서류손상	0108080100	공용건조물파괴	0113070100	공용건조물방화	0114014400	공용건조물일수														
		죄명코드	죄명																								
0108070100	공용서류손상																										
0108080100	공용건조물파괴																										
0113070100	공용건조물방화																										
0114014400	공용건조물일수																										
-	<p>제외:</p> <p>자기소유일반건조물</p>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5 재산만침해			
			등은 제외
05042	사유재물 손괴	+	포함: 자기소유일반건조물, 자기소유일반물건 등에 대한 방화 등을 포함
		-	제외:
05043	회사재물 손괴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49	기타 재물 손괴	+	포함: 사채등오류, 사채손괴, 분묘발굴사채손괴, 유골오류 등을 포함
		-	제외:
0509	기타	+	포함: 재산침해 행위 중 재산의 불법유용, 불법점거, 주택 또는 토지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 강제진입 및 점거 행위로 건물, 주거침입, 경계침범 등을 포함
		-	제외: 컴퓨터 시스템 손상, 자연훼손, 주거침입 철도, 주거침입강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습신체수색 등 제외

6.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거나 향정신성 물질관련 위법 행위

ICCS 대분류 06은 “관리대상 약물이거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분류 06은 0601, 0602, 0609의 세 영역의 중분류로 다시 나뉜다. 먼저 0601은 “관리대상 약물¹⁸⁾ 또는 전구물질¹⁹⁾ 관련 위법행위”(Unlawful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s or precursors)를, 0602는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Unlawful acts involving alcohol, tobacco or other controlled substances)를 규정하고 있고, 0609는 “기타”(Other acts involving controlled drug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라는 표현으로 0601과 0602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유형들을 담고 있다.

1) ICCS 중분류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중분류 0601은 06011, 06012, 06019 세 항목의 소분류로 나뉜다. 06011은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을, 06012는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06019는 위 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 3-6-1〉 ICCS 중분류 0601의 유형 및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 ²⁰⁾ , 소지, 구매, 사용, 밀매, 경작, 또는 생산하는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을 소지, 구매, 사용, 경작, 또는 생산하는 행위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06012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개인적 소비를 위한 마약의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이 없으면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제공, 판매목적 제공, 유통, 판매,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수입, 수출, 경작, 생산, 제조, 추출 또는 준비하는 행위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11-060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18)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과 수정된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말한다.

19)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규정된 것으로 불법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 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0) ‘취급’(Handling)이라는 용어는 중분류 0601에서 사용하고 하위분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 소분류와 세분류에 적시된 여러 가지 행위들(소지, 구매, 사용, 밀매, 경작, 생산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강소영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2017 통계청 용역연구, 152면).

중분류 0601과 연계되는 우리나라 법률로는 「형법」(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표 3-6-2〉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7010100	아편제조	0117100100	상습아편수입
0117010200	물핀제조	0117100200	상습물핀수입
0117020100	아편수입	0117110100	상습아편판매
0117020200	물핀수입	0117110200	상습물핀판매
0117030100	아편판매	0117120100	상습아편소지
0117030200	물핀판매	0117120200	상습물핀소지
0117040100	아편소지	01171301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040200	물핀소지	0117130200	상습아편흡식기수입
0117050100	아편흡식기제조	0117130300	상습아편흡식기판매
0117050200	아편흡식기수입	0117130400	상습아편흡식기소지
0117050300	아편흡식기판매	01171401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050400	아편흡식기소지	0117140200	상습세관공무원의아편수입허용
01170601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140300	상습세관공무원의물핀수입
01170602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140400	상습세관공무원의물핀수입허용
0117060300	세관공무원물핀수입	0117140500	상습세관공무원의아편흡식기수입
0117060400	세관공무원물핀수입허용	0117140600	상습세관공무원의아편흡식기수입허용
0117060500	세관공무원아편흡식기수입	0117150100	상습아편흡식
0117060600	세관공무원아편흡식기수입허용	0117150200	상습물핀주사
0117070100	아편흡식	0117160100	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
0117070200	물핀주사	0117160200	상습물핀주사장소제공
0117080100	아편흡식장소제공	0117170100	단순아편소지
0117080200	물핀주사장소제공	0117170200	단순물핀소지
0117090100	상습아편제조	0117170300	단순아편흡식기소지
0117090200	상습물핀제조		

먼저 형법범은 행위별로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²¹⁾ 일견 연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인다. 형법상 관련조항에서 행위객체로 규정된 아편·물핀 등은 모두 관리대상 약물에 해당하고, 행위 태양 역시 제조·구매·사용 및 이에 대한 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ICCS 분류와 상당부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법의 규정들에서는 ICCS 소분류의 큰 기준인 ‘개인적 소비 목적’ 여부를 따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160여 개에 달하는 많은 분류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형법상의 규정들을 ICCS 소분류 또는 세분류와 정확하게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굳이 연계하자면 아편 또는 물핀의 소지나 흡식·주사 등의 행위유형은 그 개념상 ‘개인소비목적’으로, 제조나 판매행위는 ‘비개인소비목적’의 행위로 일반적으로는 포섭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흡식·주사’가 전형적인 개인소비목적의 행위임에 반해 ‘소지’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소비목적이 아닌 판매 등을 위한 예비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조나 판매 역시 ‘판매’가 전형적인 비개인소비목적의 행위임에 반해 ‘제조’는 비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

21) 아편제조(0117010100~0117010112), 물핀제조(0117010200~0117010212), 아편수입(0117020100~0117010112), 물핀수입(0117020200~0117020212), 아편판매(0117030100~00117030112), 물핀판매(0117030200~0117030212), 아편소지(0117040100~00117040112), 물핀소지(0117040200~0117040212), 세관공무원아편수입(0117060100~0117060112),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0117060200~0117060212) 세관공무원물핀수입(0117060300~0117060312), 세관공무원물핀수입허용(0117060400~0117060412), 아편흡식(0117070100~0117070112), 물핀주사(0117070200~0117070212), 아편흡식장소제공(0117080100~0117080112), 물핀주사장소제공(0117080200~0117080212), 단순아편소지(0117170100~0117170102), 단순물핀소지(0117170200~0117170202)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라 개인소비목적의 제조행위 또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난점이 있다.

형법상 아편·물핀 관련 구성요건을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 순서에 따라 ICCS 분류에 연결해 보면 아래와 같은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아편·물핀의 '제조'는 ICCS 분류가 개인소비목적과 비개인소유목적의 생산행위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주체에 따라 세분류 060112로도 세분류 060122로도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상위분류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상위분류인 소분류 06011과 06012 역시 개인소비목적과 비개인소유목적으로 나뉘어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결국 그보다 더 상위분류인 중분류 0601로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아편·물핀의 '수입'은 해외로부터의 국내반입을 말하며 일종의 구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편·물핀 등의 수출입은 소분류 06019의 '제외'(Exclusions) 항목에 의해 소분류 08042(수출입규정 위반)으로 연계되고 있으므로 대분류 06에서는 연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편·물핀의 '판매'는 전형적인 비개인소비목적 행위로서, 세분류 060121이 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이에 연계될 수 있다.

아편·물핀의 '소지'의 경우 비개인소비목적의 소분류 06012에는 '소유'라는 행위태양이 없으므로 '소지'는 일응 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11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개인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을 규정한 세분류 060111로 연계됨이 타당하다.

아편·물핀의 '흡식·주사'는 전형적인 개인소비목적 행위로서, 개인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을 규정한 세분류 060111에 정확히 연계될 수 있다.

아편·흡식기 관련범죄 및 아편·물핀의 흡식·주사 관련 장소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소분류 06019는 '규제된 약물 관련 기타 불법적 행위'라는 표제 아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규제된 약물을 '취급, 사용, 소지'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소분류 06019는 '포함'(Inclusions) 항목에 '마약 관련용품과 연관된 불법행위'(illicit acts involving drug paraphernalia) 및 '규제된 약물의 소비 조장'(encouraging the consumption of controlled drugs)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아편·흡식기 관련 범죄 및 아편·흡식 및 물핀·주사 장소제공 등 범죄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행위는 소분류 06019와 연계됨이 타당하다.

한편 우리 형법은 세관공무원이 아편·물핀의 수입, 아편·흡식기 관련범죄 및 아편·물핀의 흡식·주사 관련 장소제공 등에 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범죄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일견 소분류 060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편·물핀 관련행위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가담은 소분류 06019의 '제외'(Exclusions) 항목에 의해 소분류 08041(관세규정 위반)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대분류 06에서는 연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법범을 살펴본다. 특별법범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비목적과 비개인소비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더욱이 형법과 달리 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법률당 1~3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분류는 물론 소분류와의 연계 또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3-6-3〉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특별법법1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0020100	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300	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200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물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ICCS 06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죄명코드에서는 마약, 향정, 대마 등 세 가지 물질에 코드를 하나씩 부여한 것이 전부여서 ICCS 코드와 1:1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은 ICCS 세분류에 규정된 행위, 즉 마약·향정·대마의 소자·구매·사용·경작·생산·판매·경작·원료물질전환·원료물질거래 등 행위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행위유형 가운데는 개인소비목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소분류로 연계하는 것도 곤란하다. 결국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중분류인 0601로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6-4〉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특별법법2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0020500	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법률은 제3장에서 제6조 내지 제18조에 걸쳐 형사처벌규정과 함께 마약류 거래로부터 비롯된 수익의 몰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으로 한 불법수입등(제6조), 불법수익 은닉·가장(제7조), 불법수익 수수(제8조), 마약류 물품 수입(제9조) 등과 함께 선동(제10조), 불법수익등 미신고(제11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선동이나 미신고 등 이질적인 구성요건도 있으나, 이 법률의 궁극적 목적은 이들이 업으로 마약류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의 영업법²²⁾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법률 또한 마약류관리법과 마찬가지로 ICCS 중분류 0601로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6-5〉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1): 특별법법3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2600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39400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법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규정은 소자·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22) 영리를 목적으로 금지된 영업을 하는 범죄

한 마약류 등의 가액이 일정 액수를 넘을 경우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취지여서, 이는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와 동일한 불법에 대한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열거된 행위태양에서도 바로 보여지듯이 개인소비목적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결국 이 법률의 위반행위 역시 ICCS 중분류 0601로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ICCS 중분류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중분류 0602는 06021, 06022, 06029 세 항목의 소분류로 나뉜다. 중분류 0601이 개인적 소비목적 유무에 따른 두 가지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었던 데 반해, 중분류 0602는 중분류에서는 개인적 소비목적은 묻지 않고 주류 및 담배 제품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06021, 06022), 그리고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06029)를 규율하고 있고, 세분류에서 개인적 소비목적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

〈표 3-6-6〉 ICCS 중분류 0602의 유형 및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담배 또는 다른 규제된 물질들을 취급,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취급,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술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11-0602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취급,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06022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1-0602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담배 제품 또는 기타 규제된 물질을 처리,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규제된 약물을 스포츠 금지 약물로 사용;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약물이나 기타 불법 제품을 제공 또는 소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 금지약물을 사용하도록 조장; 약물 또는 기타 규제된 물질을 거래

중분류 0602와 연계되는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조세법 처벌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이 있다.

〈표 3-6-7〉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2): 특별법법1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1050100	위반	조세법처벌법			

「조세법 처벌법」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조세포탈(제3조), 면세유류 관련 범죄(제4조, 제4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제5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제6조), 체납처분 면탈(제7조), 장부 소각·파기(제8조), 성실신고 방해(제9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제10조), 명의대여(제11조),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제12조), 원천징수 관련 범죄(제13조, 제14조), 해외금융계좌 관련 범죄(제15조, 제16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포탈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제6조) 관련 규정이 중분류 060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는 술·담배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인 동시에 조세포탈 행위의 한 유형이어서 법률의 내용 속에 ICCS 대분류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각 범죄유형간의 공통점이 거의 없어 현재의 죄명코드로는 범죄유형별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연계대상에서 제외하되, 장기적으로 범죄행위 유형별로 죄명코드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표 3-6-8〉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2): 특별법법2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20300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규정의 주된 내용은 담배의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담배를 광고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제31조의2, 제32조 등 참조). 그러나 이들 규정 외에도 건강검진 결과의 무단공개(제31조) 등 이질적인 규정도 있어 형벌 규정 간의 동질성은 낮다.

법률의 내용 속에 ICCS 대분류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각 범죄유형간의 공통점이 거의 없어 현재의 죄명코드로는 범죄유형별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연계대상에서 제외하되, 장기적으로 범죄행위 유형별로 죄명코드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표 3-6-9〉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0602): 특별법범3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3020400	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점에서 소분류 06022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들이다. 다만 개인소비목적의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세분류 060221, 060222, 060229 대신 상위 분류인 소분류 06022로 연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범죄코드는 「담배전매법」 위반(213020100) 및 「한국담배인삼공사법」 위반(213020300)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담배전매법」은 1988년 「담배사업법」²³⁾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고, 「한국담배인삼공사법」 역시 1997년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폐지되었는바, 이에 대한 죄명코드는 향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3) ICCS 중분류 0609 “기타”

중분류 0609는 중분류 0601, 0602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주류·담배 등 향정신성 물질의 취급 등 중분류 0601, 0602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예시로는 향정신성물질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운전(02072), 음주와 흡연관련 연령규제 위반 또는 술 또는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11021), 마약 또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 사망 유발(010321); 수입/수출관련 위반(08042), 세관관련 위반(08041)을 들고 있다. ‘기타’ 행위를 포섭하기 위한 항목으로 소분류와 세분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표 3-6-10〉 ICCS 중분류 0609의 유형 및 행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609	기타 0601-060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규제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과 관련된 행위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대상 약물, 향정신성 물질, 주류, 담배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유형은 가급적 세분류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분류로 연계하였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위유형은 찾기 어렵다.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관리대상 약물 또는 향정신성 물질과 관련된 기타 행위들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특별법은 통상 법 전체에 하나의 범죄분류코드가 부여되므로 0609와 1:1 연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3) 「담배사업법」 [시행1989. 1. 1.] [법률 제4065호, 1988.12.31., 제정]

4) 시산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상 아편·물핀 관련범죄는 개인소비목적 여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를 구분하는 ICCS 소분류에 연계하기가 어렵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소분류와 연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몇몇 구성요건은 세분류와 정확히 연계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모두 중분류 0601과 연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태로서는 시산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시산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해당 분류코드와 가까운 세분류로 연계하여 시산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편·물핀의 ‘소지’와 ‘흡식 또는 주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세분류 060111로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또한 아편·물핀의 ‘판매’는 전형적인 비개인소비목적 행위로서, 세분류 060121이 이에 정확히 해당하여 이에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아편·물핀의 ‘제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이 개인소비목적과 비개인소유목적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중분류 0601로 연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제조가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인소비목적이지 아닌 판매·반포 등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형법상 아편·물핀 등 제조행위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을 규정한 세분류 060122로 일응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또한 아편흡식기 및 아편·물핀의 흡식·주사 장소제공 행위는 소분류 06019로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특별법범의 경우는 역시 0601 역시 개인소비목적 행위의 문제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이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인소비목적이지 아닌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을 규정한 세분류 060122로 일응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한편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행위를 규정한 중분류 0602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 위반행위를 세분류 060229와 연계하여 시산하였다. 주류의 불법 제조, 매매, 유통은 「조세범 처벌법」상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제6조)에 해당할 터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은 무면허 주류 관련행위가 동법의 수많은 위반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여러 행위태양이 있고 이를 소분류 이하에 연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담배사업법의 주된 불법은 담배류의 불법적 제조, 매매, 유통에 있다고 생각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통계적 왜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3-6-11〉 대분류 06 시산결과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6	0601	06011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0	0	0	1	0	0	0	1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6012	비개인소비를 법규, 마약, 밀매, 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소비를 법규, 마약, 밀매	0	0	0	0	0	0	0	0				
						060122	비개인소비를 법규, 마약, 제조	6,153	8,384	8,872	9,206	5,755	7,866	8,503	8,870				
						060123	비개인소비를 법규,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소비를 법규, 전구,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소비를 법규, 마약, 밀매, 재배, 생산												
				06019	기타 마약 법규, 관, 면, 편, 면, 편, 면							0	0	0	0	0	0		
				0602	주, 배, 기타 대상, 실, 집행, 위, 행	06021	주, 배, 생산, 제조, 판매, 운송	060211	주, 배, 불법, 제조, 운송										
								060212	주, 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060219	기타 주, 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06022	담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060221	담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060222	담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060229	기타 담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113	189	151	273	109	173	148	262		
						06029	기타 주, 배, 불법, 제조, 판매, 운송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불법행위										
	0609	기타											

시산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060111(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에 할당된 아편·몰핀의 (상습적) 소자흡사·주사 관련 10개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범죄 건수는 단 1건이었다. 060121(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에 할당된 아편·몰핀 판매 관련 4개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범죄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볼 때, 형법상 관련 조항의 사문화가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060122(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에 할당된 아편·몰핀 제조 관련 4개 분류코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향정·대마) 3개 분류코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향정)의 2개 분류코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1개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범죄건수는 연간 8~9,000건으로 중분류 0601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마약류 관련 특별법이 행위태양 및 개인소비목적 구분 없이 통으로 범죄분류코드를 설정하고 있어서, 시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 가운데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된다고 여겨지는 ‘비개인소비목적’의 ‘생산·제조’에 해당 분류코드들을 매칭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형법상 아편·몰핀 관련범죄보다는 특별법상 구성요건이 거의 전부일 것으로 생각되며,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별법상 구성요건 중 어느 범죄가 이 수치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시산의 한계이다. 결국 이러한 ‘몰표’의 방지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특별법상 범죄분류코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 위반행위를 연계한 세분류 060229에는 최근 4년간 100건대 초반에서 200건대 후반으로의 급격한 증가가 관측되었다.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담배가격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담배사업법의 어떤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그 수치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예상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류코드 세분화의 필요성은 전술한 바와 같다.

5) 연계내용 및 문제점

ICCS적용에 대한 기본내용은 「국제범죄분류」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다음에서는 한국죄명코드와 ICCS 분류항목과의 연계·시산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대분류 06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12〉 대분류 06영역 연계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개인적 소비를 목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																																		
	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 소지, 구매, 사용, 밀매, 경작, 또는 생산 하는 행위		<p>- 아래 죄명코드 연계 가능</p> <p>-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규정된 구성요건 중 아편-물핀의 제조행위는 개인소비목적 여하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12로도 비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22로도 구분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상위분류인 중분류 0601로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임</p> <p>- 다만 시산에 있어서는, 아편-물핀의 제조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인소비목적이 아닌 판매-반포 등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형법상 아편-물핀 등 제조행위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을 규정한 소분류 060122로 연계하여 시산하였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10100</td> <td>아편제조</td> </tr> <tr> <td>0117090100</td> <td>상습아편제조</td> </tr> <tr> <td>0117010200</td> <td>물핀제조</td> </tr> <tr> <td>0117090200</td> <td>상습물핀제조</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범</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0020100</td> <td>위반(마약)</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0020200</td> <td>위반(향정)</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0020300</td> <td>위반(대마)</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0020500</td> <td>위반</td> <td>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td> </tr> <tr> <td>0206022600</td> <td>위반(마약)</td> <t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td> </tr> <tr> <td>0206039400</td> <td>위반(향정)</td> <t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p>- 형법범의 경우 개인소비목적 여하의 구분 미비로, 특별법범의 경우 마약, 향정, 대마 등 구분 외에 세부 행위별 구분이 불가능하며 통계산출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p>	죄명코드	죄명	0117010100	아편제조	0117090100	상습아편제조	0117010200	물핀제조	0117090200	상습물핀제조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0020100	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200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300	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500	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0206022600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39400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0117010100	아편제조																																	
0117090100	상습아편제조																																	
0117010200	물핀제조																																	
0117090200	상습물핀제조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0020100	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200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300	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500	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0206022600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06039400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외: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 포함:	<p>1. 죄명코드 연계</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통계산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40100</td> <td>아편소지</td> </tr> <tr> <td>0117120100</td> <td>상습아편소지</td> </tr> <tr> <td>0117170100</td> <td>단순아편소지</td> </tr> <tr> <td>0117040200</td> <td>물핀소지</td> </tr> <tr> <td>0117120200</td> <td>상습물핀소지</td> </tr> <tr> <td>0117170200</td> <td>단순물핀소지</td> </tr> <tr> <td>0117070100</td> <td>아편흡식</td> </tr> <tr> <td>0117150100</td> <td>상습아편흡식</td> </tr> <tr> <td>0117070200</td> <td>물핀주사</td> </tr> <tr> <td>0117150200</td> <td>상습물핀주사</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p>- 행위태양인 '소지'는 문언적으로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소비목적이 아닌 판매 등을 위한 예비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세분류 060111로 분류하는 데 다소 무</p>	죄명코드	죄명	0117040100	아편소지	0117120100	상습아편소지	0117170100	단순아편소지	0117040200	물핀소지	0117120200	상습물핀소지	0117170200	단순물핀소지	0117070100	아편흡식	0117150100	상습아편흡식	0117070200	물핀주사	0117150200	상습물핀주사									
죄명코드	죄명																																	
0117040100	아편소지																																	
0117120100	상습아편소지																																	
0117170100	단순아편소지																																	
0117040200	물핀소지																																	
0117120200	상습물핀소지																																	
0117170200	단순물핀소지																																	
0117070100	아편흡식																																	
0117150100	상습아편흡식																																	
0117070200	물핀주사																																	
0117150200	상습물핀주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가 있음 - 다만 비개인소비목적의 소분류 06012에는 '소유'라는 행위태양이 없으므로 '소지'는 일응 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11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개인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을 규정한 세분류 060111로 연계함이 타당함 - 다만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된 구성요건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제외: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12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	포함:																												
		-	제외: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통계산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30100</td> <td>아편판매</td> </tr> <tr> <td>0117110100</td> <td>상습아편판매</td> </tr> <tr> <td>0117030200</td> <td>물핀판매</td> </tr> <tr> <td>0117110200</td> <td>상습물핀판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7030100	아편판매	0117110100	상습아편판매	0117030200	물핀판매	0117110200	상습물핀판매																		
죄명코드	죄명																														
0117030100	아편판매																														
0117110100	상습아편판매																														
0117030200	물핀판매																														
0117110200	상습물핀판매																														
		-	제외: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를 전환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9	<p>기타²⁴⁾</p> <p>06011-060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죄명코드 연계 가능 - 06019는 '규제된 약물 관련 기타 불법적 행위'라는 표제 아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규제된 약물을 '취급, 사용, 소지'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음 - 다만, '포함'(Inclusions) 항목에 '마약 관련용품과 연관된 불법행위'(illicit acts involving drug paraphernalia) 및 '규제된 약물의 소비 조장'(encouraging the consumption of controlled drugs)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아편흡식기 관련 범죄 및 아편흡식 및 물핀주사 장소제공 등 범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50100</td> <td>아편흡식기제조</td> </tr> <tr> <td>0117130100</td> <td>상습아편흡식기제조</td> </tr> <tr> <td>0117050200</td> <td>아편흡식기수입</td> </tr> <tr> <td>0117130200</td> <td>상습아편흡식기수입</td> </tr> <tr> <td>0117050300</td> <td>아편흡식기판매</td> </tr> <tr> <td>0117130300</td> <td>상습아편흡식기판매</td> </tr> <tr> <td>0117050400</td> <td>아편흡식기소지</td> </tr> <tr> <td>0117130400</td> <td>상습아편흡식기소지</td> </tr> <tr> <td>0117080100</td> <td>아편흡식장소제공</td> </tr> <tr> <td>0117160100</td> <td>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td> </tr> <tr> <td>0117080200</td> <td>물핀주사장소제공</td> </tr> <tr> <td>0117160200</td> <td>상습물핀주사장소제공</td> </tr> <tr> <td>0117170300</td> <td>단순아편흡식기소지</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7050100	아편흡식기제조	01171301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050200	아편흡식기수입	0117130200	상습아편흡식기수입	0117050300	아편흡식기판매	0117130300	상습아편흡식기판매	0117050400	아편흡식기소지	0117130400	상습아편흡식기소지	0117080100	아편흡식장소제공	0117160100	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	0117080200	물핀주사장소제공	0117160200	상습물핀주사장소제공	0117170300	단순아편흡식기소지
죄명코드	죄명																														
0117050100	아편흡식기제조																														
01171301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050200	아편흡식기수입																														
0117130200	상습아편흡식기수입																														
0117050300	아편흡식기판매																														
0117130300	상습아편흡식기판매																														
0117050400	아편흡식기소지																														
0117130400	상습아편흡식기소지																														
0117080100	아편흡식장소제공																														
0117160100	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																														
0117080200	물핀주사장소제공																														
0117160200	상습물핀주사장소제공																														
0117170300	단순아편흡식기소지																														
		-	제외: 수출입규정 위반(08 - 이와 달리 아편-물핀 등의 수출입, 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가담 등은 '제외'(Exclusions) 항목에 의해 소분류 08042(수출입규정 위반), 0804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																													
			1(관세규정 위반)으로 분류되어 여기에서 제외됨																										
		042), 관세규정 위반(08041), 0601에 열거된 행위들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td>0117020100</td><td>아편수입</td></tr> <tr><td>0117100100</td><td>상습아편수입</td></tr> <tr><td>0117060100</td><td>세관공무원아편수입</td></tr> <tr><td>0117140100</td><td>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td></tr> <tr><td>0117060200</td><td>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td></tr> <tr><td>0117140200</td><td>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td></tr> <tr><td>0117020200</td><td>몰핀수입</td></tr> <tr><td>0117100200</td><td>상습몰핀수입</td></tr> <tr><td>0117060300</td><td>세관공무원몰핀수입</td></tr> <tr><td>0117140300</td><td>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td></tr> <tr><td>0117060400</td><td>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td></tr> <tr><td>0117140400</td><td>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td></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7020100	아편수입	0117100100	상습아편수입	01170601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1401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0602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1402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020200	몰핀수입	0117100200	상습몰핀수입	01170603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	01171403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	01170604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1171404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죄명코드	죄명																												
0117020100	아편수입																												
0117100100	상습아편수입																												
01170601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1401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0602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1402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020200	몰핀수입																												
0117100200	상습몰핀수입																												
01170603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																												
01171403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																												
01170604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1171404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담배 또는 다른 규제된 물질들을 취급,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	제외: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취급,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나, 이질적 구성요건과 혼재되어 있고, 대분류 11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제외: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술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나, 이질적 구성요건과 혼재되어 있고, 대분류 11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항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060219	<p>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p> <p>060211-0602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p>	+	<p>포함:</p> <p>060211-0602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p>
		-	<p>제외:</p>
06022	<p>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p> <p>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취급,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p>	+	<p>포함:</p>
		-	<p>제외:</p>
060221	<p>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p> <p>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p>	+	<p>포함:</p>
		-	<p>제외:</p>
060222	<p>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p> <p>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p>	+	<p>포함:</p>
		-	<p>제외:</p>
060229	<p>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p> <p>060221-06022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p>	+	<p>포함:</p>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 행위			
	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제외: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1-0602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담배 제품 또는 기타 규제된 물질을 처리,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규제된 약물을 스포츠 금지약물로 사용;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약물이나 기타 불법 제품을 제공 또는 소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 금지약물을 사용하도록 조장; 약물 또는 기타 규제된 물질을 거래
		-	제외: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처벌규정 없음	

24) 포함되는 불법행위로 마약 흡입 도구(drug paraphernalia)를 취급하는 것, 기타 마약사용을 조장하는 행위, 불법 마약 사용을 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강소영외,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2017 통계청 용역연구, 161면).

7. 대분류 09-10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행위, 자연환경 위해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상 대분류 9와 10영역의 분류체계와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 체계와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경찰과 검찰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가능하다.

두 번째, 경찰과 검찰의 범죄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는 연계가 불가능하나 앞으로 코드 부여를 통해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하나의 법률조항에 국제표준범죄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이 두 개 혼재되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분류 연계가 불가능하다.

각각의 구분별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계가능 : 경찰·검찰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어렵지 않게 연계가 가능하다. 범죄분류코드가 구체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죄명별로 상세하게 코드화 되어 있는 경우들이다.

우선 형법범은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죄명별로 코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예컨대, 국제표준범죄분류의 090112 영역에서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중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시 또는 비상시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에 대한 행위들을 형법범으로 분류하고, 아래 표와 같이 죄명별로 상세하게 범죄분류코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1〉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관련 한국의 코드 지정 현황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6010100	폭발물사용	0106020240	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
0106010140	폭발물사용선동	0106030400	전시폭발물수수
01060201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30500	전시폭발물소지
0106020140	전시폭발물사용선동	0106040400	비상시폭발물수수
0106020200	비상시폭발물사용	0106040500	비상시폭발물소지

대분류 9와 10영역에 해당하는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은 총 41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 위와 같이 형법범으로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4개 분류 항목은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가능한 그룹에 해당하고 대분류 9와 10영역 전체 분류 중 9.7%를 차지한다.

특별법범의 경우에도 코드가 행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류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에서 0904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란”, “간첩”, “공식비밀의 유출”, “정부의 안전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전쟁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군부대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내란음모”, “방해공작”, “국제침략범죄에 이르지 않

는 수준의 침략전쟁을 야기하거나 전쟁 야기를 시도하는 행위”, “주권강탈”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세부행위들을 죄명별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자세하게 범죄분류코드를 지정하여 통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들에 대한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세분화된 범죄분류코드 목록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9000	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06029600	위반(편의제공)	국가보안법
0206029100	위반(목적수행)	국가보안법	0206029700	위반(불고지)	국가보안법
0206029200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0206029800	위반(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0206029300	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0206029900	위반(무고·날조)	국가보안법
0206029400	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	0206020200	위반(간첩)	국가보안법
0206029500	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	0206055500	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대분류의 9와 10영역의 총 41개 분류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가능한 분류 영역은 20개 영역(형법범 4개 영역 포함)으로 전체의 48.7%에 해당한다.

그 밖에 0908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타 행위의 영역에는 사병 조직, 용병의 고용, 사체 은닉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병조직 또는 용병 고용 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체은닉 관련 행위의 범죄분류코드는 아래와 같다.

〈표 3-7-3〉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타 행위(0908): 형법범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2040100	사체손괴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50100	사체유기	0112060100	사체은닉

특별법 규정에서는 관련 행위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체은닉이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체유기와 사체손괴도 0908 영역에 포함시켜 통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연계 불가능 : 범죄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연계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표준범죄분류상 대부분의 중분류 행위는 코드화 되어 있는 특별법범 행위와 연계가 가능하고 일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소분류까지 연계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범죄분류의 09021영역의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건강 또는 안전 관련 직무위반행위, 대중교통관련 안전위반행위, 의약품의 안전관련 관리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아래와 같이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특별법위반 행위들이 국제표준범죄분류상 09021영역에 포

함될 수 있다.

〈표 3-7-4〉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0902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30200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0333020200	위반	교통안전법
0234030200	위반	선박안전법	0234060500	위반	해상교통안전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06020800	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0233070300	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	0230020400	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그러나 소분류까지 특별법범으로 코드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중분류에 그치기 때문에 소분류 단위 영역에서는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 특별법범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연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연계코드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 41개 영역 중 20개에 해당하며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0901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과 관련된 행위 부분에서 전시, 비상시 폭발물 사용 행위에 대해서만 이하 세부 행위별 구분이 가능하며 무기, 폭발물에 대한 일반적 사용과 소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통계산출이 제한적이다. 이 영역에서 연계가 가능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7-5〉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090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090113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영역에는 아래와 같은 죄명코드가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위 특별법 위반 행위 중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에 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구분이 없어 해당 되는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죄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 3-7-6〉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090113):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52300	위반	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903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 영역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2235050100) 중 코드구분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 행위를 “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국제표준범죄분류의 09031(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와 09032(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영역의 소분류와 세분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계를 위해서는 코드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특별법

의 조항 중심으로 구분할 경우, 코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7-7〉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09031) 및 불법적 방해(0903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2235050400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0906 테러영역에서 소분류의 행위들이 법률규정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나 연계코드가 각각의 행위별로 구분되지 않아 소분류 이하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된 통계 산출이 어렵다. 예를 들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은 09061 영역의 테러조직가담에 해당한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은 09062영역의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한다.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은 09069의 테러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행위로 구분이 가능하다.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다.

10011 영역은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어 연계가 가능한 영역이다. 공기오염이나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죄명코드들과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8〉 대기오염·저해유발 행위(1001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300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0328090100	위반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
0229024500	위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에관한특별법	0329020200	위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0229024600	위반	약취방지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0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0229022700) 등에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10012 영역은 수질오염이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코드가 구분되어 있어 연계가 가능한 영역이다. 연계 가능한 죄명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표 3-7-9〉 수질오염·저해유발 행위(10012): 특별법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100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0229025400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02290225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0229025000	위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0229022900	위반	먹는물관리법	0229021000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02290252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오염과 관련된 행위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0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0229022700) 등에도 수질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0013 영역은 토양오염이나 토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구분되는데 특별법법에 연계가 가능한 죄명 코드들이 존재한다.

〈표 3-7-10〉 토양오염·저해유발 행위(10013): 특별법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000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에서 살펴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수질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0019 영역의 환경오염이나 악화를 초래하는 기타 행위도 특별법법을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11〉 기타 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10019): 특별법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1229022000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0113171400	가스살포	
0113170700	방사선방출		0113171700	방사선살포	
0113170800	방사성물질방출		0113171800	방사성물질살포	
0113170900	가스유출		0229022200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113171200	방사선유출		0239021000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0113171300	방사성물질유출				

10021 영역 국경 내의 폐기물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도 형법법에는 연계가 가능한 코드가 없으나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들을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12〉 국내폐기물 이동·투하(10021): 특별법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1700	위반	폐기물관리법	0229021100	위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0229024800	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022 영역 국경 외의 폐기물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에는 폐기물의 해외 밀매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형법범에는 연계가능 코드가 발견되지 않고 특별법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229023300)이 연계될 수 있다.

1003 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 영역과 연계가 가능한 죄명코드들은 형법범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법범에서 여러개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되는 연계가능 코드들은 아래와 같다.

〈표 3-7-13〉 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식물의 거래나 소유(1003):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4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700	위반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이 영역의 소분류에서 1)국경내 거래 또는 소지, 2)국제밀매 또는 소지, 3)위험 또는 통제된 동식물 종의 거래 또는 소지, 4) 기타 거래 또는 소지 등으로 구분하여 코드 연계 필요하나 특별법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중분류 통계 작성은 가능하나 세분류 연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10041 불법 벌목 영역에는 형법범과는 연계 가능 코드가 없지만 특별법범으로는 연계가 가능하다. 연계가능코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표 3-7-14〉 불법벌목(10041):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100	위반	산림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0224020200	위반	산지관리법	0206022400	위반(산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224020300	위반	산림보호법			

각각의 죄명코드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벌목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들이 포함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정확한 통계 산출은 불가능하다. 연계를 위해서는 불법벌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출하여 코드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림자원 훼손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나 연계 코드가 없어 향후 연계코드 지정을 통해 통계 산출이 가능하다.

10042 불법 사냥, 조업 또는 야생 동식물의 채취 영역에서는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아래 특별법들이 불법사냥, 불법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의도하고 있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다른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벌칙)의 행위를 보면 불법사냥(7호) 이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는 행위(2호)를 처벌하

는 등 다른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다.

〈표 3-7-15〉 불법 사냥, 조업 또는 야생 동식물 채집(10042):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4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23030100	위반	수산업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20300	위반	내수면어업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0223020400	위반	어장관리법			

10043 불법 채광 영역에서는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단순 광업법위반으로 분류된 행위를 연계시킬 경우, 광업법 제102조 제1호와 같이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 채광과는 구분되는 통계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연계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죄명코드가 있는 모든 행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아래와 같은 죄명코드들이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16〉 불법채광(10043):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60100	위반	광업법	0225061000	위반	석유사업법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225061100	위반	광산보안법
0225060400	위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0225061200	위반	석탄산업법

10049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들 영역은 아래와 같은 죄명코드들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위반의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행위와 같이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들이 위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나 코드 구분이 어려워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행위에는 불법 조업 행위와 10049와 같이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가 혼재 되어 있어 같은 코드일 경우 통계 산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표 3-7-17〉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행위(10049): 특별법범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91 동물 관련 침해행위들 영역에는 동물 소유권 또는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로 야생 동식물 거래 침해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가혹행위, 동물 사냥 관련 가혹행위 위반, 동물의 방임과 학대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위반행위 등이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계 가능한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18〉 동물 관련 침해행위(10091): 특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2040400	위반	동물보호법	0229010400	위반	실험동물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그 하나의 예이다. 같은 법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행위유형으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제시되고 있다.

10099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의 영역은 오존 침해 물질의 밀수출입, 오존 침해 물질의 불법적 사용 등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위반(죄명코드: 229022800) 행위와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존침해물질의 밀수출입이 예시로 제시되었으며 오존 침해물질의 불법적 사용 이외에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타 행위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코드화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모든 법령의 내용을 검토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 연계코드가 없는 경우

범죄행위는 있으나 연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국제표준범죄분류의 090121 영역에서는 ‘총포의 밀매’ 행위를 분류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포, 총포의 부품 및 부속, 탄약 등의 밀매’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0208050400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위 특별법에서 총포의 밀매와 관련된 세부행위에 대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코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분류 9-10의 구분 영역 41개 중 위와 같이 연계코드가 없는 경우는 13개 영역으로 전체의 31.7%에 해당한다. 현재는 연계코드가 없어 연계가 불가능하더라도 향후 코드를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범죄분류코드를 부여한다면 세분류 090321영역(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과 연계가 가능하다.

〈표 3-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예시

<p>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비슷한 영역에는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의 밀매”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 특별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연계코드가 없어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생화학무기법) 제26조(벌칙)와 제27조가 그 예들이다. 위 같은 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제27조(벌칙)는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코드를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계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 부분에 <표 3-7-23> 대분류 9영역 코드 세분화 필요영역, <표 3-7-24> 대분류 10영역 코드 세분화 필요영역에 기술하고 있다.

3)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국제표준범죄분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으나 하나의 법률 규정에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세분류의 두 개 이상의 항목 행위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드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090111 영역과 090122 영역은 총기(090111)와 기타 무기들(090122)과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등관리법')에는 총포와 기타 무기에 대한 규정이 하나의 같은 규정에 혼재되어 있어 코드의 세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법률조항을 근거로 코드를 부여해도 090111영역과 090122영역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19. 9. 19. 시행되는 총포등관리법 개정법률에 의해서 총포와 기타 무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과 소지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분리함으로써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분류 9-10의 구분 영역 41개 중 위와 같이 국제표준범죄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항에서는 하나의 법률조항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2개 영역이며, 기타 모든 영역은 코드의 신규부여를 통해 연계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대분류 9-10 영역에서 형법범과 특별법범 행위들의 범죄분류코드가 모두 세분화되어 있거나 특별법범에 해당하며 범죄분류코드가 있어 연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전체 41개 중 20개 영역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별법범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연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코드를 세분화하면 연계가 가능한 영역은 전체 41개 영역 중 21개에 해당하며 전체의 51.3%에 해당한다.

4)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행위중심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체계는 법률조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를 따르는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중심으로 통계 원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는 있는 범죄분류체계는 경찰이 작성하는 통계원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발생·검거통계원표를 작성할 때 주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조항과 죄명을 기재하고 공범관계 등 관련 행위를 선택하면 주된 행위가 나중에 법조항으로부터 추출되어 조합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쳐 법률조항 중심의 통계분류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예를 들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대분류(Section 9)로 구분하고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다시 중분류로 지정하여 국가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반란, 간첩, 공식비밀의 유출, 정부의 안전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전쟁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군부대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내란음모, 방해공작, 국제침략범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침략전쟁을 야기하거나 전쟁 야기를 시도하는 행위, 주권강탈, 왕과 왕족에 대한 침해행위, 폭동 선동 행

위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통계 원표를 작성한다.

〈표 3-7-20〉 범죄분류체계 비교 예시

국제표준범죄분류 (ICCS)				경찰·검찰 범죄분류표 기준 행위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1. 분류체계: 대분류 - 특별법범
0901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과 관련된 행위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부품, 탄약,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사용, 생산, 수입 및 수출, 취득, 판매, 배송, 이동 또는 운반하는 행위	+	포함: 무기 밀매;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기타 09011-09019 사이의 제시된 행위		2. 분류체계: 중분류 - 특별법범
		제외: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범죄행위를 위해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을 사용한 경우		
09011 무기,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부품, 탄약,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	포함: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부품, 탄약, 기타 무기의 소지로 여기서 기타 무기에는 가스, 폭발물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적 물질을 포함;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무기 또는 폭발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090111 - 090119 사이에 제시된 행위		3. 분류체계: 소분류 - 기타 특별법범
		제외: 090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1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부품, 탄약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	포함: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4. 분류체계: 세분류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외: 090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의 대분류 9영역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범죄분류를 위해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범죄 중, 연계가 가능한 영역과 연계를 위해 추가적으로 코드 세분화가 필요한 영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7-21〉 대분류 9영역 죄명별 분류체계 시산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0901	a	090111 *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090112 **	236	2	• 연계가능: 형법범
		090113 ***	22	933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생화학무기법)
		090119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b	090121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090122 *	19	0	• 연계가능: 형법범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090123 **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생화학무기법)
		090129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09019	-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0902	c	09021 *	-	19	10,127	• 연계가능: 특별법범 (산업안전보건법등)
		09029 **	-	50	1,562	• 연계가능: 특별법범 (국민건강증진법등)
0903	d	09031	-	-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총 3,431건 발생 • 컴퓨터시스템 불법적 접근(09031), 시스템의 불법적 방해(090321),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090322), 데이터 불법적 차단(09033), 기타(09039)
		09032	090321	-	-	
			090322	-	-	
		09033	-	-	-	
09039	-	-	-			
0904	e			173	7,393	• 연계가능: 형법범 • 연계가능: 특별법범 (국가보안법)
0905	f	09051	-	13	52	• 연계가능: 형법범 (범죄단체조직등) • 연계가능: 특별법범 (폭처법-단체등의 구성활동)
		09059	-	3	0	• 연계가능: 특별법범 (폭처법-단체등의이용지원)
0906	g	09061	-	3	-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총 0건 발생 • 테러조직가담(09061), 테러재정지원(09062), 기타(09069) 등으로 코드 세분화 필요
		09062	-			
		09069	-			
0907	h	-	-	17	296,097	• 연계가능: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 코드세분화 불필요 (세부행위 구분 없음)
0908	i	-	-	63	26	• 연계가능: 형법범 (사체손괴등)
합계				629	잘못된 계산식	•

- (a)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090111)’ 항목으로 특별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으로만 코드가 구분되어 있어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도출할 수 없음
- (a)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090112)’ 항목으로, 형법상 범죄가 상세히 구분되고 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통계 산출이 가능함
- (a)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090113)’ 항목으로, 형법상 연계범죄는 없으나, 특별법(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등이 코드로 지정되어 있어 연계가 가능
- (b) *‘무기와폭발물의밀매’ 항목 중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 항목(090122)으로, 형법범으로 ‘전시폭발물수출’ 등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어 연계가 가능하나, 090121 영역은 특별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만 코드가 규정되어 있어 ‘총포의밀매’ 행위만을 추출하기 어려움
- (b)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의 밀매 (090123)’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특별법(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이 코드로 연계가 가능하나 2018년 기준으로 범죄발생건수는 확인되지 않았음.
- (c)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0902)’ 항목 중,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범에는 연계규정이 없으나 특별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범죄에 대한 연계가 가능
- (c)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0902)’ 항목 중,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로 다수의 특

별법(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행위가 연계가 가능

- (d) 0903영역은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로 09031(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와 09032(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영역의 소분류와 세분류의 구체적 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정확한 연계가 불가능함
- (e) 0904영역은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중분류까지만 구분, 소분류와 세분류 없으며 형법범과 특별법범(국가보안법위반)이 모두 포함
- (f) 0905영역은 ‘조직범죄와 관련된 행위’로, 소분류로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 (09051)’와 ‘범죄조직과 관련된 기타 행위’로 구분하는데, 09051영역은 형법범(범죄단체조직 등)과 특별법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연계가 가능하고, 09059 영역은 특별법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 등의 이용과 지원) 등으로 연계가 가능.
- (g)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으로만 코드 부여, 소분류 이하로 구분이 불가능
- (h)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교통위반행위로 소분류이하 구분 없으며 대부분 특별법(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검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17건으로 적절하게 산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 (i)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타 행위’로 예시로 제시된 행위 중 사체은닉, 사체유기, 사체손괴 등 형법범 위반행위 등이 포함됨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의 대분류 10영역에 맞추어 한국에서 코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범죄 빈도수를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그 중에는 연계가 가능한 영역과 연계를 위해 추가적으로 코드 세분화가 필요한 영역 등이 있다.

〈표 3-7-22〉 대분류 10영역 죄명별 분류체계 시산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1001	a	10011	-	6	2,745	• 연계가능: 특별법범 (대기환경보전법등)
		10012	-	19	2,618	• 연계가능: 특별법범 (수질환경보전법등)
		10013	-	3	22	• 연계가능: 특별법범 (토양환경보전법등)
		10019	-	130	190	• 연계가능: 특별법범 (소음진동관리법등)
1002	a	10021	-	8	1,702	• 연계가능: 특별법범 (폐기물관리법등)
		10022	-	1	1	• 연계가능: 특별법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003	b	10031	10031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 관련 코드분류 범죄유형 9개, 총 145건 발생 • 멸종위기종거래(100311), 해외밀매(100312), 위험동물종의 거래소유(10032), 기타(10039) 등으로 코드 세분화 필요
			100312	-	-	
		10032		-	-	
		10039		-	-	
1004	a	10041		12	1,190	• 연계가능: 특별법 (산림법등)
		10042		11	6,482	• 연계가능: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10043		3	4	• 연계가능: 특별법 (광업법등)
		10049		-	-	• 연계가능: 특별법 (수산자원관리법등)
1009	a	10091		6	399	• 연계가능: 특별법 (동물보호법등)
		10099		-	-	• 연계가능: 특별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등)
합계						•

(a) 중분류와 소분류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고, 소분류 영역별 구분이 대기환경(10011), 수질환경(10012), 토양환경(10013), 폐기물관리(국내 10021, 국외 10022), 산림(10041), 야생동식물보호(10042), 광물(10043) 등으로 분류간 경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국제표준범죄 영역인 1001, 1002, 1004, 1009 영역의 경우에는 특별법위반 코드만으로도 연계가 가능함

(b) 1003 대분류는 ‘보호 동·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 영역으로, ‘보호 동·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10031)’항목의 소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 ‘국경 내에서 보호종의 거래 또는 소유(100311)’그리고 ‘보호종의 국외 밀거래(100312)’로 구분하고 있고, 10032 영역은 ‘거래 금지 동식물종의 거래 또는 소유’를 구분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 ‘야생생물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서 위 구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어 연계는 가능하나 통계 구분 코드가 없어 2017년을 기준으로 총 145건의 관련 범죄행위가 있으나 세부행위에 대한 구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통계원표를 작성할 때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해당법률을 기재하고, 기수와 미수 등 부수적인 관련 행위를 선택하면 해당 법 조항에서 관련 행위를 추출하여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완벽한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분류체계를 법률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법률조항 중심의 통계 산출에 있어서도 분류코드를 세분화하면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분류 9와 10영역에서 코드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아 현재는 연계가 불가능하나 향후 코드 부여를 통해 연계가 가능한 행위들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 9영역은 총 25개의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분류체계로 연계가 가능한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은 모두 9개이다. 현재는 연계코드가 없어 연계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코드의 세분화를 통해 연계가 가능한 영역은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을 기준으로 14개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법률상 세부행위를 추출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2개 영역에서는 한 개의 법률조항에 090111영역과 090121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연계 코드 세분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23〉 대분류 9영역 코드세분화 필요영역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0901	09011	090111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규제 또는 금지된 총기, 총기부품, 의 불법적 또는 소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제70조(벌칙, 2019.9.19. 시행)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총포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업총, 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2조 제1항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공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090112	23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형법범
		090113	22	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범 특별법범, 코드세분화 필요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 생화학무기법 제25조(벌칙) 제2항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9011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의2호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8호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09012	090121 총포, 부품 및 부속, 탄약의 불법적 제조 및 판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총포등관리법) 제70조(벌칙, 2019.9.19. 시행)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업총, 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090122 총포를 제외한 기타 무기의 밀 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법(군형법) : 연계가능 (코드빈도 18, 발생건수 0)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법 (총포등관리법) 총포등관리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 (분사기·전자총격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제12조 제1항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의 제조, 생산, 밀 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법 (생화학무기법) 생화학무기법 제25조(벌칙) 제1항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9012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영역으로 향후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와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
	09019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영역으로 무기, 폭발물과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
0902	09021 *	-	19	10,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법 (산업안전보건법등)
	09029 **	-	50	1,5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법 (국민건강증진법등)
	09031 승인이나 정 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부 분이나 전체 에 대한 접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호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0903	09032	090321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호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090322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터 데이터의 손 괴, 삭제, 저하, 조작 또는 숨김 과 관련된 행위			<p>벌금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0903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49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09039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영역 : 포함시킬 내용이 발견되면 항목별로 코드를 부여하여 추가 가능함
0904			173	7,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형법범 연계가능: 특별법범 (국가보안법)
0905	09051	-	13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형법범 (범죄단체조직등) 연계가능: 특별법범 (특가법-범죄단체조직등)
	09059	-	3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범 (폭처법-단체등의이용지원)
0906	09061	테러조직 가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1항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09062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2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9069	테러 조직의 활동과 관련 된 기타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제3항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징역에 처한다.
0907	-	-	17	296,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도로교통법) 코드세분화 불필요 (세부행위 구분 없음)
0908	-	-	6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형법 (사체손괴등)

중분류 10영역은 최소단위 분류영역을 기준으로 총 16개의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분류체계로 연계가 가능한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은 모두 12개이다. 현재는 연계코드가 없어 연계가 불가능하지만 향후 코드의 세분화를 통해 연계가 가능한 영역은 소분류와 세분류 영역을 기준으로 4개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법률상 세부행위를 추출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7-24〉 대분류 10영역 중 코드 세분화 필요영역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빈도	발생 건수 (2017)	비고
1001	10011	-	6	2,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등)
	10012	-	19	2,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수질환경보전법등)
	10013	-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토양환경보전법등)
	10019	-	130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1002	10021	-	8	1,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폐기물관리법등)
	10022	-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특별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003	10031	100311 야생동식물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야생생물법 제68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제3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100312 국제보호종의 불법적 수입, 수출, 취득, 판매, 이동 또는 운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야생생물법 제68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10032 위험동식물의 불법적 거래·소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의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10039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가능, 코드세분화 필요: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야생생물법 제68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제1호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p> <p>제4호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p> <p>제6호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p>
1004	10041		12	1,190	• 연계가능: 특별법 (산림법등)
	10042		11	6,482	• 연계가능: 특별법 (야생생물법등)
	10043		3	4	• 연계가능: 특별법 (광업법등)
	10049		-	-	• 연계가능: 특별법 (수산자원관리법등)
1009	10091		6	399	• 연계가능: 특별법 (동물보호법등)
	10099		-	-	• 연계가능: 특별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등)
합계					•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범죄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UN-CTS(UN Crime Trend Survey)는 행위의 고의성을 더 중시하는 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도 존재한다. 출발이 다른 두 개의 분류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작업이 아니며 현 우리나라의 통계를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보완하더라도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범죄 분류 체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근본적으로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 여러 가지 보완을 거쳐 보다 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국제표준범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연계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상 대분류 9와 10은 공공안전과 자연환경 침해행위인데 이러한 침해행위를 어떻게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즉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고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는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휴전상태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은 특히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다양한 범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만들어 왔으며 통계 분류도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 것이다.

장기간 집권한 독재정권은 형법과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만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중처벌하는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활용하였고 이러한 특별법들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범죄통계분류와 연계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시산결과

〈표 3-7-25〉 대분류 09영역 시산결과

ICCS 대분류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ICCS 세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09	공공안전, 국가안보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2	무기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1	3	2	2	1	1	2	2
				09011 3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527	559	773	933	518	557	759	928
			09012	무기 폭발물 밀매	0	0	0	0	0	0	0	0	
			미분류			365	280	1,464	419	352	270	1,408	391
		0902	보건의 안전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안전 행위	6,303	6,239	9,242	10,127	6,288	6,162	9,260	10,168
				09029	기보 보건 안전 행위	1,621	2,089	2,408	1,562	1,600	2,064	2,380	1,557
		0903	컴퓨터 시스템 행위			3,883	3,942	4,280	3,431	2,567	2,444	2,867	2,233
		0904	국가안보 행위			7,458	6,317	6,436	7,393	6,510	6,065	5,943	6,910
		0905	조직범죄 행위			0	24	40	52	0	24	38	51
		0906	테러			0	0	1	0	0	0	0	0
0907	비상교통 위반			359,100	374,871	386,785	296,097	312,393	320,631	332,120	269,181		
0908	기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반			26	27	24	26	19	17	22	21		

대분류 09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분류 09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죄명코드를 연계한 것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를 시산하였다.

먼저 중분류 '0901 무기·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행위'는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과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 등 2개의 소분류가 있다.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은 '090112 화기불법소지 사용'과 '090113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의 세분류로 나누어진

다. '090112 화기불법소지 사용'의 경우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090113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은 2014년 527건, 2015년 559건, 2016년 773건, 2017년 933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518건, 2015년 557건, 2016년 759건, 2017년 928건이었다. 각 세분류의 발생 및 검거건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분류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의 경우에는 발생 및 검거 건수가 없다. 아울러 '0901 무기·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행위'의 미분류 발생 건수의 경우 2014년 365건, 2015년 280건, 2016년 1,464건, 2017년 419건이었으며, 미분류 검거건수는 2014년 352건, 2015년 270건, 2016년 1,408건, 2017년 391건이었다.

중분류 '0902 보건 및 안전위반행위'는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위반행위'와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위반행위'의 소분류가 있다.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위반행위'는 2014년 6,303건, 2015년 6,239건, 2016년 9,242건, 2017년 10,127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6,288건, 2015년 6,162건, 2016년 9,260건, 2017년 10,168건이었다.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위반행위'의 경우 2014년 1,621건, 2015년 2,089건, 2016년 2,408건, 2017년 1,562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1,600건, 2015년 2,064건, 2016년 2,380건, 2017년 1,557건이었다.

중분류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행위'는 2014년 3,883건, 2015년 3,942건, 2016년 4,280건, 2017년 3,431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2,567건, 2015년 2,444건, 2016년 2,867건, 2017년 2,233건이었다.

중분류 '0904 국가보안위반행위'는 2014년 7,458건, 2015년 6,317건, 2016년 6,436건, 2017년 7,393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6,510건, 2015년 6,065건, 2016년 5,943건, 2017년 6,910건이었다. '0904 국가보안위반행위'의 경우 반란, 간첩, 공식 비밀의 유출, 정부의 안전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전쟁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분구대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내란음모, 방해공작 등을 포함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6,000건에서 7,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병역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2018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7년 병역법 위반 발생건수는 7,317건이고, 검거는 7,061건이었다. 2017년 시간 결과는 발생 7,393건, 검거 6,910건으로 대략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분류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는 2014년 0건, 2015년 24건, 2016년 40건, 2017년 52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0건, 2015년 24건, 2016년 38건, 2017년 51건이었다.

중분류 '0906 테러'는 2016년에 1건이 발생하였고, 검거건수는 없었다.

중분류 '0907 비상해교통위반'은 2014년 359,100건, 2015년 374,871건, 2016년 386,785건, 2017년 296,097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312,393건, 2015년 320,631건, 2016년 332,120건, 2017년 269,181건이었다. 비상해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18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발생건수가 일반 도로교통법 17,265건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47,087건,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50,247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178,693건, 도로교통법 (음

주측정거부) 2,805건 등 도합 296,097건으로 2017년의 시간결과와 일치한다. 검거건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8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반 도로교통법 14,943건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46,936건,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26,442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178,069건,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2,791건 등 도합 269,181건으로 2017년의 검거건수 시산결과와 일치함을 할 수 있다. 즉 중분류 '0907 비상해교통위반'의 경우 현재의 우리 범죄 분류체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중분류 '0908 기타공공안전 및 국가보안위반행위'는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24건, 2017년 26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는 2014년 19건, 2015년 17건, 2016년 22건, 2017년 21건이었다.

대분류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중분류 '0907 비상해 교통위반'의 경우에만 범죄분석과 일치하였으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많은 경우가 특별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대검찰청에서 발생한 '범죄분석'의 경우 특별법 범죄의 발생 검거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모든 특별법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기타특별법' 항목을 두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발생이 50,270건이고 검거건수가 48,57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분류의 많은 사건들이 '기타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로 인하여 정확한 일치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3-7-26〉 대분류 10영역 시산결과

ICCS 중분류		ICCS 소분류		발생건수				검거건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01	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1001_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848	2,045	2,383	2,745	1,868	2,023	2,376	2,723
		1001_2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283	1,638	2,575	2,618	1,289	1,619	2,560	2,605
		1001_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20	18	24	22	20	18	24	22
		1001_9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145	155	159	190	152	157	159	184
1002	쓰레기 이동·투하·관련행위	1002_1	국내폐기물 이동·투하	1,279	1,190	1,384	1,702	1,215	1,125	1,293	1,600
		1002_2	해외폐기물 이동·투하	4	0	22	1	4	0	22	1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81	250	148	145	170	243	144	136
1004	자연자원·갈고 또는 파괴·유발행위	1004_1	불법 벌목	1,093	1,324	1,191	1,190	1,028	1,241	1,128	1,136
		1004_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3,034	6,392	6,249	6,482	3,006	6,363	6,246	6,453
		1004_3	불법 채굴	2	1	4	4	2	1	3	4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_1	동물 위해 행동	246	241	305	399	209	206	245	322

대분류 10은 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이다. 09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분류 10의 중분류, 소분류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죄명코드를 연계한 것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를 시산하였다.

중분류 '1001 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는 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었다. 소분류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는 2014년 1,848건, 2015년 2,045건, 2016년 2,383건, 2017년 2,745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1,868건, 2015년 2,023건, 2016년 2,376건, 2017년 2,723건이었다. 관련 특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는데, '2018범죄분석'에 의하면 2017년 발생은 2,725건이고, 검거는 2,704건이었다. 시산결과가 2017년 발생 2,745건, 검거 2,723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분류 '10012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는 2014년 1,283건, 2015년 1,638건, 2016년 2,575건, 2017년 2,618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1,289건, 2015년 1,619건, 2016년 2,560건, 2017년 2,605건이었다. 관련법으로는 '물환경보전법'이 있는데, 2018년 1월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2018 범죄백서'는 2017년 범죄 발생과 검거건수를 집계하므로 '물환경보전법'위반이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2017년 발생은 1,842건, 검거는 1,834건으로 시산결과와 비교하면 시산결과가 범죄백서의 건수보다 발생은 776건, 검거는 771건이 많았다. 즉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외에도 다른 특별법 위반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분류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는 2014년 20건, 2015년 18건, 2016년 24건, 2017년 22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20건, 2015년 18건, 2016년 24건, 2017년 22건이었다. 관련법령으로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있으나, 발생 및 검거건수가 많지않아서 '2018 범죄백서'에는 별도로 수록되지 않고 기타특별법 위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소분류 '10019 기타 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는 2014년 145건, 2015년 155건, 2016년 159건, 2017년 190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152건, 2015년 157건, 2016년 159건, 2017년 184건이었다. 환경오염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특별법이 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2018 범죄백서'에는 기타특별법 위반으로 되어 있다.

중분류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는 소분류 '10021 국내폐기물 이동·투하'와 '10022 해외폐기물 이동·투하'로 나누어진다. 소분류 '10021 국내폐기물 이동·투하'의 경우 2014년 1,279건, 2015년 1,190건, 2016년 1,384건, 2017년 1,702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1,215건, 2015년 1,125건, 2016년 1,293건, 2017년 1,600건이 검거되었다. 관련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 사업법' 등이 있으나, '2018 범죄백서'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수록되어 있으며, 2017년에 134건이 발생하였으며, 122건이 검거되었다. 시산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분류 '10022 해외폐기물 이동·투하'의 경우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22건, 2017년 1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22건, 2017년 1건이었다. 관련 법으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018 범죄백서'에는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시산결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중분류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의 경우 2014년 181건, 2015년 250건, 2016년 148건, 2017년 145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170건, 2015년 243건, 2016년 144건, 2017년 136건이었다. 관련 법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본 법률로 2012년 7월에 변경됨)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두 법률 위반 모두 ‘2018 범죄분석’에는 별도로 수록되지 않아서 시산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중분류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행위’는 세가지의 소분류로 구분되었다. 소분류 ‘10041 불법 벌목’은 2014년 1,093건, 2015년 1,324건, 2016년 1,191건, 2017년 1,190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1,028건, 2015년 1,241건, 2016년 1,128건, 2017년 1,136건이었다. 관련 법률로는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범죄백서에는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수록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 위반의 경우 2017년 발생 66건, 검거 59건 이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2017년 발생 29건, 검거 26건으로 두 법률 위반 합계는 발생 95건, 검거 85건으로 시산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분류 ‘10042 불법 사냥·낙시·야생 동식물 채집’의 발생건수는 2014년 3,034건, 2015년 6,392건, 2016년 6,249건, 2017년 6,482건이었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3,006건, 2015년 6,363건, 2016년 6,246건, 2017년 6,453건이었다. 관련 법률로는 ‘내수면 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있으나, 범죄분석에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록이 되어 있고, 발생건수도 각각 4건과 2건, 검거건수도 3건과 1건으로 시산결과와는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소분류 ‘10043 불법 채굴’의 경우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 4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4건이었다. 기본적인 시산결과가 적어 범죄분석 결과와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중분류 ‘1009 기타자연환경 위해 행동’에는 소분류 ‘10091 동물위해 행동’이 있다. 2014년 246건, 2015년 241건, 2016년 305건, 2017년 399건이 발생하였으며, 검거건수는 2014년 209건, 2015년 206건, 2016년 245건, 2017년 322건이었다.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실용 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범죄분석에는 별도로 집계가 되어 있지 않아 시산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6) 연계내용 및 문제점

대분류 09-10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27〉 대분류 09영역 연결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0901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과 관련된 행위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사용, 생산, 수입 및 수출, 취득, 판매, 배송, 이동 또는 운반하는 행위 ²⁵⁾	+	포함: 무기 밀매;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기타 09011-09019 사이의 제시된 행위 제외: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범죄행위를 위해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을 사용한 경우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 전시, 비상시 폭발물에 대해서는 세분류 체계에 연계되는 분류가능 - 아래 항목별로 분류 가능하며 집계를 통해 통계산출 가능 나. 특별법법 (02945) - 아래 죄명코드 등으로 연계하여 통계산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8050400</td> <td>위반</td> <td>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td> </tr> </tbody> </table> 2. 문제제기 - 전시, 비상시 폭발물 사용 행위에 대해서만 이하 세부 행위별 구분이 가능하며 무기, 폭발물에 대한 일반적 사용과 소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통계산출이 제한적임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포함: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기타 무기의 소지로 여기서 기타 무기에는 가스, 폭발물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적 물질을 포함: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무기 또는 폭발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09011 - 090119 사이에 제시된 행위 제외: 090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09011	무기,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	포함: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제외: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	포함: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제외:							
090111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	포함: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제외: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	포함: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090112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	0901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 전시, 비상시 폭발물에 대하여 연계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td>0106030400</td><td>전시폭발물수수</td></tr> <tr><td>0106030500</td><td>전시폭발물소지</td></tr> <tr><td>0106040400</td><td>비상시폭발물수수</td></tr> <tr><td>0106040500</td><td>비상시폭발물소지</td></tr> <tr><td>0106010100</td><td>폭발물사용</td></tr> <tr><td>0106010140</td><td>폭발물사용선동</td></tr> <tr><td>0106020100</td><td>전시폭발물사용</td></tr> <tr><td>0106020140</td><td>전시폭발물사용선동</td></tr> <tr><td>0106020200</td><td>비상시폭발물사용</td></tr> <tr><td>0106020240</td><td>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td></tr> </tbody> </table> 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죄명코드	죄명	0106030400	전시폭발물수수	0106030500	전시폭발물소지	0106040400	비상시폭발물수수	0106040500	비상시폭발물소지	0106010100	폭발물사용	0106010140	폭발물사용선동	01060201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20140	전시폭발물사용선동	0106020200	비상시폭발물사용	0106020240	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
			죄명코드		죄명																					
0106030400	전시폭발물수수																									
0106030500	전시폭발물소지																									
0106040400	비상시폭발물수수																									
0106040500	비상시폭발물소지																									
0106010100	폭발물사용																									
0106010140	폭발물사용선동																									
01060201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20140	전시폭발물사용선동																									
0106020200	비상시폭발물사용																									
0106020240	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																									
-	제외: 0901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3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금지되거나 규제된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²⁶⁾	+	포함: 금지 또는 미등록 물질을 취득 또는 소지하는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죄명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5052300</td> <td>위반</td> <td>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10400</td> <td>위반</td> <td>원자력안전법</td> </tr> <tr> <td>0218010500</td> <td>위반</td> <td>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td> </tr> </tbody> </table> 2. 문제제기 - 위 특별법 위반 행위 중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에 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구분이 없어 해당되는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52300	위반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52300	위반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제외: 0901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9	무기와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타 행위 무기와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090111-090113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포함: 무기에 기록된 표시를 위조, 삭제, 제거 또는 변조하는 행위; 폭죽에 의한 침해;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보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물건의 소지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		제외: 0901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09012	무기와 폭발물의 밀매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무기와/또는 폭발물의 밀매 ²⁷⁾		<p>총포, 부품, 부속과 탄약, 규제되거나 금지된 무기 또는 화약,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의 제조와 밀매; 거래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비인가에게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수입 및 수출행위; 090121 - 090129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p> <p>가. 형법법 (02758) - 전시, 비상시 폭발물에 대하여 연계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6030300</td> <td>전시폭발물수출</td> </tr> <tr> <td>0106040200</td> <td>비상시폭발물수입</td> </tr> <tr> <td>0106040300</td> <td>비상시폭발물수출</td> </tr> <tr> <td>0106030200</td> <td>전시폭발물수입</td> </tr> <tr> <td>0106040100</td> <td>비상시폭발물제조</td> </tr> <tr> <td>0106030100</td> <td>전시폭발물제조</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p>	죄명코드	죄명	0106030300	전시폭발물수출	0106040200	비상시폭발물수입	0106040300	비상시폭발물수출	0106030200	전시폭발물수입	0106040100	비상시폭발물제조	0106030100	전시폭발물제조
		죄명코드	죄명														
0106030300	전시폭발물수출																
0106040200	비상시폭발물수입																
0106040300	비상시폭발물수출																
0106030200	전시폭발물수입																
0106040100	비상시폭발물제조																
0106030100	전시폭발물제조																
-	<p>제외: 수출입 위반행위(08042); 관세법 위반 행위(08041); 0901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들</p>																
090121	<p>총포의 밀매 총포, 부품 및 부속, 탄약의 밀매</p> <p>-밀매의 의미는 각주 27 참조</p>	+	<p>포함: 총포, 부품 및 부속, 탄약의 제조 및 밀매; 총포의 밀매</p> <p>-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p>														
		-	<p>제외: 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 적용됨</p>														
090122	<p>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 규제 또는 금지된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p> <p>- 밀매의 의미는 각주 27 참조</p>	+	<p>포함: 금지된 무기 또는 폭발물의 제조, 생산 또는 밀매</p> <p>-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p>														
		-	<p>제외: 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 적용됨</p>														
090123	<p>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의 밀매 제한 또는 금지된 화학, 생물학, 방사능 또는 핵 물질의 밀매</p> <p>- 밀매의 의미는 각주 27 참조</p>	+	<p>포함: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제조, 생산 또는 밀매</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범죄코드상 세부행위 구분 없음</p> <p>2. 문제제기 가. 특별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연계코드가 없어 통계산출이 불가능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생화학무기법)위반</p> <p>나. 세부내용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p>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제외: 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도 적용됨
090129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와 관련된 기타 행위들 090121 - 090123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 - 밀매의 의미는 각주 27 참조	+	포함:
		-	제외: 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도 적용됨
09019	무기, 폭발물과 관련된 기타 행위 무기, 폭발물과 관련된 행위로 09011- 09012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	+	포함: 무기 사용에 대한 불법적인 종합 강습
		-	제외: 0901 영역에서 제시된 예외 사항들이 적용
0902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잠재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가하는 행위 ²⁸⁾	+	포함: 직장에서의 건강, 안전 침해행위; 대중교통안전 침해행위; 공공 건강 침해행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제조행위; 전염병을 전파하는 행위; 격리위반행위; 의약품관리위반행위; 29) 불순물 혼합이나 유독성 음식이나 음료등을 판매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비위생적 행위; 09021 - 09029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
		-	제외: 다른 사람의 위험한 행동에 의하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신체에 잠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02071); 방임행위(0206); 의료과실 등 전문가의 위법행위(0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범죄코드상 세부행위 구분 없음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범죄코드상 세부행위 구분 없음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가능 - 그러나 대부분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이 없어 세분류에 대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 - 소분류의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근무지 이외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2062); 정신에 작용하는 물질의 사용 또는 조작과 관련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행위(06); 의약품의 위조(07022)																																																				
09021	<p>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p> <p>근무지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가하는 잠재적 행위</p> <p>-안전의 개념은 각주 28 참조</p>	+	<p>포함:</p> <p>건강, 안전 관련 직무위반행위; 대중교통 안전위반행위; 의약품 관리 위반행위</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p> <p>나. 특별법법 (02945)</p> <p>- 연계코드 작성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2030200</td> <td>위반</td> <td>산업안전보건법</td> </tr> <tr> <td>0234030200</td> <td>위반</td> <td>선박안전법</td> </tr> <tr> <td>0233030300</td> <td>위반</td> <td>철도안전법</td> </tr> <tr> <td>0233070300</td> <td>위반</td> <td>항공기운항안전법</td> </tr> <tr> <td>0333020200</td> <td>위반</td> <td>교통안전법</td> </tr> <tr> <td>0234060500</td> <td>위반</td> <td>해상교통안전법</td> </tr> <tr> <td>0206020800</td> <td>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td> <td>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30200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0234030200	위반	선박안전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33070300	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	0333020200	위반	교통안전법	0234060500	위반	해상교통안전법	0206020800	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30200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0234030200	위반	선박안전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33070300	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																																																					
0333020200	위반	교통안전법																																																					
0234060500	위반	해상교통안전법																																																					
0206020800	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p>제외:</p> <p>음식에 대한 불순물 혼합, 유독성 음식이나 음료 등의 판매, 건강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02071); 의약품의 위조(07022); 0902 영역에서 서술된 제외 행위</p>																																																				
09029	<p>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p> <p>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p> <p>-안전의 개념은 각주 28 참조</p>	+	<p>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p> <p>나. 특별법법 (02945)</p> <p>- 연계코드 작성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20300</td> <td>위반</td> <td>국민건강증진법</td> </tr> <tr> <td>0229010300</td> <td>위반</td> <td>건강검진기본법</td> </tr> <tr> <td>0229024400</td> <td>위반</td> <td>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td> </tr> <tr> <td>0226030300</td> <td>위반</td> <td>고압가스안전관리법</td> </tr> <tr> <td>1208040600</td> <td>위반</td> <td>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td> </tr> <tr> <td>1226030400</td> <td>위반</td> <td>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td> </tr> <tr> <td>1225051700</td> <td>위반</td> <td>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td> </tr> <tr> <td>0218032300</td> <td>위반</td> <td>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td> </tr> <tr> <td>0225052200</td> <td>위반</td> <td>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td> </tr> <tr> <td>0239020400</td> <td>위반</td> <td>석면안전관리법</td> </tr> <tr> <td>0211050300</td> <td>위반</td> <td>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28051600</td> <td>위반</td> <td>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td> </tr> <tr> <td>0226020400</td> <td>위반</td> <td>전기용품안전관리법</td> </tr> <tr> <td>0209030300</td> <td>위반</td> <td>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16020400</td> <td>위반</td> <td>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td> </tr> <tr> <td>0209030500</td> <td>위반</td> <td>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20300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0229010300	위반	건강검진기본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226030300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08040600	위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225051700	위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0218032300	위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0225052200	위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0239020400	위반	석면안전관리법	0211050300	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28051600	위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0226020400	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0209030300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16020400	위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0209030500	위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20300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0229010300	위반	건강검진기본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226030300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08040600	위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225051700	위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0218032300	위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0225052200	위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0239020400	위반	석면안전관리법																																																					
0211050300	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28051600	위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0226020400	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0209030300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16020400	위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0209030500	위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관한특별법</td> </tr> <tr> <td>0218010400</td> <td>위반</td> <td>원자력안전법</td> </tr> <tr> <td>0218010500</td> <td>위반</td> <td>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 능방재대책법</td> </tr> <tr> <td>0226030400</td> <td>위반</td> <td>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td> </tr> <tr> <td>0326030400</td> <td>위반</td> <td>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td> </tr> </table>			관한특별법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 능방재대책법	0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03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
		관한특별법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 능방재대책법																
0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03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																
		-	제외: 0902 영역에서 서 술된 제외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 컴퓨터 정보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근, 차단, 방해, 또는 오남용 ³⁰⁾	+ 포함: 09031 - 09039 영역에서 제시된 행 위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235050100) 중 코드구 분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통계 산출이 가능함 - 연계코드는 소분류 영역으로 가능 <table border="1">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r> <td>2235050100</td> <td>위반</td> <td>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r> <td>2235050400</td> <td>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td> <td>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able> 2. 문제점 - 행위를 “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국제표준범죄분류의 09 031(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와 09032(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영역의 소분류와 세분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함 - 향후 연계를 위해서는 코드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특별법의 조항 중심으 로 구분할 경우, 코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2235050400	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2235050400	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외: 컴퓨터를 이용한 아 동음란물의 소지, 배 포, 제작 행위(0302 21);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절도 또는 불 법복제(0503); 컴퓨 터 이용음란물 의 소지, 배포, 또는 제작(08022); 컴퓨 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0701)와 절도 (0502)															
09031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부분이나 전체에 대한 접속과 관련된 불 법적 행위 ³¹⁾	+ 포함: 권한 없이 컴퓨터 시 스템에 접근; 해킹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는 개인 컴 퓨터 파일에 대한 불 법적 접근(02011); 0903 영역에서 제 시된 제외 행위들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09032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손괴, 삭제, 조작 또는 숨김 등과 관련된 불법적 행위 -컴퓨터 데이터의 개념은 각주 30 참조	+	포함: 컴퓨터 데이터의 손괴, 변경, 숨김;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방해; 서비스공격에 대한 거절, 승인 없는 컴퓨터 시스템 파일의 삭제; 컴퓨터 시스템의 손괴; 090321 - 09032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컴퓨터 데이터가 아닌 재산의 손괴(0504);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321	컴퓨터 시스템의 불법적 방해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	+	포함: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방해; 서비스 공격의 거부; 컴퓨터 시스템 손괴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0903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322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데이터의 손괴, 삭제, 저하, 조작 또는 숨김과 관련된 행위 -컴퓨터 데이터의 개념은 각주 30 참조	+	포함: 컴퓨터 데이터의 손괴, 삭제, 조작, 숨김 행위; 승인 없이 컴퓨터 시스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0903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09033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불법적 차단 또는 접근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로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데이터를 입수하는 행위, 복사와 같이 승인 없이 컴퓨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행위 ³²⁾ -접근의 개념은	+	포함: 권한 없는 컴퓨터 데이터의 차단; 무선네트워크에서 권한 없이 데이터의 전송을 기록, 승인 없이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개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불법적 접근(02011);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각주 31 참조 -컴퓨터 데이터의 개념은 각주 30 참조																																									
09039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것으로 09031 - 09033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포함: 컴퓨터 오남용 도구의 제조, 판매, 획득, 수입, 배포 또는 소유																																							
		-	제외: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0904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국가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³³⁾	+	포함: 반란; 간첩; 공식비밀의 유출; 정부의 안전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전쟁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군부대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내란음모; 방해공작; 국제침략범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침략전쟁을 야기하거나 전쟁 야기를 시도하는 행위; 주권강탈; 왕과 왕족에 대한 침해 행위; 폭동 선동 행위																																							
		-	제외: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안, 제공 또는 요구, 수수하는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내란의죄, 외환의죄, 국기에관한죄, 국교에관한죄, 공안을해하는죄 등을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th>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내란 (109개)</td> <td>010102015</td> <td>내란목적살인선전</td> <td>~</td> <td>0101010250</td> <td>내란모의참여선전</td> </tr> <tr> <td>외환 (270개)</td> <td>0102100150</td> <td>군기누설선전</td> <td>~</td> <td>1102100150</td> <td>군사상기밀누설선전</td> </tr> <tr> <td>국기 (18개)</td> <td>0103020000</td> <td>국장비기</td> <td>~</td> <td>1103020200</td> <td>국장비방</td> </tr> <tr> <td>국교 (54개)</td> <td>0104070100</td> <td>외교상기밀탐지</td> <td>~</td> <td>0104060100</td> <td>외교상기밀누설</td> </tr> <tr> <td>공안 (32개)</td> <td>0105020100</td> <td>병역거부단체조직</td> <td>~</td> <td>0105070100</td> <td>공무원자격사칭</td> </tr> </tbody> </table>				구분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내란 (109개)	010102015	내란목적살인선전	~	0101010250	내란모의참여선전	외환 (270개)	0102100150	군기누설선전	~	1102100150	군사상기밀누설선전	국기 (18개)	0103020000	국장비기	~	1103020200	국장비방	국교 (54개)	0104070100	외교상기밀탐지	~	0104060100	외교상기밀누설	공안 (32개)	0105020100	병역거부단체조직	~	0105070100	공무원자격사칭			
구분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내란 (109개)	010102015	내란목적살인선전	~	0101010250	내란모의참여선전																																					
외환 (270개)	0102100150	군기누설선전	~	1102100150	군사상기밀누설선전																																					
국기 (18개)	0103020000	국장비기	~	1103020200	국장비방																																					
국교 (54개)	0104070100	외교상기밀탐지	~	0104060100	외교상기밀누설																																					
공안 (32개)	0105020100	병역거부단체조직	~	0105070100	공무원자격사칭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td>0206029000</td><td>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100</td><td>위반 (목적수행)</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200</td><td>위반 (자진지원 . 금품수수)</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300</td><td>위반 (잠입 . 탈출)</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400</td><td>위반 (찬양 . 고무등)</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500</td><td>위반 (회합 . 통신등)</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600</td><td>위반 (편의제공)</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700</td><td>위반 (불고지)</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800</td><td>위반 (특수직무유기)</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900</td><td>위반 (무고 . 날조)</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0200</td><td>위반 (간첩)</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55500</td><td>위반 (특수잠입 . 탈출)</td><td>국가보안법</td></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9000	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06029100	위반 (목적수행)	국가보안법	0206029200	위반 (자진지원 . 금품수수)	국가보안법	0206029300	위반 (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0206029400	위반 (찬양 . 고무등)	국가보안법	0206029500	위반 (회합 . 통신등)	국가보안법	0206029600	위반 (편의제공)	국가보안법	0206029700	위반 (불고지)	국가보안법	0206029800	위반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0206029900	위반 (무고 . 날조)	국가보안법	0206020200	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0206055500	위반 (특수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9000	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06029100	위반 (목적수행)	국가보안법																																								
0206029200	위반 (자진지원 . 금품수수)	국가보안법																																								
0206029300	위반 (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0206029400	위반 (찬양 . 고무등)	국가보안법																																								
0206029500	위반 (회합 . 통신등)	국가보안법																																								
0206029600	위반 (편의제공)	국가보안법																																								
0206029700	위반 (불고지)	국가보안법																																								
0206029800	위반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0206029900	위반 (무고 . 날조)	국가보안법																																								
0206020200	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0206055500	위반 (특수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0703): 폭동과 폭력적인 무질서(08011); 군사적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의 군 범죄												
0905	조직범죄와 관련된 행위 범죄조직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³⁴⁾	+	<p>포함:</p> <p>범죄단체에 대한 가입; 09051-09059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사항들</p>												
		-	<p>제외:</p> <p>범죄단체 가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 중 조직과의 관련성이 없는 행위</p>												
09051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 범죄조직의 활동에 대한 참여 -범죄조직의 개념은 각주 34 참조	+	<p>포함:</p> <p>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5010100</td> <td>범죄단체조직</td> </tr> <tr> <td>0105010200</td> <td>범죄단체가입</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33500</td> <td>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td> <t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p>2.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는 범죄조직을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한 개 이상의 심각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표는 행위 기준이 아닌 죄명 기준으로 범죄분류표 상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죄명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죄명에 대한 개념정의를 법률,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 범죄단체의 구성요건 중 목적에 있어서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구분하여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계 산출과정에서 제시가 필요하다.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5010100</td> <td>범죄단체조직</td> </tr> <tr> <td>0105010200</td> <td>범죄단체가입</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법 (02945)</p>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25)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33500</td> <td>위반 (단체등의 구성활동)</td> <t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외: 범죄단체 가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조직과 연계된 행위가 상황적 맥락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0905 영역에서 제외 행위로 기술된 행위들						
09059	범죄조직과 관련된 기타 행위 범죄조직과 관련된 행위로 09051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33600</td> <td>위반 (단체등이용지원)</td> <t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2. 고려사항 - '범죄단체 가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외되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단체와 관련된 범죄행위들은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600	위반 (단체등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600	위반 (단체등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외: 0905 영역에서 제외 행위로 기술된 행위들						
0906	테러 테러단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기타 테러범죄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에 관여하는 행위 ³⁵⁾ -테러범죄에 대한 개념은 각주 35 참조	+	포함: 테러 조직에 가담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테러를 위해 고용되거나 훈련하는 행위; 테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테러를 야기하는 행위; 기타 0906 1-09069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4010200</td> <td>위반</td> <td>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td> </tr> </tbody> </table> 2. 분류 관련 고려사항 - 소분류의 행위들이 법률규정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나 연계코드가 각각의 행위별로 구분되지 않아 소분류 이하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된 통계 산출이 어려움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 (테러조직가담: 09061)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09062)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테러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행위: 09069)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4010200	위반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4010200	위반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외: 테러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0101); 테러행위가 특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테러 또는 테러조직과 관련된 행위가 상황적 맥락에서 분리된 경우	
09061	테러조직 가담 한 개 이상의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활동에 가담하는 행위 -테러범죄의 개념은 각주 35 참조	+ 포함: 테러조직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소분류 이하 연계가능 코드 없음
		- 제외: 0906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62	테러에 대한 재정 지원 테러범의 활동, 개별 테러범 또는 테러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³⁶⁾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설명은 각주 36 참조	+ 포함: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 소분류 이하 연계가능 코드 없음
		- 제외: 0906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69	테러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행위 09061- 09062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테러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행위 -테러범죄의 개념은 각주 35 참조	+ 포함: 테러와 관련된 채용 또는 훈련; 테러를 야기하는 행위	- 소분류 이하 연계가능 코드 없음
		- 제외: 0906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7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교통위반 교통법률과 규칙에 위반한 범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행위	+ 포함: 운전면허, 운전, 등록, 또는 도로가치 훼손 관련 위반행위; 과속; 안전규칙, 자동차 등록규정, 운전면허규정 위반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범 (02758): 운전면허, 운전, 등록, 또는 도로가치 훼손 관련 위반 행위; 과속; 안전규칙, 자동차 등록규정, 운전면허규정 위반 등 예시 행위들이 대부분 운전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임을 고려할 때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나. 특별법범 (02945)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New York, NY., 2001. Web: <[http://www.unodc.org/documents/treaties/Special/2001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pdf](http://www.unodc.org/documents/treaties/Special/2001%20Protocol%20against%20the%20Illicit%20Manufacturing%20of%20and%20Trafficking%20in%20Firearms.pdf)>.

26) 불법적 소지에는 통상의 테러방지법상 관련된 행위들을 포함한다.

27) 밀매는 관련되는 물건의 불법적 제조, 수입 또는 수출, 취득, 판매, 배달, 생산, 이동 또는 운송을 의미한다.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8051600</td> <td>위반</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600</td> <td>위반(무면허운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400</td> <td>위반(음주운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500</td> <td>위반(음주측정거부)</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800</td> <td>위반(공동위협행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900</td> <td>위반(사고후미조치)</td> <td>도로교통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1600	위반	도로교통법	0208052600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500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0208052800	위반(공동위협행위)	도로교통법	0208052900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1600	위반	도로교통법																						
0208052600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500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0208052800	위반(공동위협행위)	도로교통법																						
0208052900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p>제외:</p> <p>자동차 운전 중 태만 또는 부주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할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02063);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 아래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02072);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사고야기 후 도주 행위 (0504); 상해를 가하는 사고야기 후 도주 (02063)</p>																						
0908	<p>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p> <p>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0901-0907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p>	+	<p>포함:</p> <p>사병 조직; 용병의 고용; 사체 은닉</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p> <p>- 사병조직 또는 용병 고용 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발견하지 못함</p> <p>- 사체은닉 관련 행위의 범죄분류코드는 아래와 같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2060000</td> <td>사체등은닉</td> </tr> <tr> <td>0112060100</td> <td>사체은닉</td> </tr> <tr> <td>0112050100</td> <td>사체유기</td> </tr> <tr> <td>0112040100</td> <td>사체손괴</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법 (02945): 특별법 규정에서는 관련 행위들을 발견하지 못함</p> <p>2. 고려사항</p> <p>- 사체은닉이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체유기와 사체손괴도 0908 영역에 포함시켜 통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p>	죄명코드	죄명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60100	사체은닉	0112050100	사체유기	0112040100	사체손괴											
죄명코드	죄명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60100	사체은닉																							
0112050100	사체유기																							
0112040100	사체손괴																							
		-	<p>제외:</p> <p>0901-0907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 28) 안전은 상해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태를 의미한다.
- 29) 의약품관리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약품의 보관, 운반, 배포; 정당한 소지권한 없는 자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이나 판매; 무면허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 또는 판매; 국가의 표시조건이나 성분 구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약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행위; 의약품의 무면허 제조, 수입, 수출, 판매.
- 30) 컴퓨터데이터는 컴퓨터/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가 읽을 수 형식으로 처리되는 사실, 정보, 개념의 표현을 의미한다. 컴퓨터/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데이터/정보/논리/연산/저장의 자동처리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컴퓨터/정보 프로그램장치 또는 연계된 장치를 의미한다. 컴퓨터/정보 프로그램은 컴퓨터/정보 시스템이 컴퓨터 데이터/정보를 처리하게 하거나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작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과업지시서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을 가진다.
- 31) 접근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이거나 관련되는 부속품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 접속; 읽기; 표시; 지시; 통신;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의 복구; 복사; 이동; 추가; 변화; 제거; 설정; 재설정.

〈표 3-7-28〉 대분류 10영역 연결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1001	환경 오염 또는 훼손을 야기하는 행위 자연환경의 오염에 이르는 행위 ³⁷⁾	+	포함: 공기, 물, 토양 오염: 10011-10019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행위	1. 죄명코드 연계 - 대기, 수질, 토양으로 구분되는 소분류 영역으로 범죄분류코드 연계 가능																		
		-	제외: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이나 무단 투기 등을 통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1002); 쓰레기 투기 (0801);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고의적 파괴, 훼손 또는 마모 (0504)																			
10011	공기오염이나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공기오염이나 공기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³⁸⁾	+	포함: 공해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229022300</td> <td>위반</td> <td>대기환경보전법</td> </tr> <tr> <td>229024500</td> <td>위반</td> <td>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td> </tr> <tr> <td>229024600</td> <td>위반</td> <td>악취방지법</td> </tr> <tr> <td>328090100</td> <td>위반</td> <td>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td> </tr> <tr> <td>329020200</td> <td>위반</td> <td>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9022300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229024500	위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29024600	위반	악취방지법	328090100	위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329020200	위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9022300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229024500	위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29024600	위반	악취방지법																				
328090100	위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329020200	위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제외: 불법적 광물채취, 불법적 벌목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 (1004);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2.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32) 완전성은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가치, 원리, 기준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33) 완전성은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가치, 원칙, 기준의 적용을 의미한다.

34) 범죄조직이란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윤을 얻고자 한 개 이상의 심각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35) 테러범죄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도구로 형성된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 시민 또는 군사 충돌과정에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가하려는 행위로 그러한 행위로 일반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관들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E/RES/54/109, Article 2(1b).

36) 재정지원은 테러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자금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 E/RES/54/109, Article 2(1b).

37) 자연환경은 생물체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10012	수질오염이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수질오염이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³⁹⁾	+	포함: 수질오염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2100</td> <td>위반</td> <td>수질환경보전법</td> </tr> <tr> <td>0229022500</td> <td>위반</td> <td>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29022900</td> <td>위반</td> <td>먹는물관리법</td> </tr> <tr> <td>0229025200</td> <td>위반</td> <td>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td> </tr> <tr> <td>0229025400</td> <td>위반</td> <td>해양환경관리법</td> </tr> <tr> <td>0229025000</td> <td>위반</td> <td>해양생태계의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29021000</td> <td>위반</td> <td>해양오염방지법</td> </tr> </tbody> </table> 2.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수질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100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02290225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0229022900	위반	먹는물관리법	02290252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0229025400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0229025000	위반	해양생태계의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0229021000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100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02290225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0229022900	위반	먹는물관리법																										
02290252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0229025400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0229025000	위반	해양생태계의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0229021000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	제외: 불법적 광물채취, 불법적 벌목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 (1004);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이나 무단 투기 등을 통한 수질오염 또는 훼손 (1002);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13	토양오염이나 토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토양오염이나 토질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⁴⁰⁾	+	포함: 토양오염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3000</td> <td>위반</td> <td>토양환경보전법</td> </tr> </tbody> </table> 2.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토양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000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000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	제외: 불법적 광물채취, 불법적 벌목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1004);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이나 무단 투기 등을 통한 토양오염 또는 훼손 (1002); 1001 영역에서 제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10019	환경오염이나 악화를 초래하는 기타 행위 자연환경의 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10011-10013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자연환경의 개념은 각주 37 참조	+	포함: 소음, 진동, 열, 불빛 또는 방사선에 의한 오염; 위험물질, 핵물질, 화학물질 관련 위반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1229022000</td> <td>위반</td> <td>소음·진동관리법</td> </tr> <tr> <td>0113170700</td> <td>방사선방출</td> <td></td> </tr> <tr> <td>0113170800</td> <td>방사성물질방출</td> <td></td> </tr> <tr> <td>0113170900</td> <td>가스유출</td> <td></td> </tr> <tr> <td>0113171200</td> <td>방사선유출</td> <td></td> </tr> <tr> <td>0113171300</td> <td>방사성물질유출</td> <td></td> </tr> <tr> <td>0113171400</td> <td>가스살포</td> <td></td> </tr> <tr> <td>0113171700</td> <td>방사선살포</td> <td></td> </tr> <tr> <td>0113171800</td> <td>방사성물질살포</td> <td></td> </tr> <tr> <td>0229022200</td> <td>위반</td> <td>유해화학물질관리법</td> </tr> <tr> <td>0239021000</td> <td>위반</td> <td>화학물질관리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1229022000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0113170700	방사선방출		0113170800	방사성물질방출		0113170900	가스유출		0113171200	방사선유출		0113171300	방사성물질유출		0113171400	가스살포		0113171700	방사선살포		0113171800	방사성물질살포		0229022200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239021000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1229022000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0113170700	방사선방출																																							
0113170800	방사성물질방출																																							
0113170900	가스유출																																							
0113171200	방사선유출																																							
0113171300	방사성물질유출																																							
0113171400	가스살포																																							
0113171700	방사선살포																																							
0113171800	방사성물질살포																																							
0229022200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239021000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	제외: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2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⁴¹⁾	+	포함: 폐기물의 불법적 밀매;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 폐기물의 불법적 투기; 10021-10022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소분류 이하에서 국경 내외로 구분하여 코드 연계 가능하며 소분류 합산을 통해 중분류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1002) 통계 산출 가능																																				
		-	제외: 쓰레기 투기 (0801)																																					
10021	국경 내의 폐기물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로 개시, 예방 그리고/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이 오직 한 나라에만 관련되는 경우 -이동과 투기의 개념은 각주 41 참조	+	포함: 불법적인 국내 폐기물 투기,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내 이동 또는 밀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1700</td> <td>위반</td> <td>폐기물관리법</td> </tr> <tr> <td>0229024800</td> <td>위반</td> <td>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td> </tr> <tr> <td>0229021100</td> <td>위반</td> <td>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1700	위반	폐기물관리법	0229024800	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0229021100	위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1700	위반	폐기물관리법																																						
0229024800	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0229021100	위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	제외: 100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22	국경 외의 폐기물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불법적인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	+	포함: 폐기물의 해외 밀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3300</td> <td>위반</td> <td>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예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300	위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예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300	위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예관한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p>기의 시작, 예방 그리고/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가 한 개 국가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p> <p>-이동과 투기의 개념은 각주 41 참조</p>	-	<p>제외:</p> <p>100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1003	<p>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p> <p>보호 또는 금지된 야생 동물 또는 식물종의 불법 거래 또는 소유⁴²⁾</p>	+	<p>포함:</p> <p>야생동식물의 밀매;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 또는 소유; 10031-1003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p>
		-	<p>제외:</p> <p>애완동물 절도 (050221); 동물의 관리, 양육, 소지 관련 위반행위 (10091); 가축 강도 (04014); 가축 절도 (05025)</p>
10031	<p>보호 동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p> <p>보호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p> <p>-보호종의 개념은 각주 42 참조</p>	+	<p>포함:</p> <p>상아 밀매; 100311-10031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p>
		-	<p>제외:</p> <p>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100311	<p>국경 내에서 보호종의 거래 또는 소유</p> <p>한 국가 안에서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p> <p>-보호종의 개념은 각주 42 참조</p>	+	<p>포함:</p> <p>멸종 위기종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p>
		-	<p>제외:</p> <p>1003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100312	<p>국경을 통과하는 보호종 밀매</p>	+	<p>포함:</p> <p>국경을 통과하는 야</p>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2개국 이상에서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적으로 수입, 수출, 취득, 판매, 이동 또는 운반 -보호종의 개념은 각주 42 참조	-	생 동식물의 밀매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32	금지 또는 통제된 동물종의 거래 또는 소유 금지 또는 통제된 동물 또는 식물종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금지종의 개념은 각주 42 참조	+	포함: 위험하거나 통제된 동물의 소유; 위험한 동물의 양육; 금지종의 거래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39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종의 기타 거래 또는 소유 10031-10032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보호 또는 금지된 동식물종에 대한 기타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금지종의 개념은 각주 42 참조	+	포함: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	자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들 자원, 동물 또는 식물종, 토양, 물 또는 공기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소모로 이어지는 행위들	+	포함: 10041-10049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 제외: 고갈이나 악화 수준에 이르지 않지만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지는 행위들 (1001)															
10041	불법 벌목 목재의 불법적 채취, 절단, 수확, 운반, 구입 또는 판매 행위	+	포함: 불법적 벌목; 불법적 새김과 방화; 불법적 모래 채취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4020100</td> <td>위반</td> <td>산림법</td> </tr> <tr> <td>0224020200</td> <td>위반</td> <td>산지관리법</td> </tr> <tr> <td>0224020300</td> <td>위반</td> <td>산림보호법</td> </tr> <tr> <td>1224020100</td> <td>위반</td> <td>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100	위반	산림법	0224020200	위반	산지관리법	0224020300	위반	산림보호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100	위반	산림법																
0224020200	위반	산지관리법																
0224020300	위반	산림보호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2	불법 사냥, 조업 또는 야생 동식물의 채취 야생 동식물의 불법 사냥, 조업, 수집 또는 기타 채취 행위	+	포함: 불법 사냥, 불법 조업, 불법 침입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3	불법 채광 땅에서 광석 또는 광물의 불법 채취 행위	+	포함: 희귀광물의 밀매; 불법 채광; 토지 권한 또는 면허 없는 채광; 환경 또는 안전 기준에 위반한 채광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9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들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 10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4020700</td> <td>위반</td> <td>야생동·식물보호법</td> </tr> <tr> <td>0239020300</td> <td>위반</td> <td>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23020300</td> <td>위반</td> <td>내수면어업법</td> </tr> <tr> <td>0223020400</td> <td>위반</td> <td>어장관리법</td> </tr> <tr> <td>0223030100</td> <td>위반</td> <td>수산업법</td> </tr> <tr> <td>0223030400</td> <td>위반</td> <td>수산자원관리법</td> </tr> <tr> <td>0223040100</td> <td>위반</td> <td>어업자원보호법</td> </tr> </tbody> </table> 2. 문제점 -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위 특별법들이 불법사냥, 불법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의도하고 있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다른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벌칙)의 행위를 보면 불법사냥(7호) 이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는 행위(2호)를 처벌하는 등 다른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음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23020300	위반	내수면어업법	0223020400	위반	어장관리법	0223030100	위반	수산업법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23020300	위반	내수면어업법																									
0223020400	위반	어장관리법																									
0223030100	위반	수산업법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5060100</td> <td>위반</td> <td>광업법위</td> </tr> <tr> <td>0225060300</td> <td>위반</td> <td>해저광물자원개발법</td> </tr> <tr> <td>0225060400</td> <td>위반</td> <td>해외자원개발사업법</td> </tr> <tr> <td>0225061000</td> <td>위반</td> <td>석유사업법</td> </tr> <tr> <td>0225061100</td> <td>위반</td> <td>광산보안법</td> </tr> <tr> <td>0225061200</td> <td>위반</td> <td>석탄산업법</td> </tr> </tbody> </table> 2. 문제점 -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단순 광업법위반으로 분류된 행위를 연계시킬 경우, 광업법 제102조 제1호와 같이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채광과는 구분되는 통계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 - 연계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죄명코드가 있는 모든 행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60100	위반	광업법위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225060400	위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0225061000	위반	석유사업법	0225061100	위반	광산보안법	0225061200	위반	석탄산업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60100	위반	광업법위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225060400	위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0225061000	위반	석유사업법																									
0225061100	위반	광산보안법																									
0225061200	위반	석탄산업법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041-10043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3030400</td> <td>위반</td> <td>수산자원관리법</td> </tr> <tr> <td>0223040100</td> <td>위반</td> <td>어업자원보호법</td> </tr> <tr> <td>0225060300</td> <td>위반</td> <td>해저광물자원개발법</td> </tr> <tr> <td>1224020100</td> <td>위반</td> <td>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위반의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행위와 같이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들이 위 관련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나 코드 구분이 어려워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행위에는 불법조업 행위와 10049와 같이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가 혼재되어 있어 같은 코드일 경우 통계 산출이 불가능함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9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들 자연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1001-1004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포함: 동식물의 건강과 양호한 상태를 보호하지 못한 행위; 10091-1009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															
		-	제외: 1001-1008 영역에서 제외된 제외 행위들															
10091	동물 관련 침해행위들 동물에 대한 불법적 대우, 양육 또는 소지 행위	+	포함: 동물 소유권 또는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로 야생 동물 거래 침해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가축 행위; 동물 사냥 관련 가축행위 위반; 동물의 방임과 학대															
		-	제외: 반려견 절도 (050221); 가축 절도 (05025); 가축 강도 (04014)															
10099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로 10091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	+	포함: 오존 침해 물질의 밀수출입; 오존 침해 물질의 불법적 사용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2040400</td> <td>위반</td> <td>동물보호법</td> </tr> <tr> <td>0229010400</td> <td>위반</td> <td>실험동물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p>2. 세부 범죄행위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2040400	위반	동물보호법	0229010400	위반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2040400	위반	동물보호법																
0229010400	위반	실험동물에관한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되지 않는 것들 -자연환경의 개념은 각주 37 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2800</td> <td>위반</td> <td>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800	위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	<p>2. 범죄행위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존층오염물질의 밀수출입이 예시로 제시됨 - 오존층오염물질의 불법적 사용 이외에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음 - 기타 행위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코드화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모든 법령의 내용을 검토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됨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800	위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							
-	<p>제외:</p> <p>동물에 대한 불법적 대우, 양육 또는 소지 (10091); 1001-1008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 38) 공해는 대기의 자연적 특징들을 변형시키는 화학적, 물리적, 생화학적 요인들에 의한 내외부 환경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오염을 의미한다.
- 39) 수질오염은 물질이나 에너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입으로 생물자원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어업 등 수상활동을 방해하고 바닷물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편의시설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40) 토질오염은 토양의 자연적 특징들을 변형시키는 화학적, 물리적, 생화학적 요인들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오염을 의미한다.
- 41) 이동 또는 투기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공기, 토양, 수질, 또는 동물군 또는 식물군에게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 운반, 회수, 처리 또는 선적을 의미한다.
- 42) 생물종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인식 가능한 부분이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상관없이 동물 또는 식물을 의미한다. 보호종은 낮은 출산, 과잉 사냥/어업, 환경변화, 포식, 또는 다른 이유로 멸종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동물 또는식물종을 의미한다.(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3. Web: <<http://www.cites.org/eng/disc/text.php>>. 금지종은 환경 침해적인 특성, 사람에게 대한 위험 가능성, 또는 위해를 가할 다른 위험성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동물종과 식물종을 의미한다. (European Union. Developing an EU Framework for Invasive Alien Species. Web: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invasivealien/docs/ias_discussion_paper.pdf>).

8. 대분류 11 기타범죄 행위

ICCS 대분류 11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분류 11은 1101, 1102, 1109의 세 가지 중분류로 다시 나뉜다. 먼저 중분류 1101은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Acts under universal jurisdiction)를, 중분류 1102는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Acts contrary to youth regulations and acts on minors)를 규정하고 있고, 중분류 1109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라는 표현으로 1101과 1102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유형들을 담고 있다. 중분류 1109는 ICCS의 분류체계로서의 완전성(Exhaustiveness)을 달성하기 위해 대분류 01부터 대분류 10, 그리고 대분류 11의 1101과 1102로도 분류되지 않은 모든 불법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ICCS 중분류 1101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

ICCS 중분류 1101은 11011(고문), 11012(해적), 11013(전쟁범죄), 11014(집단학살), 11015(반인권 범죄), 11016(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및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포괄하는 11019(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의 7개 항목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분류 11013(전쟁범죄)에는 6개 항목의 세분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소분류에는 세분류 항목이 두어져 있지 않다.

중분류 1101은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아래에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고유의 영토고권과 대인고권에 기초하여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등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범죄, 예컨대 대량학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테러리즘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형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무관하게 모든 나라가 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세계주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이와 같은 범죄와 무관한 국가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가능성을 말한다.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⁴³⁾은 보편적 관할권을 '범죄의 발생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의 관련성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그 범죄의 성질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형사관할권⁴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중범죄(serious crimes)에 대해 인정되는데, 국제법상 중범죄를 범한 사람이 적정 절차에 따라 기소되고 신병이 확보된 경우,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어느 나라든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⁴⁵⁾ 참고로 프린스턴 원칙은 국제법상 중범죄로 해적행위(piracy), 노예제도(slavery), 전쟁범죄(war crimes), 평화에 반하는 범죄(crimes

43) 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

44) Principle 1 (Fundamentals of Universal Jurisdiction) 1. For purposes of these Principles, universal jurisdiction is criminal jurisdiction based solely on the nature of the crime, without regard to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the nationality of the alleged or convicted perpetrator,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or any other connection to the state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45) Principle 1 (Fundamentals of Universal Jurisdiction) 2. Universal jurisdiction may be exercised by a competent and ordinary judicial body of any state in order to try a person duly accused of committing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s specified in Principle 2(1), provided the person is present before such judicial body.

against peace),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학살(genocide), 고문(torture)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ICCS에는 이 가운데 노예제도(slavery) 및 평화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peace)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신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가 규정되어 있다.

〈표 3-8-1〉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1101): 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101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 보편적 인권 기구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거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해 소추될 수 있는 행위	11011	고문(Torture)				
		11012	해적(Piracy)				
		11013	전쟁범죄(War crimes)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9	기타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Genocide)				
		11015	반인권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11016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11019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Other acts under universal jurisdiction)						

보편적 관할권을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⁴⁷⁾ 보편적 관할권은 국가 간 사법권의 저축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자조약 등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창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1970년대 초반에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⁴⁸⁾,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도쿄협약)⁴⁹⁾ 등으로 체약국 간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다자간 조약에서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국내법 제정 의무 규정을 둬에 따라 국내법이 제정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⁵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⁵¹⁾,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⁵²⁾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2003년 제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46) Principle 2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1. For purposes of these Principles,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e: (1) piracy; (2) slavery; (3) war crimes; (4) crimes against peace; (5) crimes against humanity; (6) genocide; and (7) torture.

47) 예컨대 1985년 제정된 스페인 법원기본법 제23조 제4항은 “스페인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스페인 법원은 이에 기초하여 대량학살과 고문 등의 혐의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와 중국의 장쩌민 주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48) [발효 1973. 2. 17] [조약 제460호]

49) [발효 1971. 5. 20] [조약 제385호]

50) [발효 2002. 7. 1] [조약 제1619호]

51)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정]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집단학살등 국제법상 중범죄와 관련하여 범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갖게 되었다(동법 제3조 제5항 참조).

52) [발효 1992. 3. 2] [조약 제1645호]

법률」(약칭: 선박위해처벌법)⁵³⁾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⁵⁴⁾ 및 이에 기초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일명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 이루어진 2013년 4월의 「형법」 개정⁵⁵⁾ 또한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약에 의해 창설된 보편적 관할권은 체결국 간에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관할권의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고, 「형법」상 세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인신매매 및 약취·유인 관련 조항은 대분류 02, 중분류 0202의 자유에 관한 범죄와의 연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분류 1101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분류 1101과의 연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표 3-8-2〉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1101): 특별법법1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55900	위반	국제형사재판소관할 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ICCS 중분류 1101 해당 범죄는 소분류 11012(해적)를 제외하고는 국제형사범죄법 상의 구성요건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소분류 11011(고문), 11013(전쟁범죄, 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11014(집단 학살, 동법 제8조), 11015(반인권 범죄, 동법 제9조), 11016(침략범죄), 11019(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재 국제형사범죄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분류코드는 206055900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법 위반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아쉽게도 범죄분류코드 상으로는 알 수 없다. 시산상의 문제가 예상되나, 해당 행위들은 어쩔 수 없이 중분류 1101과 연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동법상 구성요건은 직무태만죄(제15조)나 사법방해죄(제16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내지 제14조 참조). 따라서 미수범에 대한 코드 분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의 교사방조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드명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3-8-3〉 보편적 관할권 하의 행위(1101): 특별법법2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010300	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 대한위해행위의처벌 등에관한법률			

53) [시행 2003. 5. 27.] [법률 제6880호, 2003. 5. 27., 제정]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갖게 되었다(동법 제3조 참조).

54) [발효 2015. 12. 5] [조약 제2258호]

55)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인신매매, 약취·유인 등의 범죄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갖게 되었다(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 참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선박위해처벌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선박위해처벌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살인죄(제5조), 선박납치죄(제6조), 선박등손괴죄(제7조), 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손괴죄(제8조), 선박납치등살인·상해·치사상죄(제12조) 등의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ICCS 소분류 11012는 해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선박위해처벌법상 형사처벌규정의 대상범죄와 관련된다. 제ICCS는 해적행위를 민간선박뿐 아니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적행위가 발생한 공간을 공해(high seas) 또는 국가의 사법관할권을 벗어난 지역(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으로 한정하고 있고,⁵⁶⁾ 이러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의 행위는 중분류 0202(Deprivation of liberty), 세분류 020223(hijacking)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⁵⁷⁾ 이러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선박위해처벌법과 1:1로 정확히 연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산상의 문제는 물론, 해적행위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소분류 11012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형법」 상 해상강도(제340조)는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에 의한 행위일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세계주의가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편적 관할권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CCS 중분류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ICCS 중분류 1102(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Acts contrary to youth regulations and acts on minors)는 11021(비행)과 11029(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의 2개 항목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 모두 세분류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3-8-4〉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행위 (1102): 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미성년자에 관하여 구체적 법률과 규정 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	11021	비행 법률에 의하여 단지 관련된 사람의 나이 때문에 불법이 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의하여 범해진 행위 또 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성인의 행위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1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청소년 관련법규에 반하는 행		

56) Piracy is any act of violence, detention or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and directed on the high seas, against another ship or aircraft,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ship or aircraft; or against a ship, aircraft, persons or property in a place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including acts of participation in, incitement to, or facilitation of such acts.

57) Exclusion: Offences committed not on the high seas by the crew or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ircraft are coded to the particular offence; unlawful seizure of a vehicle together with its passenger through the use of force or threat of force by a person not on the high seas (020223)

ICCS 중분류 1102는 청소년 관련법규에 반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일반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자의 나이로 인해 법률위반으로 취급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의해 범해진 불법행위⁵⁸⁾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가운데 소분류 11021은 특히 지위 관련 법위반 행위(status offences)를 규정하고 있다. ‘지위’(status)를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하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행위객체와 관련해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를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해서 하게 되면 법위반이 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ICCS는 이러한 행위의 예로 청소년의 통행금지·출입금지 위반(Youth curfew violations), 음주 가능연령 위반(drinking age violations),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selling alcohol or tobacco to minors), 미성년자의 비행에 대한 조력(contributing to delinquency of minors), 의무교육·무단결석 관련법 위반(violating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laws/truancy), 규정연령 이하의 혼인(조혼)(under-age marriage) 등을 들고 있다.

먼저 행위주체의 지위와 관련된 법률로는 「소년법」을 들 수 있다. 소년법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3호).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로는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행위객체의 지위와 관련된 법률로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허가 취득 여부는 별론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와 담배를 이른바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동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58조).

〈표 3-8-5〉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1102): 소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5020500	위반	소년법			

소년법에 지위비행과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ICCS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지위비행의 종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위비행의 범위는 매우 좁다. 실무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청소년 기의 경미한 지위비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지하여 입건하여 처리하는 대신에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방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신에 청소년에게 이러한 비행을 하도록 유도한 성

58) Unlawful acts defined in law that are considered offences due only to the age of those involved, committed by minors or by adults in relation to minors.

인이나 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음주를 한 경우는 소년법에 규정이 있지만, 청소년이 흡연을 한 경우에는 각목의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근거가 현실적으로 없다. 그리고 ICCS가 규정하고 있는 무단결석, 통행금지 위반, 혼인연령을 위반한 결혼 등은 소년법에 이를 금지하는 근거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에서는 「소년법」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코드(205020500)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ICCS 중분류 1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법규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나, 이것이 우범소년과 같이 지위비행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중한 행위유형인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특히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거나'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과의 구분을 요하며, 촉법소년도 원래 형사범죄가 되는 행위를 형사책임능력 불비를 이유로 특별취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 관련 법위반'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사안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년법 위반 행위에 부여된 코드가 ICCS 1102의 하위분류인 소분류 11021 또는 11029 어느 쪽에 연계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향후 이들의 분류코드를 적절히 설정하고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CCS 코드와 연계한다면 소년법위반사건은 범죄의 내용을 지위비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소분류 11021보다 11029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8-6〉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1102): 청소년 보호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0800	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또한 범죄분류코드 상 청소년보호법위반(218030800), 동법위반 교사(218030801), 방조(218030802)의 세 가지 코드만이 부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CCS 1102는 관련자의 나이로 인해 법률위반으로 취급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의해 범해진 불법행위⁵⁹⁾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하는 행위 외에도 청소년 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행위태양은 다르나 이들 구성요건들은 모두 행위자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관련자의 나이 때문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면에서는 공통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상 구성요건들은 소분류 11021에 연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동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제59조 제6호) 외에 청소년유해 행위 관련 범죄(제55조 내지 제57조, 제58조 제5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범죄(제58조 제1·2호 등), 청소년유해업소고용 관련 범죄(제58조 제4호 등)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59) Unlawful acts defined in law that are considered offences due only to the age of those involved, committed by minors or by adults in relation to minors.

있는데,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보호 관련 형사처벌규정을 두다 보니 법률의 내용 속에 ICCS 대분류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각 범죄유형간의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죄명코드로는 범죄유형별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향후 이들 행위태양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범죄분류코드를 세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ICCS 중분류 11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ICCS 중분류 1109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로서, 국가의 법률에 의해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1101, 1102에 기술되거나 이에 의해 분류되지 않은 기타 행위에 대한 것이다. ICCS 대분류 11 자체가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를 포섭하기 위한 것이고, 중분류 1101(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과 1102(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가 서로 이질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중분류 1109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분류 01~10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나머지 행위 일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CCS는 01부터 10에 이르는 다양한 대분류 아래 상세한 중분류와 소분류 및 세분류를 두어 가급적 많은 범죄를 동 분류체계 내에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범죄분류에 있어서는 구체적 범죄행위가 그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분류항목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 행위가 ICCS가 설정하고 있는 세분류로 포섭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해당 세분류로 포섭되기 어려운 것은 상위 소분류로, 소분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 상위의 중분류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ICCS가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령상 범죄행위를 국제분류체계에 조응시키는 것은 범죄통계의 국제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위와 같은 단계적 일치화 작업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범죄유형을 기타 항목에 쓸어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ICCS가 가진 국제분류로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ICCS 범죄코드를 기준으로 우리 법령상의 범죄를 분류하고, 이와 일치시킬 수 없는 것들은 국제분류와의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향후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는 ICCS 분류를 하나의 방향으로 삼아,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국제분류와의 조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연계내용 및 문제점

대분류 11영역과의 연계내용과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7〉 대분류 11영역 연결내용 및 문제점 정리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1 기타범죄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	포함:						
		-	제외:						
11011	고문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2	해적	+	1. 죄명코드 연계 가. 특별법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죄명코드</th> <th style="width: 25%;">죄명</th> <th style="width: 50%;">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9010300</td> <td>위반</td> <td>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010300	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010300	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제외: 2. 문제점 - 선박위해처벌법에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ICCS 분류에는 행위지를 구별하여 202023 및 11012 두 가지로 나누고 있음 - 상위분류인 1101로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가장 연관성이 있는 소분류 11012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11013	전쟁범죄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상,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 재산파괴나 손상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39	기타 전쟁범죄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4	집단학살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5	반인권 범죄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6	침략범죄	+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범죄분류 연계가능 코드	
대분류 11 기타범죄			
		-	제외:
11019	보편적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행위들	+	포함:
		-	제외: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미성년자에 관하여 구체적 법률과 규정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	+	포함:
		-	제외:
11021	비행 법률에 의하여 단지 관련된 사람의 나이 때문에 불법이 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의하여 범해진 행위 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성인의 행위	+	포함:
		-	제외: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기타 청소년 관련 법규에 반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	포함:
		-	제외:

제4장. 결론 및 제언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행위중심으로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체계는 법률조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를 따르는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중심으로 통계 원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는 있는 범죄분류체계는 경찰이 작성하는 통계원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발생·검거통계원표를 작성할 때 주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조항과 죄명을 기재하고 공범관계 등 관련 행위를 선택하면 주된 행위가 나중에 법조항으로부터 추출되어 조합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쳐 법률조항 중심의 통계분류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예를 들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대분류(Section 9)로 구분하고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다시 중분류로 지정하여 국가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반란, 간첩, 공식비밀의 유출, 정부의 안전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전쟁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군부대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내란음모, 방해공작, 국제침략범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침략전쟁을 야기하거나 전쟁 야기를 시도하는 행위, 주권강탈, 왕과 왕족에 대한 침해행위, 폭동 선동 행위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통계 원표를 작성한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통계원표를 작성할 때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해당법률을 기재하고, 기수와 미수 등 부수적인 관련 행위를 선택하면 해당 법 조항에서 관련 행위를 추출하여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완벽한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분류체계를 법률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법률조항 중심의 통계 산출에 있어서도 분류코드를 세분화하면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범죄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UN-CTS (UN Crime Trend Survey)는 행위의 고의성을 더 중시하는 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는 상당히 달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도 존재한다. 출발이 다른 두 개의 분류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작업이 아니며 현 우리나라의 통계를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보완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범죄 분류 체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근본적으로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 여러 가지 보완을 거쳐 보다 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국제표준범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연계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1. 대분류별 상세 제언

1) 대분류 02-05영역

가. 법률명 개정 및 범죄유형의 신설에 따른 죄명코드의 변경·신설 및 삭제 등 통일화

[대분류 02 영역]

- 중대한 협박 및 경미한 협박으로 연계되는 ‘공중 등 협박목적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테러자금금지법)’은 2014년 5월 28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한 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개정을 통하여 개정법에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원칙에 따라 신설된 예비·음모는 연계하지 아니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죄명코드의 분류에 따르면 죄명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분류 03 영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4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어 법률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죄명코드는 각기 법률명으로 별도로 부여되어 있다.
- 아울러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의 운전에서 음주운전과의 분류에서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2013년 “항공보안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죄명코드는 각기 법률명으로 별도로 부여되어 있다. 시산과정에서의 중복시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도 죄명코드의 정리 및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 법률명 위반으로 부여된 죄명코드의 행위유형에 따른 죄명코드의 세분화 및 결합법·결과적 가중범 등의 연계원칙

[대분류 02 영역]

- 일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른 행위유형은 매우 많아 국제표준범죄분류에 여러 분류에 연계가 가능하다. 즉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흥기의 은닉휴대, 제4호의 폭행 등 예비, 제23호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제25호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등은 기타 폭행 및 협박(02019)로, 제3조제1항제41호의 지속적 괴로힘은 스토킹(02082)로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는 각각의 행위유형에 따라 죄명코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0206020100), 경범죄 처벌법 위반교사(0206020101), 경범죄 처벌법 위반방조(0206020102)로만 부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1대1 연계원칙상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스토킹(02082)에만 적시하였다. 추후 범죄코드를 부여함에 있어 각각 행

위 유형에 따른 분류가 요구된다.

[대분류 04 영역]

- 강도치상죄는 기본범죄인 강도죄가 가지는 중한 결과발생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강도죄와 과실치상죄가 일반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된다. 비록 치상의 결과는 치사의 결과와 달리 일반적인 강도죄 보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나 강도의 죄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질로서 치상에 대한 죄질의 성격을 통해 목적의 분류에서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강도치상죄 등 강도의 죄와 관련된 고의의 기본범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야기되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경우 고의의 기본범죄인 강도죄, 해상강도죄 등과 연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분류항목에 연계한다.
-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도는 목적범으로 절도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결합범으로 그 성격에 대하여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 절도죄의 가중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나 절도죄의 가중유형이 아닌 독립된 구성요건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강도(0401)는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서, 먼저 재물을 취득하고 사후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준강도와 준특수강도를 연계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준강도는 강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도 있고, 선후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재물의 취득과 폭행·협박간의 근접성이 요구되고 폭행·협박의 정도에서도 강도죄와 차이가 없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점에서 그 불법성에 있어 강도죄와 차이가 없다. 또한 법정형 역시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35조) 강도에 연계한다.

[대분류 05 영역]

- 우리 형법에서 절도와 주거침입의 결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어 범죄화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죄명코드를 부여한 범죄가 바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이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별도의 죄명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침입절도와 그 구성요건이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입절도에 연계한다.
- 침입절도(0501)에 연계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저택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는 소분류인 가정집 침입절도(05012)에 연계하되 그 하위분류인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과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에는 연계할 수 없다. 우리 죄명코드는 주거나 저택이 영구 가정집인지, 비영구 가정집인지 구별하지 않으나 주거나 저택이 가정집임에는 분명하므로 소분류인 가정집 침입절도에 연계한다.
- 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서 건조물이나 방실은 침입절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가정집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 침입절도(05011)이나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에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공공장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중분류인 침입절도(0501)에 연계할 수밖에 없다.

- 형법은 행위 객체로서의 재물을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건조물,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광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범죄화하고, 죄명코드 역시 각각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는 재물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형법의 재물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다양한 행위 객체의 죄명코드를 연계한다.
- 또한 형법은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 손괴 이외에 은닉, 방화, 일수, 파괴 등을 재물손괴와 동일한 법조문이나 유사한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은닉, 방화, 일수, 파괴 등은 손괴와 동일하게 재물의 효용가치를 손상하는 행위이고 형법상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 그리고 국제표준범죄분류의 damage에는 의도적 파괴(willful destruction), 일반적 효용 훼손(damage), 외관 훼손(defacement)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손괴, 은닉, 방화, 일수, 파괴 등 다양한 행위 태양을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재물손괴에 연계한다.

다. 죄명코드 상 행위주체·수단 등의 세분화 미비로 인한 연계 불가

[대분류 02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을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020211),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020212), 법정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020213),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9)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행위 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는 모두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으로 연계하였다.
- 소분류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그 행위 주체에 따라 다시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1),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2), 법정후견인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3),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9)로 세분류된다.
- 반면 우리 형법은 주체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없고 행위자의 행위내용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형성되고 행위자적 특성은 책임의 정도나 양형사유에서 고려되므로 죄명코드가 행위주체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았다.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세분류인 운송장비 납치(하이잭킹)(020223)는 행위의 방법 가운데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 즉 도구를 세분화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 격리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에 있어 도구의 이용을 세분화하지 않는 현행법의 체계상 연계가 불가하다.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향정신성 물질영향에서 운전을 알코올(음주), 불법 약물, 기타 향정신성 물질로 세분류하고 있으나 불법약물과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약을 과다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여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을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정신성 물질영향에서 운전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 소분류 괴롭힘(02081)과의 연계에 있어서 현행법상 괴롭힘과 가장 유사한 행위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02301011500)의 차별행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021021100)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행위는 괴롭힘보다 국제표준범죄분류 중 개인차별(0101)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벌칙과 교육 이수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만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분류 05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소분류 이하의 분류기준은 침입장소, 행위 객체, 행위 객체의 성질에 의한 분류인 반면, 우리 형법은 기본 구성요건과 불법 또는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으로 구별되고 이에 따라 죄명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소분류 이하 최소 구별단위를 연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예를 들면 우리 형법은 절도의 죄를 기본구성요건인 절도죄, 불법 또는 책임이 가중된 형태의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구분하고 독자적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 등불법사용으로 구별하고 있음에 반해,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침입절도(0501)를 사업장 침입절도(05011), 가정집 침입절도(05012),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 기타 침입절도(05019)로 소분류하고, 가정집 침입절도는 다시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로 세분류한다.
- 또한 절도(0502)의 경우에도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05021), 개인재산 절도(05022), 기업재산 절도(05023), 공공재산 절도(05024), 가축절도(05025), 서비스 절도(05026), 기타 절도 행위(05029)로 소분류하고, 이중 운수용품 및 부품절도를 다시 육상 차량 절도(050211), 육상 차량 불법 사용(050212), 육상 차량 부품품 절도(050213), 기타 자동차 또는 부품품 절도(050219)로 세분류하고, 개인재산 절도를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050221),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050222), 기타 개인재산 절도(050229)로 세분류하며, 기업재산 절도도 상점절도(050231), 기타 기업재산 절도(050239)로 세분류한다.
- 즉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행위의 객체나 대상에 따라 소분류 및 세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최소분류 단위에서 우리 죄명코드와 연계가 곤란하다.

라. 목적 내지 동기를 요건으로 유형화한 국제표준범죄분류에의 연계 유형화 모색

[대분류 02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행위, 강제 노동,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 형법은 제289조에 목적 없는 인신매매를 규정하고(제1항),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이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제2항). 국제표준범죄분류는 목적 내지 동기를 요건으로 하여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 없는 인신매매의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분류 05 영역]

- 주거침입의 경우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사생활 침해(02111)와 연계가 가능하나,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재산 침해(05)에서 절도목적 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분류(0501)하고, 기타(0509)에서 재산의 불법점거, 주택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 등의 행위를 분류하고 있다.
- 물론 주거침입이 절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생활이나 거주권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하는 경우 주거침입은 침입절도(0501) 또는 기타(0509)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어 연계가 불가한 경우

[대분류 02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자유박탈(02022)의 세분류 중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020223)와 기타 자유 박탈(020229)의 경우 운수장비 납치는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유박탈행위이나 우리나라 현행법은 행위의 방법 중 도구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계불가하며, 기타 자유박탈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다.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기타 자유억압 행위(02029) 중 불법 입양(020291)과 강제혼인(020292)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노예 및 착취(0203) 중 노예(02031), 강제 가사 노동(020321),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020323)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 불가하다.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0208)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사적 처리보다 민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범죄분류 세분류 중 스토킹(02082)과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행위(02089)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아동복지법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나 국제표준범죄분류 세분류 중 괴롭힘(02081)은 연계불가하다.

[대분류 03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대상 성관광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 법익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인 관광행위만으로도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의가 요구되며, 아동 포르노그래피도 아동으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 단순한 소지와 다운로드가 범죄로 유형화되고 있는데 실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대상 성관광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익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인 관광행위만으로도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의가 요구되며, 아동 포르노그래피도 아동으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 단순한 소지와 다운로드가 범죄로 유형화되고 있는데 실무적 논의가 요구된다.

[대분류 05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재산만 침해(05) 중 세분류인 사업장 침입절도(05011), 공공건물 침입절도(05013), 기타 침입절도(05019), 육상 차량 절도(050211), 육상차량 부속품 절도(050213), 개인 재산 절도(05022)[세분류인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050221),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050222), 기타 개인 재산 절도(050229) 포함], 기업재산 절도(05023[세분류인 상점 절도(050231), 기타 기업재산 절도(050239)], 공공재산 절도(05024), 가축 절도(05025), 서비스 절도(05026), 기타 절도 행위(05029)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회사 재물 손괴(05043)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불가하다.

바. 국제표준범죄분류 용어 번역의 정역화 및 개념의 구체화 모색

[대분류 02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갈취 또는 공갈(02051)과 기타 강요 행위(02059)로 세분류하고 있는데, 갈취 또는 공갈은 재산죄적 성격을 갖는 번역으로 우리 형법과의 연계에 있어 바람직한 번역이 아니다. 갈취 또는 공갈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하여 위협을 통하여 특정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라 해석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강요를 폭행이나 협박에 따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박은 언어 외에 거동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표준범죄분류의 강요에 대한 세분류는 번역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실제 분류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 우리 형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과실의 개념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포섭하는 것은 현행법의 체계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범죄분류의 negligence를 번역함에 있어 무모함이나 부주의를 포섭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향정신성 물질영향에서 운전을 알콜(음주), 불법 약물, 기타 향정신성 물질로 세분류하고 있으나 불법약물과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약을 과다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여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을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정신성 물질영향에서 운전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대분류 03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의제강간의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 없이 각 입법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형법은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목적이 범죄의 국가 간 비교라면 분류에 따른 국제적 통일성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

[대분류 05 영역]

- 국제표준범죄분류는 가정집 침입절도(05012)를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1)와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050122) 등의 정역화 모색이 필요하다. 즉 국제표준범죄분류의 Burglary of private residential premises는 가정집 침입절도 또는 개인거주지 침입절도로, 세분류인 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또는 (상시) 거주지에 대한 침입절도로, Burglary of non-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또는 임시거주지 침입절도로 번역된다.
- Burglary of private residential premises는 최소한 사람이 소유, 임대, 리스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Burglary of 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피해자들이 1년 중 대부분을 거주생활을 영위하는 사유거주지로 고정적인 거주인인 주택, 아파트 등 기타 거주지를, Burglary of non-permanent private residences는 피해자들이 1년 중 임시 거주하는 사유 거주지로 여름 별장, 호텔, 기타 임시적으로 임대한 장소를 의미한다.
- 반면 우리 형법은 절도의 장소에 따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라 하며 장소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형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하는 경우 주거, 저택, 건조물, 방실이 과연 영구 가정집인지, 비영구 가정집인지 구분할 수 없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거로 하는 방법은 자가 소유하는 방법, 전세, 월세 등 임대하는 방법, 일시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텔, 여관 등을 임대하는 방법 등 매우 다양하며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하기 어려운데, 번역을 함에 영구 가정집, 상시 거주지 또는 비영구 가정집, 임시 거주지로 분류하여 연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 현실에 맞게 용어를 번역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대분류 06 영역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의 대분류 06 영역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범죄분류를 위해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범죄 중, 향후 ICCS와의 조응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범죄분류코드 세분화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불법행위들과 이에 대한 개별 조항들이 있으나, 범죄분류코드는 이 많은 조항을 크게 마약·향정·대마 관련 위반 행위로만 분류하고 이에 대해 10개 남짓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ICCS 0601의 분류코드와 우리나라 관련법률 상 불법행위의 일대일 연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문제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이 ICCS 06 영역과 관련한 기본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ICCS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분류 6영역의 범죄분류코드 세분화의 문제는 개인소비목적 기준 도입 여하의 문제와, 관리대상 물질의 약물유형별 접근 또는 행위태양별 접근 문제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인소비목적' 기준 도입

ICCS의 중분류 0601의 하위분류인 소분류 06011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소분류 06012는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마약류관리법 등)은 처벌대상 행위의 유형을 '개인소비목적'에 따라 달리 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들은 거의 대부분 소분류나 세분류로 구분되지 못하고 상위분류인 중분류(0601)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형법과 같이 아편·몰핀 관련 범죄에 세부적 범죄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⁶⁰⁾·흡·주사 등은 개인소비목적 행위로, 제조·판매 등은 비개인소비목적 행위로 구분하여 각 소분류 또는 세분류에 매칭시킬 수 있겠으나, 예컨대 법률 전체에 마약·향정·대마 등 약물의 유형에 따른 10여개의 범죄분

60) 물론 이 경우도 행위태양인 '소지'는 문언적으로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소비목적이 아닌 판매 등을 위한 예비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세분류 060111로 분류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

류코드만이 설정되어 있는 마약류관리법의 경우는 이러한 매칭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에 비해 현실적 규범력을 갖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범죄분류코드의 미분화로 부정확한 통계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개인적 소비 목적의 유무에 따른 구분은 관리대상 약물을 단순히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에 비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판매, 밀매, 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생산 등) 불법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ICCS의 기준이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관리대상 약물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개인소비목적’ 기준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약물유형 기준으로부터 행위태양 기준으로의 전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불법행위들과 이에 대한 개별 조항들을 두고 있으나, 범죄분류코드는 이 많은 조항을 크게 마약·향정·대마 관련 위반 행위로만 분류하고 이에 대해 10개 남짓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어떤 조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하나의 약물유형에 대한 10개 이상의 이질적인 행위태양을 동일한 조항으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에 비하여 ICCS 중분류 0601은 약물의 유형은 관리대상 약물 및 전구물질 정도로만 구분하고, 이를 소분류에서 개인소비목적과 비개인소비목적으로 나눈 후, 세분류에서는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적시(예컨대 경작·생산, 밀매, 원료물질전환 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마약·대마·향정 등 약물 유형에 따른 불법의 차이도 물론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굳이 따지자면 행위태양에 따른 불법의 정도 차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수출입과 단순 소지·보관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부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불법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행위태양이 하나의 범죄분류코드로 파악되고 있는 결과, 우리 마약류관리법과 ICCS 분류의 매칭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엄밀한 통계산출 및 국제분류와의 비교검토가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분류코드 세분화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법체계의 범죄분류의 기초를 전술한 바와 같이 ICCS와 일치시켜 약물유형 기준으로부터 행위태양 기준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대분류 09-10영역

국제표준범죄분류상 대분류 9와 10은 공공안전과 자연환경 침해행위인데 이러한 침해행위를 어떻게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즉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고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는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휴전상태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은 특히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다양한 범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만들어 왔으며 통계

분류도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 것이다.

장기간 집권한 독재정권은 형법과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만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중처벌하는 다양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활용하였고 이러한 특별법들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범죄통계분류와 연계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대분류 11영역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의 대분류 11 영역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범죄분류를 위해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범죄 중, 향후 ICCS와의 조응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중분류 1101 관련

ICCS 중분류 1101 해당 범죄는 소분류 11012(해적행위)를 제외하고는 국제형사범죄법 상의 구성요건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소분류 11011(고문), 11013(전쟁범죄, 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11014(집단학살, 동법 제8조), 11015(인도에 반하는 죄, 동법 제9조), 11016(침략범죄), 11019(보편적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행위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재 국제형사범죄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분류코드는 206055900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법 위반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아쉽게도 범죄분류코드 상으로는 알 수 없다.

중분류 1101은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아래에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 행위태양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는 영역이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새로운 범죄분류코드를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 영역이므로 이에 따른 정확한 통계의 산출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나. 중분류 1102 관련

ICCS 중분류 1102는 청소년 관련법규에 반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일반을 규정하고 있다. 소분류 11021은 이 가운데 특히 지위 관련 법위반 행위(status offences)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위 관련 법위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주체의 지위와 관련된 법률로는 「소년법」을, 행위객체의 지위와 관련된 법률로 「청소년 보호법」을 들 수 있다.

먼저 「소년법」의 경우 우리나라 범죄분류코드에서는 동법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코드

(205020500)만을 부여하고 있다. 소년법상 소년의 행위가 소분류 11021의 지위 관련 범위반이 되는 경우는 우범소년에 한정되는데, 현행과 같은 포괄적 분류코드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구분할 수 없다. 향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행위를 분리하거나, 적어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촉법소년(형사책임능력은 없음)과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은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역시 범죄분류코드 상 청소년보호법위반(218030800), 동법위반교사(218030801), 방조(218030802)의 3개의 코드만이 할당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제59조 제6호) 외에 청소년유해행위 관련 범죄(제55조 내지 제57조, 제58조 제5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범죄(제58조 제1·2호 등), 청소년유해업소고용 관련 범죄(제58조 제4호 등)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보호 관련 형사처벌규정을 두다 보니 각 범죄유형간의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죄명코드로는 범죄유형별 정확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향후 이들 행위태양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범죄분류코드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4-1〉 범죄분류코드 세분화의 예시

0209913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체포치상)
02099131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감금치상)
02099132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중체포치상)
02099133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특수중감금치상)
02099158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인신매매)
02099169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약취자상해)
02099170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유인자상해)
02099171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매매자상해)
02099172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국외이송자상해)
02099173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약취자치상)
0209917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유인자치상)
02099175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매매자치상)
02099176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국외이송자치상)
02099207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준강제추행치사)
02099232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신체수색)
02099233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주거수색)
0209923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건조물수색)
02099235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자동차수색)
02099236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선박수색)
02099237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항공기수색)
02099238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방실수색)
02099247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02099248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02099249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이수명령불이행)
02099251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폭행업무수행등방해)
02099253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단체·다중의위력업무수행등방해)

02099254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위험한물건휴대업무수행등방해)
02099255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업무수행등방해치상)
02099257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
02099258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인적사항공개및보도행위)
02099259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02099262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 한국형 범죄분류체계(KCCS) 개발을 위한 제언

1) 통계원표 개선방안

가. 범죄통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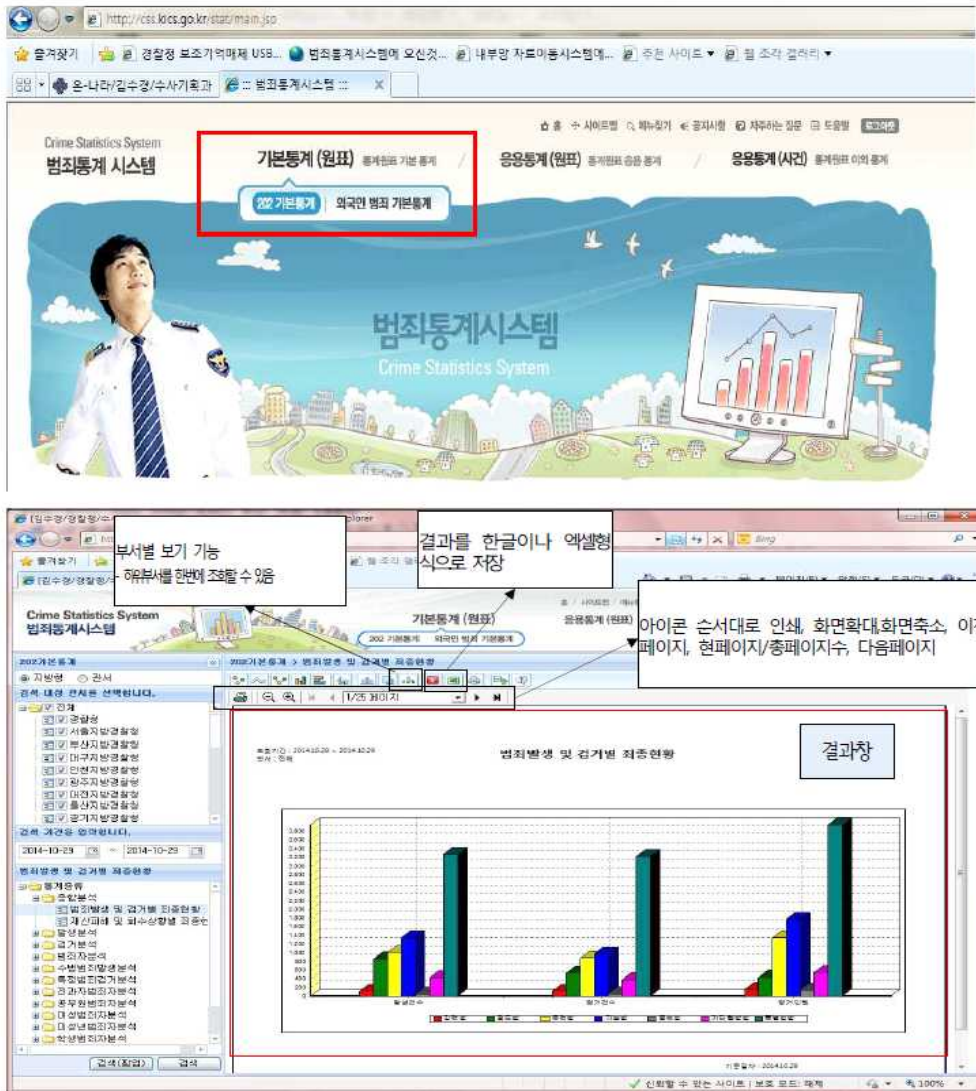
범죄통계는 1963년 중앙정보부에서 시작되어 검찰로 업무이관된 것으로, 1967년 내무부훈령 202호로 경찰범죄통계규칙이 제정된 것에 유래하여 '202통계'라고도 한다. 2004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컴스텟(범죄분석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 수사업무의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적용 사건입력, 배당, 입건, 종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 전산입력 관리해오던 통계부분도 사건입력과 같이 자료 입력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의 '경찰범죄통계규칙 (경찰청 훈령 제384호)'은 2009년 폐지되고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554호)'이 제정되었다.

2010년 5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010년 7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을 개통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이다.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운용하되 각 시스템은 공통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약식절차에서는 완전한 전자화가 이루어져 기존의 종이문서를 온라인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사건처리 또한 전자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민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모바일 앱(APP)에서 24시간 사건진행 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및 전자민원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를 할 수 있다. 전국 1,032개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및 주요사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사건조회가 가능하다.

경찰의 경우 접수된 모든 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접수통계로 집계되고 있으며, 범죄통계는 입건 후 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를 '입력→승인→배치작업'의 단계를 거쳐 범죄통계시스템(CSS)에 집계 된다. 범죄통계시스템을 이용하려면 KICS 포털에 링크되어 있는 「CSS 범죄통계시스템」을 통해 별도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 주소창에 <http://police.kics.go.kr>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도 있다. 통계종류로는 202 기본통계 기준으로 종합분석, 발생분석, 검거분석, 범죄자분석 등 크게 14개 유형으로 나뉘며 세부통계유형으로 181개의 통계종류가 있다.



〈그림 4-1〉 키스 메인 및 통계화면

나. 원표 작성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검거되어 송치되는 사건은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를 모두 작성하고, 기소중지로 송치할 때에는 검거원표를 작성하지 않다가 추후 검거되어 사건이 재기되면 발생원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검거원표에서 이전 발생원표를 불러 연결시키고 검거원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면 된다(아래 <표 4-2> 참조). 또한 일단 피의자 조사 후 송치되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지휘가 있어 수사하다가 의견이 바뀌어 송치되는 사건에서는 발생, 검거원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원표에서 이전 발생원표를 불러 연결시키고 피의자원표를 새로 작성하면 된다. 발생원표는 한 사건에 하나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중지 재기사건, 검사 보완수사 지휘사건은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더라도 기존 사건번호에 대한 발생원표에 연결하면 된다. 각하의 경우는 원표를 일체 입력하지 않는다.

〈표 4-2〉 범죄통계원표 입력 원칙

- (1) 범죄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이하 “발생원표”라 약칭한다), “검거통계원표”(이하 “검거원표”라 약칭한다) 및 “피의자통계원표”(이하 “피의자원표”라 약칭한다)의 3종으로 구분하며,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입력한다.
- (2) 발생원표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수사기관에서 입건 후 즉시 입력하고 검거원표와 피의자원표는 최종송치관서에서 입력하되, 검거원표는 피의자를 1명이라도 검거했을 경우에만 입력하고 피의자원표는 기소중지를 포함한 모든 송치피의자에 대해서 입력한다.
- (3)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 발생·검거·피의자원표를 모두 입력하지만, 군사법원관할의 범죄로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사건과 각하사건, 즉결심판사건(판사의 명령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 제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 (4) 발생원표와 검거원표는 범죄사건을, 피의자원표는 피의자를 각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발생원표는 발생 1건에 1건을, 검거원표는 검거 1건에 1건을 입력하고, 피의자원표는 피의자 1명당 1건을 각 입력한다.
- (5) 각 죄마다 수건 입력하고, 피의자 원표는 그중 중한 죄 또는 주된 죄에 대한 1건을 입력한다.

다. 죄명 입력 및 개선방안

죄명과 해당법률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중한 죄에 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의 죄는 괄호 안에 죄명을 구분, 입력한다(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명이 길고 또 자주 발생하는 것은 검찰사건 전산사무에서 사용하는 축약된 죄명간이코드로 입력하여도 된다.

개선방안으로는 범죄분류체계에 맞추어 원표 입력 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원표에서 죄명을 입력할 경우에 기존의 죄명코드와 더불어 범죄분류체계의 코드도 표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모든 범죄통계 관련 기관의 참여 - ICCS 실무그룹 설치

ICCS 도입 매뉴얼이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강조하는 첫 번째 사항은 ICCS 도입절차에 범죄통계와 관련한 모든 기관이 도입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등 형사사법기관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범죄 통계를 분석 활용하는 전문가 집단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통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계청에서 도입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기관들이 도입 절차에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향후 효과적이고 신속한 ICCS 도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관의 참여의 방법 및 정도와 관련하여 ICCS 도입 지침은 새로운 ICCS 분류방안 도입과 관련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ICCS 도입 목표를 설정하고 범죄통계 생산 및 활용을 고려하여 어떠한 항목을 새로운 범죄통계에 포함 또는 비포함 할 것인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각 기관별 공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절

차 및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실무그룹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실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획에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추진 일정, 예산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계별 도입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무 계획을 위하여 활동 목록 및 상세한 과업 분류, 과업 수행시간, 그리고 수행 이후의 평가방법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범죄통계 제도로의 개편

ICCS 도입 지침과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 검토 및 연구하고 있는 ICCS 도입 방안은 기존의 범죄통계 분류방법에 ICCS 분류항목을 단순히 연계시키는 것으로 끝나치지 않고 각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정책적, 학술적 활용까지 모두 고려한 새로운 범죄통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검찰청 예규 제772호에 의거한 세 가지 종류의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를 작성하여 광범위하고 상세한 범죄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통계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에게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통계 자료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많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활용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 및 활용성의 제한은 정보 입력의 정확성을 저하하고 정보의 실무적 신뢰성(Practical Reliability)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원표중심의 범죄통계제도는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어 정작 특정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항목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한 범죄 여부, 증오범죄성 동기 파악 등)은 조사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형사정책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 NIBRS 시스템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범죄유형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조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죄종별 원표내용을 상이하게 수집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NIBRS에 의하여 수집된 범죄통계 자료는 대부분의 원 자료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고 형사정책 수립 또는 이와 관련한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간되는 “범죄분석”책자를 통한 매우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CCS 도입 시 새로운 범죄통계 분류 및 이에 따른 수집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게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여 정책적 및 실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모든 국민이 범죄통계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세분화변수의 활용

상기 서술한바와 같이 범죄종류에 따라 형사정책 또는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특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세분화변수의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록 4 참조). 현재 ICCS 세분화변수와 관련된 정보는 통계원표상의 여러 조사항목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는바 조사 항목이 해당 범죄유형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조사되고 있어 관계없는 항목도 조사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정작 특정 범죄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는 수집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ICCS에서 제시하는 세분화변수를 도입하여 범죄통

계 수집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원표에 제시되고 있는 조사 항목 들은 정확한 구분기준이 없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범행시 일기”로 1. 맑음, 2. 흐림, 3. 비, 4. 폭풍우, 5. 눈, 6. 폭설, 7. 안개, 8. 바람, 9. 만원, 10. 암흑, 11. 미상 등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 항목 사이의 구분이 명확치 않음)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범행 시 일기를 조사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ICCS의 세분화변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외에도 피의자통계원표에서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전과상황 등은 조사내용을 최소화하고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신상확인 정보를 제외하여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는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범죄통계 산출이 형사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무의미한 범죄유형은 과감히 범죄통계 수집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분화변수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과거 몇몇 학자는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앞서 말한 실무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활용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미국 등 여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수집절차를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세분화 변수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범죄 계수의 일관성 제고

우리나라 범죄통계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죄수(罪數) 산정기준이 정확치 않아 범죄 건수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⁶¹⁾. 이러한 범죄의 계수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수집된 자료가 범죄통계에 산입되는 시점, 계수 단위, 주요 범죄 법칙 적용 여부, 다수의 범죄를 기록하는 방법,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록 방법 등이 있으며 특히 죄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범죄통계의 국제적 비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간의 이견이 있어왔으나 이번 ICCS 도입 지침에 UN-CTS에 입각한 구체적인 범죄 계수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범죄 계수 방법을 특정지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ICCS 지침은 범죄 행위와 사람의 계수와 관련하여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나 사람의 계수에는 “주요 범죄 법칙”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각 기 별개의 사건 또는 사람으로 계수하나 여러 사람이 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를 한 후 사람을 살인하였으면 각 기 다른 범죄로 계수하고 같은 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합계하지 않고 각 범죄를 개별 계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수차례 기소된 경우도 각기 별도로 계수하도록 하고 있다. ICCS 지침은 강제 사항은 아니나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범죄통계 산출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범죄통계 계수 방법을 검토하여 ICCS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된 방법으로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범죄통계 품질관리 방안 수립

현행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통계 입력 및 처리과정에 대한 입력오류 또는 잘못된 입력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과정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즉 입력오류의 점검이 전산 입력된 자료에

61) 탁종연. 2007.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7(3): 169-194

대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산 담당자가 피의자원표 미작성 또는 사건번호 불일치 등 전산에 불일치목록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 점검을 하거나 대검찰청에서 작년과 크게 변화가 있는 경우에 경찰청에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입력 오류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한 점검, 시정 또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NIBRS의 경우 FBI에서 품질관리팀을 운영하여 일선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여타 필요한 경우 통계 입력 현장에 나가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교육 또는 보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CCS 도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고려, 범죄통계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국제비교시 범죄통계의 과다계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범죄통계 이원화의 필요성

국제표준범죄분류(ICC)에 따른 범죄통계는 국가별·지역별 범죄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범죄분류의 통일성과 국제비교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표준범죄분류에 따른 범죄통계는 특정 국가의 범죄실태와 치안수준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지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UN)에서는 이러한 범죄통계를 감안하여 국가별·지역별 범죄현황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국제적인 범죄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 예컨대 범죄예방(방지)국제기구(가칭),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적인 지표로 인정되는 범죄통계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의 제고, 경제·국제투자 유치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주요지표로 인정되는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제표준범죄분류에 따른 범죄통계의 부정확성이나 오류를 해소하여야 하는 것은 범죄통계 작업에 있어 대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형사범과 특별법범 및 행정범의 구별 없이 일괄하여 범죄유형별로 범죄코드를 부여하여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범죄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방식은 국내적으로는 범죄의 발생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 범죄예방이나 대응 및 대책수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형사정책적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약 70%에 해당하는 행정형법에 따른 행정범은 비범죄화의 대상이자 행정벌(과태료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유형이기에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다루어야 하는 형사범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국제기구에 보고되는 범죄통계의 집계로는 범죄통계의 부정확성과 오류에 따른 과다계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마치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범과 특별법범을 구분없이 일괄하여 국제표준범죄분류에 따른 범죄통계로 집계하는 것도 동일하게 범죄통계의 부정확성과 오류에 따른 과다계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국내의 치안수준과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범죄예방이나 대응 및 대책수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내용 범죄통계의 집계(국내용으로서의 비공식적 집계)와 국제적으로 국내의 치안수준과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의 제고에 직결되는 국제기구에의 보고용 범죄통계(국제용으로서의 공식적 집계)를 각각 이원적으로 집계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한 형사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 특별
 범범에 대한 범죄통계 및 형법범인 교통사범은 공식적인 경찰백서나 범죄백서 등에서는 제외하여 별도
 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⁶²⁾.

8) 현행 ICCS 분류표 개정(안)

현행 활용되고 있는 ICCS 분류표와 관련하여 분류 및 시산 등 적용관련 검토결과 몇몇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시산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으나 번역이 명확치 않은 경유
 도 포함한다. 예컨대, 중분류 0206 과실은 영문으로 Negligence로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죄 이외에 아
 동 등 보호대상자의 방임, 유기를 포함하는 의미임으로 과실/유기/방임죄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또한, 세분류 030223 성적 목적 아동유인(sexual grooming of children) 의 범죄는 아동과 친숙
 함을 빌미로 성적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아동유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범죄임으로 아동 그루밍 성범
 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현행 ICCS 분류표
 수정(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4-3>과 같으며 상세 수정내용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4-3> ICCS 분류표 수정(안)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0101	고의 살인	01010	고의 살인	010100	고의 살인
		0102	고의 살인 미수	01020	고의 살인 미수	010200	고의 살인 미수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10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 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과 실 살인
		0104	자살 방조.교사	01041	자살 방조	010410	자살 방조
				01049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490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5	안락사	01050	안락사	010500	안락사
		0106	불법 낙태	01060	불법 낙태	010600	불법 낙태
0107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1090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10900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2	상해를 야기 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12	협박	020112	경미한 폭행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121	중대한 협박
						020122	경미한 협박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비영리 목적 약취/유인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62) 이동희. 2019. "범죄통계 국제비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국제범죄분류와 연계·분석을 통한 한국범죄통
 계 발전방안 발표자료: 13-25.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2	자유 박탈	020221	납치(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020222	불법 감금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1	불법 입양		
					020292	강제 혼인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10	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2	강제 노동	020321	강제 가사 노동
							020322	강제 산업 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10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20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30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5	강요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10	강탈 또는 갈취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590	기타 강요 행위		
	0206	과실/유기/방임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611	아동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30	차량 운전 부주의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020710	건강 위협 행위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21	음주 운전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	기타 위험 행위	020790	기타 위험 행위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11	직장내 괴롭힘			
		02082	스토킹	020819	기타 괴롭힘			
				020820	스토킹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10	개인의 특성 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0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10	개인 차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102	집단 차별	021020	집단 차별		
				02109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2119	기타 침해	021190	기타 침해
				0219	기타	02190	기타	021900	기타
03	성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3	의제 강간		
						030119	기타 강간		
				03012	성추행(강제추행)	030121	신체적 성추행		
						030122	비신체적 성추행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추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190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03022	아동 성착취	030222	아동 성매매		
						030223	아동 그루밍성범죄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30290	기타 성착취						
0309	기타 성 범죄	03090	기타 성 범죄	030900	기타 성 범죄				
04	폭력 또는 협박 등 반재산 침해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040119	기타 대인 강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1	금융 기관 강도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04014	가축 강도	040140	가축 강도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0409	기타	04090	기타	040900	기타				
05	재산만 침해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050110	사업장 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190	기타 침입절도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	육상 차량 절도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050229	기타 개인재산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10	공공재물 손괴
				05042	사유재물 손괴	050420	사유재물 손괴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30	회사재물 손괴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490	기타 재물 손괴
		0509	기타	05090	기타	050900	기타
		06	관리대상물이나 항상성을 행위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06012	비개인소비용불법마약 류밀매,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190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90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	기타			06090	기타	060900	기타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0701	사기	07011	금융 사기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 융 사기				
		070119	기타 금융 사기				
		07019	기타 사기 행위			070190	기타 사기 행위
		0702	위조	07021	결제수단 위조	070211	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12	비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2	상품 위조	070220	상품 위조
				07023	문서 위조	070230	문서 위조
				07029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290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3	부패	07031	뇌물 증수뢰	070311	뇌물 증뢰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70312	뇌물 수뢰			
				07032	횡령	070320	횡령		
				07033	직권 남용	070330	직권 남용		
				07034	영향력 거래	070340	영향력 거래		
				07035	불법적 부의 축적	070350	불법적 부의 축적		
				07039	기타 부패 행위	070390	기타 부패 행위		
				0704	범죄수익금 관련 행위	07041	돈 세탁	070410	돈 세탁
						07042	불법 문화재 매매	070420	불법 문화재 매매
						07049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490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8	공공질서 행동규범 침해 행위	0801	공공질서 행동규범 침해 행위	0801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10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2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20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9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190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2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1	성매매 범죄	080210	성매매 범죄		
				08022	음란물 범죄	080220	음란물 범죄		
				08029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290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3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통제와 관련 행위	08031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10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2	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080321	종교적 믿음 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2	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9	제한된 사회적 믿음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 행위		
		08039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390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	국고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41	국고 세입 규정 위반행위	080410	국고 세입 규정 위반행위		
				08042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20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3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30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4	밀수입	080440	밀수입		
				08045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50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9	기타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490	기타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5	이민 관련 행위	08051	밀입국 알선/조력의 죄	080510	밀입국 알선/조력의 죄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590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	사법제도 침해 행위	08061	사법 방해	080610	사법 방해		
				08062	사법 명령 위반	080620	사법 명령 위반		
				08063	범죄의도	080630	범죄의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8064	범죄음모	080640	범죄음모		
				08069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690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7	민주적 선거와 관련 행위	08071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10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9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790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8	노동법에 반하는 행위	08081	집단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080810	집단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08082	개인의 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080820	개인의 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080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0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1	화기 불법 소지,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901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소지, 사용 관련 행위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1	화기 밀매		
						090122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밀매		
						09012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관련 행위		
090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190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0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0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10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	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 불법 방해	09032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조작		
						090322	컴퓨터 데이터 불법 조작		
				09033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30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90510	범죄 조직 가담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90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6	테러			09061	테러조직 가담	090610	테러조직 가담		
				09062	테러 재정지원	090620	테러 재정지원		
				09059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590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	비상해 교통위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10	1001	환경 오염·저해 유발 행위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10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0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0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9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90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10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2	국경을 통과하는 폐기물이동·투하	100220	국경을 통과하는 폐기물이동·투하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11	희귀종 국내 거래 또는 소유		
					100312	희귀종해외밀매		
			10032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0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0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100410	불법 벌목		
			1004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20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	불법 채굴	100430	불법 채굴		
			10049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490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1	동물 위해 행동	100910	동물 위해 행동		
			1009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90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1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11011	고문	110110	고문	
				11012	해적	110120	해적	
				11013	전쟁범죄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9						기타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	110140	집단학살		
11015				반인권 범죄	110150	반인권 범죄		
11016		침략 범죄	110160	침략 범죄				
11019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190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1	비행(미성년자 신분관련 범죄)	110210	비행(미성년자 신분관련 범죄)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90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3. 한국형 범죄분류체계(KCCS)(안)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에 대한 국내 죄명코드와의 연계 및 시산을 통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안)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죄명코드 연계결과와 전년도 연계결과(대분류 01, 07, 08)를 취합하여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안)를 제시하면 아래 <표 4-4>와 같다. 음영 표시된 부분은 국제표준범죄분류에는 있으나 한국표준범죄분류(안)에는 우리나라 죄명코드와 연계불가 등의 이유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각각 대분류별 죄명코드 연계작업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부록 1]에 포함하여 있으며 대분류별 죄명코드 연계작업 상세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표 4-4>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안)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0101	고의 살인	01010	고의 살인	010100	고의 살인
		0102	고의 살인 미수	01020	고의 살인 미수	010200	고의 살인 미수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01031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10	살인 고의 및 중한 상해 고의 이외의 고의 살인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과실 살인
		0104	자살 방조.교사	01041	자살 방조	010410	자살 방조
				01049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490	기타 자살 방조.교사
		0105	안락사	01050	안락사	010500	안락사
		0106	불법 낙태	01060	불법 낙태	010600	불법 낙태
		0107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1090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10900	기타 사망 초래 또는 의도 행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	020121	중대한 협박
				020122	협박	020122	경미한 협박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190	기타 폭행 및 협박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비영리 목적 약취/유인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22	자유 박탈	020221	납치(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020222	불법 감금	020222	불법 감금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020229	기타 자유 박탈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1	불법 입양	
							020292	강제 혼인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2	강제 노동	020310	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21	강제 가사 노동
								020322	강제 산업 노동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5	강요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6	과실/유기/방임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611	아동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30	차량 운전 부주의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21	음주 운전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	기타 위험 행위
						02071	건강 위험 행위	020710	건강 위험 행위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11	직장내 괴롭힘
								020819	기타 괴롭힘
						02082	스토킹	020820	스토킹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10	개인의 특성 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0990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10	개인 차별
						02102	집단 차별	021020	집단 차별
						02109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2119	기타 침해	021190	기타 침해
		0219	기타	02190	기타	021900	기타		
		03	성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범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30113	의제 강간				
					030119	기타 강간				
					03012	성추행(강제추행)	030121	신체적 성추행		
							030122	비신체적 성추행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추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190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3022	아동 성착취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030222	아동 성매매
									030223	아동 그루밍성범죄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30290	기타 성착취
					0309	기타 성 범죄	03090	기타 성 범죄		
04	폭력 또는 협박 등 반 사회 적 행 위 의 위 험 을 중 요 한 사 유 로 인 정 하 는 범죄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040119	기타 대인 강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1	금융 기관 강도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04014	가축 강도	040140	가축 강도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0409	기타	04090	기타			
				05	재산만 침해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050110
05012	가정집 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190	기타 침입절도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	육상 차량 절도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050229	기타 개인재산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504	채물 손괴	05041	공공채물 손괴	050410	공공채물 손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5042	사유재물 손괴	050420	사유재물 손괴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30	회사재물 손괴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490	기타 재물 손괴
	0509	기타	05090	기타	050900	기타	
06	관리대상물이나정성물질관련위법행위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06012	비개인소비용불법마약류밀매,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190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90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	기타	06090	기타	060900	기타		
07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0701	사기	07011	금융 사기	070111	국가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2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 사기
						070119	기타 금융 사기
				07019	기타 사기 행위	070190	기타 사기 행위
		0702	위조	07021	결제수단 위조	070211	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12	비현금 결제수단 위조
				07022	상품 위조	070220	상품 위조
				07023	문서 위조	070230	문서 위조
				07029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290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3	부패	07031	뇌물 증수뢰	070311	뇌물 증뢰
						070312	뇌물 수뢰
				07032	횡령	070320	횡령
				07033	직권 남용	070330	직권 남용
				07034	영향력 거래	070340	영향력 거래
				07035	불법적 부의 축적	070350	불법적 부의 축적
		07039	기타 부패 행위	070390	기타 부패 행위		
		0704	범죄수익금	07041	돈 세탁	070410	돈 세탁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관련 행위	07042	불법 문화재 매매	070420	불법 문화재 매매
			07049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490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9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0
08	공공질서 행동규범 침해 행위	0801	0801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10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08012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20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9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190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2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1	성매매 범죄	080210	성매매 범죄
			08022	음란물 범죄	080220	음란물 범죄
			08029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290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3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통제와 관련 행위	08031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10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2	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080321	종교적 믿음 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2	편협성과 증오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080329	제한된 사회적 믿음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 행위
	08039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390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	국고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41	국고 세입 규정 위반행위	080410	국고 세입 규정 위반행위
			08042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20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3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30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4	밀수입	080440	밀수입
			08045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50	시세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08049	기타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490	기타 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하는 행위
	0805	이민 관련 행위	08051	밀입국 알선/조력의 죄	080510	밀입국 알선/조력의 죄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590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	사법제도 침해 행위	08061	사법 방해	080610	사법 방해
			08062	사법 명령 위반	080620	사법 명령 위반
			08063	범죄의도	080630	범죄의도
			08064	범죄음모	080640	범죄음모
			08069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690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7	민주적 선거와 관련 행위	08071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10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9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790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8	노동법에	08081	집단행위 관련 노동법	080810	집단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반하는 행위		위반			
			08082	개인의 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080820	개인의 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080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0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1	화기 불법 소지,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901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소지, 사용 관련 행위
						090121	화기 밀매
						090122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밀매
						09012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밀매 관련 행위
		090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190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0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0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10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09032	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 불법 방해	09032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조작
				090322	컴퓨터 데이터 불법 조작		
				090330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90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90510	범죄 조직 가담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90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6	테러	09061	테러조직 가담	090610	테러조직 가담
				09062	테러 재정지원	090620	테러 재정지원
				09059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590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	비상해 교통위반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1	환경 오염·저해 행위	10011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10	대기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20	수질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30	토양오염·저해유발행위
				10019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 행위	100190	기타환경오염·저해유발행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10	국내폐기물이동·투하		
				10022	국경을 통과하는 폐기물이동·투하	100220	국경을 통과하는 폐기물이동·투하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11	희귀종 국내 거래 또는 소유		
						100312	희귀종해외밀매		
				10032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0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390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100410	불법 벌목		
				1004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20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	불법 채굴	100430	불법 채굴		
				10049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490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1	동물 위해 행동	100910	동물 위해 행동		
				1009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90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1	기타 범죄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11011	고문	110110	고문
						11012	해적	110120	해적
11013	전쟁범죄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재산파괴나 손상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110139	기타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					110140	집단학살		
11015	반인권 범죄					110150	반인권 범죄		
11016	침략 범죄					110160	침략 범죄		
11019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190	기타 보편 사법권 위반 행위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1	비행(미성년자 신분관련 범죄)	110210	비행(미성년자 신분관련 범죄)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290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11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11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범죄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소영 외 4인 (2018).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통계청 용역보고서.
- 강소영 외 6인 (2017). 한국범죄분류 개발 타당성 연구. 통계청 용역보고서.
- 김은경 (2008). 국가 범죄통제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6). 국제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이동희 (2019). 범죄통계 국제비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 정다혜, 임석순, 지유미 (2016).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201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의 국내적용방안 기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대현, 이웅혁, 장현석 (2016).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탁종연, 전영실, 이희길, 심수진 (2008). 국가공식 범죄통계연구. 통계개발원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국외문헌]

- Beals, M., M. DiLiema, and M. Deevy (2015). *Framework for a Taxonomy of Fraud*. Joint collaboration of Financial Fraud Research Center at the Stanford Center on Longevity and the FINRA Investor Education Foundation. Stanford, CA: Stanford Center on Longevity.
- Bisogno, E., Dawson-Faber, J., & Jandl, M. (2015).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A new instrument to improve comparative criminological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2(5): 535-550.
-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Panel on Modernizing the Nation's Crime Statistics, Cork, D. L., and Lauritsen, J. L.(2016)
Modernizing Crime Statistics: Report 1: Defining and Classifying Crim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National Academy Press.
- Engineering, and Medicin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Panel on Modernizing the Nation's Crime Statistics, Cork, D. L., and Lauritsen, J. L.(2018)
Modernizing Crime Statistics: Report 2: New Systems for Measuring Crime; Washington D.C.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3a, January 17).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Uniform Crime Reporting (UCR) Program—National Incident-Based*

- Reporting System (NIBRS) User Manual. Version 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013b).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CJIS) Division Uniform Crime Reporting (UCR) Program—Summary Reporting System(SRS) User Manual. Version 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Home Office. (2016). *Hate Crime, England and Wales, 2015/16.*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1929). *Uniform Crime Reporting: A Complete Manual for Police; Report of the Committee on Uniform Crime Records.* New York: J.J. Little and Ives Company.
- ONS. (2015). *CSEW Fraud and Cyber-crime Development: Field Trial: year ending June 2015.*
- ONS. (2017). *Crime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Sept 2016.*
- ONS. (2017). *User guide to Crime Statistics for England and Wales.*
- Statistics Authority. (2014). *Assessment of compliance with the 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
- UNODC. (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Version 1.0.*
- UNODC. (2018).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Implementation Manual.*

부 록 1. 한국표준범죄분류(안) 해설

1) 대분류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201	폭행 및 협박	+	포함: 상해나 치상을 야기하거나 그 위협을 위한 무력사용으로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와 상해 또는 해악을 야기하겠다는 협박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left;">죄명코드</th> <th style="text-align: left;">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5010000</td> <td>상해</td> </tr> <tr> <td>0125070000</td> <td>폭행</td> </tr> <tr> <td>0130010000</td> <td>협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5010000	상해	0125070000	폭행	0130010000	협박
		죄명코드	죄명									
0125010000	상해											
0125070000	폭행											
0130010000	협박											
-	제외: 중한 폭행으로 사망을 야기하게 된 경우 (0101), 성범죄 성격을 갖는 행위로 대분류 0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02011	폭행	+	포함: 형법 및 특별법상 상해, 폭행행위 포함	- ICCS의 분류상 0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제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제외									
020111	중대한 폭행	+	포함: 중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의도적 행위로 형법상의 상해죄, 중상해죄 등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left;">죄명코드</th> <th style="text-align: left;">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5010100</td> <td>상해</td> </tr> <tr> <td>0125030100</td> <td>중상해</td> </tr> <tr> <td>0125260100</td> <td>특수상해</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5010100	상해	0125030100	중상해	0125260100	특수상해
		죄명코드	죄명									
0125010100	상해											
0125030100	중상해											
0125260100	특수상해											
-	제외: 상해치사, 피약취자상해, 피유인자상해, 강간상해, 인질상해, 강도상해, 폭행치사, 미수 등 제외											
020112	경미한 폭행	+	포함: 경미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형법상 폭행, 독직폭행 등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left;">죄명코드</th> <th style="text-align: left;">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4010100</td> <td>외국원수폭행</td> </tr> <tr> <td>0107040100</td> <td>독직폭행</td> </tr> <tr> <td>0125070100</td> <td>폭행</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4010100	외국원수폭행	0107040100	독직폭행	0125070100	폭행
		죄명코드	죄명									
0104010100	외국원수폭행											
0107040100	독직폭행											
0125070100	폭행											
-	제외: 폭행치사, 상해미수, 폭행권리행사방해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2012	협박	+	<p>포함:</p> <p>위협이 실행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적 행위로 형법상 협박 행위,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4010200</td> <td>외국원수협박</td> </tr> <tr> <td>0130010100</td> <td>협박</td> </tr> <tr> <td>0137020200</td> <td>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td> </tr> </tbody> </table> <p>- 중대한 협박이나 경미한 협박으로 구분하지 않고 협박으로 분류</p>	죄명코드	죄명	0104010200	외국원수협박	0130010100	협박	0137020200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죄명코드	죄명									
0104010200	외국원수협박											
0130010100	협박											
0137020200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	<p>제외:</p> <p>무력사용을 통한 강요,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협박, 투표권자를 협박하는 행위,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성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해행위, 착취목적의 무력협박 행위 제외</p>											
020112	중대한 협박		- 현행법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의 정도에 따라 중한 협박과 경한 협박으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122	경미한 협박		- 현행법은 행위반가치 및 결과반가치의 정도에 따라 중한 협박과 경한 협박으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	<p>포함:</p> <p>형법상 폭행, 협박을 제외하고 해악을 가하는 행위로 상해죄의 미수범, 폭행치상죄 등이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5010110</td> <td>상해미수</td> </tr> <tr> <td>0125100100</td> <td>폭행치상</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5010110	상해미수	0125100100	폭행치상		
		죄명코드	죄명									
0125010110	상해미수											
0125100100	폭행치상											
-	<p>제외:</p> <p>피약취자상해미수, 인질상해미수, 강도상해미수 등 제외</p>											
0202	자유 억압 행위	+	<p>포함:</p> <p>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신체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행위</p>									
		-	<p>제외:</p> <p>착취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그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노예행위 및 착취(0203), 다른 분류인 인신매매(0204),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등 제외</p>									
02021	미성년자 약취 / 유인	+	<p>포함:</p> <p>형법상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10100</td> <td>미성년자약취</td> </tr> <tr> <td>0131010200</td> <td>미성년자유인</td> </tr> <tr> <td>0131190100</td> <td>미성년자약취모집</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10100	미성년자약취	0131010200	미성년자유인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죄명코드	죄명											
0131010100	미성년자약취											
0131010200	미성년자유인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 행위 주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행위를 모두 02021로 연계				
		- 제외: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미성년자 약취모집, 미성년자 약취운송, 예비 및 음모 등 제외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13	법정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 현행법은 행위주체에 따른 세분류를 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2	자유 박탈	+ 포함: 사람이나 사람들을 그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 즉 사람의 이동이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는 인질강요, 체포, 감금 등의 행위 포함					
		- 제외: 미성년자 유괴, 노예 행위 및 착취 등 인신매매, 표현이 자유 침해 행위 등 제외					
020221	납치	+ 포함: 무력이나 유혹, 사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인질강요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7010300</td> <td>인질강요</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7010300	인질강요
		죄명코드	죄명				
0137010300	인질강요						
- 제외: 강도에 해당하는 인질강요, 미성년자 유괴, 인신매매, 불법 입양, 인질납치 등 제외							
020222	불법 감금	+ 포함: 다른 지역으로 운송	1. 죄명코드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되지 않는 강제적 구금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체포 및 감금 등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7030100</td> <td>직권남용체포</td> </tr> <tr> <td>0107030200</td> <td>직권남용감금</td> </tr> <tr> <td>0129010100</td> <td>체포</td> </tr> <tr> <td>0129010201</td> <td>감금</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7030100	직권남용체포	0107030200	직권남용감금	0129010100	체포	0129010201	감금		
죄명코드	죄명														
0107030100	직권남용체포														
0107030200	직권남용감금														
0129010100	체포														
0129010201	감금														
		제외: - 해방을 대가로 불법 이익을 요구하는 불법구금, 체포치상, 체포치사, 감금치상, 감금치사 등 제외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 동력이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자유박탈행위이나 현행법은 행위의 방법 중 도구를 세분화하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229	기타 자유 박탈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음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 포함: - 제외:	- 기타 자유억압 행위는 불법입양 및 강제혼인이 없으므로 기타 자유억압 행위로만 구분												
020291	불법 입양		- 현행법상 불법입양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292	강제혼인		- 현행법상 강제혼인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 포함: 미성년자 외의 자를 행위 객체로 하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 중 영리 등 착취 목적이 없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로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등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80100</td> <td>국외이송약취</td> </tr> <tr> <td>0131080200</td> <td>국외이송유인</td> </tr> <tr> <td>0131090300</td> <td>피매매자국외이송</td> </tr> <tr> <td>0131120100</td> <td>피약취자수수</td> </tr> <tr> <td>0131120200</td> <td>피약취자은닉</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80100	국외이송약취	0131080200	국외이송유인	01310903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20100	피약취자수수	0131120200	피약취자은닉
죄명코드	죄명														
0131080100	국외이송약취														
0131080200	국외이송유인														
01310903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20100	피약취자수수														
0131120200	피약취자은닉														
		제외: 미성년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착취 목적이 없는 약취 또는 유인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02021), 미성년자 아닌 자를 행위객체로 하는 약취유인 행위가 착취의 목적에서 행해진 경우(0203)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국외이송부녀매매, 상습국외이송매매, 국외이송인신매매, 피국외이송자상해, 피국외이송자치상, 피국외이송자살인, 피국외이송자치사, 추행피국외이송자수수, 추행피국외이송자은닉, 간음피국외이송자수수, 간음피국외이송자은닉, 국외이송인신매매모집, 예비, 음모 등 제외</p>										
0203	노예 및 착취	+	<p>포함: 재산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얻으려는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 포함</p>	<p>- 현행법상 노예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강제 노동 및 기타 노예 및 착취로 연계 구분</p>								
		-	<p>제외: 인신매매, 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 제외</p>									
02031	노예			- 현행법상 노예행위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32	강제 노동	+	<p>포함: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불법적 노동으로 곡예 강요, 구걸 강요 등을 포함</p>	<p>- 현행법상 강제 가사 노동 및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은 없으므로 강제 산업 노동과 기타 강제 노동으로 구분 연계</p>								
		-	<p>제외:</p>									
020321	강제 가사 노동			- 현행법상 강제 가사 노동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322	강제 산업 노동	+	<p>포함: 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제 노동으로 곡예강요행위, 상습곡예강요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1800</td> <td>곡예강요행위</td> </tr> <tr> <td>0231043800</td> <td>상습곡예강요행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231041800	곡예강요행위	0231043800	상습곡예강요행위		
		죄명코드	죄명									
0231041800	곡예강요행위											
0231043800	상습곡예강요행위											
-	<p>제외:</p>											
020323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 현행법상 강제 국가 또는 군대 노동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329	기타 강제 노동	+	<p>포함: 구걸강요, 상습구걸 강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1400</td> <td>구걸강요</td> </tr> <tr> <td>0231043400</td> <td>상습구걸강요</td> </tr> <tr> <td>0231044200</td> <td>구걸강요이용행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231041400	구걸강요	0231043400	상습구걸강요	0231044200	구걸강요이용행위
		죄명코드	죄명									
0231041400	구걸강요											
0231043400	상습구걸강요											
0231044200	구걸강요이용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	제외: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	포함: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범죄 중 형법상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목적 등 약취 유인,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에 대한 상습적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목적 약취 유인 행위 포함
		-	제외: 미성년자 아닌 자에 대한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은 0302에 해당하므로 제외, 피결혼약취유인 자수수, 피결혼약취 자은닉, 피결혼유인 자수수, 피결혼유인 자은닉, 예비 및 음모 등 제외
0204	인신매매	+	포함: 착취를 목적으로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 행사의 위협, 기타 형태의 강요, 약취 유인, 사기, 기망, 권한의 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 또는 해당인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금전 기타 이익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당인을 모집, 운송, 이전, 구금 또는 수령하는 행위
		-	제외: 노예행위, 강제노동, 노동법위반 행위(0805), 강제 결혼, 성범죄적 성격의 침해 행위(03), 이민자 밀수 및 기타 이민관련 범죄(0805) 목적 없는 인신매매, 예비,

1. 죄명코드 연계

죄명코드	죄명
0131020300	영리약취
0131030300	영리유인
0131040200	노동력착취약취
0131040500	장기적출약취
0131040600	노동력착취유인
0131110100	결혼약취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음모 등 제외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 매매	+	포함: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착취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모집, 전달 운송, 행위 등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90400</td> <td>추행인신매매</td> </tr> <tr> <td>0131090500</td> <td>간음인신매매</td> </tr> <tr> <td>0131100800</td> <td>성매매인신매매</td> </tr> <tr> <td>0131100900</td> <td>성적착취인신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90400	추행인신매매	0131090500	간음인신매매	0131100800	성매매인신매매	0131100900	성적착취인신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090400	추행인신매매													
0131090500	간음인신매매													
0131100800	성매매인신매매													
0131100900	성적착취인신매매													
-	제외: 인신매매에 이르지 않은 성인 성적 착취 (03021), 예비, 음모 제외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	포함: 노동력착취인신매매와 모집, 운송, 전달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100700</td> <td>노동력착취인신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1007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1007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													
-	제외: 예비, 음모 제외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	포함: 장기적출인신매매와 모집, 운송, 전달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101000</td> <td>장기적출인신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													
-	제외: 건강 위험 행위, 건강 및 안전 침해행위, 예비, 음모 등 제외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	포함: 결혼, 영리, 국외이송 인신매매, 상습국외이송매매와 모집, 운송, 전달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90600</td> <td>결혼인신매매</td> </tr> <tr> <td>0131090700</td> <td>영리인신매매</td> </tr> <tr> <td>0131101100</td> <td>국외이송인신매매</td> </tr> <tr> <td>0131100300</td> <td>상습국외이송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90600	결혼인신매매	0131090700	영리인신매매	01311011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100300	상습국외이송매매
		죄명코드	죄명											
0131090600	결혼인신매매													
0131090700	영리인신매매													
01311011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100300	상습국외이송매매													
-	제외:													
0205	강요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유형력의 행사, 협박, 위협, 불리한 정보 폭로에 대한 예고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예고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p>	<table border="1">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r> <td>0137010200</td> <td>강요</td> </tr> </table> <p>- 강요를 강탈 또는 갈취, 기타 강요 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강요에 포함하여 연계</p>	죄명코드	죄명	0137010200	강요
죄명코드	죄명						
0137010200	강요						
		<p>제외: 성적 행위에 대한 강요(03), 재산죄에 해당하는 것(0401), 공포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려는 목적의 행위(0207),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08071), 인질강요 등 제외</p>					
02051	강탈 또는 갈취		- 우리 형법상 강요를 더 세분할 수 없어 강탈 또는 갈취, 기타 강요 행위로 연계 불가				
02059	기타 강요 행위		- 우리 형법상 강요를 더 세분할 수 없어 강탈 또는 갈취, 기타 강요 행위로 연계 불가				
0206	과실	<p>포함: 사람의 과실행위, 무모한 행위, 또는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신체적 해악 또는 신체적 해악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p>	- 과실 외에 고의에 의한 무모한 행위, 부주의한 행위로 유기, 흑사, 학대 등을 포함함				
		<p>제외: 과실에 의한 살인, 신체 상해를 야기하거나 신체 상해에 이르게 하는 위험행위 제외</p>					
02061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	<p>포함: 법적 보호의무 또는 보호책임은 지는 사람이 과실로 그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p>	- 과실에 의한 행위는 없고 유기, 학대, 흑사 행위를 보호대상자에 대한 과실로 구분함				
		<p>제외: 생명에 대한 침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p>					
020611	아동 과실	<p>포함: 형법상 영아유기, 아동흑사, 아동복지법의 아동유기죄, 아동</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r> <td>0128050100</td> <td>영아유기</td> </tr>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8050100	영아유기
죄명코드	죄명						
0128050100	영아유기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유기와 아동학대 등 포함</p> <p>제외:</p> <p>- 영아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등 제외</p>	<table border="1"> <tr> <td>0128080100</td> <td>아동학사</td> </tr> <tr> <td>0128170100</td> <td>영아유기치상</td> </tr> </table>	0128080100	아동학사	0128170100	영아유기치상						
0128080100	아동학사												
0128170100	영아유기치상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p>포함:</p> <p>보호의무자가 보호대상자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와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포함</p> <p>제외:</p> <p>- 존속유기치사, 중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등 제외</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8020100</td> <td>존속유기</td> </tr> <tr> <td>0128040100</td> <td>중존속유기</td> </tr> <tr> <td>0128070100</td> <td>존속학대</td> </tr> <tr> <td>0128110100</td> <td>존속유기치상</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8020100	존속유기	0128040100	중존속유기	0128070100	존속학대	0128110100	존속유기치상
죄명코드	죄명												
0128020100	존속유기												
0128040100	중존속유기												
0128070100	존속학대												
0128110100	존속유기치상												
020619	기타 과실 보호대상자	<p>포함:</p> <p>보호대상자는 영아, 아동, 존속을 제외한 오부조자에 국한하여 유기, 학대 행위 포함</p> <p>제외:</p> <p>- 영아, 아동, 존속에 대한 죄와 유기치사, 학대치사 제외</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8010100</td> <td>유기</td> </tr> <tr> <td>0128030100</td> <td>중유기</td> </tr> <tr> <td>0128060100</td> <td>학대</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8010100	유기	0128030100	중유기	0128060100	학대		
죄명코드	죄명												
0128010100	유기												
0128030100	중유기												
0128060100	학대												
02062	직무상 과실	<p>포함:</p> <p>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모든 의료과실행위, 업무상 과실치상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다 결과 내지 위험이 발생한 경우 포함</p> <p>제외:</p> <p>-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 등은 제외</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3320100</td> <td>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td> </tr> <tr> <td>0113320300</td> <td>업무상과실가스방출</td> </tr> <tr> <td>0113320300</td> <td>업무상과실전기방출</td> </tr> <tr> <td>0113320700</td> <td>업무상과실가스유출</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332010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3320300	업무상과실가스방출	01133203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	0113320700	업무상과실가스유출
죄명코드	죄명												
011332010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3320300	업무상과실가스방출												
0113320300	업무상과실전기방출												
0113320700	업무상과실가스유출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p>포함:</p> <p>직무수행이 아닌 상황에서의 운송수단의 운전과 관련된 과실</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527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죄명코드	죄명												
011527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행위로 자동차 관련 전복, 매몰, 추락, 파과 행위 포함	<table border="1"> <tr> <td>011528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td> </tr> <tr> <td>011529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td> </tr> <tr> <td>0115300300</td> <td>업무상과실자동차파과</td> </tr> </table>	011528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011529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011530030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과									
011528030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011529030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011530030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과																		
		-	제외: 조종사, 선장 등 운송수단 운행인의 과실 제외																
02069	기타 과실 행위	+	포함: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과실범으로 형법상 과실치상과 기타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등의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6010100</td> <td>과실치상</td> </tr> <tr> <td>0126030100</td> <td>업무상과실치상</td> </tr> <tr> <td>0126030200</td> <td>중과실치상</td> </tr> <tr> <td>0113180000</td> <td>과실폭발물파열</td> </tr> <tr> <td>0113310200</td> <td>과실가스방출</td> </tr> <tr> <td>0113310700</td> <td>과실가스유출</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6010100	과실치상	0126030100	업무상과실치상	0126030200	중과실치상	0113180000	과실폭발물파열	0113310200	과실가스방출	0113310700	과실가스유출	
		죄명코드	죄명																
0126010100	과실치상																		
0126030100	업무상과실치상																		
0126030200	중과실치상																		
0113180000	과실폭발물파열																		
0113310200	과실가스방출																		
0113310700	과실가스유출																		
		-	제외: 과실치사, 중과실치사, 재산침해 행위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중과실장물취득, 과실폭발물파열예비, 음모 등 제외																
0207	위험행위	+	포함: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행한 위험한 행위로서 사람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거나 그 가능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불량식품이나 의약품 제조하는 행위 등 포함	- 위험행위는 건강 위험 행위와 항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으로 구분하고, 기타 위험 행위는 분류하지 않음															
		-	제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행위, 과실행위(0206) 제외																
02071	건강 위협 행위	+	포함: 형법상 음용수 관련 죄 및 특별법상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116020000</td> <td>음용수유해물혼입</td> <td></td> </tr> <tr> <td>0116020100</td> <td>음용수독물혼입</td> <td></td> </tr> <tr> <td>0229020100</td> <td>위반</td> <td>식품위생법</td> </tr> <tr> <td>0229024400</td> <td>위반</td> <td>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160200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20100	음용수독물혼입		0229020100	위반	식품위생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160200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20100	음용수독물혼입																		
0229020100	위반	식품위생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제외: 직무상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 침해행위, 약품과 처방전 물품 위조, 음용수사용방해, 음용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수독물혼입예비 음모, 음용수혼독치사 등 제외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	포함: 도로교통법, 항공안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음주운전 행위 포함 -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및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을 모두 음주 운전으로 포섭하여 분류															
		-	제외: 향정신성 물질 섭취 후 운송수단 운행 중 치사, 상해를 야기하지 않는 교통위반, 차량절도와 폭주, 기타 자동차의 불법적 사용 제외															
020721	음주 운전	+	포함: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data-bbox="746 884 1410 1057">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8052400</td> <td>위반(음주운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9014900</td> <td>위반(위험운전치상)</td> <t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td> </tr> <tr> <td>0233030300</td> <td>위반</td> <td>철도안전법</td> </tr> <tr> <td>0242080500</td> <td>위반</td> <td>항공안전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9014900	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42080500	위반	항공안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9014900	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42080500	위반	항공안전법																
-	제외: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 제외																	
020722	불법 약물 섭취 후 운전		- 현행법은 음주와 약물, 향정신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두 음주운전에 포함하고 연계 불가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 현행법은 음주와 약물, 향정신 물질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두 음주운전에 포함하고 연계 불가															
02079	기타 위험 행위	+	포함: 소분류와 세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위험행위로 균형법상 함선복물치상, 함선 파괴치상, 항공기추락복물치상, 항공기추락손괴치상만 해당하여 본 분류에서 제외 - 균형법을 제외하고 해당 구성요건 없음															
		-	제외: 단순상해, 폭행치상 제외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는 행위로 직장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사이버상의 스토킹, 그 외의 심리적 폭력 등이 포함되나 명확성의 원칙상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음 - 각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처벌 - 현행법상 형법적 처리보다 민사적 또는 행정적 처리하므로 스토킹과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로만 구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2081	괴롭힘		- 현행법상 범죄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082	스토킹	+	포함: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지켜보면서 원치 않는 소통을 하는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20100</td> <td>위반</td> <td>경범죄처벌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0100	위반	경범죄처벌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0100	위반	경범죄처벌법													
-	제외: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	포함: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1000</td> <td>위반(아동학대)</td> <td>아동복지법</td> </tr> <tr> <td>0231010800</td> <td>위반</td> <td>장애인복지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1000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0231010800	위반	장애인복지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1000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0231010800	위반	장애인복지법													
-	제외:														
0209	명예훼손, 모욕	+	포함: 고의적 발언, 행동, 또는 교신에 의하여 명예 또는 기밀을 해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 - 개인적 특성 관련, 종교 및 가치관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모두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구분												
		-	제외: 특정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경고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에 해당하여 제외, 사람이 아닌 국회, 국회회의장, 법정 모욕 등은 제외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별도 구성요건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별도 구성요건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연계 불가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	포함: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4010400</td> <td>외국원수명예훼손</td> </tr> <tr> <td>0133010100</td> <td>명예훼손</td> </tr> <tr> <td>0133020000</td> <td>사자명예훼손</td> </tr> <tr> <td>0104010300</td> <td>외국원수모욕</td> </tr> <tr> <td>0133040100</td> <td>모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4010400	외국원수명예훼손	0133010100	명예훼손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04010300	외국원수모욕	0133040100	모욕
		죄명코드	죄명												
0104010400	외국원수명예훼손														
0133010100	명예훼손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04010300	외국원수모욕														
0133040100	모욕														
-	제외:														
0210	차별	+	포함: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언어, 종교, 견해, 혈통 등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을 구별하거나 배제하거 - 차별을 개인차별과 집단차별로 구분하고, 기타차별은 분류하지 않음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나 불법적으로 처하거나 우대하는 행위 포함													
		- 제외: 차별행위가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규제와 관련되는 경우 0803으로 제외													
02101	개인 차별	+ 포함: 개인에 대한 차별 및 불법 처우로 고용, 근로기준 등에서 차별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2070200</td> <td>위반</td> <td>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td> </tr> <tr> <td>0232030100</td> <td>위반</td> <td>근로기준법</td> </tr> <tr> <td>0232030400</td> <td>위반</td> <td>남녀고용평등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70200	위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0232030100	위반	근로기준법	0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70200	위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0232030100	위반	근로기준법													
0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 제외:													
02102	집단 차별	+ 포함: 국제결혼중개업에 있어 차별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40400</td> <td>위반</td> <td>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 제외:													
02109	기타 차별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211	인적 침해	+ 포함: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에 관한 행위로 0201에서 2010까지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로 신체적 학대 또는 정신적 잔학행위를 통한 부당대우 포함													
		- 제외: 사생활 침해가 아닌 컴퓨터 데이터나 시스템 침해, 타인의 의사소통을 부적절하게 추적이나 감시, 성적 사생활이나 성적 특성의 기타 행위 침해, 재산 침해 등 제외													
02111	사생활 침해	+ 포함: 우편의 비밀침해, 감청, 컴퓨터 파일에 대한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대한 접근행위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유출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5010000</td> <td>비밀침해</td> </tr> <tr> <td>0135010100</td> <td>신서개피</td> </tr> <tr> <td>0135010400</td> <td>편지내용탐지</td> </tr> <tr> <td>0136020100</td> <td>퇴거불응</td> </tr> <tr> <td>0136040000</td> <td>불법수색</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5010000	비밀침해	0135010100	신서개피	0135010400	편지내용탐지	0136020100	퇴거불응	0136040000	불법수색
죄명코드	죄명														
0135010000	비밀침해														
0135010100	신서개피														
0135010400	편지내용탐지														
0136020100	퇴거불응														
0136040000	불법수색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 제외: 공무상비밀문서개피, 공무상비밀문서내용 탐지 등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와 주거침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상습신체수색 제외										
02119	기타 침해	+ 포함: 02111 외의 사람의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해로 사체훼손 등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3900</td> <td>위반</td> <td>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td> </tr> <tr> <td>0229040400</td> <td>위반</td> <td>혈액관리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900	위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229040400	위반	혈액관리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900	위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229040400	위반	혈액관리법										
		- 제외:										
0219	기타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2) 대분류 03 성범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 포함: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외: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 다른 법익 침해가 결합된 강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 제외	
0301	성폭력		
		+ 포함: 유효한 동의가 없거나 위협, 무력, 사기, 강압, 기망, 약물이거나 술의 사용 또는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 남용이나 이익의 수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로 성교에 이르는 행위	- 강간은 유형력 강간, 비유형력 강간, 의제 강간으로 구분하되 기타 강간은 구분하지 않음
		- 제외:	
03011	강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성적 삽입행위가 아닌 강제추행 제외												
030111	유형력 강간	+	포함: 무력에 의한 유효한 동의 없는 성교로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등 성적 삽입 행위와 강도강간 포함												
		-	제외: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사, 강간살인 등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010100</td> <td>강간</td> </tr> <tr> <td>0132010200</td> <td>유사강간</td> </tr> <tr> <td>0132040000</td> <td>강간치상</td> </tr> <tr> <td>0132040200</td> <td>강간상해</td> </tr> <tr> <td>0138150100</td> <td>강도강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010100	강간	0132010200	유사강간	0132040000	강간치상	0132040200	강간상해	0138150100	강도강간
죄명코드	죄명														
0132010100	강간														
0132010200	유사강간														
0132040000	강간치상														
0132040200	강간상해														
0138150100	강도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	포함: 무력에 의하지 않는 유효한 동의 없는 성교, 즉 기망, 자유제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 이용, 이익 공여나 수령으로 얻은 동의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 포함												
		-	제외: 준강간치사, 준강간살인 및 폭행, 협박에 의한 성적 삽입행위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030100</td> <td>준강간</td> </tr> <tr> <td>0132030300</td> <td>준유사강간</td> </tr> <tr> <td>0132120100</td> <td>미성년자간음</td> </tr> <tr> <td>0132140100</td> <td>피보호자간음</td> </tr> <tr> <td>0132160200</td> <td>위계간음</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030100	준강간	0132030300	준유사강간	0132120100	미성년자간음	0132140100	피보호자간음	0132160200	위계간음
죄명코드	죄명														
0132030100	준강간														
0132030300	준유사강간														
0132120100	미성년자간음														
0132140100	피보호자간음														
0132160200	위계간음														
030113	의제 강간	+	포함: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연령 미만의 사람 또는 법률상의 사유로 동의 능력 없는 사람과 행한 성적 삽입행위												
		-	제외: 성적 삽입행위가 아닌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사,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170100</td> <td>미성년자의제강간</td> </tr> <tr> <td>0132170300</td> <td>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td> </tr> <tr> <td>0132170700</td> <td>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	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죄명코드	죄명														
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														
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030119	기타 강간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3012	성폭행	+	포함: 성폭력 중에서 강간에 이르지 않은 성적 범죄행위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가진 연락과 의사소통, 성희롱, 관음증 등 다양한 성범죄를 포함하며 성폭행 행위로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020100</td> <td>강제추행</td> </tr> <tr> <td>0206058000</td> <td>통신매체이용음란</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020100	강제추행	0206058000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명코드	죄명														
0132020100	강제추행														
0206058000	통신매체이용음란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 성폭행 행위 등을 포함													
		- 제외: 강간이나 성착취 행위 제외													
030121	신체적 성폭행	+ 포함: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로서 강간에 이르지 않은 행위로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2020100</td> <td>강제추행</td> </tr> <tr> <td>0132030200</td> <td>준강제추행</td> </tr> <tr> <td>0132130100</td> <td>미성년자등추행</td> </tr> <tr> <td>0132130200</td> <td>심신미약자추행</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2020100	강제추행	0132030200	준강제추행	0132130100	미성년자등추행	0132130200	심신미약자추행		
		죄명코드	죄명												
0132020100	강제추행														
0132030200	준강제추행														
0132130100	미성년자등추행														
0132130200	심신미약자추행														
		- 제외: 추행약취, 추행유인, 추행인신매매, 강제추행치사, 강제추행살인, 준강제추행치사, 준강제추행살인 등 제외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 포함: 신체적 접촉에 의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나 당사자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언어적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의 협박, 성적 성격의 스토킹 행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31500</td> <td>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td> <td>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r> <td>0231040900</td> <td>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td> <td>아동복지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1500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31040900	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1500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31040900	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 제외: 공연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제외													
0301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폭행	+ 포함: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 중인 사람을 그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성적만족을 얻는 행위로 공연음란죄, 카메라 등 촬영죄 등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122110100</td> <td>공연음란</td> <td>*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d> </tr> <tr> <td>0132170200</td> <td>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td> <td></td> </tr> <tr> <td>0206032900</td> <td>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td> <td>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122110100	공연음란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2060329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122110100	공연음란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2060329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살인, 음란문서반포, 음란물건판매 등 음란물에 관한 죄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3019	기타 성폭력		- 현행법상 구성요건 없으므로 연계 불가															
0302	성착취	+	<p>포함:</p> <p>성매매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권력, 신뢰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성매매나 성행위를 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22020100</td> <td>음행매개</td> </tr> <tr> <td>0131040100</td> <td>부녀매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22020100	음행매개	0131040100	부녀매매								
		죄명코드	죄명															
0122020100	음행매개																	
0131040100	부녀매매																	
-	<p>제외:</p> <p>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제외</p>																	
03021	성인 성착취	+	<p>포함:</p> <p>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020100</td> <td>추행약취</td> </tr> <tr> <td>0131020200</td> <td>간음약취</td> </tr> <tr> <td>0131030100</td> <td>추행유인</td> </tr> <tr> <td>0131030200</td> <td>간음유인</td> </tr> <tr> <td>0131040300</td> <td>성매매약취</td> </tr> <tr> <td>0131040400</td> <td>성적착취약취</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020100	추행약취	0131020200	간음약취	0131030100	추행유인	0131030200	간음유인	0131040300	성매매약취	0131040400	성적착취약취
		죄명코드	죄명															
0131020100	추행약취																	
0131020200	간음약취																	
0131030100	추행유인																	
0131030200	간음유인																	
0131040300	성매매약취																	
0131040400	성적착취약취																	
-	<p>제외:</p> <p>추행인신매매, 간음인신매매, 성매매인신매매, 추행약취, 간음약취, 추행유인, 간음유인, 성매매약취 예비음모 등 제외</p>																	
03022	아동 성착취	+	<p>포함:</p> <p>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또는 성적 행위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취약한 지위를</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131190100</td> <td>미성년자약취모집</td> <td></td> </tr> <tr> <td>0218031500</td> <td>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31200</td> <td>위반(성매수)</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218031500	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218031500	위반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이용하거나 권력 또는 신뢰를 남용하거나 또는 유형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를 임대하는 행위 포함. 즉 아동 음란물의 생산과 소지, 아동 성매매의 모집·유인·확보·알선·장소제공 등이 포함되며 아동에 대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위도 포함</p>																			
		<p>제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희롱등은 성폭행으로 분류하고 성착취에서는 제외</p>																			
030221	아동 피 포르노그래피	<p>포함: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 공유, 제작, 다운로드 등을 모두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th> </tr> </thead> <tbody> <tr> <td>0216070200</td> <td>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td> <td>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6070300</td> <td>음란물소지</td> <td></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216070200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6070300	음란물소지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없는빈칸은형법임																	
0216070200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6070300	음란물소지																				
<p>제외: 아동 성매매 또는 성적 목적 아동 유인행위 등을 제외</p>																					
030222	아동 성매매	<p>포함: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거나 성매매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로 아동의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유인 또는 조달하는 행위, 포주 행위, 아동 성매매 업소 유지 운영, 아동 성매매 목적으로 건물 기타 장소의 임대행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18031200</td> <td>위반(성매수)</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31300</td> <td>위반(강요행위등)</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18031600</td> <td>위반(청소년매매)</td> <td>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1218031200</td> <td>위반(성매수등)</td> <td>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td> </tr> <tr> <td>0231011400</td> <td>위반(청소년)</td> <td>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600	위반(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1200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31011400	위반(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18031600	위반(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1200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231011400	위반(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p>제외:</p>																					
030223	성적 유인 목적 아동	<p>포함: 아동과 접촉한 후 성적 목적의 만남에 이르게 하는 물리적 행위</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190100</td> <td>미성년자약취모집</td> </tr> <tr> <td>0131190200</td> <td>미성년자유인모집</td> </tr> <tr> <td>0131190400</td> <td>미성년자유인운송</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131190200	미성년자유인모집	0131190400	미성년자유인운송										
죄명코드	죄명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131190200	미성년자유인모집																				
0131190400	미성년자유인운송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131190500	미성년자약취전달												
		-	제외: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등 제외													
030229	기타 아동 성착취	+	포함: 아동과의 부적절한 행위, 아동에 대한 유혹,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 또는 포르노그래피를 보도록 강제하는 행위,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동한 장소에서 아동과 성적행위를 하는 형태의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인 아동대상 성관광 포함하나 현행 법상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연계 불가													
		-	제외:													
03029	기타 성착취	+	포함: 성착취 중 성인이나 미성년자 성착취에 포함될 수 없는 음행강요,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등의 행위 포함													
		-	제외: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1171300</td> <td>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td> </tr> <tr> <td>0131171400</td> <td>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1171300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714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						
죄명코드	죄명															
0131171300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714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10400</td> <td>위반</td> <td>윤락행위등방지법</td> </tr> <tr> <td>0208051900</td> <td>위반</td> <td>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td> </tr> <tr> <td>0220021100</td> <td>위반</td> <td>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10400	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0208051900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0220021100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10400	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0208051900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0220021100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0309	기타 성 범죄	+	포함: 성폭력이나 성착취로 분류될 수 없는 유형의 성범죄로 윤락행위등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													
		-	제외: 성폭력, 성착취, 강간과 노출중에 이르지 않은 근친상간과 같은 공공성기준에 반하는 성매매, 음란물 범죄,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괴롭힘 및 스토킹,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노예 및 착취 등 제외													

3) 대분류 04 폭력 또는 협박동반 재산침해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401	강도	+	<p>포함:</p> <p>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취할 의도로 사람에게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협박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인질강도, 약취강도, 공갈, 준강도, 준특수강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p>- 형법은 객체에 따른 분류나 장소에 따른 구분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대인강도(04011)와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04012)로만 분류하고 모두 강도(0401)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70000</td> <td>강도</td> </tr> <tr> <td>0138080000</td> <td>특수강도</td> </tr> <tr> <td>0138090000</td> <td>준강도</td> </tr> <tr> <td>0139040000</td> <td>공갈</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70000	강도	0138080000	특수강도	0138090000	준강도	0139040000	공갈
		죄명코드	죄명											
0138070000	강도													
0138080000	특수강도													
0138090000	준강도													
0139040000	공갈													
-	<p>제외:</p> <p>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준강간, 강도강제추행, 강도준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의 예비, 음모 등 제외</p>													
04011	대인 강도	+	<p>포함:</p> <p>피해자와 직접 접촉에 의한 인적 재산 강도로 약취강도, 인질강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100000</td> <td>약취강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100000	약취강도						
		죄명코드	죄명											
0138100000	약취강도													
-	<p>제외:</p>													
040111	공공 장소 대인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12	사적 장소 대인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19	기타 대인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	<p>포함:</p> <p>이동 중의 재물 강도로 해상강도 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160000</td> <td>해상강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160000	해상강도						
		죄명코드	죄명											
0138160000	해상강도													
-	<p>제외:</p> <p>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 제외</p>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3	시설/기관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31	금융 기관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4	가축 강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19	기타 강도 행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409	기타		- 현행법상 연계 불가											

4) 대분류 05 재산만 침해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501	침입절도	+	포함: 절도를 범할 의도로 또는 실제 절도의 범행 중 유형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건물이나 주거 또는 장소의일부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	- 침입절도 중 주거, 저택의 경우는 가정집 침입절도로, 선박은 기타 침입절도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침입절도로 연계								
		-	제외: 단순 주거침입 등 제외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2	가정집 침입절도	+	포함: 주거 또는 저택을 침입하는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20000</td> <td>야간주거침입절도</td> </tr> <tr> <td>0138020200</td> <td>야간저택침입절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200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200	야간저택침입절도		
		죄명코드	죄명									
01380200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200	야간저택침입절도											
-	제외: 건조물, 방실, 선박 침입의 경우 제외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19	기타 침입절도	+	포함: 선박을 침입하는 경우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20400</td> <td>야간선박침입절도</td> </tr> <tr> <td>0138050400</td> <td>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20400	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5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죄명코드	죄명									
0138020400	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5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	제외: 주거, 저택, 건조물, 방실 침입의 경우 제외											
0502	절도	+	포함: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유형력 사용이나 유형력 또는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강요, 기망 없이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물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 침입절도를 제외하고 육상 차량 절도와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로 구분하되 그 외의 절도행위는 모두 절도에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8010100</td> <td>절도</td> </tr> <tr> <td>0138030100</td> <td>특수절도</td> </tr> <tr> <td>0138040100</td> <td>상습절도</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8010100	절도	0138030100	특수절도	0138040100	상습절도
		죄명코드	죄명									
0138010100	절도											
0138030100	특수절도											
0138040100	상습절도											
-	제외: 장물의 소지, 취득, 알선, 처분 등 장물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을 이용한 범죄, 강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절도, 지적재산권 절도, 신원절도, 절도강간, 절도강제추행, 절도유사강간 등 재산 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결핵범 제외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	포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선박, 항공기 불법 사용 행위
		-	제외: 자동차를 사용한 불법행위, 자동차 내 사유재산 절도 등 제외
050211	육상 차량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	포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포함
		-	제외: 소유의 의사로 육상 차량을 위법하게 취득한 행위, 자동차 부품 절도, 자동차 내 사유재산의 절취 등 제외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	포함: 선박, 항공기 불법사용 포함
		-	제외: 동력기구의 오일이나 연료를 빼돌리는 행위나 동력기구내 사유재산 절취, 자동차나 항공기 납치 등 제외
05022	개인 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29	기타 개인 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5023	기업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31	상점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4	공공재산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5	기축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6	서비스 절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29	기타 절도 행위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3	지적재산권 위반	+	포함: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에 대한 불법 복제, 사용, 전재 또는 기타 침해행위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0040400</td> <td>위반</td> <td>저작권법</td> </tr> <tr> <td>0227020100</td> <td>위반</td> <td>특허법</td> </tr> <tr> <td>0227020200</td> <td>위반</td> <td>실용신안법</td> </tr> <tr> <td>0227030200</td> <td>위반</td> <td>상표법</td> </tr> <tr> <td>0227030100</td> <td>위반</td> <td>의장법</td> </tr> <tr> <td>0227020300</td> <td>위반</td> <td>발명진흥법</td> </tr> <tr> <td>1227030100</td> <td>위반</td> <td>디자인보호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0040400	위반	저작권법	0227020100	위반	특허법	0227020200	위반	실용신안법	0227030200	위반	상표법	0227030100	위반	의장법	0227020300	위반	발명진흥법	1227030100	위반	디자인보호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0040400	위반	저작권법																											
0227020100	위반	특허법																											
0227020200	위반	실용신안법																											
0227030200	위반	상표법																											
0227030100	위반	의장법																											
0227020300	위반	발명진흥법																											
1227030100	위반	디자인보호법																											
-	제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위반행위, 영업비밀 등 제외																												
0504	재물 손괴	+	포함: 재물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 훼손, 외관 훼손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 재물 손괴로 우선 구분하고 세부류는 공공재물손괴, 사유재물손괴, 기타 재물손괴로 구분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8090100</td> <td>공무상보관물손상</td> </tr> <tr> <td>0113010100</td> <td>현주건조물방화</td> </tr> <tr> <td>0113170000</td> <td>폭발물파열</td> </tr> <tr> <td>0114010200</td> <td>현주건조물일수</td> </tr> <tr> <td>0142010000</td> <td>재물손괴</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8090100	공무상보관물손상	0113010100	현주건조물방화	0113170000	폭발물파열	0114010200	현주건조물일수	0142010000	재물손괴												
		죄명코드	죄명																										
0108090100	공무상보관물손상																												
0113010100	현주건조물방화																												
0113170000	폭발물파열																												
0114010200	현주건조물일수																												
0142010000	재물손괴																												
-	제외: 동물 사상, 자연 훼손, 공무상봉인손상, 공무상표시손상, 치상, 치사, 예비 및 음모 등 제외																												
05041	공공재물 손괴	+	포함: 공용서류, 공용전자 기록 등의 손상, 공용건조물파괴 등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8070100</td> <td>공용서류손상</td> </tr> <tr> <td>0108080100</td> <td>공용건조물파괴</td> </tr> <tr> <td>0113070100</td> <td>공용건조물방화</td> </tr> <tr> <td>0114014400</td> <td>공용건조물일수</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8070100	공용서류손상	0108080100	공용건조물파괴	0113070100	공용건조물방화	0114014400	공용건조물일수														
		죄명코드	죄명																										
0108070100	공용서류손상																												
0108080100	공용건조물파괴																												
0113070100	공용건조물방화																												
0114014400	공용건조물일수																												
-	제외: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은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5042	사유재물 손괴	+	포함: 자기소유일반건조물, 자기소유일반물건 등에 대한 방화 등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3100100</td> <td>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td> </tr> <tr> <td>0113100200</td> <td>자기소유기차방화</td> </tr> <tr> <td>0113120100</td> <td>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3100100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	0113100200	자기소유기차방화	01131201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죄명코드	죄명											
0113100100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													
0113100200	자기소유기차방화													
01131201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제외:													
05043	회사재물 손괴		- 현행법상 연계 불가											
05049	기타 재물 손괴	+	포함: 사체등오육, 사체손괴, 분묘발굴사체손괴, 유골오육 등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2020100</td> <td>사체등오육</td> </tr> <tr> <td>0112010100</td> <td>사체등손괴</td> </tr> <tr> <td>0112080100</td> <td>분묘발굴사체등손괴</td> </tr> <tr> <td>0112020200</td> <td>유골오육</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2020100	사체등오육	0112010100	사체등손괴	0112080100	분묘발굴사체등손괴	0112020200	유골오육
		죄명코드	죄명											
0112020100	사체등오육													
0112010100	사체등손괴													
0112080100	분묘발굴사체등손괴													
0112020200	유골오육													
-	제외:													
0509	기타	+	포함: 재산침해 행위 중 재산의 불법유용, 불법점거, 주택 또는 토지의 불법획득, 범죄적 침입, 강제진입 및 점거 행위로 건물, 주거침입, 경계침범 등을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36010100</td> <td>주거침입</td> </tr> <tr> <td>0141010100</td> <td>장물취득</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36010100	주거침입	0141010100	장물취득				
		죄명코드	죄명											
0136010100	주거침입													
0141010100	장물취득													
-	제외: 컴퓨터 시스템 손상, 자연훼손,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습신체수색 등 제외													

5) 대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항정신성 물질관련 위법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601	관리대상 약물, 전구물질 관련 위법 행위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 소지, 구매, 사용, 밀매, 경작, 또는 생산 하는 행위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 아래 죄명코드 연계 가능 -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 규정된 구성요건 중 아편물핀의 제조행위는 개인소비목적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12로도 비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22로도 구분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상위분류인 중분류 0601로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다만 시산에 있어서는, 아편물핀의 제조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개인소비목적성이 아닌 판매·반포 등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형법상 아편·물핀 등 제조행위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을 규정한 소분류 060122로 연계하여 시산하였음
		-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10100</td> <td>아편제조</td> </tr> <tr> <td>0117090100</td> <td>상습아편제조</td> </tr> <tr> <td>0117010200</td> <td>몰핀제조</td> </tr> <tr> <td>0117090200</td> <td>상습몰핀제조</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범</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0020100</td> <td>위반(마약)</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0020200</td> <td>위반(향정)</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0020300</td> <td>위반(대마)</td> <t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0020500</td> <td>위반</td> <td>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td> </tr> <tr> <td>0206022600</td> <td>위반(마약)</td> <t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td> </tr> <tr> <td>0206039400</td> <td>위반(향정)</td> <td>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p>- 형법범의 경우 개인소비목적 여하의 구분 미비로, 특별법범의 경우 마약, 향정, 대마 등 구분 외에 세부 행위별 구분이 불가능하며 통계산출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p>	죄명코드	죄명	0117010100	아편제조	0117090100	상습아편제조	0117010200	몰핀제조	0117090200	상습몰핀제조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0020100	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200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300	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500	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0206022600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0206039400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죄명코드	죄명																																		
0117010100	아편제조																																		
0117090100	상습아편제조																																		
0117010200	몰핀제조																																		
0117090200	상습몰핀제조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0020100	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200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300	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0230020500	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0206022600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0206039400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	제외: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재배, 생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	+	포함:	<p>1. 죄명코드 연계</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통계산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40100</td> <td>아편소지</td> </tr> <tr> <td>0117120100</td> <td>상습아편소지</td> </tr> <tr> <td>0117170100</td> <td>단순아편소지</td> </tr> <tr> <td>0117040200</td> <td>몰핀소지</td> </tr> <tr> <td>0117120200</td> <td>상습몰핀소지</td> </tr> <tr> <td>0117170200</td> <td>단순몰핀소지</td> </tr> <tr> <td>0117070100</td> <td>아편흡식</td> </tr> <tr> <td>0117150100</td> <td>상습아편흡식</td> </tr> <tr> <td>0117070200</td> <td>몰핀주사</td> </tr> <tr> <td>0117150200</td> <td>상습몰핀주사</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p>- 행위태양인 '소지'는 문언적으로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인소비목적의 아닌 판매 등을 위한 예비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세분류 060111로 분류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음</p> <p>- 다만 비개인소비목적의 소분류 06012에는 '소유'라는 행위태양이 없으므로 '소지'는 일응 개인소비목적인 소분류 06011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개인소비용 불법 마약 소유, 구입, 사용'을 규정한 세분류 060111로 연계함이 타당함</p> <p>- 다만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된 구성요건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p>	죄명코드	죄명	0117040100	아편소지	0117120100	상습아편소지	0117170100	단순아편소지	0117040200	몰핀소지	0117120200	상습몰핀소지	0117170200	단순몰핀소지	0117070100	아편흡식	0117150100	상습아편흡식	0117070200	몰핀주사	0117150200	상습몰핀주사									
죄명코드	죄명																																		
0117040100	아편소지																																		
0117120100	상습아편소지																																		
0117170100	단순아편소지																																		
0117040200	몰핀소지																																		
0117120200	상습몰핀소지																																		
0117170200	단순몰핀소지																																		
0117070100	아편흡식																																		
0117150100	상습아편흡식																																		
0117070200	몰핀주사																																		
0117150200	상습몰핀주사																																		
		-	제외: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 재배, 생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12	비개인 소비용 불	+	포함: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	제외: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	포함:	<p>-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통계산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30100</td> <td>아편판매</td> </tr> <tr> <td>0117110100</td> <td>상습아편판매</td> </tr> <tr> <td>0117030200</td> <td>몰핀판매</td> </tr> <tr> <td>0117110200</td> <td>상습몰핀판매</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7030100	아편판매	0117110100	상습아편판매	0117030200	몰핀판매	0117110200	상습몰핀판매																		
죄명코드	죄명																															
0117030100	아편판매																															
0117110100	상습아편판매																															
0117030200	몰핀판매																															
0117110200	상습몰핀판매																															
		-	제외: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를 전환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포섭할만한 규정 없음																												
		-	제외:																													
06019	<p>기타</p> <p>06011-060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규제된 약물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p>	+	<p>포함:</p> <p>위변조된 처방전의 발행, 취급 또는 거래, 마약 관련용품과 연관된 불법행위, 규제된 약물의 소비 조장, 규제된 물질의 불법적 홍보</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 가능</p> <p>- 06019는 '규제된 약물 관련 기타 불법적 행위'라는 표제 아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규제된 약물을 '취급, 사용, 소지'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음</p> <p>- 다만, '포함'(Inclusions) 항목에 '마약 관련용품과 연관된 불법행위'(illicit acts involving drug paraphernalia) 및 '규제된 약물의 소비 조장'(encouraging the consumption of controlled drugs)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아편흡식기 관련 범죄 및 아편흡식 및 몰핀주사 장소제공 등 범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50100</td> <td>아편흡식기제조</td> </tr> <tr> <td>0117130100</td> <td>상습아편흡식기제조</td> </tr> <tr> <td>0117050200</td> <td>아편흡식기수입</td> </tr> <tr> <td>0117130200</td> <td>상습아편흡식기수입</td> </tr> <tr> <td>0117050300</td> <td>아편흡식기판매</td> </tr> <tr> <td>0117130300</td> <td>상습아편흡식기판매</td> </tr> <tr> <td>0117050400</td> <td>아편흡식기소지</td> </tr> <tr> <td>0117130400</td> <td>상습아편흡식기소지</td> </tr> <tr> <td>0117080100</td> <td>아편흡식장소제공</td> </tr> <tr> <td>0117160100</td> <td>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td> </tr> <tr> <td>0117080200</td> <td>몰핀주사장소제공</td> </tr> <tr> <td>0117160200</td> <td>상습몰핀주사장소제공</td> </tr> <tr> <td>0117170300</td> <td>단순아편흡식기소지</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7050100	아편흡식기제조	01171301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050200	아편흡식기수입	0117130200	상습아편흡식기수입	0117050300	아편흡식기판매	0117130300	상습아편흡식기판매	0117050400	아편흡식기소지	0117130400	상습아편흡식기소지	0117080100	아편흡식장소제공	0117160100	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	0117080200	몰핀주사장소제공	0117160200	상습몰핀주사장소제공	0117170300	단순아편흡식기소지
죄명코드	죄명																															
0117050100	아편흡식기제조																															
01171301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050200	아편흡식기수입																															
0117130200	상습아편흡식기수입																															
0117050300	아편흡식기판매																															
0117130300	상습아편흡식기판매																															
0117050400	아편흡식기소지																															
0117130400	상습아편흡식기소지																															
0117080100	아편흡식장소제공																															
0117160100	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																															
0117080200	몰핀주사장소제공																															
0117160200	상습몰핀주사장소제공																															
0117170300	단순아편흡식기소지																															
		-	제외:	<p>- 이와 달리 아편-몰핀 등의 수출입, 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가담 등은 '제외'(Exclusions) 항목에 의해 소분류 08042(수출입규정 위반), 08041(관세규정 위반)으로 분류되어 여기에서 제외됨</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7020100</td> <td>아편수입</td> </tr> <tr> <td>0117100100</td> <td>상습아편수입</td> </tr> <tr> <td>0117060100</td> <td>세관공무원아편수입</td> </tr> <tr> <td>0117140100</td> <td>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td> </tr> <tr> <td>0117060200</td> <td>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td> </tr> <tr> <td>0117140200</td> <td>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td> </tr> <tr> <td>0117020200</td> <td>몰핀수입</td> </tr> <tr> <td>0117100200</td> <td>상습몰핀수입</td> </tr> <tr> <td>0117060300</td> <td>세관공무원몰핀수입</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17020100	아편수입	0117100100	상습아편수입	01170601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1401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0602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1402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020200	몰핀수입	0117100200	상습몰핀수입	01170603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								
죄명코드	죄명																															
0117020100	아편수입																															
0117100100	상습아편수입																															
01170601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1401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																															
01170602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1402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117020200	몰핀수입																															
0117100200	상습몰핀수입																															
01170603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table border="1"> <tr> <td>0117140300</td> <td>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td> </tr> <tr> <td>0117060400</td> <td>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td> </tr> <tr> <td>0117140400</td> <td>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td> </tr> </table>	01171403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	01170604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1171404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1171403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									
0117060400	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117140400	상습세관공무원몰핀수입허용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담배 또는 다른 규제된 물질들을 취급,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	제외: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취급,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나, 이질적 구성요건과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류 11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제외: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점유 또는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술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나, 이질적 구성요건과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류 11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제외: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060211-0602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	포함: 060211-06021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	- 연계코드 작성 불가: 「국민건강증진법」위반(0231020300)과 관련이 있지만, 일대일 연계는 불가능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	제외: 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060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취급,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 아래 죄명코드(「담배사업법」상 담배 제품의 불법적 제조·수입·판매) 연계로 통계산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13020400</td> <td>위반</td> <td>담배사업법</td> </tr> </tbody> </table> 2. 문제점 - 다만, 구성요건이 개인소비목적의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세분류 060221, 060222, 060229 대신 상위 분류인 소분류 06022로 연계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3020400	위반	담배사업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3020400	위반	담배사업법							
		-	제외: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 전달, 중개, 배달, 수송, 운송,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나, 이질적 구성요건과 혼재되어 있고, 대분류 11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제외: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06022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담배 제품을 처리, 소지, 사용, 생산, 밀매 또는 유통하는 행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처벌규정 없음						
		-	제외:						
06029	기타 주류, 담배 및 기타 금지 물질 관련 불법	+	포함: 규제된 약물을 스포츠 금지약물로 사용;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처벌규정 없음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6021-06022에 포함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술, 담배 제품 또는 기타 규제된 물질을 처리,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약물이나 기타 불법 제품을 제공 또는 소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 금지약물을 사용하도록 조장; 약물 또는 기타 규제된 물질을 거래
	-	제외:	

6) 대분류 09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901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과 관련된 행위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사용, 생산, 수입 및 수출, 취득, 판매, 배송, 이동 또는 운반하는 행위	+	포함: 무기 밀매;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기타 09011-09019 사이의 제시된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 전시, 비상시 폭발물에 대해서는 세분류 체계에 연계되는 분류가능 - 아래 항목별로 분류 가능하며 집계를 통해 통계산출 가능 나. 특별법법 (02945) - 아래 죄명코드 등으로 연계하여 통계산출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8050400</td> <td>위반</td> <td>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외: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범죄행위를 위해 무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건을 사용한 경우	2. 문제제기 - 전시, 비상시 폭발물 사용 행위에 대해서만 이하 세부 행위별 구분이 가능하며 무기, 폭발물에 대한 일반적 사용과 소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통계산출이 제한적임								
09011	무기,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	포함: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 기타 무기의 소지로 여기서 기타 무기에는 가스, 폭발물 또는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적 물질을 포함;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무기 또는 폭발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09011 - 090119 사이에 제시된 행위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90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1	무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 총기 부품, 탄약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	포함: 면허 없이 권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무기의 불법적 발사
		-	제외: 090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2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규제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	포함: 총기 수준에 이르지 않는 금지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폭발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제외: 090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3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금지되거나 규제된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	포함: 금지 또는 미등록 물질을 취득 또는 소지하는 행위
		-	제외: 09011에서 제시된 모든 제외 행위
090119	무기와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타 행위 무기와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과	+	포함: 무기에 기록된 표시를 위조, 삭제, 제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 전시, 비상시 폭발물에 대하여 연계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td>0106030400</td><td>전시폭발물수수</td></tr> <tr><td>0106030500</td><td>전시폭발물소지</td></tr> <tr><td>0106040400</td><td>비상시폭발물수수</td></tr> <tr><td>0106040500</td><td>비상시폭발물소지</td></tr> <tr><td>0106010100</td><td>폭발물사용</td></tr> <tr><td>0106010140</td><td>폭발물사용선동</td></tr> <tr><td>0106020100</td><td>전시폭발물사용</td></tr> <tr><td>0106020140</td><td>전시폭발물사용선동</td></tr> <tr><td>0106020200</td><td>비상시폭발물사용</td></tr> <tr><td>0106020240</td><td>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td></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6030400	전시폭발물수수	0106030500	전시폭발물소지	0106040400	비상시폭발물수수	0106040500	비상시폭발물소지	0106010100	폭발물사용	0106010140	폭발물사용선동	01060201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20140	전시폭발물사용선동	0106020200	비상시폭발물사용	0106020240	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
죄명코드	죄명																						
0106030400	전시폭발물수수																						
0106030500	전시폭발물소지																						
0106040400	비상시폭발물수수																						
0106040500	비상시폭발물소지																						
0106010100	폭발물사용																						
0106010140	폭발물사용선동																						
01060201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20140	전시폭발물사용선동																						
0106020200	비상시폭발물사용																						
0106020240	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																						
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죄명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td>0225052300</td><td>위반</td><td>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td></tr> <tr><td>0218010400</td><td>위반</td><td>원자력안전법</td></tr> <tr><td>0218010500</td><td>위반</td><td>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td></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52300	위반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52300	위반	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2. 문제제기 - 위 특별법 위반 행위 중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에 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구분이 없어 해당되는 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국제표준범칙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관련된 것으로 090111-090113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p>폭죽에 의한 침해: 무기 또는 폭발물의 불법적 보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물건의 소지</p> <p>- 제외: 0901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p>															
09012	무기와 폭발물의 밀매 무기와/또는 폭발물의 밀매	<p>포함: 총포, 부품, 부속과 탄약, 규제되거나 금지된 무기 또는 화약,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의 제조와 밀매; 거래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비인가에게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수입 및 수출행위; 090121 - 090129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범 (02758) - 전시, 비상시 폭발물에 대하여 연계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6030300</td> <td>전시폭발물수출</td> </tr> <tr> <td>0106040200</td> <td>비상시폭발물수입</td> </tr> <tr> <td>0106040300</td> <td>비상시폭발물수출</td> </tr> <tr> <td>0106030200</td> <td>전시폭발물수입</td> </tr> <tr> <td>0106040100</td> <td>비상시폭발물제조</td> </tr> <tr> <td>0106030100</td> <td>전시폭발물제조</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범 (02945)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범으로 세부행위 구분 없음</p>	죄명코드	죄명	0106030300	전시폭발물수출	0106040200	비상시폭발물수입	0106040300	비상시폭발물수출	0106030200	전시폭발물수입	0106040100	비상시폭발물제조	0106030100	전시폭발물제조
		죄명코드		죄명													
0106030300	전시폭발물수출																
0106040200	비상시폭발물수입																
0106040300	비상시폭발물수출																
0106030200	전시폭발물수입																
0106040100	비상시폭발물제조																
0106030100	전시폭발물제조																
<p>제외: 수출입 위반행위(08042); 관세법 위반행위(08041); 0901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들</p>																	
090121	총포의 밀매 총포, 부품 및 부속, 탄약의 밀매	<p>포함: 총포, 부품 및 부속, 탄약의 제조 및 밀매; 총포의 밀매</p>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p>제외: 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도 적용됨</p>															
090122	기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 규제 또는 금지된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	<p>포함: 금지된 무기 또는 폭발물의 제조, 생산 또는 밀매</p>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p>제외: 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도 적용됨</p>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의 밀매 제한 또는 금지된 화학, 생물학, 방사능 또는 핵 물질의 밀매	<p>포함: 화학, 생물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제조, 생산 또는 밀매</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범 (02758): 없음 나. 특별법범 (02945) -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범으로 범죄코드상 세부행위 구분 없음</p> <p>2. 문제제기 가. 특별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연계코드가 없어 통계산출이 불가능</p>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화학·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생화학무기법)위반</p> <p>나. 세부내용</p> <p>-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p> <p>-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p>	
		-	<p>제외:</p> <p>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도 적용됨</p>	
090129	<p>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와 관련된 기타 행위들</p> <p>090121 - 090123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무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p>	+	<p>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없음</p> <p>나. 특별법법 (02945):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범죄코드상 세부행위 구분 없음</p>
		-	<p>제외:</p> <p>09012영역에서 제시된 제외들이 여기에도 적용됨</p>	
09019	<p>무기, 폭발물과 관련된 기타 행위</p> <p>무기, 폭발물과 관련된 행위로 09011- 09012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p>	+	<p>포함:</p> <p>무기 사용에 대한 불법적인 총합 강습</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없음</p> <p>나. 특별법법 (02945): 연계코드 작성 불가능: 특별법법으로 범죄코드상 세부행위 구분 없음</p>
		-	<p>제외:</p> <p>0901 영역에서 제시된 예외 사항들이 적용</p>	
0902	<p>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p> <p>잠재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가하는 행위</p>	+	<p>포함:</p> <p>직장에서의 건강, 안전 침해행위; 대중교통안전 침해행위; 공공 건강 침해행위;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제조행위; 전염병을 전파하는 행위; 격리위반행위; 의약품관리위반행위; 불순물 혼합이나 유독성 음식이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비위생적 행위; 09021 - 09029 영역에서 제</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p> <p>나. 특별법법 (02945)</p> <p>- 연계코드 작성 가능</p> <p>- 그러나 대부분 특별법법으로 세부행위 구분이 없어 세분류에 대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p> <p>- 소분류의 “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근무지 이외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p>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시된 포함 행위들</p> <p>제외: 다른 사람의 위험한 행동에 의하여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신체에 잠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02071); 방임행위 (0206); 의료과실 등 전문가의 위법행위(02062); 정신에 작용하는 물질의 사용 또는 조작과 관련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행위(06); 의약품의 위조(07022)</p>																												
09021	<p>근무지에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p> <p>근무지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가하는 잠재적 행위</p>	<p>포함: 건강, 안전 관련 직무위반행위; 대중교통 안전위반행위; 의약품 관리 위반행위</p> <p>제외: 음식에 대한 불순물 혼합, 유독성 음식이나 음료 등의 판매, 건강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02071); 의약품의 위조(07022); 0902 영역에서 서술된 제외 행위</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2030200</td> <td>위반</td> <td>산업안전보건법</td> </tr> <tr> <td>0234030200</td> <td>위반</td> <td>선박안전법</td> </tr> <tr> <td>0233030300</td> <td>위반</td> <td>철도안전법</td> </tr> <tr> <td>0233070300</td> <td>위반</td> <td>항공기운항안전법</td> </tr> <tr> <td>0333020200</td> <td>위반</td> <td>교통안전법</td> </tr> <tr> <td>0234060500</td> <td>위반</td> <td>해상교통안전법</td> </tr> <tr> <td>0206020800</td> <td>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td> <td>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30200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0234030200	위반	선박안전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33070300	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	0333020200	위반	교통안전법	0234060500	위반	해상교통안전법	0206020800	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2030200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0234030200	위반	선박안전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33070300	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																												
0333020200	위반	교통안전법																												
0234060500	위반	해상교통안전법																												
0206020800	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09029	<p>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p> <p>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p>	<p>포함:</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 연계코드 작성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31020300</td> <td>위반</td> <td>국민건강증진법</td> </tr> <tr> <td>0229010300</td> <td>위반</td> <td>건강검진기본법</td> </tr> <tr> <td>0229024400</td> <td>위반</td> <td>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td> </tr> <tr> <td>0226030300</td> <td>위반</td> <td>고압가스안전관리법</td> </tr> <tr> <td>1208040600</td> <td>위반</td> <td>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td> </tr> <tr> <td>1226030400</td> <td>위반</td> <td>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td> </tr> <tr> <td>1225051700</td> <td>위반</td> <td>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td> </tr> <tr> <td>0218032300</td> <td>위반</td> <td>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20300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0229010300	위반	건강검진기본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226030300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08040600	위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225051700	위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0218032300	위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31020300	위반	국민건강증진법																												
0229010300	위반	건강검진기본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226030300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08040600	위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225051700	위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0218032300	위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table border="1"> <tr><td>0225052200</td><td>위반</td><td>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td></tr> <tr><td>0239020400</td><td>위반</td><td>석면안전관리법</td></tr> <tr><td>0211050300</td><td>위반</td><td>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td></tr> <tr><td>0228051600</td><td>위반</td><td>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td></tr> <tr><td>0226020400</td><td>위반</td><td>전기용품안전관리법</td></tr> <tr><td>0209030300</td><td>위반</td><td>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td></tr> <tr><td>0216020400</td><td>위반</td><td>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td></tr> <tr><td>0209030500</td><td>위반</td><td>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td></tr> <tr><td>0218010400</td><td>위반</td><td>원자력안전법</td></tr> <tr><td>0218010500</td><td>위반</td><td>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등방재대책법</td></tr> <tr><td>0226030400</td><td>위반</td><td>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td></tr> <tr><td>0326030400</td><td>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td><td></td></tr> </table>	0225052200	위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0239020400	위반	석면안전관리법	0211050300	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28051600	위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0226020400	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0209030300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16020400	위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0209030500	위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등방재대책법	0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03260304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0225052200	위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0239020400	위반	석면안전관리법																																								
0211050300	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28051600	위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0226020400	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0209030300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0216020400	위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0209030500	위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0218010400	위반	원자력안전법																																								
0218010500	위반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등방재대책법																																								
0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03260304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제외: 0902 영역에서 서술된 제외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행위 컴퓨터 정보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근, 차단, 방해, 또는 오남용	+	포함: 09031 - 09039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 (0294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235050100) 중 코드구분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통계 산출이 가능함 - 연계코드는 소분류 영역으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2235050100</td> <td>위반</td> <td>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r> <td>2235050400</td> <td>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td> <td>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235050400	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235050400	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외: 컴퓨터를 이용한 아동음란물의 소지, 배포, 제작 행위(03022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절도 또는 불법복제(0503);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물의 소지, 배포, 또는 제작(08022);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0701)와 절도(0502)	2. 문제점 - 행위를 “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국제표준범죄분류의 09031(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와 09032(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영역의 소분류와 세분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함 - 향후 연계를 위해서는 코드의 세분화가 필요하고 특별법의 조항 중심으로 구분할 경우, 코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09031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	포함:	- 연계코드 없음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 해킹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부분이나 전체에 대한 접속과 관련된 불법적 행위	-	제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불법적 접근(02011);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32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손괴, 삭제, 조작 또는 숨김 등과 관련된 불법적 행위	+	포함: 컴퓨터 데이터의 손괴, 변경, 숨김;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방해; 서비스공격에 대한 거절, 승인 없는 컴퓨터 시스템 파일의 삭제; 컴퓨터 시스템의 손괴; 090321 - 09032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컴퓨터 데이터가 아닌 재산의 손괴(0504);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321	컴퓨터 시스템의 불법적 방해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	+	포함: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방해; 서비스 공격의 거부; 컴퓨터 시스템 손괴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0903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090322	컴퓨터 데이터의 불법적 방해 승인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데이터의 손괴, 삭제, 저하, 조작 또는 숨김과 관련된 행위	+	포함: 컴퓨터 데이터의 손괴, 삭제, 조작, 숨김 행위; 승인 없이 컴퓨터 시스템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	- 연계코드 없음
		-	제외: 0903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09033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불법적 차단 또는 접근 승인이나 정당한	+	포함: 권한 없는 컴퓨터 데이터의 차단; 무선네트워크에서 권한 없이 데이터의 전송을	- 연계코드 없음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권한 없이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로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데이터를 입수하는 행위, 복사와 같이 승인 없이 컴퓨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행위	-	기록, 승인 없이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 제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개인 컴퓨터 파일에 대한 불법적 접근(02011);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09039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	포함: 컴퓨터 오남용 도구의 제조, 판매, 획득, 수입, 배포 또는 소유 - 연계코드 없음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는 것으로 09031 - 09033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제외: 09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																																	
0904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국가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	포함: 반란; 간첩; 공식비밀의 유출; 정부의 안전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전쟁범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군부대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내란음모; 방해공작; 국제 침략범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침략전쟁을 야기하거나 전쟁 야기를 시도하는 행위; 주권강탈; 왕과 왕족에 대한 침해 행위; 폭동 선동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내란의죄, 외환의죄, 국기에관한죄, 국교에관한죄, 공안을해하는죄 등을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연계</th>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내란 (109개)</td> <td>010102015</td> <td>내란목적살인선전</td> <td>~</td> <td>0101010250</td> <td>내란모의참여선전</td> </tr> <tr> <td>외환 (270개)</td> <td>0102100150</td> <td>군기누설선전</td> <td>~</td> <td>1102100150</td> <td>군사상기밀누설선전</td> </tr> <tr> <td>국기 (18개)</td> <td>0103020000</td> <td>국장비기</td> <td>~</td> <td>1103020200</td> <td>국장비방</td> </tr> <tr> <td>국교 (54개)</td> <td>0104070100</td> <td>외교상기밀탐지</td> <td>~</td> <td>0104060100</td> <td>외교상기밀누설</td> </tr> <tr> <td>공안 (32개)</td> <td>0105020100</td> <td>병역거부단체조직</td> <td>~</td> <td>0105070100</td> <td>공무원자격사칭</td> </tr> </tbody> </table> 나. 특별법법 (02945)	구분	죄명코드	죄명	연계	죄명코드	죄명	내란 (109개)	010102015	내란목적살인선전	~	0101010250	내란모의참여선전	외환 (270개)	0102100150	군기누설선전	~	1102100150	군사상기밀누설선전	국기 (18개)	0103020000	국장비기	~	1103020200	국장비방	국교 (54개)	0104070100	외교상기밀탐지	~	0104060100	외교상기밀누설	공안 (32개)	0105020100
구분	죄명코드	죄명	연계	죄명코드	죄명																															
내란 (109개)	010102015	내란목적살인선전	~	0101010250	내란모의참여선전																															
외환 (270개)	0102100150	군기누설선전	~	1102100150	군사상기밀누설선전																															
국기 (18개)	0103020000	국장비기	~	1103020200	국장비방																															
국교 (54개)	0104070100	외교상기밀탐지	~	0104060100	외교상기밀누설																															
공안 (32개)	0105020100	병역거부단체조직	~	0105070100	공무원자격사칭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td>0206029000</td><td>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100</td><td>위반 (목적수행)</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200</td><td>위반 (자진지원 . 금품수수)</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300</td><td>위반 (잠입 . 탈출)</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400</td><td>위반 (찬양 . 고무등)</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500</td><td>위반 (회합 . 통신등)</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600</td><td>위반 (편의제공)</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700</td><td>위반 (불고지)</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800</td><td>위반 (특수직무유기)</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9900</td><td>위반 (무고 . 날조)</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20200</td><td>위반 (간첩)</td><td>국가보안법</td></tr> <tr><td>0206055500</td><td>위반 (특수잠입 . 탈출)</td><td>국가보안법</td></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9000	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06029100	위반 (목적수행)	국가보안법	0206029200	위반 (자진지원 . 금품수수)	국가보안법	0206029300	위반 (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0206029400	위반 (찬양 . 고무등)	국가보안법	0206029500	위반 (회합 . 통신등)	국가보안법	0206029600	위반 (편의제공)	국가보안법	0206029700	위반 (불고지)	국가보안법	0206029800	위반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0206029900	위반 (무고 . 날조)	국가보안법	0206020200	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0206055500	위반 (특수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29000	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06029100	위반 (목적수행)	국가보안법																																										
0206029200	위반 (자진지원 . 금품수수)	국가보안법																																										
0206029300	위반 (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0206029400	위반 (찬양 . 고무등)	국가보안법																																										
0206029500	위반 (회합 . 통신등)	국가보안법																																										
0206029600	위반 (편의제공)	국가보안법																																										
0206029700	위반 (불고지)	국가보안법																																										
0206029800	위반 (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0206029900	위반 (무고 . 날조)	국가보안법																																										
0206020200	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0206055500	위반 (특수잠입 . 탈출)	국가보안법																																										
		-	제외: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언, 제공 또는 요구, 수수하는 행위 (0703); 폭동과 폭력적인 무질서(08011); 군사적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이외의 군 범죄																																									
0905	조직범죄와 관련된 행위 범죄조직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포함: 범죄단체에 대한 가입; 09051-09059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사항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범 (02758)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td>0105010100</td><td>범죄단체조직</td></tr> <tr><td>0105010200</td><td>범죄단체가입</td></tr> </tbody> </table> 나. 특별법범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td>0206033500</td><td>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td><t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td></tr> </tbody> </table> 2.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는 범죄조직을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윤을 얻고자 한 개 이상의 심각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분류표는 행위 기준이 아닌 죄명 기준으로 범죄분류표 상에서 개념정의의 하고 있지 않으며 죄명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죄명에 대한 개념정의가 법률,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 범죄단체의 구성요건 중 목적에 있어서 국제표준범죄분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구분하여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계 산출과정에서 체시가 필요하다.												
		-	제외: 범죄단체 가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 중 조직과의 관련성이 없는 행위												
09051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 범죄조직의 활동에 대한 참여	+	포함: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범 (02758)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05010100</td> <td>범죄단체조직</td> </tr> <tr> <td>0105010200</td> <td>범죄단체가입</td> </tr> </tbody> </table> 나. 특별법범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33500</td> <td>위반 (단체등의 구성활동)</td> <t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500	위반 (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외: 범죄단체 가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조직과 연계된 행위가 상황적 맥락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0905 영역에서 제외 행위로 기술된 행위들														
09059	범죄조직과 관련된 기타 행위 범죄조직과 관련된 행위로 09051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범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범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33600</td> <td>위반 (단체등이용지원)</td> <t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2. 고려사항 - '범죄단체 가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죄가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외되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단체와 관련된 범죄행위들은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600	위반 (단체등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33600	위반 (단체등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외: 0905 영역에서 제외 행위로 기술된 행위들														
0906	테러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가. 형법법 (02758): 연계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4010200</td> <td>위반</td> <td>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 테러방지법</td> </tr> </tbody> </table> <p>2. 분류 관련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분류의 행위들이 법률규정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나 연계코드가 각각의 행위별로 구분되지 않아 소분류 이하 국제표준범죄분류와 연계된 통계 산출이 어려움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 (테러조직가담: 09061)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09062)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테러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행위: 09069)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4010200	위반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 테러방지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4010200	위반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단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기타 테러범죄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의 행동에 관여하는 행위		<p>테러 조직에 가담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테러를 위해 고용되거나 훈련하는 행위; 테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테러를 야기하는 행위; 기타 09061-09069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p>						
			<p>제외:</p> <p>테러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0101); 테러행위가 특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테러 또는 테러조직과 관련된 행위가 상황적 맥락에서 분리된 경우</p>						
09061	테러조직 가담 한 개 이상의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활동에 가담하는 행위	+	<p>포함:</p> <p>테러조직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p>						
		-	<p>제외:</p> <p>0906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09062	테러에 대한 재정 지원 테러범의 활동, 개별 테러범 또는 테러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	<p>포함:</p> <p>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p>						
		-	<p>제외:</p> <p>0906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09069	테러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행위	+	<p>포함:</p> <p>테러와 관련된 채용 또는 훈련; 테러를 야기하는 행위</p>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09061- 09062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테러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행위	-	<p>제외:</p> <p>0906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0907	<p>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교통위반</p> <p>교통법률과 규칙에 위반한 범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행위</p>	+	<p>포함:</p> <p>운전면허, 운전, 등록, 또는 도로가치 훼손 관련 위반행위; 과속; 안전규칙, 자동차 등록규정, 운전면허규정 위반</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운전면허, 운전, 등록, 또는 도로가치 훼손 관련 위반 행위; 과속; 안전규칙, 자동차 등록규정, 운전면허규정 위반 등 예시 행위들이 대부분 운전자 중심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임을 고려할 때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p> <p>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8051600</td> <td>위반</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600</td> <td>위반(무면허운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400</td> <td>위반(음주운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500</td> <td>위반(음주측정거부)</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800</td> <td>위반(공동위험행위)</td> <td>도로교통법</td> </tr> <tr> <td>0208052900</td> <td>위반(사고후미조치)</td> <td>도로교통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1600	위반	도로교통법	0208052600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500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0208052800	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0208052900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8051600	위반	도로교통법																						
0208052600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500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0208052800	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0208052900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	<p>제외:</p> <p>자동차 운전 중 태만 또는 부주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할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02063);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 아래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02072);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사고야기 후 도주 행위 (0504); 상해를 가하는 사고야기 후 도주 (02063)</p>																							
0908	<p>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기타 행위</p> <p>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0901-0907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p>	+	<p>포함:</p> <p>사병 조직; 용병의 고용; 사체 은닉</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조직 또는 용병 고용 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발견하지 못함 - 사체은닉 관련 행위의 범죄분류코드는 아래와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r> </thead> <tbody> <tr> <td>0112060000</td> <td>사체등은닉</td> </tr> <tr> <td>0112060100</td> <td>사체은닉</td> </tr> <tr> <td>0112050100</td> <td>사체유기</td> </tr> <tr> <td>0112040100</td> <td>사체손괴</td> </tr> </tbody> </table> <p>나. 특별법법 (02945): 특별법 규정에서는 관련 행위들을 발견하지 못함</p>	죄명코드	죄명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60100	사체은닉	0112050100	사체유기	0112040100	사체손괴											
죄명코드	죄명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60100	사체은닉																							
0112050100	사체유기																							
0112040100	사체손괴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2. 고려사항 - 사체은닉이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체유기와 사체손괴도 0908 영역에 포함시켜 통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외: - 0901-0907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7) 대분류 10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1001	환경 오염 또는 훼손을 야기하는 행위 자연환경의 오염에 이르는 행위	포함: + 공기, 물, 토양 오염; 10011-10019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행위	1. 죄명코드 연계 - 대기, 수질, 토양으로 구분되는 소분류 영역으로 범죄분류코드 연계 가능																		
		제외: -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이나 무단 투기 등을 통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1002); 쓰레기 투기 (0801);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고의적 파괴, 훼손 또는 마모 (0504)																			
10011	공기오염이나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공기오염이나 공기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포함: + 공해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229022300</td> <td>위반</td> <td>대기환경보전법</td> </tr> <tr> <td>229024500</td> <td>위반</td> <td>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td> </tr> <tr> <td>229024600</td> <td>위반</td> <td>악취방지법</td> </tr> <tr> <td>328090100</td> <td>위반</td> <td>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td> </tr> <tr> <td>329020200</td> <td>위반</td> <td>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td> </tr> </tbody> </table> 2.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9022300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229024500	위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29024600	위반	악취방지법	328090100	위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329020200	위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229022300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229024500	위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29024600	위반	악취방지법																			
328090100	위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329020200	위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외: - 불법적 광물채취, 불법적 벌목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1004):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12	수질오염이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수질오염이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	<p>포함: 수질오염</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2100</td> <td>위반</td> <td>수질환경보전법</td> </tr> <tr> <td>0229022500</td> <td>위반</td> <td>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29022900</td> <td>위반</td> <td>먹는물관리법</td> </tr> <tr> <td>0229025200</td> <td>위반</td> <td>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td> </tr> <tr> <td>0229025400</td> <td>위반</td> <td>해양환경관리법</td> </tr> <tr> <td>0229025000</td> <td>위반</td> <td>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td> </tr> <tr> <td>0229021000</td> <td>위반</td> <td>해양오염방지법</td> </tr> </tbody> </table> <p>2.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수질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p>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100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02290225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리에관한법률	0229022900	위반	먹는물관리법	02290252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0229025400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0229025000	위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	0229021000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100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02290225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리에관한법률																									
0229022900	위반	먹는물관리법																									
02290252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0229025400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0229025000	위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																									
0229021000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	<p>제외: 불법적 광물채취, 불법적 벌목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 (1004);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이나 무단 투기 등을 통한 수질오염 또는 훼손 (1002);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10013	토양오염이나 토질을 악화시키는 행위 토양오염이나 토질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	+	<p>포함: 토양오염</p> <p>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3000</td> <td>위반</td> <td>토양환경보전법</td> </tr> </tbody> </table> <p>2. 고려사항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209010800), 자연환경보전법(229022700) 등에도 토양오염과 관련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분류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여기 소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p>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000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000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	<p>제외: 불법적 광물채취, 불법적 벌목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1004);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이나 무단 투기</p>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등을 통한 토양오염 또는 훼손 (1002);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19	환경오염이나 악화를 초래하는 기타 행위 자연환경의 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10011-10013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포함: 소음, 진동, 열, 불빛 또는 방사선에 의한 오염; 위험물질, 핵물질, 화학물질 관련 위반 행위
		-	제외: 100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2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	포함: 폐기물의 불법적 밀매;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 폐기물의 불법적 투기; 10021-10022 영역에서 제시된 행위
		-	제외: 쓰레기 투기 (0801)
10021	국경 내의 폐기물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폐기물의 불법적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로 개시, 예방 그리고/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이 오직 한 나라에만 관련되는 경우	+	포함: 불법적인 국내 폐기물 투기,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내 이동 또는 밀매
		-	제외: 100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22	국경 외의 폐기물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 불법적인 폐기물	+	포함: 폐기물의 해외 밀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1229022000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0113170700	방사선방출	
0113170800	방사성물질방출	
0113170900	가스유출	
0113171200	방사선유출	
0113171300	방사성물질유출	
0113171400	가스살포	
0113171700	방사선살포	
0113171800	방사성물질살포	
0229022200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239021000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소분류 이하에서 국경 내외로 구분하여 코드 연계 가능하며 소분류 합산을 통해 중분류 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기와 관련된 행위(1002) 통계 산출 가능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1700	위반	폐기물관리법
0229024800	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0229021100	위반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의 이동 또는 투기의 시작, 예방 그리고/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가 한 개 국가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외: 1002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3300</td> <td>위반</td> <td>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300	위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3300	위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003	보호 또는 금지된 동물과 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 보호 또는 금지된 야생 동물 또는 식물종의 불법 거래 또는 소유	+	포함: 야생동식물의 밀매; 야생동식물의 불법거래 또는 소유; 10031-1003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4700</td> <td>위반</td> <td>야생동·식물보호법</td> </tr> <tr> <td>0239020300</td> <td>위반</td> <td>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39020700</td> <td>위반</td> <td>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2. 문제점 - 소분류에서 1)국경내 거래 또는 소지, 2)국제밀매 또는 소지, 3)위험 또는 통제된 동식물종의 거래 또는 소지, 4) 기타 거래 또는 소지 등으로 구분하여 코드 연계 필요 - 특별법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중분류 통계 작성은 가능하나 세분 연계가 어려움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4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39020700	위반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4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39020700	위반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제외: 애완동물 절도 (050221); 동물의 관리, 양육, 소지 관련 위반행위 (10091); 가축 강도 (04014); 가축 절도 (05025)													
10031	보호 동식물의 거래 또는 소유 보호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	포함: 상아 밀매; 100311-10031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	- 아래 세분류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 후 합산												
		-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311	국경 내에서 보호종의 거래 또는 소유 한 국가 안에서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	포함: 멸종 위기종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 연계 코드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교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기준으로 코드를 신설하여 통계 산출 가능												
		-	제외: 10031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312	국경을 통과하는 보호종 밀매 2개국 이상에서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적으로	+	포함: 국경을 통과하는 야생 동식물의 밀매	- 연계코드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를 기준으로 코드 신설하여 통계산출 가능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로 수입, 수출, 취득, 판매, 이동 또는 운반	-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32	금지 또는 통제된 동물종의 거래 또는 소유	+	포함: 위험하거나 통제된 동물의 소유; 위험한 동물의 양육; 금지종의 거래
	금지 또는 통제된 동물 또는 식물종의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39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종의 기타 거래 또는 소유	+	포함:
	10031-10032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보호 또는 금지된 동식물종에 대한 기타 불법적 거래 또는 소유	-	제외: 1003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	자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들	+	포함: 10041-10049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
	자원, 동물 또는 식물종, 토양, 물 또는 공기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소모로 이어지는 행위들	-	제외: 고갈이나 악화 수준에 이르지 않지만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이어지는 행위들 (1001)
10041	불법 벌목	+	포함: 불법적 벌목; 불법적 새김과 방화; 불법적 모래 채취
	목재의 불법적 채취, 절단, 수확, 운반, 구입 또는 판매 행위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2	불법 사냥, 조업 또는 야생 동식물의 채취	+	포함: 불법 사냥, 불법 조업, 불법 침입
	야생 동식물의 불		

1. 죄명코드 연계		
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100	위반	산림법
0224020200	위반	산지관리법
0224020300	위반	산림보호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법 사냥, 조업, 수집 또는 기타 채취 행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4020100</td> <td>위반</td> <td>야생동·식물보호법</td> </tr> <tr> <td>0239020300</td> <td>위반</td> <td>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td> </tr> <tr> <td>0223020300</td> <td>위반</td> <td>내수면어업법</td> </tr> <tr> <td>0223020400</td> <td>위반</td> <td>어장관리법</td> </tr> <tr> <td>0223030100</td> <td>위반</td> <td>수산업법</td> </tr> <tr> <td>0223030400</td> <td>위반</td> <td>수산자원관리법</td> </tr> <tr> <td>0223040100</td> <td>위반</td> <td>어업자원보호법</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위 특별법들이 불법사냥, 불법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표준범죄분류에서 의도하고 있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다른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벌칙)의 행위를 보면 불법사냥(7호) 이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는 행위(2호)를 처벌하는 등 다른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음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1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23020300	위반	내수면어업법	0223020400	위반	어장관리법	0223030100	위반	수산업법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40201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0223020300	위반	내수면어업법																										
0223020400	위반	어장관리법																										
0223030100	위반	수산업법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3	불법 채광 땅에서 광석 또는 광물의 불법 채취 행위	+	포함: 희귀광물의 밀매; 불법 채광; 토지 권한 또는 면허 없는 채광; 환경 또는 안전 기준에 위반한 채광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5060100</td> <td>위반</td> <td>광업법위</td> </tr> <tr> <td>0225060300</td> <td>위반</td> <td>해저광물자원개발법</td> </tr> <tr> <td>0225060400</td> <td>위반</td> <td>해외자원개발사업법</td> </tr> <tr> <td>0225061000</td> <td>위반</td> <td>석유사업법</td> </tr> <tr> <td>0225061100</td> <td>위반</td> <td>광산보안법</td> </tr> <tr> <td>0225061200</td> <td>위반</td> <td>석탄산업법</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단순 광업법위반으로 분류된 행위를 연계시킬 경우, 광업법 제102조 제1호와 같이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채광과는 구분되는 통계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 - 연계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죄명코드가 있는 모든 행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60100	위반	광업법위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225060400	위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0225061000	위반	석유사업법	0225061100	위반	광산보안법	0225061200	위반	석탄산업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5060100	위반	광업법위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225060400	위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0225061000	위반	석유사업법																										
0225061100	위반	광산보안법																										
0225061200	위반	석탄산업법																										
		-	제외: 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10049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들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 10041-10043 영역에서 서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	+	포함: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3030400</td> <td>위반</td> <td>수산자원관리법</td> </tr> <tr> <td>0223040100</td> <td>위반</td> <td>어업자원보호법</td> </tr> <tr> <td>0225060300</td> <td>위반</td> <td>해저광물자원개발법</td> </tr> <tr> <td>1224020100</td> <td>위반</td> <td>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위반의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0225060300	위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p>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행위와 같이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들이 위 관련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나 코드 구분이 어려워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음</p> <p>- 예를 들어,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행위에는 불법조업 행위와 10049와 같이 천연자원의 고갈 또는 악화를 야기하는 기타 행위가 혼재되어 있어 같은 코드일 경우 통계 산출이 불가능함</p>									
		-	<p>제외:</p> <p>1004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p>									
1009	<p>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들</p> <p>자연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1001-1004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은 행위들</p>	+	<p>포함:</p> <p>동식물의 건강과 양호한 상태를 보호하지 못한 행위; 10091-10092 영역에서 제시된 포함 행위들</p>									
		-	<p>제외:</p> <p>1001-1008 영역에서 제외된 제외 행위들</p>									
10091	<p>동물 관련 침해행위들</p> <p>동물에 대한 불법적 대우, 양육 또는 소지 행위</p>	+	<p>포함:</p> <p>동물 소유권 또는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로 야생 동물 거래 침해행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가혹 행위; 동물 사냥 관련 가혹행위 위반; 동물의 방임과 학대</p>									
		-	<p>제외:</p> <p>반려견 절도 (050221); 가축 절도 (05025); 가축 강도 (04014)</p>									
10099	<p>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p> <p>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로 10091 영역에서 기술되거나 분류되지 않는 것들</p>	+	<p>포함:</p> <p>오존 침해 물질의 밀수출입; 오존 침해 물질의 불법적 사용</p>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2040400</td> <td>위반</td> <td>동물보호법</td> </tr> <tr> <td>0229010400</td> <td>위반</td> <td>실험동물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p>2. 세부 범죄행위의 유형</p> <p>-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2040400	위반	동물보호법	0229010400	위반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2040400	위반	동물보호법										
0229010400	위반	실험동물에관한법률										
			<p>1. 죄명코드 연계</p> <p>가. 형법법 (02758): 연계가능 코드 없음 나. 특별법법 (02945):</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29022800</td> <td>위반</td> <td>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td> </tr> </tbody> </table> <p>2. 범죄행위의 유형</p> <p>- 오존침해물질의 밀수출입이 예시로 제시됨 - 오존 침해물질의 불법적 사용 이외에 자연환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음 - 기타 행위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코드화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모든 법령의 내용을 검토해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됨</p>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800	위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29022800	위반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률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	제외: 동물에 대한 불법적 대우, 양육 또는 소지 (10091); 1001-1008 영역에서 제시된 제외 행위들

8) 대분류 11 기타범죄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1101	보편 관할권 하의 행위	+	포함:						
		-	제외:						
11011	고문	+	포함:						
		-	제외:						
11012	해적	+	포함: 1. 죄명코드 연계 가. 특별법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죄명코드</th> <th style="width: 25%;">죄명</th> <th style="width: 50%;">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9010300</td> <td>위반</td> <td>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2. 문제점 - 선박위해처벌법에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편관할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ICCS 분류에는 행위지를 구별하여 202023 및 1101 2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 - 상위분류인 1101로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가장 연관성이 있는 소분류 11012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010300	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9010300	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제외:								
11013	전쟁범죄	+	포함:						
		-	제외:						
110131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생, 사망이나 중상을 야기하는 행위	+	포함:						
		-	제외:						
110132	무력분쟁관련불법 재산파괴나 손상	+	포함:						
		-	제외:						
110133	무력분쟁 관련 성폭력	+	포함:						
		-	제외:						
110134	무력분쟁 관련 자유와 인간 존엄성 손상 행위	+	포함:						
		-	제외:						
110135	아동 군인 징집 및 입대	+	포함:						
		-	제외:						
110139	기타 전쟁범죄	+	포함:						
		-	제외:						
11014	집단학살	+	포함:						
		-	제외:						

국제표준범죄분류			연계작업요약 및 설명							
11015	반인권 범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6	침략범죄	+	포함:	- 연계코드 작성 불가: 세부행위유형 구분 미비로 연계 불가 → 상위분류인 중분류 1101로 연계						
		-	제외:							
11019	보편적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행위들	+	포함:	<p>1. 죄명코드 연계</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일응 통계산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6055900</td> <td>위반</td> <td>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p>- 국제형사범죄법의 구성요건이 11011~11016, 11019 등의 소분류에 해당하나, 현재 범죄분류코드가 206055900 하나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연계가 어려움</p> <p>- 상위분류인 1101로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일단 소분류 11029로 연계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임</p>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55900	위반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6055900	위반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	제외:									
1102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미성년자에 관하여 구체적 법률과 규정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	+	포함:							
		-	제외:							
11021	비행 법률에 의하여 단지 관련된 사람의 나이 때문에 불법이 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의하여 범해진 행위 또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성인의 행위	+	포함:	<p>-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통계산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18030800</td> <td>위반</td> <td>청소년보호법</td> </tr> </tbody> </table>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0800	위반	청소년보호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18030800	위반	청소년보호법								
-	제외:									
11029	기타 청소년법 및 미성년자법 위반 행위 기타 청소년 관련 법규에 반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	포함:	<p>1. 죄명코드 연계</p> <p>- 아래 죄명코드 연계로 일응 통계산출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죄명코드</th> <th>죄명</th> <th>법률명</th> </tr> </thead> <tbody> <tr> <td>0205020500</td> <td>위반</td> <td>소년법</td> </tr> </tbody> </table> <p>2. 문제점</p> <p>- 소년법위반 행위가 ICCS 중분류 1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규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나, 이것이 우범소년과 같이 지위비행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중한 행위유형인 범치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음</p> <p>- 따라서 소년법 위반 행위에 부여된 코드가 ICCS 1102의 하위분류인 소분류 11021 또는 11029 어느 쪽에 연계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함</p> <p>- 향후 관련 범죄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p> <p>- 상위분류인 1101로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재로서는 소분류 11029로 연계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임</p>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5020500	위반	소년법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0205020500	위반	소년법								
-	제외:									

부 록 2. 대분류 02, 03, 04, 05, 06, 09, 10, 11 연계결과표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125010000	상해	
								0125010100	상해	
								0206035200	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5200	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011000	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25020000	존속상해	
								0125020100	존속상해	
								0206039800	위반(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011000	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25030000	중상해	
								0125030100	중상해	
								0209910300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5040000	중존속상해	
								0125040100	중존속상해	
								0125160000	상습상해	
								0125160100	상습상해	
								0206034200	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0400	위반(상습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5170000	상습존속상해	
								0125170100	상습존속상해	
								0206041400	위반(상습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180000	상습중상해	
								0125180100	상습중상해	
								0125190000	상습중존속상해	
								0125190100	상습중존속상해	
								0125260100	특수상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6036200	위반(집단·흥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200	위반(야간집단·흥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400	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5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260200	특수존속상해	
								0206040400	위반(집단·흥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800	위반(단체등의공동존속상 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9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260300	특수중상해	
								0125260400	특수중존속상해	
								0125270100	상습특수상해	
								02060382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300	위반(단체등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5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6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흥 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900	위반(상습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5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상 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26000	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5270200	상습특수존속상해	
								02060409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존속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700	위반(단체등의상습존속상 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1	중대한 폭행	02060540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100	위반(상습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6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270300	상습특수중상해					
								0125270400	상습특수중존속상해					
								020112	경미한 폭행			0107040100	독직폭행	
												0206025200	위반(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25080000	존속폭행	
												0125080100	존속폭행	
												0206039600	위반(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070000	폭행	
												0125070100	폭행	
				1206035300	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090000	특수폭행									
				0125090100	특수폭행									
				0206035300	위반(야간·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6300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3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400	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5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200000	상습폭행									
				0125200100	상습폭행									
				0206034300	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	0209910500	위반(상습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5210000	상습존속폭행	
								0125210100	상습존속폭행	
								0206041200	위반(상습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220000	상습특수폭행	
								0125220100	상습특수폭행	
								02060383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300	위반(단체등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6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9800	위반(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5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폭 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0600	위반(상습특수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5230100	상습특수존속폭행	
								0206051300	위반(단체등의상습존속폭 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400	위반(단체등의공동존속폭 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5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6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400	위반(상습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31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존 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5090200	특수존속폭행	
0206040200	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020112	경미한 폭행	02060407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4010000	외국원수폭행	
								0104010100	외국원수폭행	
								0104020000	외국사절폭행	
								0104020100	외국사절폭행	
								0206042700	위반(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43200	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1100	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12	협박			0104010200	외국원수협박	
								0104020200	외국사절협박	
								0130010000	협박	
								0130010100	협박	
								1206035600	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0020000	존속협박	
		0130020100	존속협박							
		0206039700	위반(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0030000	특수협박							
		0130030100	특수협박							
		0206035600	위반(야간·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6600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6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800	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9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2	협박			
						0130030200	특수존속협박	
						0206040300	위반(집단·흥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600	위반(단체등의공동존속협 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7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0040000	상습협박	
						0130040100	상습협박	
						0206034600	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3400	위반(상습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0050000	상습존속협박	
						0130050100	상습존속협박	
						0206041300	위반(상습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0060000	상습특수협박	
						0130060100	상습특수협박	
						02060386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700	위반(단체등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0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흥 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9900	위반(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6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협 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3500	위반(상습특수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0070100	상습특수존속협박	
						02060408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존속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500	위반(단체등의상습존속협 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2	협박	02060528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700	위반(상습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3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7020200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0206042800	위반(운전자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1400	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925200	위반(협박업무수행등방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23030700	위반	공중등협박목적 위험자금조달행위 의금지에관한법률	
						020121	중대한 협박	-	
						020122	경미한 협박	-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190	기타 폭행 및 협박
		0125100100	폭행치상						
		0125120000	존속폭행치상						
		0125120100	존속폭행치상						
		0125140000	특수폭행치상						
		0125140100	특수폭행치상						
		0125240100	특수존속폭행치상						
		0206032800	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8800	위반(독직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42900	위반(운전자폭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910700	위반(상습폭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0800	위반(상습특수폭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0206021600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0131010000	미성년자약취		
						0131010100	미성년자약취		
						0206026200	미성년자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0131010200	미성년자유인		
						0206026300	미성년자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0209913600	상습미성년자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0209913700	상습미성년자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020211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	-	
						020212	다른 가족에 의한 약취/유인	-	
		020213	법적 후견인에 의한 약취/유인	-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유인	-					
		02022	자유 박탈		020221	납치	0137010300	인질강요	
					020222	불법 감금	0206021400	위반(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07030000	직권남용체포	
							0107030100	직권남용체포	
							0107030200	직권남용감금	
0129010000	체포								
0129010100	체포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2	자유 박탈	020222	불법 감금	1206035400	위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25900	위반(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29010200	감금	
								1206035500	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26000	위반(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29020000	존속체포	
								0129020100	존속체포	
								0206039900	위반(공동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20200	존속감금	
								0206040000	위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30000	중체포	
								0129030100	중체포	
								0129030200	중감금	
								0129040000	중존속체포	
								0129040100	중존속체포	
								0129040200	중존속감금	
								0129050000	특수체포	
								0129050100	특수체포	
								0206035400	위반(야간·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6400	위반(집단·흉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4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800	위반(단체등의공동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9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50200	특수감금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2	자유 박탈	020222	불법 감금	0206035500	위반(야간·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6500	위반(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500	위반(야간집단·흥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200	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3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50300	특수존속체포	
								0206040500	위반(집단·흥기등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3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50400	특수존속감금	
								0206040600	위반(집단·흥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7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50500	특수중체포	
								0129050600	특수중감금	
								0129050700	특수중존속체포	
								0129050800	특수중존속감금	
								0129060000	상습체포	
								0129060100	상습감금	
								0206034400	위반(상습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1800	위반(상습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별법
								0129070000	상습감금	
								0129070100	상습감금	
								0206034500	위반(상습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1900	위반(상습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별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2	자유 박탈	020222	불법 감금	0129080000	상습존속체포	
								0129080100	상습존속체포	
								0206041500	위반(상습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090000	상습존속감금	
								0129090100	상습존속감금	
								0206041600	위반(상습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29100000	상습중체포	
								0129100100	상습중체포	
								0209912000	위반(상습중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9110000	상습중감금	
								0129110100	상습중감금	
								0209912100	위반(상습중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9120000	상습중존속체포	
								0129120100	상습중존속체포	
								0129130000	상습중존속감금	
								0129130100	상습중존속감금	
								02060520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2200	위반(상습특수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24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12300	위반(상습특수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84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85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10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 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2	자유 박탈	020222	불법 감금	02060411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700	위반(단체등의상습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100	위반(단체등의상습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100	위반(단체등의상습존속체 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200	위반(단체등의공동존속체 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4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500	위반(단체등의상습존속감 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600	위반(단체등의공동존속감 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48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500	위반(상습특수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600	위반(상습특수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200	위반(상습특수존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300	위반(상습특수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1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체 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2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감 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7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존 속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8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존 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011200	위반(보복체포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1300	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2 자유 박탈	020222 불법 감금	0209912400	위반(상습특수중체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2500	위반(상습특수중감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223	운수장비 납치(하이잭킹)	-			
				020229	기타 자유 박탈	-			
				020291	불법 입양	-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2	강제 혼인	-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131080000	국외이송약취		
						0131080100	국외이송약취		
						0206026700	위반(국외이송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131080200	국외이송유인		
		0206027100				위반(국외이송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0131100000				상습국외이송약취			
		0131100100				상습국외이송약취			
		0209915400				위반(상습국외이송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131100200				상습국외이송유인			
		0209915500	위반(상습국외이송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0131100400	상습피약취자국외이송						
		0209915600	위반(상습피약취자국외이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131100500	상습피유인자국외이송						
		0209915700	위반(상습피유인자국외이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131100600	상습피매매자국외이송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9916800	위반(상습피매매자국외이송)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0131090000	피약취자등국외이송	
					0131090100	피약취자국외이송	
					0131090200	피유인자국외이송	
					01310903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01200	피매매자국외이송	
					0131120000	피약취자등수수	
					0131120100	피약취자수수	
					0131120200	피약취자은닉	
					0131120300	피유인자수수	
					0131120400	피유인자은닉	
					0131120500	피매매자수수	
					0131120600	피매매자은닉	
					0131120700	피국외이송자수수	
					0131120800	피국외이송자은닉	
					0131130000	피약취미성년자등수수	
					0131130100	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30200	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30300	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30400	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40000	피결혼약취자등수수	
					0131140100	피결혼약취자수수	
					0131140200	피결혼약취자은닉	
					0131140300	피결혼유인자수수	
					0131140400	피결혼유인자은닉	
					0131150000	상습피약취자등수수	
					0131150100	상습피약취자수수	
					0131150200	상습피유인자수수	
					0131150300	상습피매매자수수	
					0131150400	상습피국외이송자수수	
					0131150500	상습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50600	상습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50700	상습피결혼약취자수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입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행위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131150800	상습피결혼유인자수수	
								0131160000	상습피약취자등은닉	
								0131160100	상습피약취자은닉	
								0131160200	상습피유인자은닉	
								0131160300	상습피매매자은닉	
								0131160400	상습피국외이송자은닉	
								0131160500	상습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60600	상습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60700	상습피결혼약취자은닉	
								0131160800	상습피결혼유인자은닉	
								01311700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수수	
								0131170300	영리피약취자수수	
								0131170600	영리피유인자수수	
								0131170900	영리피매매자수수	
								0131171200	영리피국외이송자수수	
								0131171700	영리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71800	영리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72300	영리피결혼약취자수수	
								0131172400	영리피결혼유인자수수	
								0131180600	영리피유인자은닉	
								0131180900	영리피매매자은닉	
								0131181700	영리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80000	영리등목적피약취자등은닉	
								0131180300	영리피약취자은닉	
								0131181200	영리피국외이송자은닉	
								0131181800	영리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82300	영리피결혼약취자은닉	
								0131182400	영리피결혼유인자은닉	
								0131220100	국외이송약취모집	
								0131220200	국외이송유인모집	
								0131220300	피약취자국외이송모집	
								0131220400	피유인자국외이송모집	
								0131220500	국외이송약취운송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입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2 자유 행위 억압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29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131220600	국외이송유인운송	
				0131220700	피약취자국외이송운송	
				0131220800	피유인자국외이송운송	
				0131220900	국외이송약취전달	
				0131221000	국외이송유인전달	
				0131221100	피약취자국외이송전달	
				0131221200	피유인자국외이송전달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020310 노예	-		
				02032 강제 노동	020321 강제 노동 가사	-
		020322 강제 노동 산업	0231041800	위반(곡예강요행위)		아동복지법
			0231043800	위반(상습곡예강요행위)	아동복지법	
		020323 강제 또는 군대 노동	-			
		020329 기타 강제 노동	0231041400	위반(구걸강요)	아동복지법	
			0231043400	위반(상습구걸강요)	아동복지법	
			0231044200	위반(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0231044800	위반(상습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0206025400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131020300	영리약취	
				0206026400	위반(영리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31030300	영리유인	
				0206026800	위반(영리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31050300	상습영리약취	
				0209914100	위반(상습영리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별법
0131060300	상습영리유인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9914500	위반(상습영리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별법
								0131040200	노동력착취약취	
								0131040500	장기적출약취	
								0131040600	노동력착취유인	
								0131040900	장기적출유인	
								0131110000	결혼약취	
								0131110100	결혼약취	
								0131110200	결혼유인	
								0131200300	결혼약취모집	
								0131200400	영리약취모집	
								0131200700	결혼유인모집	
								0131200800	영리유인모집	
								0131201100	결혼약취운송	
								0131201200	영리약취운송	
								0131201500	결혼유인운송	
								0131201600	영리유인운송	
								0131201900	결혼약취전달	
								0131202000	영리약취전달	
								0131202300	결혼유인전달	
								0131202400	영리유인전달	
								0131210100	노동력착취약취모집	
								0131210400	장기적출약취모집	
								0131210500	노동력착취유인모집	
								0131210800	장기적출유인모집	
								0131210900	노동력착취약취운송	
								0131211200	장기적출약취운송	
								0131211300	노동력착취유인운송	
								0131211600	장기적출유인운송	
								0131211700	노동력착취약취전달	
								0131212000	장기적출약취전달	
								0131212100	노동력착취유인전달	
								0131212400	장기적출유인전달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390 기타 노예 및 착취	0209914600	위반(상습노동력착취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4900	위반(상습장기적출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5000	위반(상습노동력착취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5300	위반(상습장기적출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4000	위반(상습결혼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4400	위반(상습결혼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31041900	위반(제3자인도행위)	아동복지법			
					0231043900	위반(상습제3자인도행위)	아동복지법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목적 인신매매	020410 성적 목적 인신매매	0131090400	추행인신매매	
								0131240100	추행인신매매모집	
								0131240500	추행인신매매운송	
								0131240900	추행인신매매전달	
								0131090500	간음인신매매	
								0131240200	간음인신매매모집	
	0131240600	간음인신매매운송								
	0131241000	간음인신매매전달								
	0131100800	성매매인신매매								
	0131250200	성매매인신매매모집								
	0131250600	성매매인신매매운송								
	0131251000	성매매인신매매전달								
	0131100900	성적착취인신매매								
	0131250300	성적착취인신매매모집								
	0131250700	성적착취인신매매운송								
	0131251100	성적착취인신매매전달								
	0209915900	위반(상습추행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6000	위반(상습간음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목적 인신매매	020410	성적 목적 인신매매	0209916400	위반(상습성매매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6500	위반(상습성적착취인신매 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42	강제 목적 인신매매	020420	강제 목적 인신매매	01311007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			
						01312501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모집			
						01312505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운송			
						0131250900	노동력착취인신매매전달			
						0209916300	위반(상습노동력착취인신 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43	장기 목적 인신매매	020430	장기 목적 인신매매	0131101000	장기적출인신매매			
						0131250400	장기적출인신매매모집			
						0131250800	장기적출인신매매운송			
						0131251200	장기적출인신매매전달			
						0209916600	위반(상습장기적출인신매 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	기타 목적 인신매매	0131090600	결혼인신매매			
						0131090700	영리인신매매			
						0131101100	국외이송인신매매			
						0131240300	결혼인신매매모집			
						0131240400	영리인신매매모집			
						0131240700	결혼인신매매운송			
						0131240800	영리인신매매운송			
						0131241100	결혼인신매매전달			
						0131241200	영리인신매매전달			
						0131260100	국외이송인신매매모집			
						0131260300	국외이송인신매매운송			
						0131260500	국외이송인신매매전달			
						0131100300	상습국외이송매매			
						0209916100	위반(상습결혼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4 인신매매	02049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490 기타 목적 인신매매	0209916200	위반(상습영리인신매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6700	위반(상습국외이송인신매 매)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5 강요				0137010200	강요	
					0137070100	특수강요	
					0206035900	위반(야간·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6900	위반(집단·흉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9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000	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1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4900	위반(상습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23900	위반(상습강요)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89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2900	위반(단체등의상습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32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800	위반(상습특수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24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강 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26300	위반(상습특수강요)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1500	위반(면담강요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1206035900	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25000	위반(피해자등에대한강요 행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5 강요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10 강탈 또는 갈취	-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590 기타 강요 행위	-						
	0206 과실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61	아동 과실	0231044000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0231041100	위반(아동유기)	아동복지법				
					0231041200	위반(아동방임)	아동복지법				
					0128050000	영아유기					
					0128050100	영아유기					
					0128080000	아동학사					
					0128080100	아동학사					
					0128170100	영아유기치상					
					0209911100	위반(상습영아유기)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1200	위반(상습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1300	위반(상습아동학사)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1600	위반(상습영아유기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1700	위반(상습학대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31043000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				
					0231043100	위반(상습아동유기)	아동복지법				
					0231043200	위반(상습아동방임)	아동복지법				
					0231044700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다른 피부양자 과실	0128020000	존속유기	
									0128020100	존속유기	
	0128040000	중존속유기									
	0128040100	중존속유기									
0128070000	존속학대										
0128070100	존속학대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	020612 다른 피부양자 과실	0128110000	존속유기치상			
					0128110100	존속유기치상			
					0128150100	중존속유기치상			
					0128210100	존속학대치상			
				020619 기타 보호대상자 과실	0128000000	유기의죄			
					0128010000	유기			
					0128010100	유기			
					0128030000	중유기			
					0128030100	중유기			
					0128060000	학대			
					0128060100	학대			
					0128090000	유기치상			
					0128090100	유기치상			
					0128130100	중유기치상			
					0128190100	학대치상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11332010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3320200	업무상과실폐가스방출	
							0113320300	업무상과신평전기방출	
							0113320400	업무상과신평중기방출	
		0113320700	업무상과실폐가스유출						
		0113320800	업무상과신평전기유출						
		0113320900	업무상과신평중기유출						
		0113321200	업무상과실폐가스살포						
		0113321300	업무상과신평전기살포						
		0113321400	업무상과신평중기살포						
		0113321700	업무상과실폐가스공급방해						
		0113321800	업무상과신평전기공급방해						
		0113321900	업무상과신평중기공급방해						
		0113322000	업무상과실폐가스사용방해						
		0113322100	업무상과신평전기사용방해						
		0113322200	업무상과신평중기사용방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113322300	업무상과실공공용가스공급 방해	
					0113322400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 방해	
					0113322500	업무상과실공공용증기공급 방해	
					0113322600	업무상과실공공용가스사용 방해	
					0113322700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사용 방해	
					0113322800	업무상과실공공용증기사용 방해	
					0115250000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0115250100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0115260000	업무상과실기차등교통방해	
					0115260100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0115260200	업무상과실전차교통방해	
					0115260300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0115260400	업무상과실선박교통방해	
					0115260500	업무상과실항공기교통방해	
					0115270000	업무상과실기차등전복	
					0115270100	업무상과실기차전복	
					0115270200	업무상과실전차전복	
					0115270400	업무상과실선박전복	
					0115270500	업무상과실항공기전복	
					0115280000	업무상과실기차등매몰	
					0115280100	업무상과실기차매몰	
					0115280200	업무상과실전차매몰	
					0115280400	업무상과실선박매몰	
					0115280500	업무상과실항공기매몰	
					0115290000	업무상과실기차등추락	
					0115290100	업무상과실기차추락	
					0115290200	업무상과실전차추락	
					0115290400	업무상과실선박추락	
					0115290500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02062 직무상 과실	020620 직무상 과실	011530000	업무상과실기차등파괴	
					011530010	업무상과실기차파괴	
					011530020	업무상과실전차파괴	
					011530040	업무상과실선박파괴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30 차량 운전 부주의	011530050	업무상과실항공기파괴	
					01152703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011528030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011529030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02069 기타 행위	020690 기타 행위	020690 기타 행위	011530030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012601000	과실치상
						012601010	과실치상
						012603000	업무상과실치상
		012603010				업무상과실치상	
		012603020				중과실치상	
		011331010				과실폭발성물건파열	
		011331020				과실가스방출	
		011331030				과실전기방출	
		011331040				과실증기방출	
		011331060				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331070				과실가스유출	
		011331080				과실전기유출	
		011331090				과실증기유출	
		011331110				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331120				과실가스살포	
		011331130				과실전기살포	
		011331140				과실증기살포	
		011331160				과실방사성물질살포	
		011331170				과실가스공급방해	
		011331180				과실전기공급방해	
		011331190				과실증기공급방해	
		011331200				과실가스사용방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02069	기타 행위	과실	020690	기타 행위	과실	0113312100	과실전기사용방해	
							0113312200	과실증기사용방해				
							0113312300	과실공공용가스공급방해				
							0113312400	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0113312500	과실공공용증기공급방해				
							0113312600	과실공공용가스사용방해				
							0113312700	과실공공용전기사용방해				
							0113312800	과실공공용증기사용방해				
							0113330100	중과실폍발성물건파열				
							0113330200	중과실가스방출				
							0113330300	중과실전기방출				
							0113330400	중과실증기방출				
							0113330500	중과실가스유출				
							0113330600	중과실전기유출				
							0113330700	중과실증기유출				
							0113331000	중과실가스살포				
							0113331100	중과실전기살포				
							0113331200	중과실증기살포				
							0113331500	중과실가스공급방해				
							0113331600	중과실전기공급방해				
							0113331700	중과실증기공급방해				
							0113332000	중과실가스사용방해				
							0113332100	중과실전기사용방해				
							0113332200	중과실증기사용방해				
							0113332300	중과실공공용가스공급방해				
							0113332400	중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0113332500	중과실공공용증기공급방해				
							0113332600	중과실공공용가스사용방해				
							0113332700	중과실공공용전기사용방해				
							0113332800	중과실공공용증기사용방해				
							0114030000	과실일수				
							0114030100	과실일수				
							0115190000	과실일반교통방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입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115190100	과실일반교통방해	
					0115200000	과실기차등교통방해	
					0115200100	과실기차교통방해	
					0115200200	과실전차교통방해	
					0115200300	과실자동차교통방해	
					0115200400	과실선박교통방해	
					0115200500	과실항공기교통방해	
					0115210000	과실기차등전복	
					0115210100	과실기차전복	
					0115210200	과실전차전복	
					0115210300	과실자동차전복	
					0115210400	과실선박전복	
					0115210500	과실항공기전복	
					0115220000	과실기차등매몰	
					0115220100	과실기차매몰	
					0115220200	과실전차매몰	
					0115220300	과실자동차매몰	
					0115220400	과실선박매몰	
					0115220500	과실항공기매몰	
					0115230000	과실기차등추락	
					0115230100	과실기차추락	
					0115230200	과실전차추락	
					0115230300	과실자동차추락	
					0115230400	과실선박추락	
					0115230500	과실항공기추락	
					0115240000	과실기차등파괴	
					0115240100	과실기차파괴	
					0115240200	과실전차파괴	
					0115240300	과실자동차파괴	
					0115240400	과실선박파괴	
					0115240500	과실항공기파괴	
					0115310000	중과실일반교통방해	
					0115310100	중과실일반교통방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6 과실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690 기타 과실 행위	0115320000	중과실기차등교통방해	
				0115320100	중과실기차교통방해	
				0115320200	중과실전차교통방해	
				0115320300	중과실자동차교통방해	
				0115320400	중과실선박교통방해	
				0115320500	중과실항공기교통방해	
				0115330000	중과실기차등전복	
				0115330100	중과실기차전복	
				0115330200	중과실전차전복	
				0115330300	중과실자동차전복	
				0115330400	중과실선박전복	
				0115330500	중과실항공기전복	
				0115340000	중과실기차등매몰	
				0115340100	중과실기차매몰	
				0115340200	중과실전차매몰	
				0115340300	중과실자동차매몰	
				0115340400	중과실선박매몰	
				0115340500	중과실항공기매몰	
				0115350000	중과실기차등추락	
				0115350100	중과실기차추락	
				0115350200	중과실전차추락	
				0115350300	중과실자동차추락	
				0115350400	중과실선박추락	
				0115350500	중과실항공기추락	
				0115360000	중과실기차등파괴	
				0115360100	중과실기차파괴	
				0115360200	중과실전차파괴	
				0115360300	중과실자동차파괴	
				0115360400	중과실선박파괴	
				0115360500	중과실항공기파괴	
					0207 위험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입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020710	건강 위협 행위	01160200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20100	음용수독물혼입	
								0116020200	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400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401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	
								01160402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	
								0116050000	음용수혼독치상	
								0116050100	음용수독물혼입치상	
								0116050200	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	
								0116050300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상	
								0116050400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	
								0229020100	위반	식품위생법
								0229021800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 한법률						
		02072	향정신성 제제 중에서 운전	020721	음주운전	0209014900	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42080500	위반	항공안전법		
						0242080100	위반	항공보안법		
						0233070500	위반	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법률		
						020722	불법 섭취 후 운전	-		
		020729	기타 향정신성 제제 중에서 운전	-						
002079	기타 위협 행위	020790	기타 위협 행위	-						
0208	공포조장 감정폭행 및	02081	괴롭힘	020811	직장내 괴롭힘	-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19 기타 괴롭힘	-				
			02082 스토킹	020820 스토킹	0206020100	위반	경범죄처벌법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890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31041000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10 개인의 특성 관련	-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20 종교 및 가치관 관련	-		
					02099 기타명예훼손 이나모욕	020990 기타명예훼손 이나모욕	0133010000	명예훼손	
					0133010100	명예훼손			
					2235050200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104010400	외국원수명예훼손			
					0104020400	외국사절명예훼손			
					0133000000	명예에관한죄			
					0133020000	사자명예훼손			
					0133020100	사자명예훼손			
					0133030000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013303010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0133030200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0104010300	외국원수모욕					
			0104020300	외국사절모욕					
			0133040000	모욕					
			0133040100	모욕					
		0209922800	위반(상습명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2900	위반(상습출판물등의한명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9 기타명예훼손 이나모욕	020990 기타명예훼손 이나모욕	0209923000	위반(상습라디오에의한명 예훼손)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3100	위반(상습모욕)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17010500	위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 에관한법률
					0217030200	위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및보상에 관한법률
					1207020600	위반	공직선거법
					0206013800	위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0232070200	위반	고용상연령차별금 지및고령자고용촉 진에관한법률
					0232030100	위반	근로기준법
					0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1232030400	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0229040800	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0231011500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 에관한법률				
	0210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10 개인 차별	-			
			02102 집단 차별	021020 집단 차별	0231040400	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 에관한법률
			02109 기타 차별	021090 기타 차별	-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136030600	특수퇴거불응	
					0206035800	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6800	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8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퇴거 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206050600	위반(단체등의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7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5800	위반(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5000000	비밀침해의죄		
								0135010000	비밀침해		
								0135020000	업무상비밀누설		
								0135020100	업무상비밀누설		
								0135010100	신서개피		
								0135010200	문서개피		
								0135010300	도화개피		
								0135010400	편지내용탐지		
								0135010500	문서내용탐지		
								0135010600	도화내용탐지		
								01350107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0136020000	퇴거불응		
								0136020100	퇴거불응		
								0136020200	저택퇴거불응		
								0136020300	건조물퇴거불응		
								0136020400	선박퇴거불응		
								0136020500	방실퇴거불응		
								0136040000	불법수색		
								0136040100	신체수색		
								0136040200	주거수색		
								0136040300	저택수색		
								0136040400	건조물수색		
								0136040500	선박수색		
								0136040600	방실수색		
								0136040700	자동차수색		
								0136040800	항공기수색		
								0206034800	위반(상습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10	사생활 침해	02060388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500	위반(단체등의상습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8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200	위반(상습특수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8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4020300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0206028400	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235050300	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0235030700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0206028500	위반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02119	기타 침해	021190	기타 침해	0229023900	위반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		
		0219	기타	02190	기타	0229040400	위반	혈액관리법		
						021900	기타	-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유형력 강간	0206031100	위반(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1218031700	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10000	강간	
							0132010100	강간	
							1218032100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10200	유사강간	
							0216070600	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206033200	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7500	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132040000	강간치상	
							0132040100	강간치상	
							0132040400	유사강간치상	
							0206033100	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7400	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16070500	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40200	강간상해	
							0132040300	유사강간상해	
							0132180100	상습강간	
							0132182200	상습유사강간	
							0209917800	위반(상습유사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8150000	강도강간	
							0138150100	강도강간	
							0206032600	위반(강도강간)	특정강력범죄의처 벌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1	유형력 강간	0206024900	위반(강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38210000	해상강도강간	
								0138210100	해상강도강간	
								0206056200	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30500	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25100	위반(절도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2500	위반(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9700	위반(특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30700	위반(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25600	위반(특수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42400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400	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309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421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8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73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12060324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 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유형력 강간	02060590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30600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300	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3100	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48300	위반(단체등의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3000	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100	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1900	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27200	위반(강도강간재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58300	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2000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2600	위반(절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3200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8400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91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1218032200	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218031700	위반(청소년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09917700	위반(상습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유형력 강간	0209918300	위반(상습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400	위반(상습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500	위반(상습유사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600	위반(상습유사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30112	비유형력 강간	비유형력 강간	1218032400	위반(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30000	준강간	
										0132030100	준강간	
										0216070900	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30300	준유사강간	
										0132040500	준유사강간상해	
										0132040600	준유사강간치상	
										0132080000	준강간치상	
										0132080100	준강간치상	
										0132080200	준강간상해	
										0132180300	상습준강간	
				0209918000	위반(상습준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2300	상습준유사강간							
				0132120000	미성년자등간음							
				0132120100	미성년자간음							
				0132120200	심신미약자간음							
				0132140000	피보호자등간음							
				0132140100	피보호자간음							
				0132140200	피감독자간음							
				0132150000	피감호자간음							
				0132150100	피감호자간음							
				0132160000	혼인빙자간음							
				0132160100	혼인빙자간음							
				0132160200	위계간음							
				0132180500	상습미성년자간음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209920800	위반(상습미성년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0600	상습심신미약자간음	
								0209920900	위반(상습심신미약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0900	상습피보호자간음	
								0209921400	위반(상습피보호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1000	상습피감독자간음	
								0209921500	위반(상습피감독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1100	상습피감호자간음	
								0209921600	위반(상습피감호자간음)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28000	위반(특수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0206041900	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0206056600	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 례법
								0206027400	위반(절도준강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 한법률
								0209012800	위반(절도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 례법
								0206031000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0206057200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0206058600	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02060593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 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02090140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02060422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 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및 피 해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2060570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3700	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1218032700	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206027700	위반(강도준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2200	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2300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2900	위반(절도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3400	위반(특수강도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3500	위반(특수강도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3800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141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8700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8900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94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16071000	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1218032500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209918100	위반(상습준유사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900	위반(상습준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000	위반(상습준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강간	030112	비유형력 강간	0209919100	위반(상습준유사강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200	위반(상습준유사강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30113	의제 강간	0206032400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132170000			미성년자의제강간			
				0132170100			미성년자의제강간			
				013217030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132170700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013217110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1321812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			
				02099217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 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14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			
				02099220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 간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15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2099221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 간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2400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2099218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유 사강간)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30119	기타 강간	-				
				03012	성폭행	030121	신체적 성폭행	0132020000	강제추행	
								0132020100	강제추행	
		0206032100	위반(강제추행)					특정강력범죄의처 벌에관한특례법		
		1218032300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30200	준강제추행							
		0216071100	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132060000	강제추행치상							
		0132060100	강제추행치상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2	성폭행	030121	신체적 성폭행	0132060200	강제추행상해	
								0132100000	준강제추행치상	
								0132100100	준강제추행치상	
								0132100200	준강제추행상해	
								0132130000	미성년자등추행	
								0132130100	미성년자추행	
								0132130200	심신미약자추행	
								0132180200	상습강제추행	
								0209917900	위반(상습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0400	상습준강제추행	
								0209918200	위반(상습준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0700	상습미성년자추행	
								0209921000	위반(상습미성년자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0800	상습심신미약자추행	
								0209921100	위반(상습심신미약자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30800	위반(특수강제추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27900	위반(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28100	위반(특수준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42000	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700	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31300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7800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2	성폭행	신체적 성폭행	0206031400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7900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417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9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27300	위반(절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2700	위반(절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27500	위반(절도준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9013000	위반(절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27600	위반(강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27800	위반(강도준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418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423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42600	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6500	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7100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8500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6058800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2	성폭행	02060592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60595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2100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2400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300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600	위반(특수강도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3900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014200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700	위반(상습강제추행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8800	위반(상습강제추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300	위반(상습준강제추행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9400	위반(상습준강제추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18032600	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18032800	위반(장애인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0206031500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6058000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31040900	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02310429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0231044100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1	성폭력	03012	성폭행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02310444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030129	달리 분류 되지 않는 성폭행	01321813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2099219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 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18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해					
								02099224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 제추행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32181900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치상					
								0209922500	위반(상습미성년자의제강 제추행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122110000	공연음란					
								0122110100	공연음란					
								01321702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1321705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1321709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상해					
								02060329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0206058100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209031600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 입)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03019	기타 성폭력	030190	기타 성폭력	-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122020000	음행매개	
												0122020100	음행매개	
												0131020100	추행약취	
		0131020200	간음약취											
		0131030100	추행유인											
		0131030200	간음유인											
		0131040300	성매매약취											
0131040400	성적착취약취													
0131040700	성매매유인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131040800	성적착취유인	
								0131040000	부녀매매	
								0131040100	부녀매매	
								0131050100	상습추행약취	
								0131050200	상습간음약취	
								0131060100	상습추행유인	
								0131060200	상습간음유인	
								0131070000	상습영리등목적부녀매매	
								0131070100	상습부녀매매	
								0131200100	추행약취모집	
								0131200900	추행약취운송	
								0131201700	추행약취전달	
								0131200200	간음약취모집	
								0131201000	간음약취운송	
								0131201800	간음약취전달	
								0131200500	추행유인모집	
								0131201300	추행유인운송	
								0131202100	추행유인전달	
								0131200600	간음유인모집	
								0131201400	간음유인운송	
								0131202200	간음유인전달	
								0131210200	성매매약취모집	
								0131211000	성매매약취운송	
								0131211800	성매매약취전달	
								0131210300	성적착취약취모집	
								0131211100	성적착취약취운송	
								0131211900	성적착취약취전달	
								0131210600	성매매유인모집	
								0131211400	성매매유인운송	
								0131212200	성매매유인전달	
								0131210700	성적착취유인모집	
								0131211500	성적착취유인운송	
								0131212300	성적착취유인전달	
								0131170100	추행피약취자수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10 성인 성착취	0131170400	추행피유인자수수	
					0131170200	간음피약취자수수	
					0131170500	간음피유인자수수	
					0131180100	추행피약취자은닉	
					0131180400	추행피유인자은닉	
					0131180200	간음피약취자은닉	
					0131180500	간음피유인자은닉	
					0206026600	위반(추행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26500	위반(간음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27000	위반(추행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26900	위반(간음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28900	위반(부녀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31011300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0231011600	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0231011700	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0231011800	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0231011900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에관한법률
					03022 아동 성착취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0216070200
		0216070300	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1218031500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218031500	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 작·배포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30222 아동 성매매	0218031200	위반(성매수)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2	성착취	03022	아동 성매매	0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18031400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18031600	위반(청소년매매)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0231010900	위반(청소년)	유락행위등방지법				
						1218031200	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1218031300	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1218031400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1218031600	위반(매매)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				
						0231011400	위반(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0231012200	위반(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0209914700	위반(상습성매매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15100	위반(상습성매매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0231040800	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	아동복지법				
						02310428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 매개)	아동복지법				
						030223	성적 목적 아동 유인			0131190100	미성년자약취모집	
										0131190200	미성년자유인모집	
										0131190300	미성년자약취운송	
										0131190400	미성년자유인운송	
										0131190500	미성년자약취전달	
				03029	기타 성착취		030290	기타 성착취	0131190600	미성년자유인전달		
									0131171300	추행피약취미성년자수수		
									01311714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71500	간음피약취미성년자수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3	성 범죄	0302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131171600	간음피유인미성년자수수	
						0131181300	추행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81400	추행피유인미성년자은닉	
						0131181500	간음피약취미성년자은닉	
						0131181600	간음피유인미성년자은닉	
						0209913800	위반(상습추행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별등에관한특례법
						0209913900	위반(상습간음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별등에관한특례법
						0209914200	위반(상습추행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별등에관한특례법
						0209914300	위반(상습간음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별등에관한특례법
						0209914800	위반(상습성적착취약취)	아동학대범죄의처 별등에관한특례법
						0209915200	위반(상습성적착취유인)	아동학대범죄의처 별등에관한특례법
						0231040700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아동복지법
						0231042700	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 강요)	아동복지법
						0231010400	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
						0208051900	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0220021100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 한법률
						0232040100	위반	직업안정법
						0229023700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0229020300	위반	공중목욕장업법
						0229020500	위반	숙박업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138070000	강도	
				0138070100	강도	
				0206021800	위반(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38080000	특수강도	
				0138080100	특수강도	
				0206032000	위반(특수강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206047600	위반(단체등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7700	위반(단체등의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138090000	준강도	
				0138090100	준강도	
				0138090200	준특수강도	
				0206047800	위반(단체등의준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7900	위반(단체등의준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138110000	강도상해	
				0138110100	강도상해	
				0206032700	위반(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06022000	위반(강도상해등재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206022000	위반(강도상해재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38120000	강도치상	
				0138120100	강도치상	
0138220000	상습강도					
0138220100	상습강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138230000	상습특수강도	
				0138230100	상습특수강도	
				0206048700	위반(단체등의상습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8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139040000	공갈	
				0139040100	공갈	
				1206036000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23200	위반(공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139080000	상습공갈	
				0139080100	상습공갈	
				0206035000	위반(상습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9924000	위반(상습공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139100100	특수공갈	
				0206036000	위반(야간·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7000	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380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5000	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51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139110100	상습특수공갈	
				02060390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54900	위반(단체등의상습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2060552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1400	위반(상습특수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629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9926100	위반(상습특수공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206048000	위반(단체등의인질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100	위반(단체등의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200	위반(단체등의강도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206048900	위반(단체등의상습인질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04011	대인 강도		0138100000	약취강도	
							0138100100	약취강도	
							0138240000	상습약취강도	
							0138240100	상습약취강도	
							1138100000	인질강도	
							1138100100	인질강도	
		040111	공공장소대인 강도		-				
					040112	사적장소대인 강도			
					040119	기타대인강도			
		04012	유류·중독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138160000	해상강도			
					0138160100	해상강도			
					0138170000	해상강도상해			
					0138170100	해상강도상해			
					0138180000	해상강도치상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138180100	해상강도치상			
						0138250000	상습해상강도			
						0138250100	상습해상강도			
						0206048400	위반(단체등의해상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8500	위반(단체등의해상강도상 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8600	위반(단체등의해상강도치 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49000	위반(단체등의상습해상강 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40121	자동차나 차량 강도	-		
						040129	기타 운송중 강도	-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31	금융 기관 강도	-
				040132	비금융 기관 강도			-		
				04014	가축 강도	040140	가축 강도	-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190	기타 강도 행위	-		
0409	기타	04090	기타	040900	기타	-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입				
05	재산만 침해	0501	침입절도		01380203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0138020500	야간방실침입절도				
					013805030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0138050500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050110	사업장 침입절도	-				
		05012	가정집 침입절도		01380200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100	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20200	야간저택침입절도				
					013805000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5010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0138050200	상습야간저택침입절도				
		050121	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					
		050122	비영구 가정집 침입절도		-					
	05013	공공건물 침입절도	050130	공공건물 침입절도	-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190	기타 침입절도	0138010000	절도				
					0138010100	절도				
	0502	절도			0206021900	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138020400	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50400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				
					0138030000	특수절도				
					0138030100	특수절도				
					0138040000	상습절도				
					0138040100	상습절도				
0138060000					상습특수절도					
0138060100					상습특수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1	육상 차량 절도	-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12	육상 차량 불법 사용	0138030200	자동차불법사용	
								0138030500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0138030600	상습자동차불법사용					
				0138030900	상습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 사용					
				050213	육상 차량 부속품 절도	-				
				050219	기타 자동차 또는 부속품 절도	0138030300	선박불법사용			
								0138030400	항공기불법사용	
								0138030700	상습선박불법사용	
								0138030800	상습항공기불법사용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21	사람에게 개인재산 절도	-		
						050222	차량에서 개인재산 절도	-		
						050229	기타 개인재산 절도	-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31	상점 절도	-		
						050239	기타 기업재산 절도	-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40	공공재산 절도	-		
				05025	가축 절도	050250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60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290	기타 절도 행위	-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220040400	저작권법위반		
					0227020100	특허법위반				
0227020200					실용신안법위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300	지적재산권 위반	0227030100	의장법위반		
								0227030200	상표법위반		
								0227020300	발명진흥법위반		
	0504	재물 손괴							1227030100	디자인보호법위반	
									0206051000	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 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100	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6100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7100	위반(집단·흥기등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42060100	특수재물손괴	
									0142060600	특수전자기록등손괴	
									0206047200	위반(단체등의전자기록등 손괴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090100	공무상보관물손상	
									0108090200	공무상간수물손상	
									0108090300	공무상보관물은닉	
									0108090400	공무상간수물은닉	
									0108160100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	
									0108160200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	
									0108160300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	
									0108160400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	
									0108290100	특수공무상보관물손상치상	
									0108290200	특수공무상간수물손상치상	
									0108290300	특수공무상보관물은닉치상	
									0108290400	특수공무상간수물은닉치상	
									0113010000	현주건조물등방화	
									0113010100	현주건조물방화	
									0113010200	현주기차방화	
									0113010300	현주전차방화	
									0113010400	현주자동차방화	
									0113010500	현주선박방화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4	재물 손괴		0113010600	현주항공기방화	
					0113010700	현주광갱방화	
					0113020100	현존건조물방화	
					0113020200	현존기차방화	
					0113020300	현존전차방화	
					0113020400	현존자동차방화	
					0113020500	현존선박방화	
					0113020600	현존항공기방화	
					0113020700	현존광갱방화	
					0113080000	공익건조물등방화	
					0113080100	공익건조물방화	
					0113080200	공익기차방화	
					0113080300	공익전차방화	
					0113080400	공익자동차방화	
					0113080500	공익선박방화	
					0113080600	공익항공기방화	
					0113080700	공익광갱방화	
					0113090000	일반건조물등방화	
					0113090100	일반건조물방화	
					0113090200	일반기차방화	
					0113090300	일반전차방화	
					0113090400	일반자동차방화	
					0113090500	일반선박방화	
					0113090600	일반항공기방화	
					0113090700	일반광갱방화	
					0113110000	일반물건방화	
					0113110100	일반물건방화	
					0113130000	연소	
					0113130100	방화연소	
					0114010200	현주건조물일수	
					0114010300	현존건조물일수	
					0114010400	현주기차일수	
					0114010500	현존기차일수	
					0114010600	현주전차일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4	재물 손괴		0114010700	현존전차일수	
					0114010800	현주자동차일수	
					0114010900	현존자동차일수	
					0114011000	현주선박일수	
					0114011100	현존선박일수	
					0114011200	현주항공기일수	
					0114011300	현존항공기일수	
					0114011400	현주광갱일수	
					0114011500	현존광갱일수	
					0114014500	공익건조물일수	
					0114014700	공익기차일수	
					0114014900	공익전차일수	
					0114015100	공익자동차일수	
					0114015300	공익선박일수	
					0114015500	공익항공기일수	
					0114015700	공익광갱일수	
					0114015800	일반건조물일수	
					0114015900	일반기차일수	
					0114016000	일반전차일수	
					0114016100	일반자동차일수	
					0114016200	일반선박일수	
					0114016300	일반항공기일수	
					0114016400	일반광갱일수	
					0142010000	재물손괴	
					0142010100	재물손괴	
					0142010200	재물은닉	
					0142010300	문서손괴	
					0142010400	문서은닉	
					0142010500	전자기록등손괴	
					0142010600	전자기록등은닉	
					0142020000	공익건조물파괴	
					0142020100	공익건조물파괴	
					0142030000	중손괴	
					0142030100	중손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4	재물 손괴	0142060300	특수재물은닉					
				0142060200	특수문서손괴					
				0142060400	특수문서은닉					
				0142060700	특수전자기록등은닉					
				0142060500	특수공익건조물파괴					
				0206050900	위반(단체등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12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300	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9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5100	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9100	위반(상습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9924100	위반(상습재물손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4400	위반(상습재물은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4200	위반(상습문서손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4500	위반(상습문서은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4300	위반(상습전자기록등손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209924600	위반(상습전자기록등은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10	공공재물 손괴	0108140100	특수공용서류손상	
								0206043400	위반(단체등의공용서류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40300	특수공용서류은닉	
						0206043500	위반(단체등의공용서류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40200	특수공용물건손상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10	공공재물 손괴	0206043700	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손 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40400	특수공용물건은닉	
								0206043800	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은 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2408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	
								0206044000	위반(단체등의공용전자기 록등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2409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	
								0206044100	위반(단체등의공용전자기 록등은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50000	특수공용건조물등파괴	
								0108150100	특수공용건조물파괴	
								0206044300	위반(단체등의공용건조물 파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50200	특수공용선박파괴	
								0206044400	위반(단체등의공용선박파 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50300	특수공용기차파괴	
								0206044500	위반(단체등의공용기차파 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150400	특수공용항공기파괴	
								0206044600	위반(단체등의공용항공기 파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08070100	공용서류손상	
								0108070200	공용물건손상	
								0108070300	공용서류은닉	
								0108070400	공용물건은닉	
								0108070700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108070800	공용전자기록등은닉	
								0108080000	공용건조물등파괴	
								0108080100	공용건조물파괴	
								0108080200	공용선박파괴	
								0108080300	공용기차파괴	
								0108080400	공용항공기파괴	
								0113070000	공용건조물등방화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10 공공재물 손괴	0113070100	공용건조물방화				
					0113070200	공용기차방화				
					0113070300	공용전차방화				
					0113070400	공용자동차방화				
					0113070500	공용선박방화				
					0113070600	공용항공기방화				
					0113070700	공용광갱방화				
					0114014400	공용건조물일수				
					0114014600	공용기차일수				
					0114014800	공용전차일수				
					0114015000	공용자동차일수				
					0114015200	공용선박일수				
					0114015400	공용항공기일수				
					0114015600	공용광갱일수				
					0206043900	위반(단체등의공용물건무 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5042	사유재물 손괴	050420 사유재물 손괴	0113100000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	
								0113100100	자기소유건조물방화	
								0113100200	자기소유기차방화	
		0113100300	자기소유전차방화							
		0113100400	자기소유자동차방화							
		0113100500	자기소유선박방화							
		0113100600	자기소유항공기방화							
		0113100700	자기소유광갱방화							
		01131200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011312010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0114016500	자기소유건조물일수							
		0114016600	자기소유기차일수							
		0114016700	자기소유전차일수							
		0114016800	자기소유자동차일수							
		0114016900	자기소유선박일수							
		0114017000	자기소유항공기일수							
		0114017100	자기소유광갱일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4	재물 손괴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30	회사재물 손괴	-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490	기타 재물 손괴	0112020200	유골오욕					
								0112040200	유골손괴					
								0112050200	유골유기					
								0112060200	유골은닉					
								0112070200	유골영득					
								0112080200	분묘발굴유골손괴					
								0112090200	분묘발굴유골유기					
								0112100200	분묘발굴유골은닉					
								0112110200	분묘발굴유골영득					
								0112040400	관내장치물손괴					
								0112050400	관내장치물유기					
								0112060400	관내장치물은닉					
								0112070400	관내장치물영득					
								011208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손괴					
								011209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유기					
								011210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은닉					
								0112110400	분묘발굴관내장치물영득					
				0509	기타	05090	기타	050900	기타	050900	기타	0136030000	특수주거침입	
												0136030100	특수주거침입	
									0206036700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7700	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200	위반(단체등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300	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5300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1206035700	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136010000	주거침입				
									0136010100	주거침입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9	기타	05090	기타	0136010200	저택침입	
						0136010300	건조물침입	
						0136010400	선박침입	
						0136010500	방실침입	
						0136010600	항공기침입	
						0136030200	특수저택침입	
						0136030300	특수건조물침입	
						0136030400	특수선박침입	
						0136030500	특수방실침입	
						0136030700	특수항공기침입	
						0141010000	장물취득	
						0141010100	장물취득	
						0141010200	장물양여	
						0141010300	장물운반	
						0141010400	장물보관	
						0141020000	장물알선	
						0141020100	장물알선	
						0141030000	상습장물취득	
						0141030100	상습장물취득	
						0141030200	상습장물양여	
						0141030300	상습장물운반	
						0141030400	상습장물보관	
						0141030500	상습장물알선	
						01410400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014104010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0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여	
						0141040300	업무상과실장물운반	
						0141040400	업무상과실장물보관	
						0141040500	업무상과실장물알선	
						0141040600	중과실장물취득	
						0141040700	중과실장물양여	
						0141040800	중과실장물운반	
						0141040900	중과실장물보관	
						0141041000	중과실장물알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5	재산만 침해	0509	기타	05090	기타	0142070000	경계침범	
						0142070100	경계침범	
						1141010200	장물양도	
						1141030200	상습장물양도	
						1141040200	업무상과실장물양도	
						1141040700	중과실장물양도	
						0206025300	위반(장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06034700	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5700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38700	위반(상습집단·흉기등주거 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100	위반(단체등의상습주거침 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50400	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흉 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0100	위반(상습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206061700	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주 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6 관리대상 의약품이나 신성 관련 행위 위반 행위	0601 관리대상 의약품, 물질 전구물, 위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불법 소유, 사용, 생산	060111 개인 소비용 불법 소유, 사용, 구입, 재배,	0117040000	아편등소지			
				0117040100	아편소지			
				0117040200	몰핀소지			
				0117070000	아편흡식			
				0117070100	아편흡식			
				0117070200	몰핀주사			
				0117120000	상습아편등소지			
				0117120100	상습아편소지			
				0117120200	상습몰핀소지			
				0117150000	상습아편흡식			
				0117150100	상습아편흡식			
				0117150200	상습몰핀주사			
				0117170000	단순아편등소지			
		0117170100	단순아편소지					
		0117170200	단순몰핀소지					
					060112	개인 소비용 불법 재배, 생산	-	
				06012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21 비개인 소비용 마약 밀매	0117030000	아편등판매	
						0117030100	아편판매	
						0117030200	몰핀판매	
						0117110000	상습아편등판매	
						0117110100	상습아편판매	
						0117110200	상습몰핀판매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0117000000	아편에관한죄	
		0117010000	아편등제조					
		0117010100	아편제조					
		0117010200	몰핀제조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6	관리대상 의약품이나 신성관련 의약품 의제조 행위	0601	관리대상 의약품, 물질 전구물 관련 위법 행위	06012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060122	비개인 소비용 마약 제조	0117090000	상습아편등제조	
								0117090100	상습아편제조	
								0117090200	상습물핀제조	
								1230020000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30020100	위반(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30020200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30020300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0230020500	위반	마약류 불법거래방 지에 관한 특례법
								0206022600	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206039400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060123	비개인 소비용 마약 재배	-				
				060124	비개인 소비용 전구물 전환	-				
				060129	기타 비개인 소비용 불법 마약류 밀매, 재배, 생산	-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0117050000	아편흡식기제조	
								0117050100	아편흡식기제조	
								0117050200	아편흡식기수입	
								0117050300	아편흡식기판매	
0117050400	아편흡식기소지									
0117060500	세관공무원아편흡식기수입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6 관리대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 제조·판매 행위 신상 관련 행위	0601 관리대상 의약품, 물질 전구물, 질 위법 관련 행위	06019 기타 마약류 관련 행위		0117060600	세관공무원아편흡식기수입 허용		
				0117080000	아편흡식등장소제공		
				0117080100	아편흡식장소제공		
				0117080200	몰핀주사장소제공		
				01171300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130100	상습아편흡식기제조		
				0117130200	상습아편흡식기수입		
				0117130300	상습아편흡식기판매		
				0117130400	상습아편흡식기소지		
				0117140500	상습세관공무원의아편흡식 기수입		
				0117140600	상습세관공무원의아편흡식 기수입허용		
				0117160000	상습아편흡식등장소제공		
				0117160100	상습아편흡식장소제공		
				0117160200	상습몰핀주사장소제공		
	0117170300	단순아편흡식기소지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품의 제조·판매 행위	06021 주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11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또는 점유 사용	-	
				060212	주류 제품 불법 제조, 매매 또는 배포	-	
				060219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한 불법 생산, 취급, 점유 또는 사용	-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213020400	담배사업법위반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행정신성 물질을 위반한 행위	0602 주류, 담배 및 기타 관리대상 물질 관련 위법 행위	06022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060221 담배류 불법 소유 또는 사용	-		
			060222 담배류 불법 제조, 매매, 유통	-		
			060229 기타 담배류 불법 생산, 취급, 소유, 사용	-		
		06029 기타 주류, 기타 담배 및 금지 물질 관련 불법 행위	-			
	0609 기타			-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2	기타 무기나 폭발물 불법 소지, 사용	0106000000	폭발물에관한죄	
								0106010000	폭발물사용	
								0106010100	폭발물사용	
								01060200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20100	전시폭발물사용	
								0106020200	비상시폭발물사용	
								0106030400	전시폭발물수수	
								0106030500	전시폭발물소지	
								0106040400	비상시폭발물수수	
								0106040500	비상시폭발물소지	
								0113170000	폭발물파열	
								0113170100	폭발물파열	
								0113180000	과실폭발물파열	
								0113180100	과실폭발물파열	
								090113	화학, 생물, 핵, 방사능 물질 불법 소지, 사용	
				0219030100	위반	원자력법				
				0225052300	위반	화학·생물무기의 금지및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의제조·수출입규 제등에관한법률				
				0228052700	위반	화학무기·생물무 기의금지외특정화 학물질·생물작용 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관한법률				
				0229022200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0229022600	위반(본드등)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9011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사용 소지,	0239021000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0239021100	위반(환각물질흡입)	화학물질관리법	
				1229022600	위반(환각물질흡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0239021200	위반	화학물질의등록및 평가등에관한법률	
		09012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0106030000	전시폭발물제조		
				0106030100	전시폭발물제조		
				0106030200	전시폭발물수입		
				0106030300	전시폭발물수출		
				0106040100	비상시폭발물제조		
				0106040200	비상시폭발물수입		
				0106040300	비상시폭발물수출		
				0208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 류등단속법	
				0211050400	위반	총포·도검·화약 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206020800
	0209030200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0230020400	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 법				
	0232030200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0233030300	위반	철도안전법				
	0233070300	위반	항공기운항안전법				
	0234030200	위반	선박안전법				
	0234060500	위반	해상교통안전법				
	0242060100	위반	해사안전법				
	0333020200	위반	교통안전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229010300	위반	건강검진기본법
						0229024400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 한법률
						0209030300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0209030500	위반	다중이용업소의안 전관리에관한특별 법
						0211050300	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 관리에관한법률
						0212030100	위반	저수지·댐의안전 관리및재해예방에 관한법률
						0216020400	위반	어린이놀이시설안 전관리법
						0218032900	위반	생활주변방사선안 전관리법
						0218040500	위반	수상레저안전법
						0226020400	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 법
						0226030300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0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 전및사업관리법
						0228051600	위반	시설물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
						0229030300	위반	어린이제품안전특 별법
						0239020400	위반	석면안전관리법
						03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 전관리및사업법
						1225051700	위반	승강기시설안전관 리법
1225061300	위반	송유관안전관리법						
1226030400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 전관리및사업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236020400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등에관한법률	
	2235050100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101000000	내란의죄	
					0101010000	내란	
					0101010100	내란수괴	
					0101010140	내란수괴선동	
					0101010150	내란수괴선전	
					0101010200	내란모의참여	
					0101010240	내란모의참여선동	
					0101010250	내란모의참여선전	
					0101010300	내란중요임무종사	
					0101010340	내란중요임무종사선동	
					0101010350	내란중요임무종사선전	
					0101010400	내란실행	
					0101010440	내란실행선동	
					0101010450	내란실행선전	
					0101010500	내란부화수행	
					0101010540	내란부화수행선동	
					0101010550	내란부화수행선전	
					0102000000	외환의죄	
					0102010000	외환유치	
					0102010100	외환유치	
					0102010140	외환유치선동	
					0102010150	외환유치선전	
					0102010200	외환항적	
					0102010240	외환항적선동	
					0102010250	외환항적선전	
					0103000000	국기에관한죄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입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103010000	국기국장모독	
				0103010100	국기모독	
				0103020000	국기국장비기	
				0103020100	국기비기	
				0104000000	국교에관한죄	
				0104030000	외국국기·국장모독	
				0104030100	외국국기모독	
				0104060000	외교상기밀누설	
				0104060100	외교상기밀누설	
				0104070000	외교상기밀탐지	
				0104070100	외교상기밀탐지	
				0104070200	외교상기밀수집	
				0105000000	공안을해하는죄	
				0105020000	병역거부단체등조직	
				0105020100	병역거부단체조직	
				0105020200	병역거부단체가입	
				0206020000	위반	국가보안법
				0206020200	위반(간첩)	국가보안법
				0206020300	위반(기타)	국가보안법
				0206024700	위반	구국가보안법
				0206029000	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06029100	위반(목적수행)	국가보안법
				0206029200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0206029300	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0206029400	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
				0206029500	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
				0206029600	위반(편의제공)	국가보안법
				0206029700	위반(불고지)	국가보안법
				0206029800	위반(특수직무유기)	국가보안법
				0206029900	위반(무고·날조)	국가보안법
0206055500	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				
0206055600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				
0216020100	위반	병역법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216020300	위반	병역법위반등의범 죄처벌에관한특별 조치법	
						0219020600	위반	한국기술개발주식 회사법	
						1101010340	내란선동		
						1101010450	내란선전		
						1103020100	국기비방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105010000	범죄단체조직	
							0105010100	범죄단체조직	
							0105010200	범죄단체가입	
							0105010300	범죄단체활동	
							0206022100	위반(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206033600	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0906	테러					0204010200	위반	국민보호와공공안 전을위한테러방지 법
	0907	비상해 교통위반					0208051600	위반	도로교통법
							0208052400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500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0208052600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0208052800	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0208052900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0112020000	사체등오육	
							0112020100	사체오육	
							0112040000	사체등손괴	
0112040100							사체손괴		
0112050000							사체등유기		
0112050100							사체유기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0112060000	사체등은닉	
					0112060100	사체은닉	
					0112070000	사체등영득	
					0112070100	사체영득	
					0112080000	분묘발굴사체등손괴	
					0112080100	분묘발굴사체손괴	
					0112090000	분묘발굴사체등유기	
					0112090100	분묘발굴사체유기	
					0112100000	분묘발굴사체등은닉	
					0112100100	분묘발굴사체은닉	
					0112110000	분묘발굴사체등영득	
					0112110100	분묘발굴사체영득	
					1112120100	변사체검시방해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1	환경오염·저하 유발 행위	10011	대기오염·저 해유발행위	0229022300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0229024600	위반	악취방지법
						0328090100	위반	지하생활공간공기 질관리법
						0329020200	위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0012	수질오염·저 해유발행위		0228091200	위반	호소수질관리법	
					0229021000	위반	해양오염방지법	
					0229022100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02290225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0229022900	위반	먹는물관리법	
					0229023800	위반	한강수계상수원수 질개선및수민지원 등에관한법률	
					0229025000	위반	해양생태계의보전 및관리에관한법률	
					02290252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	
					0229025400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0329020100	위반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0239020800	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				
		10013	토양오염·저 해유발행위		0229023000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10019	기타환경오염 ·저해유발행 위		0113170700	방사선방출		
					0113170800	방사성물질방출		
					0113171200	방사선유출		
					0113171300	방사성물질유출		
					0113171700	방사선살포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1	환경 오염·저하 유발 행위	10019	기타환경오염 ·저해유발행 위		0113171800	방사성물질살포	
							0113310500	과실방사선방출	
							0113310600	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3311000	과실방사선유출	
							0113311100	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3311500	과실방사선살포	
							0113311600	과실방사성물질살포	
							0113320500	업무상과실방사선방출	
							01133206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3321000	업무상과실방사선유출	
							01133211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3321500	업무상과실방사선살포	
							0113321600	업무상과실방사성물질살포	
							0113330800	중과실방사선방출	
							0113330900	중과실방사성물질방출	
							0113331300	중과실방사선유출	
							0113331400	중과실방사성물질유출	
							0113331800	중과실방사선살포	
							0113331900	중과실방사성물질살포	
							0229022000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1229022000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1002	쓰레기 이동·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이 동·투하			0229021100	위반	합성수지폐기물처 리사업법
							0229021700	위반	폐기물관리법
							0229023600	위반	폐기물처리시설설 치·조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0229024800	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10022	해외폐기물이 동·투하		0229023300	위반	폐기물·의국가간이 동및그처리에관한 법률	

IC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죄명코드	죄명	법률명 *법률명이 없는 빈칸은 형법임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3 보호 또는 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0229024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 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 리에관한법률			
				0239020700	위반	생물다양성보전및 이용에관한법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0206022400	위반(산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0224020100	위반	산림법		
					0224020200	위반	산지관리법		
					0224020300	위반	산림보호법		
			1224020100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10042 불법 사냥, 뉘시, 야생 동식물 채집				0229024700	위반	야생동·식물보호 법
							0239020300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 리에관한법률
							0223020300	위반	내수면어업법
							0223020400	위반	어장관리법
							0223030100	위반	수산업법
	0223030400	위반					수산자원관리법		
	10043 불법 채굴				0223040100	위반	어업자원보호법		
					0225060100	위반	광업법		
	100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10091 동물 위해 행동		0222040400	위반	동물보호법		
0229010400					위반	실험동물에관한법 률			

부 록 3. 11영역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범죄(1109)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1020140	내란목적살인선동	0211020200	세무사법위반
0101020150	내란목적살인선전	0211020300	과제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02020000	여적	0211020400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0102020100	여적	0211030100	자산재평가법위반
0102020140	여적선동	0211040200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위반
0102020150	여적선전	0211060100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위반
0102030000	모병이적	0212020300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위반
0102030100	모병이적	0212020400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0102030140	모병이적선동	021202050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02030150	모병이적선전	021202050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02040000	응병이적	021202050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02040100	응병이적	0212030200	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0102040140	응병이적선동	0212030300	초고층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0102040150	응병이적선전	0212030500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0102050000	군용시설등제공이적	0213020100	담배전매법위반
0102050100	군용시설제공이적	0213020200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0102050140	군용시설제공이적선동	0213020300	한국담배인삼공사법위반
0102050150	군용시설제공이적선전	0213030100	인삼산업법위반
0102050200	군용물건제공이적	0213030200	홍삼전매법위반
0102050240	군용물건제공이적선동	0213030300	인삼현동조합법위반
0102050250	군용물건제공이적선전	0213040100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0102060000	군용시설파괴이적	021307010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0102060100	군용시설파괴이적	0213080100	국방경비법위반
0102060140	군용시설파괴이적선동	0213080200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0102060150	군용시설파괴이적선전	0214010100	한국조폐공사법위반
0102070000	물건제공이적	0214010200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102070100	물건제공이적	0214020100	은행법위반
0102070140	물건제공이적선동	0214020200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0102070150	물건제공이적선전	0214020300	국민은행법위반
0102080000	간첩	0214020400	간금융용조치법위반
0102080100	간첩	0214020500	장기신용은행법위반
0102080140	간첩선동	0214020600	단기금융업법위반
0102080150	간첩선전	0214020700	시설대여산업육성법위반
0102100000	군기누설	021402080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0102100100	군기누설	0214020900	한국산업은행법위반
0102100140	군기누설선동	0214021000	한국수출입은행법위반
0102100150	군기누설선전	0214021100	한국주택은행법위반
0102110000	일반이적	0214021200	신용카드업법위반
0102110100	일반이적	021402130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0102110140	일반이적선동	0214021600	부동산투자회사법위반
0102110150	일반이적선전	0214021700	예금자보호법위반
0102120000	전시군수계약불이행	0214021800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0102120100	전시군수계약불이행	0214021900	한국은행법위반
0102120200	전시군수계약이행방해	0214022000	중소기업은행법위반
0102130000	국가모독	021402210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위반
0102130100	국외국가모독	0214030100	신탁업법위반
0102130200	국내국가모독	0214030200	담보부사채신탁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2140000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0214030300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0102140100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0214030400	예비군법위반
0102140200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0214040100	보험업법위반
0104030200	외국국장모독	0214040200	수출보험법위반
0104040000	외국사전	021404030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위반
0104040100	외국에대한사전	0214050100	상호신용금고법위반
0104050000	중립명령위반	0214050200	신용보증기금법위반
0104050100	중립명령위반	0214050300	신용관리기금법위반
0105020300	납세거부단체조직	0214050400	신용협동조합법위반
0105020400	납세거부단체가입	0214050500	새마을금고법위반
0105050000	전시공수계약불이행	0214050600	상호저축은행법위반
0105050100	전시공수계약불이행	02140508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위반
0105050200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0214060100	외국환관리법위반
0105060000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	0214070200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0105060100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	0214080100	증권거래법위반
0105060200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0214080200	기업공개촉진법위반
0106010140	폭발물사용선동	0214080300	상품권법위반
0106020140	전시폭발물사용선동	0214080400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위반
0106020240	비상시폭발물사용선동	021408050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107000000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0214080600	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0107010200	직무수행거부	0214080700	증권투자회사법위반
0107040000	독직가혹행위	0214080800	간접투자자산운용법위반
0107040200	독직가혹행위	0214090100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법률위반
0107080000	수뢰	021409050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0107090100	사전뇌물수수	0214090600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0107100000	제3자뇌물제공	021409070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0107120000	퇴직후수뢰	0214100100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07130000	알선수뢰	021411010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0107140000	증뢰	0215010000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0108030000	법정·국회의장모욕	0215020600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0108030300	국회의장모욕	0215040100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108030400	국회의장소동	0215040200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108040000	인권옹호직무방해	0215050100	공군기법위반
0108040100	인권옹호직무방해	0215050200	방어해면법위반
010804020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0215050300	해군기법위반
0108050000	공무상표시등무효	0215050400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0108050100	공무상봉인손상	0215060100	군용전기통신법위반
0108050200	공무상표시손상	021507010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108050300	공무상봉인은닉	0215070200	군사시설보호법위반
0108050400	공무상표시은닉	0215070300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0108050500	공무상봉인무효	0215070400	군형법위반
0108050600	공무상표시무효	0215070500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 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0108060000	공무상비밀봉합등개피	0215080100	계엄법위반
0108060100	공무상비밀봉합개피	0215080200	징발법위반
0108060200	공무상비밀문서개피	0215080300	포고령위반
0108060300	공무상비밀도화개피	0215080400	군용항공기법위반
0108060400	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	0215080500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0108060500	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	021601010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0108060600	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	0216020200	병역의무의특별규제에관한법률위반
0108070000	공용서류등무효	021602060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 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위반
0108070500	공용서류무효	0216020700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위반
0108070600	공용물건무효	0216020800	국립대학병원설치법위반
0108070900	공용전자기록등무효	0216020900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8090000	공무상보관물등무효	0216021200	교육기본법위반
0108090500	공무상보관물무효	0216021300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위반
0108090600	공무상간수물무효	02160301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0108100000	특수공무집행방해	02160302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위반
0108100100	특수공무집행방해	0216070100	청소년활동진흥법위반
0108110000	특수법정·국회의장모욕	0216071200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위반
0108110100	특수법정모욕	0216071300	청소년복지지원법위반
0108110200	특수법정소동	0217010100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위반
0108110300	특수국회의장모욕	0217020100	군사원호보상법위반
0108110400	특수국회의장소동	02170202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위반
0108120000	특수공무상표시등무효	0217020300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위반
0108120100	특수공무상봉인손상	0217020400	한국원호복지공단법위반
0108120200	특수공무상표시손상	021702050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08120300	특수공무상봉인은닉	021702060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위반
0108120400	특수공무상표시은닉	02170208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0108120500	특수공무상봉인무효	0217030100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위반
0108120600	특수공무상표시무효	021703050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위반
01081300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등개피	0217030600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위반
01081301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개피	0217040200	군인공제회법위반
01081302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피	0217040300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01081303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피	0217040400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위반
0108140000	특수공용서류등무효	0217040500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위반
0108140500	특수공용서류무효	0217060100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08140600	특수공용물건무효	021801010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0108160000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	021801020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0108160500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	0218010300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별법위반
0108160600	특수공무상간수물무효	0218010500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위반
0108170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0218020100	교육법위반
01081701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0218020200	사립학교법위반
0108190000	특수법정·국회의장모욕치상	0218020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위반
0108190100	특수법정모욕치상	0218020400	유아교육진흥법위반
0108190200	특수법정소동치상	0218020500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위반
0108190300	특수국회의장모욕치상	0218020600	한국장학회법
0108190400	특수국회의장소동치상	0218020700	고등교육법위반
0108210000	특수공무상표시등무효치상	0218020800	초·중등교육법위반
0108210100	특수공무상봉인손상치상	0218020900	특수교육진흥법위반
0108210200	특수공무상표시손상치상	0218021000	유아교육법위반
0108210300	특수공무상봉인은닉치상	021802110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0108210400	특수공무상표시은닉치상	02180212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위반
0108210500	특수공무상봉인무효치상	0218021300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08210600	특수공무상표시무효치상	02180214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위반
01082300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등개피치상	0218030100	사회교육법위반
01082301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개피치상	0218030200	도서관법위반
01082302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피치상	0218030300	시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01082303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피치상	0218030400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위반
0108240400	특수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	021803050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위반
01082405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	021803060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01082406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	0218030700	청소년기본법위반
0108240700	특수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0218030800	청소년보호법위반
01082410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무효	02180309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01082411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내용탐지치상	021803100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01082413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치상	0218031100	자격기본법위반
0108241500	특수공무상비밀전자기록등내용탐지치상	02180318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082417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손상치상	02180319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01082419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은닉치상	02180324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0108242100	특수공용전자기록등무효치상	02180325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0108250000	특수공용서류등무효치상	0218040100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위반
0108250100	특수공용서류손상치상	021804030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0108250200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	0218040400	경료경정법위반
0108250300	특수공용서류은닉치상	0218040600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위반
0108250400	특수공용물건은닉치상	0218040700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위반
0108250500	특수공용서류무효치상	0218040800	학교급식법위반
0108250600	특수공용물건무효치상	0218040900	기상산업진흥법위반
0108270000	특수공용건조물등파괴치상	02180501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위반
0108270100	특수공용건조물파괴치상	021902010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0108270200	특수공용선박파괴치상	0219020200	기술개발촉진법위반
0108270300	특수공용기차파괴치상	0219020300	기술용역육성법위반
0108270400	특수공용항공기파괴치상	0219020900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위반
0108290000	특수공무상보관물등무효치상	0219021100	대덕연구단지관리법위반
0108290500	특수공무상보관물무효치상	0219021200	기술사법위반
0108290600	특수공무상간수물무효치상	021902130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0109000000	도주와범인은닉의죄	02190214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09020000	집합명령위반	0219021500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위반
0109020100	집합명령위반	0219030200	원자력손해배상법위반
0109030000	특수도주	0219030300	한국에너지연구소법위반
0109030100	특수도주	0219040100	기상업무법위반
0109040000	도주원조	02190501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0109040100	피구금자탈취	0219070200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위반
0109040200	피구금자도주원조	021909010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위반
0109050000	간수자도주원조	0219090200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0109050100	간수자도주원조	0219090300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0109060000	범인은닉	0220020100	공연법위반
0109060100	범인은닉	0220020200	영화법위반
0109060200	범인도피	0220020300	음반에관한법률위반
0112000000	신앙에관한죄	022002040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0112010000	장식등방해	0220020500	공연법위반(선전물)
0112010100	장식방해	022002060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심의위반)
0112010200	제전방해	022002070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0112010300	예배방해	0220020800	문화예술진흥법위반
0112010400	설교방해	022002090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
0112020300	유발오욕	022002100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필증미부착)
0112030000	분묘발굴	0220021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0112030100	분묘발굴	022002130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0112040300	유발손괴	0220040100	언론기본법위반
0112050300	유발유기	0220040200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위반
0112060300	유발은닉	0220040300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위반
0112070300	유발영득	0220040500	방송법위반
0112080300	분묘발굴유발손괴	0220040600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0112090300	분묘발굴유발유기	022004070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위반
0112100300	분묘발굴유발은닉	0220040800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0112110300	분묘발굴유발영득	0220050100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0112120000	변사자검시방해	0220050300	한국방송광고공사법위반
0112120100	변사자검시방해	0220050400	유선방송관리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300000	방화와실화의죄	0220050600	종합유선방송법위반
011302000	현존건조물등방화	022005070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위반
011303000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0220060100	불교재산관리법위반
011303010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0220060200	향교재산법위반
0113030200	현주기차방화치상	0220060300	전통사찰보존법위반
0113030300	현주전차방화치상	0220060400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위반
0113030400	현주자동차방화치상	02210101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위반
0113030500	현주선박방화치상	0221020100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
0113030600	현주항공기방화치상	0221020200	농업기계화촉진법위반
0113030700	현주광궤방화치상	0221020300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11305000	현존건조물등방화치상	022102040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0113050100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221020500	종묘관리법위반
0113050200	현존기차방화치상	0221020600	주요농작물종자법위반
0113050300	현존전차방화치상	02210207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0113050400	현존자동차방화치상	0221020800	농어촌개발공사법위반
0113050500	현존선박방화치상	0221020900	농어촌고리채정리법위반
0113050600	현존항공기방화치상	0221021000	농수산물수출진흥법위반
0113050700	현존광궤방화치상	0221021100	비료관리법위반
0113140000	진화방해	0221021200	농약관리법위반
0113140100	진화방해	0221021300	식물방역법위반
0113150000	실화	0221021400	농산물검사법위반
0113150100	실화	0221021500	농업재해대책법위반
0113160000	업무상실화	0221021600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위반
0113160100	업무상실화	022102170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
0113160200	중실화	0221021800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
0113170200	폭발성물건파열치상	0221021900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13170400	가스방출	0221022000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위반
0113170500	전기방출	0221022200	농어촌정비법위반
0113170600	증기방출	0221022300	농지개량조합법위반
0113170900	가스유출	0221022500	종자산업법위반
0113171000	전기유출	022102260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113171100	증기유출	0221022700	환경농업육성법위반
0113171400	가스살포	0221022900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0113171500	전기살포	0221023000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위반
0113171600	증기살포	0221023100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0113171900	가스방출치상	0221023200	식품산업진흥법위반
0113172000	전기방출치상	0221023300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0113172100	증기방출치상	0221030100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위반
0113172200	방사선방출치상	022103020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0113172300	방사성물질방출치상	0221030300	농지개혁법위반
0113172400	가스유출치상	0221030400	농지임대차관리법위반
0113172500	전기유출치상	0221030500	농지법위반
0113172600	증기유출치상	0221040100	양곡관리법위반
0113172700	방사선유출치상	0221050100	잠업법위반
0113172800	방사성물질유출치상	0221060100	농업창고업법위반
0113172900	가스살포치상	0222020100	축산법위반
0113173000	전기살포치상	0222020200	낙농진흥법위반
0113173100	증기살포치상	0222020300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위반
0113173200	방사선살포치상	0222020400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0113173300	방사성물질살포치상	0222020500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위반
0113190000	가스등공급방해	0222030100	사료관리법위반
0113190100	가스공급방해	0222030200	초지법위반
0113190200	전기공급방해	0222040100	가족전염병예방법위반
0113190300	증기공급방해	0222040200	수의사법위반
0113200000	가스등사용방해	0222040300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0113200100	가스사용방해	0222040500	가족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위반
0113200200	전기사용방해	0222050100	한국마사회법위반
0113200300	증기사용방해	0223010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위반
0113210000	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	0223010200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위반
0113210100	공공용가스공급방해	0223020100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0113210200	공공용전기공급방해	0223020200	어업현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위반
0113210300	공공용증기공급방해	0223020500	기르는어업육성법위반
0113220000	공공용가스등사용방해	0223030200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0113220100	공공용가스사용방해	0223030300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0113220200	공공용전기사용방해	0223030500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0113220300	공공용증기사용방해	022304020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0113230000	가스등공급방해치상	0223040300	금융지주회사법위반
0113230100	가스공급방해치상	0223050100	수산물검사법위반
0113230200	전기공급방해치상	0223060100	어항법위반
0113230300	증기공급방해치상	0223060200	어선법위반
0113240000	가스등사용방해치상	0223060300	낚시어선업법위반
0113240100	가스사용방해치상	0223060400	어촌 어항법위반
0113240200	전기사용방해치상	0223060500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위반
0113240300	증기사용방해치상	022307010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위반
0113270000	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치상	0224010100	산림조합법위반
0113270100	공공용가스공급방해치상	0224010200	임업협동조합법위반
0113270200	공공용전기공급방해치상	0224023400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13270300	공공용증기공급방해치상	0224030100	사방사업법위반
0113280000	공공용가스등사용방해치상	0224030200	화전정리에관한법률위반
0113280100	공공용가스사용방해치상	0224030300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0113280200	공공용전기사용방해치상	022403040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위반
0113280300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상	0224030500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14000000	일수와수리에관한죄	0224040100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0114011700	현존건조물일수치상	02240501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0114011900	현존건조물일수치상	0224050200	농어업재해보험법위반
0114012100	현존기차일수치상	0224050300	농어업재해대책법위반
0114012300	현존기차일수치상	0224050500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14012500	현존전차일수치상	0224050700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0114012700	현존전차일수치상	0224050800	식품신제품보호법위반
0114012900	현존자동차일수치상	02240509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0114013100	현존자동차일수치상	0224051100	간척지의농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14013300	현존선박일수치상	0224051200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에관한특별법위반
0114013500	현존선박일수치상	0224051300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14013700	현존항공기일수치상	0224051400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위반
0114013900	현존항공기일수치상	0224051500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0114014100	현존광갱일수치상	0224051600	협동조합기본법위반
0114014300	현존광갱일수치상	0224051800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위반
0114020000	방수방해	0225010100	공업단지관리법위반
0114020100	방수방해	0225020100	중소기업진흥법위반
0114040000	수리방해	0225020200	중소기업사업조정법위반
0114040100	수리방해	0225020300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위반
0115000000	교통방해의죄	02250204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0115010000	일반교통방해	0225020500	상공회의소법위반
0115010100	일반교통방해	0225020600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0115020000	기차등교통방해	022502080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위반
0115020100	기차교통방해	0225020900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5020200	전차교통방해	0225021100	말산업육성법위반
0115020300	자동차교통방해	0225021300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15020400	선박교통방해	0225030100	시장법위반
0115020500	항공기교통방해	0225030300	도·소매업진흥법위반
0115030000	기차등전복	022503040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0115030100	기차전복	0225030500	유통산업발전법위반
0115030200	전차전복	0225030600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0115030300	자동차전복	02250307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0115030400	선박전복	0225030800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위반
0115030500	항공기전복	0225030900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위반
0115040000	기차등매몰	0225031000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0115040100	기차매몰	0225040200	수출조합법위반
0115040200	전차매몰	0225040400	수출자유지역설치법위반
0115040300	자동차매몰	0225040500	산업설비수출촉진법위반
0115040400	선박매몰	0225040600	수출감사법위반
0115040500	항공기매몰	0225040800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위반
0115050000	기차등추락	0225040900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위반
0115050100	기차추락	0225041000	수출품질향상에관한법률위반
0115050200	전차추락	0225041100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위반
0115050300	자동차추락	0225041300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0115050400	선박추락	022504140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0115050500	항공기추락	0225041500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간이동등에관한법률위반
0115060000	기차등파괴	022504160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0115060100	기차파괴	0225041700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위반
0115060200	전차파괴	0225050100	공업표준화법위반
0115060300	자동차파괴	0225050200	공업배치법위반
0115060400	선박파괴	0225050300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0115060500	항공기파괴	0225050400	디자인포장진흥법위반
0115070000	일반교통방해치상	0225050500	비철금속제련사업법위반
0115070100	일반교통방해치상	0225050600	조선공업진흥법위반
0115090000	기차등교통방해치상	0225050700	철강공업육성법위반
0115090100	기차교통방해치상	0225050800	기계공업진흥법위반
0115090200	전차교통방해치상	0225050900	전자공업진흥법위반
0115090300	자동차교통방해치상	0225051000	항공공업진흥법위반
0115090400	선박교통방해치상	0225051100	석유화학공업육성법위반
0115090500	항공기교통방해치상	0225051200	염관리법위반
0115110000	기차등전복치상	0225051300	영업조합법위반
0115110100	기차전복치상	0225051400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위반
0115110200	전차전복치상	0225051500	공업발전법위반
0115110300	자동차전복치상	022505160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0115110400	선박전복치상	0225051700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115110500	항공기전복치상	0225051800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위반
0115130000	기차등매몰치상	0225051900	산업표준화법위반
0115130100	기차매몰치상	0225052000	품질경영촉진법위반
0115130200	전차매몰치상	022505210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
0115130300	자동차매몰치상	0225052200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0115130400	선박매몰치상	0225052400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
0115130500	항공기매몰치상	022506030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위반
0115150000	기차등추락치상	0225060400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위반
0115150100	기차추락치상	0225060500	대한석탄공사법위반
0115150200	전차추락치상	0225060600	석탄개발임시조치법위반
0115150300	자동차추락치상	0225060700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0115150400	선박추락치상	0225060800	석탄공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15150500	항공기추락치상	0225060900	한국석유개발공사법위반
0115170000	기차등파괴치상	0225061000	석유사업법위반
0115170100	기차파괴치상	0225061100	광산보안법위반
0115170200	전차파괴치상	0225061200	석탄산업법위반
0115170300	자동차파괴치상	0225061300	송유관사업법위반
0115170400	선박파괴치상	02250614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0115170500	항공기파괴치상	0226020100	전기사업법위반
0116010000	음용수사용방해	0226020200	전기공사사업법위반
0116010100	음용수사용방해	022602030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위반
0116030000	수도음용수사용방해	0226020600	전력기술관리법위반
0116030100	수도음용수사용방해	0226020700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위반
0116070000	수도불통	0226020800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0116070100	수도불통	0226020900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0117020000	아편등수입	0226021000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0117020100	아편수입	0226021100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
0117020200	물핀수입	0226021200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위반
0117060000	세관공무원아편등수입	022603010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01170601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	0226030200	한국가스공사법위반
0117060200	세관공무원아편수입허용	022603050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0117060300	세관공무원물핀수입	022604010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0117060400	세관공무원물핀수입허용	0227010100	변리사법위반
0117100000	상습아편등수입	0227010200	수산업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위반
0117100100	상습아편수입	0227020400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0117100200	상습물핀수입	0227020500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171400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등수입	0227040100	계량법위반
0117140100	상습세관공무원아편수입	0227040200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위반
0117140200	상습세관공무원의아편수입허용	0227040300	계량에관한법률위반
0117140300	상습세관공무원의물핀수입	0227040400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위반
0117140400	상습세관공무원의물핀수입허용	022704050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위반
0118000000	통화에관한죄	0227040600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위반
0118030000	위조통화등행사	0227060100	낙시관리및육성법위반
0118040000	위조통화등수입	0228020100	한국토지개발공사법위반
0118050000	위조통화등수출	0228020200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위반
0118060000	위조외국통화등행사	0228020300	국토이용관리법위반
0118070000	위조통화등취득	0228020400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조법위반
0118070400	변조외국통화취득	022802050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위반
0118080400	변조외국통화지정행사	022802060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0119000000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0228020700	제주도개발특별법위반
0119040000	위조유가증권등행사	0228020800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위반
0119050000	위조유가증권등수입	022802090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위반
0119060000	위조유가증권등수출	0228021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0119070000	우표등위조	0228021100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구·공주시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반
0119080000	위조우표등행사	022802140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위반
0119090000	위조우표등수입	022802150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0119100000	위조우표등수출	0228021800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위반
0119110000	위조우표등취득	0228030100	토지수용법위반
0119120000	소인무효	0228030200	측량법위반
0119120100	우표소인무효	022803030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0119120200	인지소인무효	022803060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
0119120300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0228030800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0120000000	문서에관한죄	0228030900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0010000	공문서등위조	0228031100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위반
0120020000	자격모용공문서등작성	0228031200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0120030000	허위공문서등작성	0228040100	건설업법위반
0120050000	면허장등불실기재	0228040200	해의건설촉진법위반
0120060000	위조공문서등행사	0228040300	건설공제조합법위반
0120060900	허위변작공문서행사	0228040400	중기관리법위반
012007000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	0228040500	건설기술관리법위반
0120070400	불실기재여권행사	022804060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0120080000	공문서등부정행사	02280407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0120080100	공문서부정행사	0228040800	원양산업발전법위반
0120080200	공도화부정행사	0228050100	도시계획법위반
0120090000	사문서등위조	0228050200	도시재개발법위반
0120100000	자격모용사문서등작성	0228050300	주차장법위반
0120110000	허위진단서등작성	022805040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위반
0120120000	위조사문서등행사	0228050500	주택건설촉진법위반
0120130000	사문서등부정행사	0228050600	택지개발촉진법위반
0120130100	사문서부정행사	0228050700	대한주택공사법위반
0120130200	사도화부정행사	0228050800	건축법위반
0121000000	인장에관한죄	0228050900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0121010000	공인등위조	0228051000	건축사법위반
0121020000	공인등부정사용	0228051100	수도법위반
0121030000	위조공인등행사	0228051200	하수도법위반
0121040000	부정사용공인등행사	0228051300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위반
0121050000	사인등위조	0228051400	임대주택법위반
0121060000	사인등부정사용	0228051500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위반
0121080000	부정사용사인등행사	02280517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0122000000	성폭속에관한죄등	022805180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위반
0122010000	간통	0228051900	도시개발법위반
0122010100	간통	02280520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0123000000	도박과복표에관한죄	0228052100	주택법위반
0124000000	살인의죄	0228052200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0124050000	자살관여	0228052300	보급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위반
0125000000	상해와폭행의죄	02280524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위반
0126000000	과실사상의죄	0228052500	소금산업진흥법위반
0127000000	낙태의죄	022805260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에관한법률위반
0127030000	동의낙태치상	0228060100	자연공원법위반
0127030100	축탁낙태치상	0228060200	도시공원법위반
0127030200	승낙낙태치상	0228060300	습지보전법위반
0127070000	업무상낙태치상	022806040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0127070100	업무상낙태치상	0228070100	도로법위반
0127090000	부동의낙태치상	0228070300	고속국도법위반
0127090100	부동의낙태치상	0228070400	유료도로법위반
0127110000	업무상축탁낙태치상	0228070500	사도법위반
0127110100	업무상축탁낙태치상	0228090100	하천법위반
0127130000	업무상승낙낙태치상	0228090200	온천법위반
0127130100	업무상승낙낙태치상	0228090300	특정다목적댐법위반
0129000000	체포와감금의죄	0228090400	공유수면관리법위반
0129140000	체포치상	0228090500	공유수면매립법위반
0129140100	체포치상	022809070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위반
0129160000	감금치상	0228090800	골채취법위반
0129160100	감금치상	0228090900	지하수법위반
0129180100	존속체포치상	022809100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위반
0129200100	존속감금치상	0228091100	소하천정비법위반
0129220100	중체포치상	022809130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률위반
0129240100	중감금치상	0228100100	풍수해대책법위반
0129260100	중존속체포치상	022811010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29280100	중존속감금치상	022811020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위반
0129300100	특수체포치상	022812010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0129320100	특수감금치상	0229010100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위반
0129340100	특수존속체포치상	0229010200	보건소법위반
0129360100	특수존속감금치상	0229020200	위생사등에관한법률위반
0129380100	특수중체포치상	022902040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0129400100	특수중감금치상	0229020600	오물청소법위반
0129420100	특수중존속체포치상	0229020700	유기장업법위반
0129440100	특수중존속감금치상	0229020800	이용사및이용사법위반
0129460100	상습체포치상	0229020900	환경보전법위반
0129480100	상습감금치상	0229021200	결핵예방법위반
0129500100	상습존속체포치상	0229021300	기생충질합예방법위반
0129520100	상습존속감금치상	0229021400	전염병예방법위반
0129540100	상습중체포치상	0229021500	검역법위반
0129560100	상습중감금치상	0229021600	공중위생법위반
0129580100	상습중존속체포치상	0229021900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위반
0129600100	상습중존속감금치상	0229022400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130000000	협박의죄	0229022700	자연환경보전법위반
0131000000	약취와유인의죄	0229022800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법위반
0131020000	영리등목적약취	0229023100	환경영향평가법위반
0131030000	영리등목적유인	0229023200	지역보건법위반
0131050000	상습영리등목적약취	022902340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0131060000	상습영리등목적유인	022902350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31080300	국외이송부녀매매	0229024000	화장품법위반
0131080400	인신매매	0229024100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0131110300	피약취자상해	0229024200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위반
0131110400	피유인자상해	022902450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0131110500	피매매자상해	0229024900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0131110600	피국외이송자상해	0229025100	환경정책기본법위반
0131110700	피약취자치상	0229025300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0131110800	피유인자치상	0229025500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0131110900	피매매자치상	0229025600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위반
0131111000	피국외이송자치상	0229030100	모자보건법위반
0131170700	추행피매매자수수	0229030200	제품안전기본법위반
0131170800	간음피매매자수수	0229030400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0131171000	추행피국외이송자수수	0229040100	의료법위반
0131171100	간음피국외이송자수수	0229040200	의료기사법위반
0131171900	추행피결혼약취자수수	0229040300	시체해부보존법위반
0131172000	추행피결혼유인자수수	02290405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0131172100	간음피결혼약취자수수	0229040600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0131172200	간음피결혼유인자수수	0229040700	의료기기법위반
0131180700	추행피매매자은닉	0229040900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0131180800	간음피매매자은닉	0230010100	약사법위반
0131181000	추행피국외이송자은닉	0230020100	마약법위반
0131181100	간음피국외이송자은닉	02300202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0131181900	추행피결혼약취자은닉	0230020300	대마관리법위반
0131182000	추행피결혼유인자은닉	0230030100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0131182100	간음피결혼약취자은닉	02300302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0131182200	간음피결혼유인자은닉	023101010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위반
0131230100	인신매매모집	0231010200	사회복지사업법위반
0131230200	인신매매운송	0231010300	외국인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위반
0131230300	인신매매전달	0231010500	노인복지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31260200	피매매자국외이송모집	0231010600	심신장애자복지법위반
0131260400	피매매자국외이송운송	0231010700	모자복지법위반
0131260600	피매매자국외이송전달	02310110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0132000000	정조에관한죄	023101110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위반
0134000000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02310112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위반
0134010000	신용훼손	0231012100	기초노령연금법위반
0134010100	신용훼손	0231020200	의료보호법위반
0134020000	업무방해	0231020300	국민건강증진법위반
0134020100	업무방해	023102040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34020200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023102050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위반
0134020300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02310206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013402040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0231020700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위반
0134030000	경매방해	0231030100	재해구호법위반
0134030100	경매방해	0231030200	광산안전법위반
0134030200	입찰방해	0231040100	아동복지법위반
0136000000	주거침입의죄	0231040200	영유아보육법위반
0137000000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023104030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137010000	권리행사방해	02310405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0137010100	권리행사방해	02310406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0137010400	인질상해	0231041300	아동복지법위반(장애아동관람)
0137010500	인질치상	0231041500	아동복지법위반(이용행위)
0137020000	폭력에의한권리행사방해	0231041600	아동복지법위반(양육알선금품취득)
0137020100	폭행권리행사방해	02310417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0137030000	점유강취	0231042000	아동복지법위반(무신고아동복지시설설치)
0137030100	점유강취	0231042100	아동복지법위반(허위서류작성아동복지시설종사자자격취득)
0137040000	준점유강취	0231042200	아동복지법위반(시설폐쇄명령위반)
0137040100	준점유강취	02310423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업무종사자비밀누설)
0137050000	중권리행사방해	0231042400	아동복지법위반(조사거부)
0137050100	중권리행사방해	0231042500	아동복지법위반(조사방해등)
0137060000	강제집행면탈	023104260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매매)
0137060100	강제집행면탈	023104330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장애아동관람)
0138000000	절도와강도의죄	023104350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용행위)
0139000000	사기와공갈의죄	023104360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양육알선금품취득)
0139050000	상습사기	023104370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금품유용)
0139050100	상습사기	0231044300	아동복지법위반(조사거부·방해등)
0139050200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231050100	국민복지연금법위반
0139060000	상습준사기	0231050200	의료보험법위반
0139060100	상습준사기	0231050300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위반
0139070000	상습부당이득	0231050400	국민연금법위반
0139070100	상습부당이득	023105050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위반
0139090100	상습편의시설부정이용	0231050600	국민건강보험법위반
0140000000	횡령과배임의죄	0231050700	의료급여법위반
0140070000	점유이탈물등횡령	023105080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위반
0140070100	유실물횡령	02310509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0140070200	표류물횡령	0231060100	해외이주법위반
0140070300	점유이탈물횡령	0231060200	한국해외개발공사법위반
0140080000	매장물횡령	0231070100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0140080100	매장물횡령	0231080100	정신보건법위반
0141000000	장물에관한죄	0232020100	노동위원회법위반
0142000000	손괴의죄	0232020300	노사협의회법위반
0142040000	손괴치상	023202040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0142040100	재물손괴치상	0232020500	한국노동연구원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142040200	재물은닉치상	0232020600	공인노무사법위반
0142040300	문서손괴치상	0232020700	한국노동교육원법위반
0142040400	문서는닉치상	02320208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0142040500	공익건조물파괴치상	0232021100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위반
0142040600	전자기록등손괴치상	023203050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0142040700	전자기록등은닉치상	0232030600	임금채권보장법위반
0142060000	특수재물등효용침해	0232030700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0142070200	중손괴치상	0232030800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0201020200	정당법위반	0232040200	전시근로동원법위반
020102030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0232050100	직업훈련기본법위반
0201020400	정치활동정화법위반	023205030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위반
0201020500	정원법위반	0232060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0201020600	헌법위원회법위반	02320603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심사에관한법 률위반
0201020700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위 반	023206040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
0201020800	영해법위반	0233010200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위반
0201020900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위반	0233010300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020102100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0233020400	부산교통공단법위반
0201021100	배타적경제수역법위반	0233020500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 법위반
020102120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 등에대한수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 법률위반	0233020600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01021300	한국조폐공사노조파업유도및전검 찰총장부인오로비의혹사건진상규 명등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위반	0233030100	철도법위반
0201021400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 명등에관한법률위반	0233030200	철도소운송업법위반
0201060100	헌법재판소법위반	02330304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위반
0202010100	국회에서의원·감정등에관한법 률위반	0233030500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위반
0202020100	대통령선거법위반	0233040100	식도·궤도사업법위반
0202020200	국회의원선거법위반	023305010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0203010100	대통령경호실법위반	0233050200	자동차정류장법위반
020301020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 반	023305030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020302010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위 반	02330504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0203020200	전자정부법위반	0233050500	자동차관리법위반
0203030100	국가공무원법위반	0233050600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위반
0203030200	공직자윤리법위반	02330507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0203030300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위반	02330508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0203030400	공무원연금법위반	0233060100	창고업법위반
0203030500	교육공무원법위반	0233060200	화물유통촉진법위반
0203030600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0233070100	항공법위반
0203030700	부패방지법위반	0233070200	항공운송사업진흥법위반
0203030800	공직자등의병력사항신고및공개에 관한법률위반	0233070400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위반
0203040100	상훈법위반	0233080100	관광사업법위반
020401010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0233080300	관광진흥법위반
0204020100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0234020100	해운업법위반
0204020200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34020200	한국해운조합법위반
0204020400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0234020300	해운조합법위반
0205010100	집달관법위반	0234020400	해운법위반
0205010200	사법서사법위반	023402060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0205010300	공증인법위반	0234020700	공공주택특별법위반
0205010400	법무사법위반	0234020800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 한특별조치법위반
0205020100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위반	0234020900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0205020200	변호사법위반	0234021000	공동주택관리법위반
0205020400	강생보호법위반	0234021100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 법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205020500	소년법위반	0234030100	선박법위반
0205020600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위반	0234030300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위반
0205020700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	0234030400	선박투자회사법위반
0206010100	입양특례법위반	0234030500	국제선박등록법위반
0206010200	공장저당법위반	0234030600	선박평형수관리법위반
0206010300	광업재단저당법위반	023403070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위반
0206010400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234040100	선원법위반
0206010500	외국인토지법위반	0234040200	선박직원법위반
0206010600	중기저당법위반	0234040300	선원보험법위반
0206010700	상법위반	0234050100	항만법위반
02060108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 반	0234050200	항만운송사업법위반
0206010900	간이절차민사분쟁특례법위반	023405030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위반
0206011000	가사심판법위반	0234050400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 관한법률위반
0206011100	차지차가조정법위반	0234050500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 법률위반
0206011500	부동산등기법위반	0234060100	개항질서법위반
02060116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 별조치법위반	0234060200	도선법위반
0206011700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 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 치법위반	0234060300	수로업무법위반
0206011800	호적법위반	0234060400	항로표지법위반
020601190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위반	0235010100	별정우체국법위반
020601200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0235020100	우편법위반
020601210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0235020200	우편물운송법위반
0206012200	가사소송법위반	0235020300	임시우편단속법위반
0206012300	민사소송법위반	023502040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 반
0206012400	건설기계저당법위반	0235020500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위반
02060125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위반	0235030100	전기통신기본법위반
020601260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0235030200	전기통신법위반
0206012700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0235030300	전기통신공사법위반
0206012800	인감증명법위반	0235030400	한국전기통신공사법위반
0206012900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률위반	0235030500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0206013200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02350306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020601330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위반	0235030800	전자서명법위반
0206013400	민사집행법위반	0235030900	전자거래기본법위반
0206013500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023503100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 률위반
020601360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0235031100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위반
0206013700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위반	0235031200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위반
0206020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0235040100	전파관리법위반
0206020500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0235040200	전파법위반
0206020600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 반	0235040300	건설기술진흥법위반
02060207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 반(부정식품제조등)	0235050100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
02060209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 반(부정유독물제조등)	023505060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 반
02060211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 반(허위정보제공)	023505070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 률위반
020602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	0235050800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020602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통화)	0236010100	국민영양관리법위반
020602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0236010200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 한법률위반
020602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0236010300	환경보건법위반
0206023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재산국외도피)	0236010400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 원에관한법률위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206024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	0236020100	여권법위반
0206024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취업제한등)	02360202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06024300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0236020300	위생사에관한법률위반
0206024400	사회안전법위반	0236020500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06024500	사회보호법위반	0236020600	위생용품관리법위반
0206024600	반공법위반	0236030100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위반
0206025000	보안관찰법위반	0236030200	식생활교육지원법위반
0206025500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위반	0236030300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0206025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0236030400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입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위반
0206026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가혹행위)	0237010100	민족통일연구원법위반
0206028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동화위조)	023702010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02060283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0238020100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06028600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0238020200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0206030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23803020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리에관한법률위반
0206030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0238030300	주거급여법위반
0206030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인)	0238050100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02060316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담소설치)	023805020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060317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시설설치)	023805040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2060318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가취소)	0238050500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위반
02060319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엄수)	0239010100	한국환경공단법위반
0206032200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위반	02390102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위반
0206032300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239020100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060334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사)	0239020200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
0206033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0239020600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위반
0206033700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0239020900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위반
02060338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239021300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06034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239021400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위반
0206035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	0239021500	실내공기질관리법위반
0206036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023902160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0206037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손괴)	0239021700	물환경보전법위반
0206038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흥기등손괴)	0239021800	환경분쟁조정법위반
0206039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흥기등손괴)	0239021900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06039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0240050100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0206039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0240050200	고용정책기본법위반
0206040100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위반	0240070100	근로복지기본법위반
0206043100	범죄피해자보호법위반	0241020100	교통약자의의동편의증진법위반
0206043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무집행방해)	0241020200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위반
0206043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용서류무효)	024102030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위반
0206044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용전자기록무효)	0241020400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206047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0241030100	철도사업법위반
0206047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024103020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위반
0206047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0241030300	한국철도공사법위반
0206047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경매방해)	0241040100	계도운송법위반
0206047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입찰방해)	0241070100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0206055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0242010100	해양경비법위반
0206055700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위반	0242010200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위반
0206055800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0242010300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위반
0206055900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242030100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0206056000	형사소송법위반	0242060200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0206058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비밀준수등)	0242080200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0206059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0242080300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06090000	대통령긴급조치위반	0242080400	항공사업법위반
0206090100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0243030100	콘테츠산업진흥법위반
0206090200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0243030200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0206090400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	0244060100	한국국제협력단법위반
020609090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0299010100	기타위반
020609100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299010200	미상
0207010100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위반	0299010300	군형법위반(이적의죄)
0207010200	특별감찰관법위반	0305010400	법원조직법
0207010300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당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0305020600	법률구조법
0207020100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03050207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0207020200	주민등록법위반	0306012100	민법(과태료)
0207020300	행정서사법위반	0306012300	수표법
0207020400	지방회의의원선거법위반	0306012400	상법시행법
0207020500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위반	0306012700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태료)
02070206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030601280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0207020700	행정사법위반	0306012900	민사소송법(증인신문불출석)
02070209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0306013000	가사소송법
0207021000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0306025600	형사소송법
0207030100	지방공무원법위반	0307020500	지방자치법
0207040200	지적법위반	0307020700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0207040300	지방재정법위반	0307060100	지방문화원진흥법
020704040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030803010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0207040500	난민법위반	030805010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0207050100	지방공기업법위반	0309010100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020705020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위반	0309030200	소방시설공사업법
0207050300	외국법자문사법위반	0310010300	산업연구원법
0208010100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0310020300	수입인지에관한법률
0208010200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0310020400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0208010400	입양특별법위반	0310050100	국가채권관리법
0208020100	경찰공무원법위반	031009080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0208040200	용역경비업법위반	031009090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0208040300	청원경찰법위반	0314080500	공사채등록법
0208040400	수난구조법위반	0315020100	참정유공자에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0208040500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0315070500	군사법원법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208040600	재난관리법위반	0317020100	도서관법
0208040700	자연재해대책법위반	03180102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0208040800	경비업법위반	0318020700	사학진흥재단법
0208040900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위반	0318030700	청소년육성법
0208050100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0318040400	국민체육진흥법
0208050200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위반	0318060100	평생교육법위반
0208050300	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0319020800	기능대학법
0208050500	광고물등관리법위반	0319020900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020805060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0319021200	기술사법
0208050700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0319030400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0208050800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위반	0320020100	문화예술진흥법
0208050900	우선및도선사업법위반	0320020200	영화진흥법(과태료)
0208051000	고물영업법위반	0320030200	전통건조물보존법
0208051100	소개영업법위반	0320040700	출판및인쇄진흥법
0208051200	인장법위반	0320060500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0208051300	전당포영업법위반	0321021800	농업·농촌기본법
0208051400	신용조사법위반	0321060200	농산물품질관리법
02080515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0324050100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0208051700	도선업단속법위반	0325010200	에너지경제연구원법
020805180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032505160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020805220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0326020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0208052300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위반	0328040600	전문건설공제조합법
020805270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0328050100	산업발전법
0208060100	밀항단속법위반	0328050800	건축법(이행강제금)
0209010100	소방공무원법위반	0329010300	보건연구소법
020901020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032902030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0209010300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0329021900	환경관리공단법(과태료)
0209010400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담소등설치)	033101080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0209010500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폐지명령등)	0331020300	한국여성개발원법
0209010600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운영금지)	0331050300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0209010700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엄수)	0332020100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0209010800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033204050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020901160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조치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03320604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심사에관한법률
0209011700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등)	0332060500	진폐예방및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020901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0333020300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태료)
0209014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0333020400	부산교통공단법
0209014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03330504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209014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	033401010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0209015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0334070100	해난심판법
0209015300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0335030600	통신개발연구원법
0209015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정소침입)	0340070100	근로복지기본법
0209020100	민방위기본법위반	1102100100	군사상기밀누설
0209020200	치료감호법위반	1102100140	군사상기밀누설선동
0209020300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위반	1102100150	군사상기밀누설선전
0209030100	소방법위반	1103020200	국장비방
0209030400	소방시설공사법위반	1108030300	국회의장사무
0209030600	혁명재판소및혁명경찰부조직법위반	1108030400	국회의장사무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209030700	인신보호법위반	1108060100	공무상비밀봉함개봉
0209031700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1108060200	공무상비밀문서개봉
0209910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08060300	공무상비밀도화개봉
02099109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기)	1108110300	특수국회회의장모욕
0209911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유기)	1108110400	특수국회회의장소동
0209911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유기치상)	11081301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개봉
0209911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유기치상)	11081302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봉
02099126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체포치상)	11081303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봉
0209912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감금치상)	1108190300	특수국회회의장모욕치상
02099128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체포치상)	1108190400	특수국회회의장소동치상
02099129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중감금치상)	1108230100	특수공무상비밀봉함개봉치상
0209913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체포치상)	1108230200	특수공무상비밀문서개봉치상
0209913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감금치상)	1108230300	특수공무상비밀도화개봉치상
02099132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중체포치상)	1112010100	장례식방해
02099133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중감금치상)	1112010200	제사방해
02099158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인신매매)	1113170100	폭발성물건파열
02099169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약취자상해)	1119120100	우표소인말소
0209917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유인자상해)	1119120200	인지소인말소
0209917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매매자상해)	1120030200	허위공문서변개
02099172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국외이송자상해)	1120030400	허위공도화변개
02099173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약취자치상)	1120050100	면허증불실기재
0209917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유인자치상)	1120060900	허위변개공문서행사
0209917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매매자치상)	1120061000	허위변개공도화행사
02099176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피국외이송자치상)	1120070200	불실기재면허증행사
0209920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준강제추행치상)	1135010100	편지개봉
02099232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신체수색)	1135010200	문서개봉
02099233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주거수색)	1135010300	도화개봉
0209923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건조물수색)	1201020300	정치자금법위반
0209923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자동차수색)	1203030300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02099236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선박수색)	1203030600	국가정보원법위반
0209923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항공기수색)	1204020100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02099238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방실수색)	1205010100	집행관법위반
0209924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중사자등의아동학대)	120601010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위반
02099248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1206010200	공장및공업재단저당법위반
02099249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수명령불이행)	1206026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02099251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업무수행등방해)	1206031600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담소설치)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02099253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단체·다중의위력업무수행 등방해)	1206031800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폐쇄명령등)
0209925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위험한물건휴대업무수행 등방해)	1206031900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비밀업수)
02099255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업무수행방해치상)	120605570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02099257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비밀업수의무위반)	120804060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02099258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인적사 항공개및보도행위)	120805220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02099259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보도금지무위반)	1209030100	소방기본법위반
02099262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아동복지시설중사자들의 아동학대가중처벌)	1210090100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0210010100	감사원법위반	1210090300	소비자기본법위반
0210010200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위반	1214020700	시설대여업법위반
0210020100	보조금관리법위반	12140905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 에관한법률위반
021002020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 반	1215040200	방위사업법위반
0210020300	지방자치법위반	12180309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0210020500	공인중개사법위반	12180318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비밀누설)
021002060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위반	1218032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합의강요)
021002070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 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220020200	영화진흥법위반
0210030200	귀속재산처리법위반	122002040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위반
0210030300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위반	1220040700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0210040100	선물거래법위반	1221021900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위반
0210040200	지방세기본법위반	122102260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0210040300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위반	1221022800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 반
0210040400	도로명주소법위반	122204030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0210040500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위반	1223050100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210060100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위반	1225020700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0210069900	개간촉진법위반	12250302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한법률위반
0210080100	공인회계사법위반	122505020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위반
0210090100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 반	1229021100	한국자원재생공사법위반
0210090300	소비자보호법위반	122902240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0210090400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122902310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위반
0210090500	외자도입법위반	1229040300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위반
0210090600	외자관리법위반	1231070100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 법률위반
021009070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123202030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0210090800	약관규제에관한법률위반	123301020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위반
0210090900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 반	1233060200	물류정책기본법위반
021009100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1235030300	정보통신공사사업법위반
0210091100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132503020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한법률
02100913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222002040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0210100100	통계법위반	22350504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0211010100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235050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죄명코드	죄명	죄명코드	죄명
	위반		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0211020100	방위세법위반	3235050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부 록 4. ICCS 범죄 항목별 세분화 변수 연계표

(파란색 음영 = UN-CTS 보고 사항)

		At - 기 수 / 미 수	We - 무 기 의 종 류	SIC - 상 황 적 환 경	Geo - 지 역 적 위 치	DaT - 날 짜 및 시 간	Lo - 위 치 의 종 류	Mot - 동 기	Cy - 사 이 버 범 죄 관 련	Rep - 신 고 자	SV - 피 해 자 성 별	AV - 피 해 자 연 령	STV - 피 해 자 연 령 (성 년 / 미 성 년 자)	VIP - 피 해 자 가 해 의 관 계	Cit - 피 해 자 국	LS - 피 해 자 법 지 (법 인 / 자 인)	Int - 피 해 자 수 / 악 음 유 무	ES - 영 범 피 해 의 제 문	SP - 가 해 자 성 별	AP - 가 해 자 연 령	STP - 가 해 자 연 령 (성 년 / 미 성 년 자)	VIP - 피 해 자 가 해 의 관 계	Cit - 가 해 자 국	LS - 가 해 자 법 지 (법 인 / 자 인)	Int - 가 해 자 수 / 악 음 유 무	EAST - 가 해 자 연 령 / 환 경 상 태	Rec - 가 해 자 재 상 태	Th - 협 박 유 무	AA - 조 력 / 교 사 포 여	Ac - 공 중 보 도 포 여	CP - 도 구 / 수 단 포 여	인 행 위 의 성 질 유 무	인 행 위 의 성 질 유 무						
01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0101	고의에 의한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2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31	미계획 격분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32	과실에 의한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321	운송수단에 의한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322	운송수단에 의하지 않은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4	자살 방조 또는 교사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41	자살 방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49	기타 자살 방조 또는 교사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5	안락사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6	불법	x			x	x	x	x		x	x								x	x	x	x	x																
0107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109	기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 또는 해악을 가할 의도로 하는 행위																																						
0201	폭행과 협박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1	폭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11	중한 폭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12	경한 폭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2	협박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21	중한 협박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22	경한 협박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19	기타 폭행과 협박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	자유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1	미성년자 약취/유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11	부모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12	기타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13	법정 후견인에 의한 약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19	기타 미성년자 약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2	자유의 박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21	납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22	불법 구속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23	차량 등 운송수단 납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29	기타 자유의 박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91	불법 입양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92	강제 혼인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299	기타 자유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	노예 및 착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1	노예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2	강제 노동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21	강제 가사 노동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22	강제 산업 노동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23	강제 공무 또는 군무 노동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29	기타 강제 노동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39	기타 노예 행위 및 착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4	인신매매 (TIP)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43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49	기타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5	강요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51	갈취 또는 공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59	기타 강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	과실/방임/유기의 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1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방임/유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11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방임/유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12	보호하는 기타 사람에 대한 방임/유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19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기타 방임/유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2	직무상 과실/방임/유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3	운송수단 운전과 관련한 과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69	기타 과실/방임/유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	위험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1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2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하에서 운송수단 운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21	음주 운송수단 운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22	불법 마약의 영향하에서 운송수단 운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29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영향하에서 운송수단 운행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79	기타 위험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81	괴롭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20811	직장내 괴롭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	성적 착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1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2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21	아동 포르노그래피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22	아동 성매매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23	아동 성적 그루밍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29	기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29	기타 성적 착취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309	기타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행위																																						
0401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1	사람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11	공공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12	사적 장소에서의 사람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19	기타 사람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2	이동 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21	승용차 또는 운송수단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29	기타 이동중인 귀중품 또는 물품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3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31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32	비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4	가축에 대한 강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19	기타 강도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409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	재산 침해 행위																																						
0501	절도 목적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11	절도 목적 사업장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12	절도 목적 사적 주거지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121	절도 목적 상시 사적 거주지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122	절도 목적 임시 사적 거주지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13	절도 목적 공공장소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19	기타 절도 목적 침입/침입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1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11	지상 동력 운송수단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12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불법 사용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13	지상 동력 운송수단 부품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19	기타 동력 운송수단 또는 그 부품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2	개인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21	사람으로 부터 개인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22	운송수단으로 부터 개인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29	기타 개인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3	사업체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31	점포 대상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39	기타 사업체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4	공공 재물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5	가축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6	용역 절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29	기타 절도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3	지적 재산권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4	재물 손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41	공공 재물 손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42	개인 재물 손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43	사업체 재물 손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49	기타 재물 손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509	기타 재산 침해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	공공질서, 권위 및 국가 법률에 반하는 행위																											
0801	공공질서 행동규범을 침해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1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12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19	기타 공공질서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2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21	성매매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22	음란물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29	기타 공공질서 성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	표현의 자유 또는 통제와 관련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1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2	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21	종교적 믿음/견해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22	편협성과 증오 등의 조장에 관한 규범 위반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29	제한도인 사회적 믿음 및 규범에 대한 표현과 관련된 기타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39	표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기타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	국고 세입이나 규제조항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1	국고 세입 규정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2	상행위 또는 회사 재무규정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3	도박 규제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4	밀수입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5	시세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49	공공행정이나 규제 조항에 반한느 기타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5	이민과 관련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51	밀입국 알선/조력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59	기타 밀입국 관련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6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61	사법 방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62	사법 명령 위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63	범죄 의도							x													x	x	x	x	x		x		x					x	x	x	x			
08064	범죄 음모/모의							x													x	x	x	x	x		x		x					x	x	x	x			
08069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0807	민주적인 선거와 관련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71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79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기타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8	노동법 위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81	집단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82	개인의 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위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809	기타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09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에 반하는 행위																																							
0901	화기, 폭발물, 기타 파괴적 물질과 관련된 행위							x	x																											x	x	x	x	
09011	화기,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							x																													x	x	x	x
090111	총포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x																													x	x	x	x
090112	기타 화기의 불법적 사용 또는 소지							x																													x	x	x	x
090113	화학, 생화학, 또는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 소지 또는 사용	x						x																													x	x	x	x
090119	화기와 폭발물의 소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타 행위							x																													x	x	x	x
09012	화기와 폭발물의 밀매							x	x																												x	x	x	x
090121	총포의 밀매							x	x																												x	x	x	x
090122	기타 화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							x	x																												x	x	x	x
090123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의 밀매							x	x																												x	x	x	x
090129	화기 또는 폭발물의 밀매와 관련된 기타 행위							x	x																												x	x	x	x
09019	화기, 폭발물과 관련된 기타 행위							x	x																												x	x	x	x

110133	무력충돌과 관련된 성폭력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34	무력 충돌과 관련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35	아동을 군대에 징집하는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39	여타 전쟁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4	민족 집단 학살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5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 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6	침략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19	국제형사사법권에 속하는 기타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2	청소년 규정에 반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21	미성년자 신분 관련 범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29	청소년 규정에 반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기타 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109	다른 어느 곳에서도 분류되지 않은 범죄행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부 록 5. 2018 대검찰청 형법범죄 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재산범죄	절도	절도	
		불법사용	
		침입절도	
	장물	사기	장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당이득
			편의시설부정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횡령	횡령	
	배임	손괴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손괴	손괴		
	손괴치상		
	손괴치사		
강력범죄(흉악)	살인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강도	강도	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강제추행
			강도살인
			강도치사
	방화	방화	일반방화
			방화치상
			방화치사
	성폭력(기존의 강간)	성폭력(기존의 강간)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등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강간등치사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강력범죄(폭력)	폭행	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		상해	상해
			상해치상
			상해치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협박	협박	
	공갈	공갈	
	약취와 유인		약취/유인
			수수/은닉
			부녀매매
			국외이송
			인신매매
		약취유인상해/치상/살인/치사	
	체포와 감금		체포
			체포치상
체포치사			
감금			
감금치상			
	감금치사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폭력행위등(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 활동)	폭력행위등(단체등의구성, 활동)	
위조범죄	통화	통화	
	위가증권/인지/우표	유가증권/인지/우표	
	문서	문서	
	인장	인장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권남용	
	수뢰	수뢰	
	증뢰	증뢰	
풍속범죄	도박과복표	도박	
		복표	
	신앙	신앙	
	기타음란행위	공연음란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실화	실화	
기타형법범죄	명예	명예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	신용업무경매	
	주거침입	주거침입	
	비밀침해	비밀침해	
	유기		유기
			유기치상
			유기치사
	교통방해	교통방해	
	공무방해	공무방해	
	공무방해		공무방해치상
			공부방해치사
	도주와범죄은닉	도주와범죄은닉	
	위증과증거인멸	위증과증거인멸	
	무고	무고	
공안을해하는죄	공안을해하는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란의죄	내란의죄
	음용수에관한죄	음용수에관한죄
	일수와수리에관한죄	일수와수리에관한죄
	기타형법범죄	기타형법범죄

부 록 6. 2018 대검찰청 특별법 분류체계

구분	법률명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개인정보보호법
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7	건설기계관리법
8	건설산업기본법
9	건축법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12	경범죄처벌법
13	고용보험법
1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15	공유재산물관리법
16	공인중개사법
17	공중위생관리법
18	공직선거법((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	관세법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1	국가기술자격법
22	국가보안법
23	국민체육진흥법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5	근로기준법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7	낙시관리및육성법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30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31	농지법
32	대기환경보전법
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34	도로교통법
3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6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37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8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39	도로법
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2	디자인보호법
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4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4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48	변호사법

49	병역법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5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53	부정수표단속법
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56	산업안전보건법
57	산지관리법
58	상표법
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60	선박안전법
61	선박직원법
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63	수도법
64	수산업법
65	수산자원관리법
6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67	식품위생법
6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등)
71	아동복지법
7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73	약사법
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5	여신전문금융업법
76	영유아보육법
77	예비군법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78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79	외국환거래법
80	위험물안전관리법
8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82	의료기기법
83	의료법
84	자동차관리법
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87	저작권법
88	전자금융거래법
89	전파법
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91	조세범처벌법
92	주민등록법
93	주차장법
94	주택법
95	직업안정법
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97	청소년보호법
98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99	최저임금법
100	축산물위생관리법
101	출입국관리법
102	통신비밀보호법
103	특가법(도주차량)
104	특허법
105	폐기물관리법
10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07	하천법
108	학교보건법
10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11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구)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113	화학물질관리법
114	기타특별법

부 록 7. 경찰청 범죄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강력범죄	11	살인기수	1101	살인
				1102	영아살해
				1103	존속살해
				1104	촉탁·승락살인
				1105	자살교사·방조
				1106	위계·위력·촉탁·승락살인
				1107	특가법(보복살인등)
		12	살인미수등	1201	살인_미수
				1202	영아살해_미수
				1203	존속살해_미수
				1204	촉탁·승락살인_미수
				1205	자살교사·방조_미수
				1206	위계·위력·촉탁·승락살인_미수
		13	강도	1301	강도
				1302	준강도
				1303	특수강도
				1304	준특수강도
				1305	강도상해·치상
				1306	강도살인·치사
				1307	해상강도(살인·치사·상해·치상)
				1308	인질강도
				1309	강도강간
				1310	(특수·인질·해상)강도(상습)
				1311	특가법(강도)
				1312	특가법(강도상해재범)
				14	강간
		1402	강간(상습)		
		1403	준강간		
		1404	준강간(상습)		
		1405	강간상해·치상		
		1406	강간살인·치사		
		1407	미성년자간음(심신미약자)		
		1408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1409	친족관계에의한강간		
		1410	장애인에대한강간·간음		
		1411	청소년에대한강간·간음		
		1412	미성년자의제강간		
		1413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간음		
		1414	특수강간(준)		
		1415	주거침입강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16 특수절도강간
		1417 특수강도강간
		1418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강간·간음)
	15 유사강간	1501 유사강간
		1502 유사강간(상습)
		1503 준유사강간
		1504 준유사강간(상습)
		1505 유사강간상해·치상
		1506 유사강간살인·치사
		150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508 유사성행위
		1509 주거침입유사강간
		1510 특수절도유사강간
		1511 특수강도유사강간
		15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유사강간)
	16 강제추행	1601 강제추행
		1602 강제추행(상습)
		1603 준강제추행
		1604 준강제추행(상습)
		1605 강제추행상해·치상
		1606 강제추행살인·치사
		1607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608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609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추행
		1610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추행
		1611 미성년자추행(심신미약자)
		16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613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추행
		1614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1615 특수강제추행(준)
		1616 주거침입강제추행
		1617 특수절도강제추행
		1618 특수강도강제추행
		1619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강제추행·추행)
	17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1701 강간등상해·치상
		1702 강간등살인·치사
		1703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704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05 청소년에대한강간등
		170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70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708 주거침입강간등
		1709 특수절도강간등
		1710 특수강도강간등
		17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8 방화	1801 방화
		1802 현주·공용건조물등방화
		180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1804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1805 일반건조물등방화
		1806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1807 방화연소
		1808 진화방해
		1809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1810 폭발성물건파열(과실)
		1811 가스등방출(치사·상)
		1812 가스등방출(과실)
		1813 가스등공급사용방해(치사·상)
		1814 가스등공급사용방해(과실)
		1815 자동차방화
2 절도	20 절도	2001 절도
		2002 절도(상습)
		2003 특수절도
		2004 특수절도(상습)
		2005 야간주거침입절도
		2006 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
		2007 불법사용
		2008 불법사용(상습)
		2009 특가법(절도)
		2010 특가법(단체등의조직)
3 폭력범죄	31 상해	3101 상해
		3102 상해(중)
		3103 상해(상습)
		3104 상해(상습중)
		3105 상해치사
		3106 존속상해
		3107 존속상해(중)
		3108 존속상해(상습)
		3109 존속상해(상습중)
		3110 존속상해치사
		3111 특가법(보복상해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1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상해)
		3113 특수상해
		3114 특수상해(중)
		3115 특수상해(상습)
		3116 존속상해(특수·특수중)
	32 폭행	3201 폭행
		3202 폭행(상습)
		3203 폭행치상
		3204 폭행치사
		3205 특수폭행
		3206 특수폭행(상습)
		3207 특수폭행치상
		3208 특수폭행치사
		3209 존속폭행
		3210 존속폭행(특수)
		3211 존속폭행(상습)
		3212 존속폭행치상
		3213 존속폭행치사
		3214 특가법(운전자폭행등)
		3215 특가법(보복폭행등)
		3216 특가법(보복범죄등)
		3217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폭행)
	33 체포·감금	3301 체포·감금
		3302 체포·감금(중)
		3303
		3305 체포·감금(상습·상습중)
		3307 체포·감금치사상(중·특수·상습)
		3308 존속체포·감금
		3309 존속체포·감금(중)
		3310 존속체포·감금(특수·특수중)
		3312 존속체포·감금(상습·상습중)
		3314 존속체포·감금치사상(중·특수·상습)
		3315 특가법(보복체포·감금등)
		3316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체포·감금)
	34 협박	3401 협박
		3402 협박(특수)
		3403 협박(상습)
		3404 협박(상습특수)
		3405 존속협박
		3406 존속협박(특수)
		3407 존속협박(상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408	존속협박(상습특수)			
		3409	특가법(운전자협박)			
		3410	특가법(보복협박등)			
		341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협박)			
	35	약취·유인	3501	약취·유인(미성년자)		
			3502	약취·유인(추행·간음·결혼·영리)		
			3503	약취·유인(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3504	인신매매		
			3505	인신매매(추행·간음·결혼·영리)		
			3506	인신매매등(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3507	국외이송약취·유인·인신매매		
			3508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상해·치상)		
			3509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살해·치사)		
			3510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수수·은닉)		
			3511	특가법(약취·유인 등)		
			3512	특가법(13세미만약취·유인)		
			35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3515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국외이송)		
			3516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약취·유인·인신매매)		
			3517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피약취자·피매매자·피유인자)		
			3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36	폭력행위등	3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3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흥기등)
					3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흥기등)
	3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				
	3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흥기등)				
	3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				
	3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 공동, 집단, 흥기등, 상습집단, 흥기등])				
	3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 지원)				
	3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37	공갈			3701	공갈
			3702	공갈(상습)		
			3703	특경법(공갈)		
			3704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공갈)		
			3705	특수공갈		
	38	손괴	3801	손괴의죄		
			380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손괴)		
	4	지능범죄	41	직무유기	4101	직무유기·수행거부
					4102	특가법(직무유기)
					4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2 직권남용	42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감금)
		4202 독직폭행·가혹행위
		4203 피의사실공표
		4204 공무상비밀누설
		4205 선거방해
		4206 특가법(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43 증수뢰	4301 뇌물수수등
		4302 뇌물공여등
		4303 특가법(뇌물)
		4304 특가법(알선수재)
		4305 부패방지법
		4306 부정청탁금지법
	44 통화	4401 통화위조·변조
		4402 특가법(통화위조)
		4403 기타통화에관한죄
	45 문서·인장	4501 공문서위조·변조
		450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4503 사문서위조·변조
		4504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
		4505 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및행사
		4506 사인등의위조·부정사용및행사
	46 유가증권인지	4601 유가증권위조·변조
		4602 우표(인지)등위조·변조
	47 사기	4701 사기
		4702 사기(상습)
		4703 준사기
		4704 준사기(상습)
		4705 컴퓨터등사용사기
		4706 편의시설부정이용
		4707 부당이득
		4708 부당이득(상습)
		4709 특경법(사기)
		47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48 횡령	4801 횡령
		4802 업무상횡령
		4803 점유이탈물등횡령
		4804 특경법(횡령)
	49 배임	4901 배임
		4902 업무상배임
		4903 배임수재
		4904 배임증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905 특경법(배임)
		4906 특경법(수재등)
		4907 특경법(증재등)
		4908 특경법(알선수재)
5	51 풍속범죄	5101 간통
		5102 혼인빙자간음
		5103 혼인빙자간음(위계간음)
		5104 공연음란
		5106 음행매개
		5107 음화등반포(판매, 임대, 전시, 제조)
		51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통)
		5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5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5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1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5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52 도박범죄	5201 도박
		5202 도박(상습)
		5203 도박개장
		5204 복표발매(중개·취득)
		52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6	60 특별경제범죄	6001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60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600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600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60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6006 부정수표단속법
		6007 조세범처벌법
		6008 관세법
		6009 외국환거래법
		6010 지방세법
		6011 저작권법
		6012 특허법
		6013 상표법
		6014 실용신안법
		6015 디자인보호법
		60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017 특가법(관세)
		6018 특가법(국고손실)
		6019 특가법(조세)
		6020 특경법(무인가단기금융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021 특경법(사금융알선등)
		6022 특경법(재산국외도피)
		6099 기타경제범죄
7 마약범죄	70 마약범죄	7001 아편·몰핀에관한죄
		7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7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7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700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7006 특가법(마약)
		7007 특가법(향정)
8 보건범죄	80 보건범죄	8001 음용수에관한죄
		8002 공중위생관리법
		8003 식품위생법
		8004 의료법
		8005 약사법
		8006 전염병예방법
		8007 보건범죄특조법(부정식품)
		8008 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료업자)
		8009 보건범죄특조법(부정의약품)
		8010 기타보건범죄
9 환경범죄	90 환경범죄	9001 대기환경보전법
		9002 토양환경보전법
		9003 수질환경보전법
		900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9005 특가법(산림)
		9006 폐기물관리법
		9007 해양환경관리법
		900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9009 기타환경범죄
10 교통범죄	101 교통사고	10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피교통사고)
		10102 도로교통법(물피교통사고)
		10103 도로교통법(물피교통사고미조치)
		10104 특가법(도주차량)
		10105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02 교통사고외	10201 교통방해의죄
		10202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1020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020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0205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0206 도로법
		10207 기타교통범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1 노동범죄	110 노동범죄	11001 근로기준법
		1100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1003 산업안전보건법
		11004 직업안정법
		11005 기타노동범죄
12 안보범죄	120 안보범죄	12001 공안을해하는죄
		12002 국가보안법
		12003 기타안보범죄
13 선거범죄	130 선거범죄	13001 공직선거법
		13002 정당법
		13003 정치자금법
		13004 기타선거범죄
14 병역범죄	140 병역범죄	14001 병역법
		14002 예비군법위반
		14003 기타병역범죄
15 기타범죄	150 기타	1500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5002 개인정보 보호법
		15003 건설산업기본법
		1500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005 건축법
		15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5007 경범죄처벌법
		1500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5009 골재채취법
		15010 공무방해에관한죄
		1501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15012 공인중개사법
		15013 과실치사상의죄
		15014 국민건강보험법
		15015 국민연금법
		150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5017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15018 낙태의죄
		15019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15020 내수면어업법
		1502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502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5023 농지법
		15024 담배사업법
		15025 도시가스사업법
		1502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027 도주와도주원조죄
		150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5029 명예에관한죄
		15030 무고의죄
		15031 문화재보호법
		15032 밀항단속법
		1503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5034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15035 범인은닉·범인도피죄
		15036 변호사법
		15037 보안관찰법
		150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5039 비밀침해죄
		15040 사격및사격장단속법
		15041 산림법
		1504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50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5045 선박안전법
		15046 선박직원법
		1504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5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50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150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15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5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150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타)
		15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기타)
		15055 소방기본법
		15056 수도법
		15057 수산업법
		15058 신앙에관한죄
		1505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5060 실화및업무상실화죄
		150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50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150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50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50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타)
		15066 아동복지법위반(무아동복지시설의 의무위반 등)
		15067 아동복지법위반(유기·학대 등)
		15068 아동복지법(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069 아동학대처벌법위반(비밀유지의무위반 등)
		15070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15071 아동학대처벌법위반(업무수행 방해 등)
		15072 아동학대처벌법위반(유기·학대 등)
		1507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처분 불이행 등)
		15074 아동학대처벌법위반(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15075 아동학대처벌법위반(기타)
		1507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5077 양곡관리법
		1507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5079 여권법
		15080 영해및접속수역법
		1508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5082 옥외광고물법
		15083 위증죄
		1508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5085 유기와학대의죄
		15086 유선및도선사업법
		1508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50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5089 인질강요·살해·상해
		15090 일수와수리에관한죄
		15091 자동차관리법
		150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093 자연공원법
		15094 장물에관한죄
		15095 장사등에관한법률
		1509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5097 전기통신기본법
		15098 전파법
		150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 등)
		15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5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5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기타)
		15103 주거침입의죄
		15104 주민등록법
		15105 주차장법
		151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510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5108 철도안전법
		15109 청소년보호법
		15110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5111 축산물위생관리법
		15112 출입국관리법
		15113 통신비밀보호법
		15114 특가법(무고)
		15116 특가법(장물)
		15117 특경법(보고의무)
		15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타)
		15119 하수도법
		15120 하천법
		1512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15122 항만운송사업법
		15123 허위감정,증거인멸·은닉,증인은닉죄
		15124 형사소송법
		1512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51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127 교육환경법
		15128 정신건강복지법
		15999 기타

한국범죄분류개발연구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발행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처	통계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TEL. 042)481-0000
인쇄처	백마오피스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315-14



안 내

1.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구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3.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견해이며 통계청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